발 간 등 록 번 호
11-1352000-000017-01

소규모 보육시설 운영모델 개발 연구

2010

연구책임자: 김은설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
공동연구자: 이윤진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
최 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조혜주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원)

보 건 복 지 부
육아정책연구소

본 보고서는 육아정책연구소가 보건복지부의 연구용역 의뢰를 받아 수행한 연구의 결과입니다,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의견이며, 보건복지부의 공식적 입장이 아님을 밝혀둡니다.

요 약

1. 서 론

가.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산간, 도서, 벽지를 포함하는 농어촌의 특수한 보육수요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필요성에서 보건복지부가 추진하고 있는 소규모 보육시설 설치 시범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구체적 소규모 시설 운영 모델 및 지침을 제시함.

□ 더불어, 시범사업의 단기적 효과를 검토함으로써 사업 추진 원활화와 추후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며, 보육시설 이용을 하지 않는 농어촌 영유아의 양육을 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과 운영모델들을 제시하고자 함.

나. 연구내용

□ 농어촌 지역 소규모 보육시설 운영모델 개발 및 지원방안 제시

□ 농어촌 및 도서·벽지형 영유아 양육서비스 모델 개발

□ 소규모 보육시설 및 도서·벽지형 양육서비스 시범사업의 평가

□ 소규모 보육시설 및 도서·벽지형 양육서비스 효율화를 위한 정책 제안

다. 연구방법

□ 문헌자료의 수집 및 검토

○ 기존 연구, 정책자료, 국외 관련 자료를 수집·검토하여 연구의 기초로 삼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검토자료는 국공립보육시설 및 농어촌 지역 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 관련 법, 제도, 선행연구 및 운영사례, 국내외 다문화 가정, 조손가정 등 보육지원 서비스 사례, 지역 특성에 관한 관련 자료 등임.

□ 설문조사

○ 설문조사는 사업에 대한 잠재 수요조사(1차: 87개 군청 담당자, 2차: 1차 조사 누락 지역인 10개군 54개면 주민 352명)와 소규모 보육시설 시범사업 참여 6개 지역 주민 71명

□ 면접 및 관찰 조사

○ 현재 설치, 운영되고 있는 소규모 보육시설과 기타 보육서비스 등 6개 시범 지역을 대상으로 사전·사후 사업평가를 수행하기 위해 관련자를 방문 면접하고 해당 지역을 관찰, 조사

□ 자문회의 및 워크숍 개최

○ 1차 전문가 자문회의는 연구진행 방향, 농어촌 보육서비스 운영 지침의 개발, 문제점 등을 논의하였으며, 2차 지자체 공무원 자문회의는 연구에서 개발된 각 사업의 구체적 운영안내(지침)에 관한 실무자로서의 의견과 실제 운영시 문제점과 개선점에 대하여 논의함.

○ 시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개최하여 개선점과 현실적 문제 등을 함께 논의함.

라. 연구추진과정

□ 연구의 전체적인 주요 추진과정은 다음과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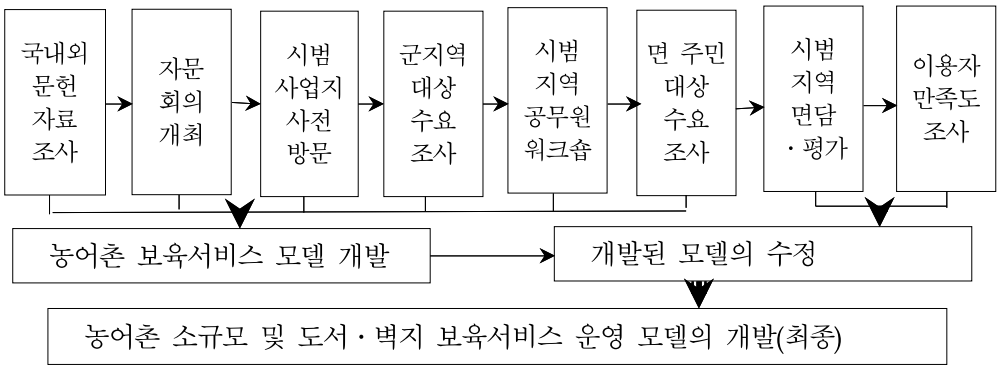

2. 농어촌 지역의 보육서비스

가. 농어촌 보육시설 현황

□ 2008년 12월 현재 전국 보육시설 대비 농촌지역 시설은 약 19.4%, 농어촌 지역 국공립 보육시설은 전국 국공립보육시설 대비 23.3%임. 아동정원은 전국 아동정원 대비 농어촌 지역은 약 24.2%를 차지함.

□ 아동수 100명 미만 지역 국공립보육시설 미설치 지역 통계를 보면 전체의 409개로 그 중 경북, 경남이 미설치 지역이 가장 많으며, 보육시설 공급률이 40% 미만인 지역은 전체 23개로 그 중 경북, 경남, 전남 세 지역임. 기존 선행연구에서 영유아수가 매우 작은 면 지역 중 보육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지역은 전국에서 221개로 나타남. 이들 지역이 소규모 보육시설 우선지역으로 판단됨.

나. 센터중심 보육

□ 보육시설 이외에 농촌지역에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은 농림부에 의해 처음 시작되어 지자체 사업으로 이전된 여성농업인센터와 경상북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농촌보육정보센터가 있음.

□ 여성농업인센터 업무 80%가 보육업무이며, 지원예산 60%이상이 보육부분에 투자되고 있으나 현재 보육 아동수가 감소하고 센터내 보육교사 수급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음. 농촌보육정보센터는 경상북도청 농업정책과에서 관리하며 매년 도비 27.3%, 시·군비 63.7% 정도로 1개소당 연 91백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보육시설은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며 국비로 운영되고 있음.

다. 농어촌 영유아 보육지원 제도

□ 2004년「영유아보육법」일부개정 통해 보육시설 설치기준 및 종사자 배치기준 등에서 도시지역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 범위를 도서벽지 지역뿐만 아니라 농어촌 지역까지 확대하였음.

□ 농림부는 젊은 층의 농어촌 거주를 유도하여 농촌지역 활력화를 위해 2004년부

터 직불성 육아비용 지원을 추진해 오고 있음. 또한 시설 미이용아동에게 정부 인건비 지원시설 이용시 지원되는 법정저소득지원단가의 35% 기준으로 가정 육아비용을 지원하고 있음.

라. 외국의 농어촌·벽지·도서지역 보육서비스

□ 호주 정부의 보육 서비스는 인정보육(approved care)과 보모, 조부모 등 개인에 의해 돌보게 하는 등록보육(registered care) 두 가지를 지원하는 보육지원금제도가 일반적임. 또한 연방정부가 비용을 지원하고 주정부 및 지방정부가 관리하는 비주류 서비스는 도시에 비해 낮은 보육 서비스 이용률을 보이는 농촌과 오지마을 및 원주민 지역을 대상으로 이동 보육서비스, 지역 놀이그룹, 다기능 원주민 아동 서비스 등을 지원하고 있음.

□ 뉴질랜드에서는 농어촌, 특히 이민자 집단, 태평양의 군도지역, 다문화사회에서 '놀이집단(playgroup)' 보육서비스가 활발하게 조직되어 운영되고 있음.

□ 캐나다의 농촌 보육서비스는 온타리오주의 농림부와 보건복지부에서 관할함. 온타리오주에서는 보육시설 이용의 적은 수요자, 보육서비스에 대해 상대적으로 폭넓은 욕구, 연장보육서비스, 자격을 갖춘 교사확보 등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집단가족 보육서비스(Group Family day care)'와 '농번기 보육서비스(seasonal on-farm care)를 도입해 추진하고 있음.

3. 농어촌 소규모 보육시설 운영 모델의 개발

가. 소규모 보육시설

1) 운영 모델

□ 소규모 보육시설은 국공립 보육시설의 일종으로 보육 시설 이용에서 소외지역인 농어촌, 특히 도서, 벽지, 산간 지역의 영유아에 대해 보육서비스를 지원하고자 만들어진 농어촌에 설립된 상시 3인 이상 20인 이하의 영유아를 보육하는 작은 규모의 보육시설을 의미함.

□ 소규모 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은 영유아보육법 제52조에 기존 보육시설 설치 및 종사자 배치기준을 따르기 어려운 경우 승인을 득한 후 달리 적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예외규정이 근거가 됨.

□ 입지조건은 보육시설 미설치 읍·면 지역 중 보육수요가 있고 인근 보육시설 이용에 지리적 접근의 한계를 지니고 있는 지역이며, 주변 환경은 아동보육에 적합한 지역이어야 함.

□ 운영 방법은 지자체 직영과 위탁이 모두 가능하며, 운영시간은 07:30-19:30를 원칙으로 하되 지역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이 가능함.

2) 소규모 보육시설의 유형

□ 소규모 보육시설 유형은 국공립 보육시설의 분원의 형태로 운영하는 방식(분원형)과 기존 보육시설과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형태(독립형)로 나누어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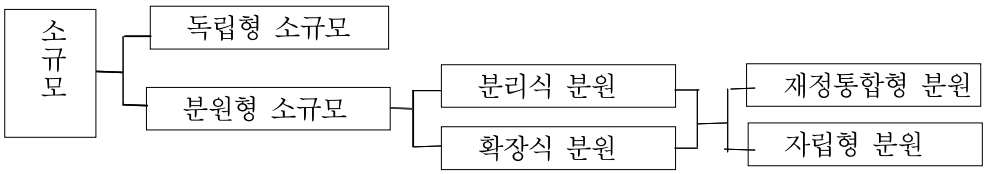

가) 분원형 소규모 보육시설

□ 분원형은 기존 국공립보육시설장이 관리책임을 맡아 동일한 이름으로 다른 지역에 분원으로 설립된 소규모 보육시설을 의미함.

□ 분원형은 거리가 먼 거주 아동과 교사가 분리되어 나가는 '분리식 분원형' 과 기존 시설과 무관하게 아동과 교사가 설치 지역내에서 충원되는 '추가식 분원형으로 나누어짐. 확장식 분원형은 기존 국공립시설(본원)이 예산을 통합적으로 운용하는 '직영식 분원형'과 예산을 분리, 운영하는 '자립식 분원형'으로 구분됨.

□ 분원형은 다양한 비용의 측면에서 규모의 경제효과가 나타나 소규모 시설 자체로만 운영될때보다 경제효율성이 높아지며, 경험많은 본원 시설장으로 인해 원

활한 운영이 가능함. 그러나 시설장의 관리하는 예산 범위가 커진다거나 분원 설치지역의 특성에 따른 일과운영 자율권에 제한이 있을 수 있는 단점 있음.

나) 독립형 소규모 보육시설

□ 기존 국공립시설과 연계 없이 완전한 하나의 보육시설로서 소규모 형태를 취하는 방식임. 이의 현실화를 위해서는 e-보육상에 보육시설의 설립형태 구분에서 '국공립 소규모 시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시설 현장에 있는 소규모 시설의 시설장들이 모든 책임을 지고 운영을 함.

3) 설치기준

□ 현재 보육시설이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지역, 특히 면, 리지역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기존 시설이 설치되어 있어도 지역 면적이 넓어 이동 이용이 용이하지 않은 경우에 설치하게 됨. 국공립설치 대상 지역 중 수요가 매우 적은 경우에도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설치할 수 있음.

□ 현재 보육시설이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지역, 특히 면, 리지역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기존 시설이 설치되어 있어도 지역 면적이 넓어 이동 이용이 용이하지 않은 경우에 설치하게 됨.

□ 설치는 사전 수립된 보육시설 수급계획을 포함한 보육계획에 따라야 하며, 철저한 수요조사를 통해 이용희망자와 장래성도 추측해 보아야 하며,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1의 규정에 의해 설치하고 「보육사업안내」의 보육시설 입지조건을 원칙적으로 준수해야 함.

□ 보육아동 수가 5명 이하 정도로 매우 적어 보육교사 1명만이 근무하는 극소규모 보육시설인 경우 보육실은 영아반/유아반으로 나눌 수 없고 1개의 공간으로 만들어져 보육교사가 모든 아동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환경이 되어야 함.

4) 운영규칙

□ 보육대상은 만0세~만5세 아동을 원칙으로 함. 반편성과 혼합반 기준은 보육사업안내를 따르되 농어촌 특례에 따라 교사 대 아동 수 기준 적용을 받으며 규모

가 비슷한 점에서 가정보육시설에 준하여 2세와 3세의 혼합반도 가능함. 지역 특성에 따라 영아반만을 운영할 수 있으며, 전체 아동 수가 5명 이하인 경우 연령과 무관하게 혼합반을 구성할 수 있음.

□ 운영시간은 원칙적으로 국공립보육시설 운영시간과 같은 수준으로 하되 지역사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음. 소규모 보육시설에는 아동수와 상관없이 취사부를 둘 수 있으며 취사부 인건비는 100% 지원되며 취사부를 활용하여 교육을 이수하게 하고 보육보조인력의 역할을 겸할 수 있게 함. 단 보육보조인력은 한 반을 단독으로 맡을 수는 없고 일정 수의 추가 아동을 더 보육할 수 있음.

□ 시설장은 국공립보육시설 시설장 자격을 갖춘 경우 가능하며 시설장이 보육교사를 겸임할 수 있음. 시설장 인건비는 현행 규정 적용의 예외로 인정받아 아동수 11인 이상인 경우 인건비 80%, 5인 이상 10인 이하인 경우 60%지원을 가능함. 단 시설장 인건비 60%가 영아담당시 보육교사 인건비 80% 지원 기준에 못 미칠 때는 후자를 택하여 교사인건비로 지원하며, 아동수가 5인 미만인 경우는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 기준을 따름.

□ 농어촌 특례를 적용하여 추가 교사 1인에 대해 인건비 100%를 지원함.

5) 소규모 보육시설의 지도·감독 및 폐원

□ 보육시설에 대한 지도 및 감독, 그에 따른 벌칙 등은 소규모 보육시설에 달리 적용되는 규정을 감안하여 지도 및 감독을 하고 그 이외에는 모두 영유아보육법에 따름.

□ 보육시설이 등록아동이 2명 이하로 감소하여 6개월이상 지속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시설의 폐원을 명령할 수 있음. 또한 2명 이하의 상태로 3개월이 지속된 경우 시설장이 운영의 어려움을 증명하여 요청하면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방자치단체장은 폐원할 수 있음.

□ 시설이 폐원되어 건물이 더 이상 보육시설로 사용되지 않을 경우, 시설과 설비, 교재, 교구 등 모든 집기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 귀속되며 시·군·구청장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음.

나. 소규모 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사례: '09 시범 사업

□ 보건복지부에서는 2009년 초 농어촌지역의 보육사각지대가 가진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정책적 노력의 일환으로 소규모 보육시설 설치 시범사업을 시작하였으며, 예산은 각 소규모 보육시설 사업단위당 88백만원 100% 국비지원이며 지역여건에 따라서 지자체의 경상보조가 보조됨.

□ 대상지역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농어촌 소규모 보육시설 설치 시범사업 계획서를 제출받아 그 중 일부를 사업 참여지역으로 선정하였음. 선정지역은 인천 강화군, 강원 화천군, 충남 금산군, 전남 진도군, 경북 안동시, 경북 의성군, 경북 울진군, 경남 함양군 총 8개 지역임.

□ 소규모 보육시설 설치 시범사업 참여 8개 지역은 도서지역이 2곳, 산간지역 6곳, 지자체 또는 민간 지원금이 책정된 곳이 4 지역임.

□ 각 지역별로 시범사업의 진행과정과 효과에 대한 평가는 1차 평가와 2차 평가로 나누어 실시되었음. 1차 평가는 설치 과정 및 시설설비 수준의 적절성을 평가하였으며, 2차 평가는 시설 운영의 효과성과 서비스 만족도를 평가하였음.

□ 1차 평가는 개원한 시설을 대상으로 개원 후 2주 이내에 실시하며 지자체의 자체 평가 방법을 함. 평가내용은 보육시설 설치 계획 적절성, 사업추진 과정 합리성, 홍보 추진의 적절성, 시설 기본 설비는 우량성 등으로 구성됨.

□ 2차 평가는 개원후 1~2개월 이후 실시되며 연구진의 관찰, 이용자 만족도 조사, 운영자 면담 등 3개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실시됨. 평가 내용은 계획대비 목표달성, 보육시설 운영관련 실적, 수요자 및 공급자 만족도로 구성됨.

다. 소규모 보육시설 수요 분석

1) 제 1차 군단위 수요조사

□ 전체 87개 군지역 보육담당공무원 대상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응답한 52개군의 소규모 보육시설 설치에 대한 잠재수요를 파악함.

□ 미이용 영유아가 많은 지역은 경상북도이며, 다음은 인천광역시, 전라북도 순이

었음. 미이용 영유아가 많은 지역 특징은 산간지역이 많으며, 인천이나 전남은 도서지역이었음.

□ 보육시설 설치가 필요한 지역은 전북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은 전남, 경남 순으로 나타남. 미이용 유아가 많다고 응답한 경북은 2개의 수요만을 보고해 소규모 설치가 적장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 소규모 설치 필요성이 있다고 응답한 지역 16개 중 14개군(강원도 횡성군, 전북 순창군)이 설치의향이 없다고 밝혔으며 나머지는 설치의향이 있었음. 소규모 설치시 예상 어려움은 '교사 확보 등 지역 특수성으로 인한 관리 어려움', '소규모 시설 장기적 운영 어려움', '군 자체 재정 부족' 순으로 응답하였음.

2) 제 2차 면단위 수요조사

□ 제1차 조사에서 누락된 군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였음. 2차 조사는 전국 10개군 54개면 주민 총 352명이 참여함.

□ 소규모 설치 필요성 느끼는 주민은 전체 75.9%이며, 이중 50%는 매우 필요하다고 응답함. 응답 면지역 중 필요성이 100.0%로 나왔거나 이용 예상 영유아 수가 25명 이상으로 추정되는 면지역을 선정한 결과, 총 19개면 120여개의 리에 대한 자료를 얻음.

□ 1차 조사에서 군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소규모 보육시설 수요와 2차 조사에서 주민을 대상으로 한 수요조사 결과를 종합해 26개 군 내 최소 37개면에서 시설이 설치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라. 소규모 보육시설 시범사업의 평가 및 전망

1) 시범 사업의 평가

□ 1차평가 결과(충남 금산, 경북 의성) 대부분 항목에서 적절하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보육정책위원회를 개최하여 소규모 보육시설 설치에 대한 논의를 거쳐 지역의견을 수렴함. 다만 금산의 경우 교재교구가 충분치 않다는 평가가 나타남.

□ 2차 평가는 사업의 성과와 이용자 및 근무자의 만족도를 살펴보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하였음. 사업의 성과라는 측면에서는 금산과 의성은 최초의 계획보다는 국비지원금 집행이 지체되어 개원이 조금 늦어졌으나 연내에 개원을 하였다는 점에서 사업 진행이 순조로웠다고 보아야 함.

□ 개원 후 두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영유아 부모들은 원장, 교사의 인품, 급식과 간식, 보육시설·설비의 위생정도, 운영시간등 보육시설 운영 및 서비스에 대해서는 만족도가 높았지만 어린이집 주변환경이나 차량운행, 보육시설의 안전성 , 집과의 거리에 대해서는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음.

2) 시범 사업의 전망

□ 현재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이 4-5세 유아가 되면 큰 규모 시설이나 유치원으로 보낼 계획을 하고 있어 유아보다 영아기에 부모들이 선호하는 시설이라고 보임. 향후 소규모 보육시설의 발전을 위해 꼭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은 다양한 특별활동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음.

□ 농어촌의 아동 수가 많지 않고 줄어드는 현실에서, 접근성을 높이고 신속히 보육혜택을 돌려주기 위해 대규모 국공립을 한 곳에 천천히 짓기 보다는 아이들이 사는 곳 가까이에 쉽게 오갈수 있는 거리내 소규모 국공립을 신속히 설치하여 보육수혜율을 높여야 함.

□ 운영비 부족에 대한 우려가 가장 큼. 시설장 인건비가 해결되고 소규모 보육시설을 영아반 중심으로 운영한다면 농어촌 지역에 있는 소규모 보육시설의 운영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이 가능함. 차량운행지역도 일반 국공립에 비해 범위가 넓지 않을 것이므로 추가적인 운행비 지원은 고려치 않아도 됨.

□ 소규모 시설은 독립형으로 진행하기 보다는 분원형으로 설립하는 것이 다양한 방면에서 유용할 것으로 보임. 분원형은 운영비의 규모경제 실현, 시설장 인건비 절약, 교재교구와 설비 사용 용이, 시설 폐원시 인력, 물자 국공립 흡수가 쉬움, 시설장 운영 노하우가 소규모 시설 운영 정상화에 기여하는 장점이 있음.

□ 지자체의 경상보조가 없는 경우 시설 설비, 교재 교구가 부족할 수 있는다는 문제점이 있음. 이 문제는 소규모 시설이 최근거리 국공립보육시설을 거점으로 삼

아 지자체가 주관하여 결연을 맺거나 가능하면 보육정보센터의 도움을 받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 기존 농어촌 국공립에 비해 설치 비용이 적고 아동수 감소에 덜 민감할 수 있으며 특히 영아 보육에 중점을 두어 출산률 제고에도 일조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음.

□ 다문화 가정이 많아지는 현 시점에서 보육시설 접근성을 높여 외국 어머니를 둔 자녀들이 언어발달이나 문화에서 실조를 겪지 않게 하기 위해 적은 예산으로 시급하게 진행될 필요가 있음.

□ 소규모이므로 새로이 단독 건물을 지을 필요가 없어 기존의 건물 일부을 수리, 사용하는 쪽으로 진행한다면 효율적일 것으로 보임. 민간 시설은 수익을 생각하면 아예 진입을 고려치 않는 곳이므로 소규모라는 새로운 형태만 규정하여 일관성 있게 진행한다면, 앞으로의 전망을 어둡지 않을 것으로 보임.

4. 농어촌·도서·벽지형 보육서비스 모델 개발

가. 이동식 놀이 버스 운영 모델

1) 사업모델

□ 이동식 놀이 버스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운영(위탁 운영 포함)하는 가정 육아 지원을 위한 사업임. 농어촌에 거주하는 시설 미이용 영유아에 대한 이동식 놀이 버스 서비스를 통하여 아동 발달을 촉진하고, 육아 관련 교육 기회가 희박한 주양육자에게 놀이 및 상호작용의 중요성 교육 기회를 증진시키고자 함.

□ 이동식 놀이 버스는 놀이감과 언어활동용 도서를 가지고 농어촌 마을에 방문하여 놀이교실과 놀잇감 및 도서 대여사업 및 각종 문화 프로그램 등의 특별지원 사업을 수행함. 사업 대상자는 보육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농어촌 마을의 영유아 및 부모 또는 영유아 양육자임.

□ 이동식 놀이 버스를 운영하기 위해 놀잇감 및 도서와 관리체계, 이동 수단인

차량이 최소한의 인프라로 확보되어야 하며, 활용가능한 지역사회 자원 네트워크를 조직하는 것 또한 운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함.

□ 이동식 놀이 버스 사업은 수행 주체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며, 보육정보센터 등에 위탁 운영할 수 있음. 사업 수행 주체는 놀이 버스 운영본부를 설치하여 사업을 수행함.

2) 시범사업 평가

□ 2009년 7월 보건복지부 농어촌 보육지원사업 공모에 전라북도 '장난감 및 동화책 이동 매직버스' 사업이 선정되었고, 전라북도보육정보센터가 사업을 담당함.

□ 서비스 제공 범위는 전북 진안·무주·장수군 지역은 보육시설이 없는 곳이 24개 읍·면 가운데 13개면임. 보육시설이 없는 13개 면 중, 12개 면 32개 마을에 매직버스 서비스가 공급되었음. 하지만, 여전히 시설미이용 아동에 대한 서비스 지원율은 5.2%로 그 포괄범위가 넓지 않음.

□ 이동식 놀이버스 시범 사업의 프로그램 구성 및 질에 대한 이용자의 만족도는 기대 이상으로 높음. 매직 버스 이용 아동의 주양육자는 2주에 한 번 방문하는 방문 주기의 적절성을 제외한 모든 매직버스 서비스의 질과 방법에 대해서 90% 이상이 만족하고 있음.

□ 1대의 이동식 놀이버스가 월 2회 34개의 마을을 순회하고 있다는 점에서 볼 때, 전북 임실군, 전남 보성군, 경북 영덕군, 경남 창녕군은 군 단위에서 이동식 놀이 버스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수요가 존재함.

□ 놀이버스 서비스는 부모 상담을 할 수 있는 경력 보육 교사가 운영할 필요가 있으며, 조손 및 다문화 가정을 중심으로 한 특화된 서비스의 개발이 요청됨.

나. 부모협동 놀이그룹 사업

1) 사업모델

□ '부모협동 공동놀이'란 영유아보육법에 의거한 보육시설은 아니지만 국가와 지

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보육서비스의 일종으로, 농어촌·도서·벽지 지역에 거주하는 부모들이 '자치적으로 다 같이' 자신의 자녀를 포함하여 영유아의 보육을 지원하는 사업임.

□ 부모협동 놀이그룹 사업이 운영할 수 있는 지역은 보육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지역에 설치하거나 또는 인근에 보육시설이 설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 면적이 넓어 실질적으로 기존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 설치할 수 있음.

□ 사업 규모는 상시 영유아 3인 이상을 보육할 수 있어야 하며, 명칭은 "○○ 부모협동 어린이 놀이방"으로 하며, 운영 책임은 놀이그룹에 등록한 모든 부모가 지며, 실질적인 운영 방법은 '부모자치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함.

□ 놀이그룹의 '부모자치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운영현황을 분기별로 관할 시장·군수에게 보고하고, 시장·군수는 1주 이내에 시·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할지역의 놀이그룹의 운영 전반에 대하여 년 2회 이상 지도·점검하게 함.

2) 시범사업 평가

□ 현재 '부모자치 운영위원회'의 위원회는 총 6명으로 6명의 어머니가 순번을 정해 개원 후부터 지난 한 달 동안 '관두육아원'을 운영하였으며, 등록한 영유아 수는 총 65명이임. 처음에는 부모들의 반응이 뜨거웠지만,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신종플루라는 변수가 겹치면서 이용부모가 급감하였으며, 공동보육에 대한 부담감으로 이용아동수가 줄어들고 있음.

□ 본래 이 사업은 보육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취약지역에 우선적으로 제공하는 보육서비스라는 취지에서 보면, 관두육아원은 인근에 보육시설과 유치원이 있다는 점에서 선정 지역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볼 수 있음.

□ 부모의 자발적이고 자치적인 운영이 이 사업의 성공을 가늠하는 요건이라면, 이 사업은 도서·벽지 등의 너무 외진 지역보다는 관두마을처럼 젊은 부모들이 거주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나 본래 사업 취지와의 괴리성을 해결할 필요가 있음.

다. 농번기 임시 보육방 운영 모델

1) 사업모델

□ 농번기 임시 보육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운영(위탁 운영 포함)하는 가정 육아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농번기 보육 등의 특수보육 기회의 확대를 위하여 농업 종사자 가정의 영유아가 3명 이상 있는 마을을 대상으로 보육서비스 제공할 목적을 가지고 있음.

□ 마을 공동시설 및 마을 주민의 주택에도에 설치할 수 있으며, 취사시설과 화장실, 세면대 설비가 갖추어져 있어야 함. 보육방 면적은 가능한 영유아 1인당 면적 2.64m^2 기준을 준수해야 함.

□ 마을 여건에 따라 보호자와 보육방 운영자의 협의에 의하여 운영시간은 탄력적으로 운영하며, 아동 연령에 적합한 교재교구 및 놀이감을 비치하고 보육교사가 표준보육과정에 의거하여 보육서비스를 제공함. 보육료는 국공립 보육시설 이용료의 70%를 냄.

2) 향후 사업

□ 현실적으로 농번기 임시 보육방이 3명 이상의 영유아가 있어야 최소 운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2개 마을 이상이 공동으로 설치 한다고 하더라도 설치가 가능한 지역은 마을당 1.5명 이상의 수요가 있어야 가능함.

□ 마을당 1.5명 이상의 수요가 있는 지역은 충북 보은군 회인면, 전남 곡성군 죽곡면 등 10개 면 지역임. 이중, 이용 의향이 100%가 아닌 전남 곡성군 죽곡면, 보성군 노동면, 영덕군 지품면을 제외하면 7개 면에서 만이 설치가 가능함.

라. 준공영(準公營) 섬마을 보육가정

1) 사업모델

□ '준공영 섬마을 보육가정'이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시설은 아니지만 국가

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보육서비스의 일종으로, 인근의 보육시설을 이용하기가 어려운 지역 중에서 도서지역에 한정하여 해당 도서지역의 주민이 자신의 집에서 영유아의 보육을 제공하는 사업임.

□ 설치지역은 보육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도서지역 중 육지와 교량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는 소외지역에 한정되며, 보육모의 가정집 내부구조가 보육활동을 할 수 있는 곳으로 인정된 장소이어야 함.

□ 준공영 섬마을 보육가정은 상시 보육모의 자녀 포함 총 5인 이하의 영유아를 보육할 수 있으며, 이 때 총 영유아에서 보육모 자녀는 과반을 넘을 수 없음.

□ 보육교사 공급이 수월하지 않는 도서지역임을 감안하여 해당 지역 주민들 중에서 제시하는 자격 중 하나를 갖추면 보육모를 할 수 있으며 인건비는 100% 지원됨. 총 영유아 중 보육모 자녀를 제외하고 영아가 과반이상일 경우, 취사부를 두어야 함.

□ 준공영 섬마을 보육가정을 운영하는 자(보육모)는 6개월 간격으로 관할 시장·군수, 시·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할지역의 놀이그룹의 운영 전반에 대하여 매년 2회 이상 지도·점검하게 함.

2) 사업전망

□ 사업의 수요는 대체로 높았으며, 보육모의 유무 조사에서 설치 필요성이 100% 나온 전북 임실면의 청웅면, 성수면, 신덕면, 덕치면 4 곳에서 보육모로 활동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응답한 경우가 78.6%로 전체(72.7%)보다 많았음.

□ 이용 영유아 수요와 실제 보육모로 활동할 수 있는 사람의 수 사이에 간극이 존재하였으며, 이 간극을 메울 대안책이 필요함. 준공영 보육가정 사업의 부모들의 수요조사와 공무원의 수요조사의 일치되는 지역을 찾기 어려움. 부모들 수요가 높게 나온 지역 담당 공무원에게 설문조사 결과를 인지시킬 필요 있음.

5. 결론: 정책적 제언

□ 소규모 보육시설은 농어촌 국공립 보육시설 설치 사업의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음. 접근성 제고 측면에서 농어촌 국공립은 현재 시설 분포를 고려하여 상호 갈등 유발 지역을 피해 소규모 시설을 지향하는 것이 바람직함.

□ 이동식 놀이버스 사업은 소규모 보육시설 설치가 용이하지 않은 지역을 중심으로 놀이버스를 순환하는 방식을 선택하면 농어촌 지역 영유아 보육 및 교육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부모협동 놀이그룹은 시범사업 결과를 적용하고 수요조사 결과를 통해 볼 때 현실적으로 운영하는 데 몇 가지 개선해야 할 문제점들이 있음.

□ 농번기 보육방은 소규모 보육시설이 없는 면지역 중 규모가 있는 마을에 설치하면 소규모 시설에 대한 보완적 방식이 될 것으로 보임.

□ 준공영 섬마을 보육가정은 도서지역을 위한 보육서비스로 한정해야 함. 이러한 형태가 허락될 수 있는 도서·벽지 주민에게 보육서비스 혜택을 준다는 상징적 의미에서 보육가정 사업 모델은 개발될 필요가 있으며 특정지역을 두고 시범실시해 볼 필요가 있음.

목 차

Ⅰ. 서 론 ·····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2. 연구 내용 ····· 3
3. 연구 방법 ····· 4
4. 연구추진과정 ····· 10
5. 선행연구: 국내외 연구 동향 ····· 10

Ⅱ. 농어촌 지역의 보육서비스 현황 ····· 13

1. 농어촌 보육시설 현황 ····· 13
2. 센터중심 보육 ····· 18
3. 농어촌 영유아 보육지원 제도 ····· 21
4. 외국의 농어촌·벽지·도서지역 보육서비스 ····· 25

Ⅲ. 농어촌형 보육서비스 모델의 개발 ····· 37

1. 배경: 농어촌 보육서비스 이용의 특징 ····· 37
2. 농어촌형 보육서비스 모델 ····· 40

Ⅳ. 농어촌 보육서비스 유형별 수요 조사의 분석 ····· 68

1. 농어촌 소규모 보육시설 ····· 69
2. 이동식 놀이 버스 ····· 78
3. 부모협동 놀이그룹 ····· 82
4. 농번기 임시 보육방 ····· 86
5. 준공영 섬마을 보육가정 ····· 91

Ⅴ. '09 농어촌 보육서비스 시범사업 현황 ····· 97

1. 사업개요 ····· 97
2. 시범 사업 참여 지역과 추진 경과 ····· 98

Ⅵ. 농어촌 보육서비스 시범사업 평가 ····· 127

1. 사업의 평가 계획 ····· 127
2. 소규모 보육시설 시범사업의 평가 및 전망 ····· 130
3. 이동식 놀이 버스 사업 평가 및 전망 ····· 151
4. 부모협동 놀이 그룹 사업 평가 및 전망 ····· 156

Ⅶ. 정책적 제언 ····· 159

1. 농어촌 소규모 보육시설 ····· 159
2. 이동식 놀이 버스 사업 ····· 161
3. 부모협동 놀이그룹 ····· 161
4. 농번기 임시 보육방 ····· 162
5. 준공영 섬마을 보육가정 ····· 163

참고문헌 ····· 164

부록 ····· 167

표 목 차

〈표 Ⅰ-3-1〉 군지역 공무원 대상 보육서비스 수요조사의 내용 ····· 5
〈표 Ⅰ-3-2〉 보육서비스 수요조사 대상지역 ····· 6
〈표 Ⅰ-3-3〉 농어촌 마을주민 대상 보육서비스 수요조사의 내용 ····· 6
〈표 Ⅰ-3-4〉 소규모 보육시설 이용자 만족도 조사내용 ····· 7
〈표 Ⅰ-3-5〉 장난감 버스 이용자 만족도 조사 내용 ····· 7
〈표 Ⅰ-3-6〉 면접 지역 및 대상자 ····· 8
〈표 Ⅰ-3-7〉 전문가 자문회의 참석자 및 논의내용 ····· 9
〈표 Ⅰ-3-8〉 실무자 자문회의 참석자 및 논의내용 ····· 9
〈표 Ⅰ-3-9〉 워크숍 참석자 및 논의내용 ····· 10
〈표 Ⅱ-1-1〉 농촌지역 보육시설 및 아동정원 현황 ····· 14
〈표 Ⅱ-1-2〉 전국 대비 농어촌의 보육시설 유형별 점유율 ····· 14
〈표 Ⅱ-1-3〉 연령별 아동현원 및 다문화가정 아동 ····· 15
〈표 Ⅱ-1-4〉 시·도 단위 보육시설 공급률 및 이용율 ····· 15
〈표 Ⅱ-1-5〉 국공립보육시설 미설치 지역 및 보육공급률별 읍면동 수 ····· 16
〈표 Ⅱ-1-6〉 보육시설이 없는 영유아수 60명 이하 읍·면 지역 ····· 17
〈표 Ⅱ-2-1〉 농촌 보육·정보 센터 사업현황 ····· 20
〈표 Ⅱ-3-1〉 농어촌지역 교사대 아동수 특례비율 ····· 22
〈표 Ⅱ-3-2〉 농림부 육아 지원금 월지급 한도액 및 단가 ····· 22
〈표 Ⅱ-3-3〉 농림부 육아 지원금 월지급 한도액 및 단가 ····· 23
〈표 Ⅱ-3-4〉 2008년도 지자체 특수 시책 사업 ····· 24
〈표 Ⅱ-4-1〉 호주의 이동보육서비스 프로그램 ····· 26
〈표 Ⅱ-4-2〉 뉴질랜드 놀이집단 정부지원금 수혜 기준(일부) ····· 29
〈표 Ⅱ-4-3〉 뉴질랜드 정부가 놀이집단에 제공하는 자료 ····· 30
〈표 Ⅱ-4-4〉 뉴질랜드 놀이집단의 교육내용(일부) ····· 30
〈표 Ⅱ-4-5〉 뉴질랜드 정부 발표 놀이집단의 이로움 ····· 31
〈표 Ⅲ-1-1〉 농어촌 영유아 육아지원기관 이용 현황 ····· 38
〈표 Ⅲ-1-2〉 농어촌 주민의 보육료에 대한 부담감의 정도 ····· 39
〈표 Ⅲ-1-3〉 농어촌 영유아 가정 월평균 보육료 지출 ····· 39

〈표 Ⅲ-1-4〉 농어촌 보육시설 1일 차량 운행거리 및 월평균 소요비용 ····· 40
〈표 Ⅲ-1-5〉 농어촌 보육시설 차량이용 등원 시간 ····· 40
〈표 Ⅲ-1-6〉 거리가 멀어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 유무 ····· 40
〈표 Ⅲ-2-1〉 소규모 보육시설 설치의 법적 근거 1 ····· 42
〈표 Ⅲ-2-2〉 소규모 보육시설 설치의 법적 근거 2 ····· 42
〈표 Ⅲ-2-3〉 운영방식에 따른 소규모 보육시설의 유형 ····· 49
〈표 Ⅲ-2-4〉 보육보조인력 활용시의 반편성 인원 조정 ····· 50
〈표 Ⅲ-2-5〉 국공립보육시설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 기준 ····· 51
〈표 Ⅲ-2-6〉 소규모 보육시설 적용을 위한 변경/신규 운영 기준 ····· 52
〈표 Ⅲ-2-7〉 놀이 버스 놀잇감 및 도서구성 ····· 55
〈표 Ⅲ-2-8〉 종사자 구성 및 자격과 직무내용 ····· 56
〈표 Ⅲ-2-9〉 이동식 놀이 버스 추진체계 ····· 57
〈표 Ⅲ-2-10〉 부모참여놀이그룹사업의 '부모자치운영위원회' 지침 ····· 59
〈표 Ⅲ-2-11〉 종사자 구성 및 자격과 직무내용 ····· 63
〈표 Ⅲ-2-12〉 농번기 임시 보육방 추진체계 ····· 64
〈표 Ⅳ-0-1〉 농어촌 보육서비스 제1차 군단위 수요조사 참여 지역 ····· 68
〈표 Ⅳ-0-2〉 농어촌 보육서비스 제2차 읍면단위 수요조사 참여 지역 ····· 69
〈표 Ⅳ-1-1〉 거리가 멀어 보육시설 이용을 하지 못하는 영유아 현황 ····· 70
〈표 Ⅳ-1-2〉 소규모 보육시설 설치 필요 지역 ····· 71
〈표 Ⅳ-1-3〉 소규모 보육시설 설치 의향이 있는 지역 ····· 72
〈표 Ⅳ-1-4〉 소규모 보육시설 설치시 예상되는 어려움 ····· 73
〈표 Ⅳ-1-5〉 지역내 리(里)당 가구 및 아동 현황 ····· 74
〈표 Ⅳ-1-6〉 이동거리 때문에 기관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 수 ····· 74
〈표 Ⅳ-1-7〉 소규모 보육시설 설치 필요성 ····· 75
〈표 Ⅳ-1-8〉 소규모 보육시설 설치 수요 읍·면 현황 ····· 76
〈표 Ⅳ-1-9〉 소규모 보육시설 우선설치 필요 군 및 읍·면 현황 ····· 77
〈표 Ⅳ-2-1〉 이동식 놀이 버스 운영 참여의향 ····· 78
〈표 Ⅳ-2-2〉 이동식 놀이 버스 운영 희망 지역 여건 ····· 79
〈표 Ⅳ-2-3〉 이동식 놀이 버스 희망 이용료 ····· 80
〈표 Ⅳ-2-4〉 이동식 놀이 버스 운영 필요성 ····· 80
〈표 Ⅳ-2-5〉 이동식 놀이 버스 운영 수요 읍·면 현황 ····· 81

〈표 Ⅳ-3-1〉 부모협동 놀이그룹 지원 필요 지역 ····· 83
〈표 Ⅳ-3-2〉 부모협동 놀이그룹지원 참여의향 ····· 83
〈표 Ⅳ-3-3〉 부모협동 놀이그룹 지원 참여시 예상되는 어려움 ····· 84
〈표 Ⅳ-3-4〉 '부모협동 놀이그룹'을 운영하고자 하는 부모들의 예상 수요 (군단위) ····· 85
〈표 Ⅳ-3-5〉 '부모협동 놀이그룹' 사업의 부모 및 가구 예상 수요(읍·면 단위) ····· 86
〈표 Ⅳ-4-1〉 보육방 설치 의향 ····· 87
〈표 Ⅳ-4-2〉 보육방 설치시 지역 상황 ····· 88
〈표 Ⅳ-4-3〉 보육방 지원 기관 선호 ····· 88
〈표 Ⅳ-4-4〉 보육방 이용료 ····· 89
〈표 Ⅳ-4-5〉 농번기 임시 보육방 운영 필요성 ····· 89
〈표 Ⅳ-4-6〉 농번기 임시 보육방 운영 수요 읍·면 현황 ····· 90
〈표 Ⅳ-5-1〉 준공영 보육가정 설치 필요성 및 운영의향 ····· 92
〈표 Ⅳ-5-2〉 준공영 보육가정 설치시 예상되는 어려움 ····· 92
〈표 Ⅳ-5-3〉 '준공영 보육가정' 설치 필요성(시·군) ····· 93
〈표 Ⅳ-5-4〉 '준공영 보육가정' 설치 및 이용 예상수요(읍·면) ····· 94
〈표 Ⅳ-5-5〉 '준공영 보육가정'의 보육모로서 일할 사람의 유무(시·군) ····· 95
〈표 Ⅳ-5-6〉 '준공영 보육가정'의 보육모로서 일할 사람의 유무 및 사람 수(읍·면) ····· 96
〈표 Ⅴ-2-1〉 소규모 보육시설 설치 시범 사업 참여 지역 ····· 98
〈표 Ⅴ-2-2〉 강화군 소규모 보육시설 아동 및 종사자 현황 ····· 100
〈표 Ⅴ-2-3〉 화천군 소규모 보육시설 아동 및 종사자 현황 ····· 102
〈표 Ⅴ-2-4〉 금산군 소규모 보육시설 아동 및 종사자 현황 ····· 104
〈표 Ⅴ-2-5〉 안동시 소규모 보육시설 아동 및 종사자 현황 ····· 107
〈표 Ⅴ-2-6〉 의성군 소규모 보육시설 아동 및 종사자 현황 ····· 110
〈표 Ⅴ-2-7〉 함양군 소규모 보육시설 아동 및 종사자 현황 ····· 112
〈표 Ⅴ-2-8〉 소규모 보육시설 시범사업 참여지역별현황 ····· 114
〈표 Ⅴ-2-9〉 매직버스 시범사업개요 ····· 115
〈표 Ⅴ-2-10〉 매직버스 사업 구성 ····· 116
〈표 Ⅴ-2-11〉 매직버스 홈페이지 구성 ····· 117

〈표 Ⅴ-2-12〉 매직버스 사업 프로그램 ····· 118
〈표 Ⅴ-2-13〉 매직버스 교육사업 프로그램 ····· 119
〈표 Ⅴ-2-14〉 매직버스 특별지원사업 프로그램 ····· 120
〈표 Ⅴ-2-15〉 매직버스 사업인력 ····· 120
〈표 Ⅴ-2-16〉 매직버스 서비스 이용자 현황 ····· 122
〈표 Ⅴ-2-17〉 관두마을 영유아 일반현황 ····· 123
〈표 Ⅴ-2-18〉 부모협동 놀이그룹 수요조사 ····· 124
〈표 Ⅴ-2-19〉 참여희망세대 부모 직업현황 ····· 124
〈표 Ⅵ-1-1〉 소규모 보육시설 설치 시범사업 평가 계획 ····· 127
〈표 Ⅵ-1-2〉 소규모 보육시설 설치 시범사업 1차 평가 세부 내용 ····· 128
〈표 Ⅵ-1-3〉 소규모 보육시설 설치 시범사업 2차 평가 세부 내용 ····· 129
〈표 Ⅵ-2-1〉 소규모 보육시설 개원 현황 및 1차 평가 시기 ····· 131
〈표 Ⅵ-2-2〉 농어촌 소규모 보육시설 1차 평가 결과(2010년 4월 개원 기준) ····· 132
〈표 Ⅵ-2-3〉 소규모 보육시설 이용 이전 주양육자 ····· 134
〈표 Ⅵ-2-4〉 보육시설/유치원 이용 경험 ····· 135
〈표 Ⅵ-2-5〉 보육시설/유치원 미이용 이유 ····· 135
〈표 Ⅵ-2-6〉 소규모 보육시설 이용 영유아 부모특성 ····· 136
〈표 Ⅵ-2-7〉 소규모 보육시설 이용 영유아 가구특성 ····· 138
〈표 Ⅵ-2-8〉 소규모 보육시설 선택이유 ····· 139
〈표 Ⅵ-2-9〉 소규모 보육시설 이용시간 ····· 139
〈표 Ⅵ-2-10〉 소규모 보육시설 이용후 자녀변화(1순위) ····· 140
〈표 Ⅵ-2-11〉 소규모 보육시설 이용후 자녀변화(2순위) ····· 141
〈표 Ⅵ-2-12〉 의성 소규모 보육시설 부모 만족도 ····· 142
〈표 Ⅵ-2-13〉 금산 소규모 보육시설 부모 만족도 ····· 142
〈표 Ⅵ-2-14〉 함양 소규모 보육시설 부모 만족도 ····· 143
〈표 Ⅵ-2-15〉 강화 소규모 보육시설 부모 만족도 ····· 143
〈표 Ⅵ-2-16〉 화천 소규모 보육시설 부모 만족도 ····· 144
〈표 Ⅵ-2-17〉 안동 소규모 보육시설 부모 만족도 ····· 145
〈표 Ⅵ-2-18〉 향후 소규모 보육시설 이용계획 ····· 146
〈표 Ⅵ-2-19〉 소규모 보육시설 추가 이용 계획 ····· 146

〈표 Ⅵ-2-20〉 소규모 보육시설 발전에 필요사항 ····· 147
〈표 Ⅵ-3-1〉 매직버스 사업대상지역 아동현황 ····· 151
〈표 Ⅵ-3-2〉 매직버스 서비스 평가 응답자 현황 ····· 152
〈표 Ⅵ-3-3〉 매직버스 서비스 평가 응답자 현황 ····· 153
〈표 Ⅵ-3-4〉 매직버스 서비스 만족도 ····· 153
〈표 Ⅵ-3-5〉 매직버스 서비스 효과 ····· 154
〈표 Ⅳ-3-6〉 매직버스 이용자의 기관 이용에 대한 의견 ····· 155

그 림 목 차

[그림 Ⅰ-4-1] 연구의 추진과정 ····· 10
[그림 Ⅲ-2-1] 소규모 보육시설의 유형 ····· 44
[그림 Ⅲ-2-2] 영유아 혼합반 1인 교사 체제의 보육실 모형 예 ····· 48
[그림 Ⅲ-2-3] 이동식 놀이버스 사업 모형 ····· 54
[그림 Ⅲ-2-4] 임시 보육방 사업 모형 ····· 61
[그림 Ⅴ-1-1] 소규모 보육시설 설치 시범사업 추진 일정 ····· 97
[그림 Ⅴ-2-1] 강원도 화천군 봉오다솜어린이집 전경 ····· 101
[그림 Ⅴ-2-2] 경북 안동시 녹전어린이집 서부분원 전경 ····· 107
[그림 Ⅴ-2-3] 매직버스 차량 ····· 116
[그림 Ⅴ-2-4] 그룹 놀이 활동 ····· 119
[그림 Ⅴ-2-5] 개별 놀이 활동 ····· 119
[그림 Ⅴ-2-6] 매직버스 추진체계 ····· 121
[그림 Ⅴ-2-7] 관두마을 부모협동 놀이사업 위치 ····· 125
[그림 Ⅴ-2-8] 관두마을 부모협동 놀이사업 평면도 ····· 125
[그림 Ⅵ-2-1] 보육시설 이용후 자녀변화(1순위) ····· 140
[그림 Ⅻ-1-1] 농어촌 소규모 보유시설 운영 최적 모델 ····· 160

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보건복지부는 2009년 '농어촌 소규모 보육시설 설치 시범사업'을 시작하였다. 이는 농어촌 중에서도 산간벽지, 도서 지역 등 기존 보육시설 이용이 힘들고 수요도 10여명 정도여서 국공립시설 신설도 어려운 소외 지역을 대상으로, 새로운 형태의 소규모 국공립 보육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최소한의 수요가 있더라도 영유아 보육의 공평성과 보편성이라는 측면에서 국민 누구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국가의 정책적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본 연구는 보건복지부의 시범사업이 진행되면서 도출하는 소규모 보육시설의 설립과 운영상의 문제점과 이의 개선방안, 시범사업의 확대 필요성, 소규모 보육시설 이외의 농어촌 자녀 양육 지원 방안 등을 제시하고자 하는 목적을 지니고 있다.

농어촌 지역은 민간보육시설의 수가 적고 국·공립 및 법인 중심의 대단위 보육시설이 주가 되는 경향이 있다. 보육통계(2009)에 따르면, 보육시설 정원 중 민간개인 보육시설 정원 비율은 전국기준 54.7%인데 비해, 농어촌 지역은 51.3%로 낮고, 가정보육시설 정원도 전국 18.9%인데 비해 농어촌은 11.2%에 지나지 않는다. 반면 국공립과 법인, 법인외 단체가 운영하는 보육시설 정원비율은 전국 기준 24.6%이나 농어촌은 36.7%에 달하고 있다. 즉, 농어촌은 젊은 층의 이농현상과 낮은 출산율로 아동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되었을 뿐만 아니라 지역 특성상 주거지역이 넓은 공간에 퍼져 있어 아동의 등하원이 힘든 문제도 있으므로 민간이나 가정보육시설은 운영에 대한 부담 때문에 농어촌 지역 진입 자체를 꺼리고 있다. 결과적으로 국공립이나 법인 중심의 시설 설치가 되어왔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국공립 시설 중심은 접근성에서 한계를 지닌다는 점이다. 시설당 평균정원의 통계(보육·교육 실태조사, 2009)를 보면 대도시는 49.32명, 중소도시는 45.26명이었으나 읍·면지역의 경우는 57.06명으로 농어촌에서 보육시설의 규모가 큰 곳이 많다. 즉 인구가 적은 지역에서 대규모 시설의 비중이 크다는 것은 수요를 수용하는 범위가 크다는 것이고 수요자측에서 보면 이동거리가 멀다는 뜻이 된다. 즉 거주지 가까이에서 이용 가능한 소규모의 가정보육시설 등은 통계상 볼 때

특히 수가 적고, 대규모 시설의 보육수요 수용 범위가 넓다고 하지만 한계가 있으므로 그 범위를 벗어나는 산간지역의 경우 보육 접근성은 0에 가깝다. 즉, 국공립 또는 법인 시설이 농어촌에 있지만 이들도 보육 수요가 많은 규모가 큰 지역에 치우쳐 있고 읍·면 소재지에서 먼 산간이나 도서, 벽지 지역에서는 수요가 있더라도 보육시설 이용이 매우 어려운 일이 됨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이미 국공립보육시설이 농어촌 지역 많은 곳에 설치되어 있고 앞으로의 설치 계획도 수립되어 있지만 농어촌의 지형적 특성상 보육서비스에 대한 소외지역은 여전히 그대로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서문희 등(2006)은 읍이나 면 소재지에 위치한 보육시설이 차량운행 비용과 시간의 문제로 운행지역을 제한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로 인해 산간지역은 보육수요가 충족되지 못한다는 결과를 보여준다. 거리가 멀어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이 있다는 응답이 23.9%로 조사되었고 농어촌의 경우 차량이 여러 개의 넓은 면지역(최대 5개 면)을 한꺼번에 운행하기 때문에 영유아가 최대 편도 90분까지 차량 이동을 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농어촌지역 차량운행 1일 평균 거리는 109.8km, 읍지역은 98.3km, 면지역은 120.1km나 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렇게 산간, 도서, 벽지 지역에서의 보육서비스에 대한 낮은 접근성을 제고할 필요성은 특히 농어촌 다문화 가정의 증가와 저소득층 조손가정 수의 확대라는 관점에서도 강조되어야 한다. 농어촌, 특히 산간지방의 경우 다문화가정의 비율이 급속히 높아지고 있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가정해체 및 조손가정이 늘어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이들 가정 출신 영유아에 대한 보육, 교육적 지원은 절실히 요구되는 바이며(김은설 외, 2007), 이는 범국가적 인적자원의 개발이라는 차원에서도 또한 중요한 사안으로 다루어져야 한다. 다문화가정 영유아의 경우 특히 정상적 언어발달과 양육환경 지원을 위해 보육시설 이용을 장려할 필요가 있고 조손가정 자녀도 문화적, 교육적 경험에서 지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질적 수준이 보장된 보육시설에 다니도록 유도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가정은 대부분 경제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많아 부모, 조부모 등이 모두 일을 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지리적으로 기존 보육시설의 이용이 어려운 지역에 있다 하더라도 우선적으로 보육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강구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논의한 것과 같이 산간, 도서, 벽지를 포함하는 농어촌의 특수한 보육수요를 충족시키고자하는 필요성에서 보건복지부는 소규모 보육시설을 시범적으로 설치하고 운영하고 있는 바이다. 본 연구는 소규모 보육시설 시범사업의 성공적 수

행을 위해 구체적 운영 지침 및 모델을 제시하고 동시에 시범사업의 단기적 효과를 검토함으로써 사업 추진 원활화와 추후 개선 방향을 함께 제안하고자 한다.

2. 연구 내용

본 연구를 통해 중점적으로 진행하고자 하는 연구의 내용은 다음의 네 가지로 정리될 수 있다.

가. 농어촌 지역 소규모 보육시설 모델 개발 및 운영방안 제시

농어촌 지역에 적정한 소규모 보육시설의 모델을 개발하고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제시하기 위해서 지역 특성을 고려한 소규모 보육시설 모델을 개발하고 이에 대한 시설 설치 수요 조사 및 분석을 실시하고자 한다. 운영 모델 개발에는 소규모 보육시설 설립과 운영,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마련이 포함된다.

나. 농어촌 및 도서・벽지형 대안적 보육서비스 모델 개발

소규모 보육시설조차 설치하기 어려운 농어촌, 특히 도서・벽지 지역에 적정한 형태의 영유아 보육서비스 제공 모델을 개발하며 이에 대한 수요 조사 및 분석도 함께 실시하고자 한다.

다. 농어촌 소규모 보육시설 및 대안적 보육서비스 시범사업의 평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농어촌 소규모 보육시설 및 도서・벽지형 보육서비스 시범사업의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부모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 분석하고자 하며, 체계적인 평가틀을 이용하여 시범사업 각각에 대해 진행・관리・운영에 대한 평가를 최종적으로 실시하고자 한다.

라. 소규모 보육시설 및 도서·벽지형 보육서비스 전망 및 정책제언

연구결과에 대한 분석을 통해 시범사업 전망을 전망하고 사후 관리 방안 및 농어촌 지역 최적의 소규모 시설 운영 유형을 정책제언의 측면에서 제시하고자 한다.

3. 연구 방법

가. 문헌자료의 수집 및 검토

기존의 연구와 정책자료, 국외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검토하여 연구의 기초로 삼고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연구에서 검토한 자료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 국공립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관련 법, 제도
- 농어촌 지역 육아지원 관련 제도 및 선행연구
- 국내외 농어촌, 도서, 벽지 지역 보육시설 설치·운영 사례
- 국내외 다문화 가정, 조손가정 등 보육지원 서비스 사례
- 농어촌 지역 보육시설 현황자료
- 지역 특성에 관한 관련 자료

나. 설문조사

설문조사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될 수 있는데, 사업에 대한 잠재 수요조사와 시범사업에 참여한 지역민을 대상으로 한 만족도 조사이다. 수요조사는 다시 1차와 2차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2차는 1차 조사에 대한 보완차원으로 이루어진 것이며 대상지역과 대상자에서 차이가 있다.

1) 수요조사

가) 제1차 수요 조사

- 목적: 1) 소규모 보육시설 설치 군단위 수요 파악
  2) 농어촌 및 도서·벽지 보육서비스 수요 및 실시 가능성 파악
  3) 다문화 가정, 조손 가정 현황 및 지원 실태 파악
- 대상: 전국 87개 군청 보육 담당자 (61% 회수율: 총 52명 참여)
- 조사내용: <표 1-3-1> 및 <부록 1> 참조
- 조사시기: 2009년 6월 ~ 7월
- 조사방법: 우편, 이메일, 팩스 이용 조사

〈표 Ⅰ-3-1〉 군지역 공무원 대상 보육서비스 수요조사의 내용

구분		설문내용
일반 사항		지역, 직위, 경력, 연락처
보육 현황		읍·명 단위 보육시설 이용 현황(미취학 아동수, 보육시설 수, 현원, 정원) 특별 수요가정 정보(다문화, 조손, 한부모), 군 지원사업 유무, 사업내용 기관 미이용 아동 여부, 미이용 아동 수 및 지역특성, 군 지원사업 유무, 사업내용
보육 서비스 사업 수요	소규모 보육시설	설치 필요지역 유무, 설치의향, 설치시 예상 어려움
	농번기 임시 보육방	설치 필요지역 유무, 설치의향, 설치운영 조건의 해당지역 상황, 보육방 운영방법안 선호도, 적정 이용료, 건의사항 및 의견
	준공영 보육가정	설치 필요지역 유무, 설치의향, 설치운영 조건의 해당지역 상황 적정 이용료, 건의사항 및 의견
	장난감 버스	설치 필요지역 유무, 설치의향, 설치운영 조건의 해당지역 상황 적정 이용료, 버스 방문횟수,건의사항 및 의견
	공동 놀이그룹	설치 필요지역 유무, 설치의향, 설치운영 조건의 해당지역 상황 보육 전문 요원 방문횟수, 건의사항 및 의견

나) 제2차 수요조사

- 목적: 1) 1차 조사에서 누락된 군 지역 대상 농어촌 보육서비스 수요조사
  2) 주민 대상 직접 수요 조사
  3) 면과 리 대상 수요 조사
- 대상: 전국 10개군 54개 면(面) 주민 총 352명(340여개 行政里 포함)[1)]

1) 기존연구(신나리 외, 2009; 서문희 외, 2008)에 의거하여 확보한 보육시설 미설치 영유아인구 60명 이하인 221개 면지역 중 4개 이상 면이 속하는 군을 확인하고 시·도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최종 10개 군을 선정하였으며, 해당 면 중 영유아 인구가 많은 6-8개 행정리를 선정하여 방문조사 하였다.

〈표 Ⅰ-3-2〉 보육서비스 수요조사 대상지역

해당 도	해당 군 및 읍·면
충북	보은군(내북면, 산외면, 속리산면, 장안면, 탄부면, 회남면, 회인면),
충남	서천군(기산면, 마산면, 문산면)
전북	임실군(강진면, 덕치면, 삼계면, 성수면, 신덕면, 신평면, 지사면, 청웅면)
전남	곡성군(고달면, 목사동면, 오산면, 죽곡면) 보성군(겸백면, 노동면, 문덕면, 미력면, 웅치면)
경북	김천시(감천면, 대덕면, 부항면, 증산면) 상주시(내서면, 외남면, 은척면, 중동면, 화남면, 화북면) 영덕군(남정면, 달산면, 지품면, 창수면)
경남	창녕군(계성면, 길곡면, 성산면, 유어면, 이방면, 장마면) 합천군(대양면, 덕곡면, 묘산면, 봉산면, 쌍백면, 쌍책면, 청덕면)
계	총 10개 군 54개 면

- 조사내용: <표 1-3-3> 및 <부록 2> 참조
- 조사시기: 2009년 10월 ~ 11월
- 조사방법: 조사원의 대상 가구 방문 면접 조사
- 조사절차: ① 조사대상 면(面) 선정 → ② 면사무소 협조를 통한 영유아 가구 정보 획득 → ③ 대상 리(里) 선정 → ④ 가구 방문

〈표 Ⅰ-3-3〉 농어촌 마을주민 대상 보육서비스 수요조사의 내용

구분		설문내용
일반 사항		성명, 연락처, 성별, 주소 및 연락처, 지역특성, 영유아 관계
가구 및 보육현황	가구 특성	가구주 직업, 미취학아동 현황(연령, 성별, 기관이용 현황), 거주기간
	마을 특성	전체 가구수, 미취학 아동 혹은 젊은 부부 가구수, 미취학아동 현황 육아지원기관 이용 아동 현황, 면사무소까지 거리, 버스 배차간격 거리가 멀어 기관 미이용 아동 여부 및 현황
	보육 현황	보육시설 이동시간, 보육시설 미이용 이유
보육 서비스 사업 수요	소규모 보육시설	설치 필요여부, 이용여부, 이용 예상 아동수
	농번기 임시 보육방	설치 필요여부, 이용여부, 이용 예상 아동수
	준공영 보육가정	설치 필요여부, 이용여부, 보육모 수급 가능 여부, 이용 예상 아동수
	장난감버스	서비스 필요여부, 이용여부, 이용 예상 가구수
	공동놀이그룹	운영가능 부모수요, 이용 예상 가구수

2) 사업 대상 지역 이용자 만족도 조사

- 목적: 1) 소규모 보육시설 시범사업의 평가
  2) 향후 사업 추진 방향 설정과 개선점 파악
- 대상: 1) 소규모 보육시설이 운영되고 있는 지역 이용 부모 전수(71명)
  2) 장난감 버스 운행 지역 주민 60명
- 내용: <표 1-3-4> 및 <표 1-3-5> <부록 3> 참조
- 조사시기: 2009년 12월 ~ 2010년 4월
- 조사방법: 이용 아동편에 가정으로 설문지 송달 및 수신

〈표 Ⅰ-3-4〉 소규모 보육시설 이용자 만족도 조사내용

구분	설문내용
일반 사항	연락처, 아동과의 관계
아동특성	생년월일, 성별, 출생순위, 주양육자, 기관이용 경험, 기관 미이용 이유
부모 가정 특성	부모연령, 국적, 학력, 직업, 가구구성, 월소득
소규모 이용 현황	선택이유, 이용시간, 만족도, 자녀변화, 향후 이용계획, 발전위해 필요사항 다른 형제 보낼 계획
건의사항 및 개선점	

〈표 Ⅰ-3-5〉 장난감 버스 이용자 만족도 조사 내용

구분	설문내용
아동특성	생년월일, 성별, 출생순위, 주양육자, 이용기관, 미이용 이유, 향후 기관 이용계획
가구특성	부모연령, 국적, 학력, 직업, 가구구성, 월소득
버스 만족도	장난감 종류, 장남감 질, 도서종류, 도서질, 방문주기, 대여일수, 장난감 활용방법 그룹활동시간, 그룹활동의 질, 회원가입 절차
양육환경	연령에 맞는 도서구비, 연령에 맞는 놀이감 구비, 다양한 발달경험 여부
서비스 효과	놀이관련 양육지식 향상, 놀이감 중요성 인식, 놀이방법 개선

다. 면접 및 관찰 조사

현재 설치, 운영되고 있는 소규모 보육시설과 기타 보육서비스 등 시범 지역을 대상으로 사전 수요 조사 및 사후 사업평가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방문하여 관련자를 면접하고 해당 지역을 관찰, 조사하였다. 대상자는 다음 <표 Ⅰ-3-6>과 같다.

〈표 Ⅰ-3-6〉 면접 지역 및 대상자

지역	면접대상자	방문일시	목적
충청남도 금산군 남일면	부모, 시설장, 교사, 담당 공무원	2009. 6 2009. 9 2009. 12	사전 수요조사, 운영계획, 만족도 조사 및 평가
경상북도 의성군 춘산면	부모, 시설장, 교사, 담당 공무원	2009. 12	운영계획, 이용 및 근무 만족도 조사 및 평가
전라북도 전주시 (보육정보센터)	보육정보센터장, 교사 담당공무원	2009. 10 2009. 12	운영현황 및 계획, 근무 만족도 조사 및 평가
전라북도 장수군	부모	2009. 12	운영현황, 이용만족도 조사 및 평가
전라남도 신안군 흑산면	부모, 담당 공무원	2009. 5	사전 수요조사
경상남도 함양군 서상면	담당 공무원, 시설장	2009. 8 2010. 3	사전 수요조사, 운영계획, 만족도 조사 및 평가
인천광역시 강화군 삼산면	담당공무원, 시설장, 부모	2010. 4	운영현황, 이용만족도 조사 및 평가
강원도 화천군 상서면	담당공무원, 시설장, 부모	2010. 4	운영현황, 이용만족도 조사 및 평가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담당공무원, 시설장, 교사	2010. 4	운영현황, 이용만족도 조사 및 평가

라. 자문회의 개최

교수 및 연구원을 대상으로 한 전문가 회의와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정책자문회의 등 2차례에 걸쳐 자문회의를 개최하였다.

1) 전문가 회의

학계와 연구계에서 농어촌 보육, 다문화 지원 등에 대한 연구 경력이 있는 4인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연구진행 방향, 농어촌 보육서비스 운영 지침의 개발, 문제점 등에 대한 회의를 진행하고 연구문제를 논의하였다.

〈표 Ⅰ-3-7〉 전문가 자문회의 참석자 및 논의내용

일시	자문자	논의 내용
2009. 4.	서문희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 문무경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 지성애 중앙대학교 교수 김온기 보육평가인증사무국 국장	- 소규모 보육시설 탄력적 운영방법 1) 농어촌 교사 대 아동 비율 조정 2) 보조교사의 활용 3) 인건비의 지원 - 농어촌 가정양육아동 보육서비스

2)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회의

수요파악을 위한 제1차 설문조사에서, 소규모 보육시설을 비롯한 기타 농어촌 및 도서·벽지 보육서비스의 필요성과 수용 가능성에서 긍정적으로 응답하였던 지자체(군청) 공무원을 대상으로, 본 연구에서 개발된 각 사업의 구체적 운영안내(지침)에 관한 실무자로서의 의견을 듣기 위한 자문회의를 개최하였으며, 실제 운영 할 경우의 문제점과 개선점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표 Ⅰ-3-8〉 실무자 자문회의 참석자 및 논의내용

일시	자문자	논의 내용
2009. 11.	전라남도청, 경북의성군청, 전남장흥군청, 경상북도성, 전북증평군청, 충남금산군청, 전남신안군청, 전북무주군청 보육담당자	- 소규모 보육시설 운영 개선 방안 - 이동식 놀이버스 사업 운영 확대 - 준공영 보육가정 사업의 개선 방향 - 인건비 지원 강화, 건물의 복합적 활용 방안 등

마. 워크숍 개최

시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개최하여 개선점과 현실적 문제 등을 함께 논의하였다. 또한 연구의 진행과 내용에 대한 검토를 받기 위해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원들을 대상으로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토론하는 워크숍을 개최하여 자문을 받음으로써 연구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하였다.

〈표 Ⅰ-3-9〉 워크숍 참석자 및 논의내용

일시	참석자	논의 내용
2009. 6	소규모 보육시설 시범사업 참여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5인 (금산군, 강화군, 함양군, 울진군, 화천군)	- 소규모 보육시설 운영 개선 방안 - 이동식 놀이버스 사업 운영 확대 - 준공영 보육가정 사업의 개선 방향 - 인건비 지원 강화, 건물의 복합적 활용 방안 등
2009. 9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 등 15명	- 연구 진행 상황 검토 - 보육서비스 사업 명칭 논의 - 사업 지침 항목에 대한 자문 등

4. 연구추진과정

연구의 전체적인 주요 추진과정은 다음 [그림 Ⅰ-4-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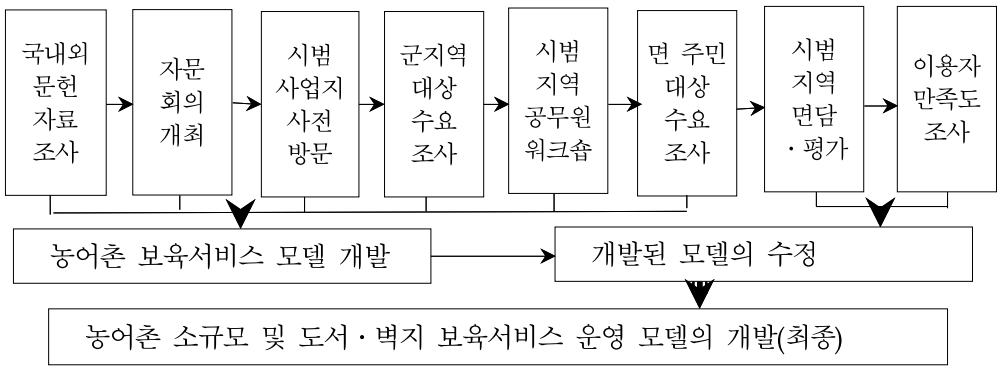

[그림 Ⅰ-4-1] 연구의 추진과정

5. 선행연구: 국내외 연구 동향

국내에서는 농어촌 지역 보육서비스 개선을 위한 연구가 수적으로 많지는 않지만 최근 꾸준히 연구보고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다문화 가정, 조손 가정 등 변화하는 농어촌의 현실을 수용하기 위한 노력들이 차츰 많아지고 있다. 국외의 경우, 도시와 다른 농어촌의 특성을 고려하여 육아지원정책을 수행하려는 시도들이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본 연구가 초점을 맞추고 있는 산간나 도서, 벽지 지역에 특히 관심을

두고 보육에서 가장 소외되고 있는 수요층에 대한 지원 연구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본 절에서는 앞으로의 연구에서 시사점을 얻고자 하는 취지에서, 지금까지 연구된 농어촌 보육관련 정책연구들 중 최근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들을 선택하여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간략히 검토해 보고자 한다.

농림부 의뢰로 수행된 서문희 등(2006)의 연구는, 농어촌 지역내 보육서비스 확충을 위한 방안으로서 소규모 국공립 보육시설을 포함한 복합센터의 설치를 제안하였다. 실태 조사를 통해 아동의 보육시설까지 이동 시간이 길고, 교사 수급의 어려움이 심각하며, 조손가정과 국제결혼 가정과 같이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가정의 아동이 많음을 문제점으로 지적하였다. 농어촌 지역 보육시설에 대한 접근성 제고, 현실을 반영한 보육료 지원 정책 보완,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교사 확보·물리적 환경개선에 대한 고려, 농어촌의 특수성을 반영한 차별적이고 탄력적인 적용 검토를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보육시설 미설치 지역을 검토하여 83개 군 시군구 140개 읍면에 보육시설, 복합 센터 설치 등의 보육서비스 공급을 우선 검토할 것을 제안하였다.

김은설 등(2007)의 연구는, 아동이 감소하고 경제수준이 낮은 농어촌의 현실을 감안하여 기존 시설을 활용한 효율적 접근성 제고방안을 제시하였다. 국공립 병설유치원을 권역화하여 종일반 운영, 통학버스의 공동 운행, 방학 중 공동 운영할 것을 제안하고, 초등학교 및 공공시설 내 국공립 영아보육시설, 일시보육시설을 신설하여 농어촌 수요에 적절히 대처할 것을 주장하였다. 또한 다문화가정과 조손가정을 위한 가정도우미 파견과 경제적 지원 방안을 제시하였고, 특히 농어촌 지역을 유형에 따라 구별하여 적정 육아지원 방안과 우선 추진 사안을 제시한 점은 특징적이라 할 수 있다.

서문희 등(2004)은 농어촌의 유아교육 및 보육 기관 인프라 특성과 농어촌 아동의 공식, 비공식 양육지원서비스 이용 실태와 요구도를 파악하여 농어촌 지역 특성에 적절한 모형을 제시하고, 농어촌 보육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구체적 시행 방안을 제시한바 있다. 기관 접근성, 비용 지원, 서비스의 질적 수준 제고 등 다양한 측면의 과제를 다루었으며, 특히 지역사회에서 아동보육, 교육, 여성농업인 지원, 보건소 등 지역사회 기관 협의체를 구성하여 상호협조 체계를 구축하여 중복 낭비 요인을 제거하고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접근성이 높은 병설유치원이 보육정보센터 등과 연계하면 활용도를 높일 수 있고, 여성농업인지원센터는 소규모 가정보육과의 연계되면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김경희(2000)의 농림부 지원 농어촌지역의 영유아 보육정책 개발 연구에서는, 농어촌보육 정책의 문제점을 보육시설, 양육 책임자인 부모지원, 그리고 보육 프로그램으로 나누어 고찰하고 정책적 제안을 제시하였다. 보육시설과 관련된 정책 제안은 영아보육 활성화 정책, 보육기관에 대한 재정지원 정책, 보육시설의 지리적 접근성 제고, 사립형 대안 보육기관 설립 정책을 제시하였으며, 부모지원에 관한 정책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제 실시에 따른 소득지원, 보육과정에 대한 부모 참여 정책, 보육비 지원 정책을 제시하였다. 보육프로그램과 관련된 정책으로는 보육형태의 다양화 정책, 농촌의 상황에 맞는 탄력적 보육 실시, 자유선택 활동 프로그램과 통학 교육프로그램 개발, 농촌형 혼합연령 프로그램 개발 및 실시, 농촌의 생태학적 환경을 고려한 보육프로그램 개발과 시범시설 운영을 제안하였다.

지성애 등(2003)의 연구에서는 보육시설 및 부모조사를 통하여 시설관리, 인사관리, 교사 전문성, 부모교육, 보육프로그램 및 부모 만족도를 파악하고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활성화 방안으로는 설립된 보육시설의 이용률 제고, 재정자립도를 고려한 지원, 농업여성인에 대한 직업인으로서의 배려, 통원거리를 고려한 행정, 교사 처우 개선 및 전문성 강화 노력, 다양하고 독특한 프로그램 개발, 교육활동 범위와 근거 명확화, 특별프로그램 실시, 환경 및 교재교구의 개선으로 역동적 환경 창출, 건강·영양 관리 개선, 지역사회 연계 및 부모교육 강화 등이 있다.

외국의 경우 농어촌의 지리적, 경제적 특성을 고려하여 적정한 보육서비스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미국은 농어촌특별대출제도를 통해 주민협동자체 보육시설설립을 지원하고 가정양육자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공립학교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확대하고 있다. 캐나다의 경우도 농어촌에 대해 학교 및 공공건물을 이용한 보육시설 확충정책을 펴고 있으며, 보육시설간 연합을 도모하고 거점중심으로 운영하는 통합허브(hub)모델을 검토할 뿐 아니라 통학버스운영자금지원, 시설운영재정보조를 하고 있다. 뉴질랜드는 농촌교육활동프로그램(REAP)을 통해 놀이집단을 지원하고 가정방문부모교육을 실시하며 육아지원인력을 지원하고 있으며 호주는 지역사회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공인탁아모를 이용한 가정보육지원, 농어촌 거점보육시설 설립·운영 지원을 하고 있다. 한편 영국은 학교 및 공공건물을 이용한 보육시설 설립, 농어촌 맞춤 시간연장 육아지원서비스 확충, 지역 육아정보센터의 활용성 증대에 초점은 맞추고 있다. 외국의 농어촌, 특히 산간, 벽지, 도서 지방에 중점적으로 지원되고 있는 보육서비스에 대해서는 본 보고서의 다음 장에서 보다 자세히 설명하고자 한다.

Ⅱ. 농어촌 지역의 보육서비스 현황

본 장에서는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농어촌 지역의 보육서비스 현황과 지원정책을 중심으로 실태를 살펴보고자 하며, 이를 통해 소규모 보육시설 및 국공립보육시설의 설립과 지원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지역을 찾아볼 것이다. 뿐만 아니라 외국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다양한 농어촌 및 산간이나 도서지역에 대한 특별한 보육서비스 제도의 사례를 찾아보고 이를 참조하여 우리나라 농어촌지역에 가정 적절한 보육 및 양육지원 방안을 구성하는데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1. 농어촌 보육시설 현황

전국 시·도 단위 보육 공급률과 보육시설 이용률, 보육시설 미설치 지역의 읍면동 수를 살펴보고,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발표된 보육통계(2008.12.31)에 나타난 농어촌 지역 보육시설 현황과 보육시설 및 아동정원, 연령별 아동현원, 다문화가정 아동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가. 농촌지역 보육시설 및 아동 수 현황

2008년 12월 현재 전국 보육시설은 33,499개소로 그 중 농촌지역(읍・면)에 위치한 시설은 6,504개소로 약 19.4% 정도이다. 농어촌 지역 국공립 보육시설은 426개소로 전체 국공립보육시설(1826개소) 대비 23.3% 정도이다. 아동정원은 전국 아동정원 1,429,105명 대비 농어촌 지역은 346,410명으로 약 24.2%를 차지하고 있다(표 Ⅱ-1-1 참조).

농어촌 보육시설의 유형별 시설점유 비중을 전국의 통계와 비교해 보면(표 Ⅱ-1-2 참조), 국공립과 법인을 합친 비율에서 전국 비율은 9.80%인데 비해 농어촌은 18.1%를 차지하여 농어촌 지역의 국가 지원 시설 비중이 2배 가까이 큼을 알 수 있다. 또한 가정보육시설의 수를 보면 전국통계 비중이 45.35%로 집계되었으나 농어촌의 경우는 34.5%에 지나지 않아 농어촌 지역에서 가정보육시설 의존율이 낮아 소규모 근거리 보육시설에 대한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짐을 추측할 수 있다.

〈표 Ⅱ-1-1〉 농촌지역 보육시설 및 아동정원 현황

단위: 개소, 명

구 분	계		설립주체별													
			국·공립 보육시설		법인 보육시설		민간보육시설				부모협동 보육시설		가정 보육시설		직장 보육시설	
							법인외		민간개인							
	시설	아동정원														
부산	69	4,615	8	450	12	1,428	-	-	26	2,049	-	-	20	383	3	305
대구	113	6,116	4	306	13	1,340	-	-	64	3,830	1	19	30	551	1	70
인천	24	1,353	7	540	-	-	2	120	11	613	-	-	4	80	-	-
울산	128	6,642	7	519	7	583	4	309	71	4,487	-	-	38	687	1	57
경기	1,974	87,956	92	6,022	45	4,187	58	4,067	888	57,243	2	59	878	15,626	11	752
강원	320	20,097	48	3,351	76	6,531	36	2,331	110	6,908	-	-	47	871	3	105
충북	287	19,624	23	1,841	69	7,188	24	1,860	104	7,561	-	-	66	1,154	1	20
충남	764	41,972	40	2,842	116	11,275	52	3,648	293	19,537	-	-	254	4,081	9	589
전북	317	21,621	21	1,205	94	7,749	44	3,138	115	8,796	-	-	42	701	1	32
전남	497	32,912	38	2,408	123	12,755	48	3,716	154	11,556	-	-	129	2,162	5	315
경북	727	38,725	81	4,604	51	5,611	26	1,621	312	22,627	-	-	253	4,039	4	223
경남	914	41,824	43	3,141	70	6,282	32	2,223	351	22,812	-	-	417	7,327	1	39
제주	370	22,953	14	923	75	8,009	36	2,947	175	9,724	-	-	68	1,213	2	137
계	6,504	346,410	426	28,152	751	72,938	362	25,980	2,674	177,743	3	78	2,246	38,875	42	2,644

자료: 보건복지가족부(2009). 보육통계(2008.12.31기준)

〈표 Ⅱ-1-2〉 전국 대비 농어촌의 보육시설 유형별 점유율

단위: 개소, %

구 분		계	설립주체별						
			국·공립 보육시설	법인 보육시설	민간보육시설		부모협동 보육시설	가정 보육시설	직장 보육시설
					법인외	민간개인			
농어촌	수	6,504	426	751	362	2,674	3	2,246	42
	점유율	100.00	6.55	11.55	5.57	41.11	0.04	34.53	0.65
전국	수	33,499	1,826	1,458	969	13,306	65	15,525	350
	점유율	100.00	5.45	4.35	2.89	49.57	0.32	46.34	1.04

자료: 보건복지가족부(2009). 보육통계(2008.12.31기준)

농어촌 지역 연령별 아동현원을 살펴보면, 만2세, 3세가 가장 많고, 만 6세가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다문화가정 아동은 농촌지역 전체 아동(346,410명) 중 8,075명으로 전체의 2.3% 정도이다.

〈표 II-1-3〉 연령별 아동현원 및 다문화가정 아동

단위:명

구 분		설립주체별							
		총계	국·공립 보육시설	법인 보육시설	민간보육시설		부모협동 보육시설	가정 보육시설	직장 보육시설
					법인외	민간개인			
연령	소계	264,423	22,571	56,137	20,069	133,177	58	30,671	1,740
	만0세	17,206	363	1,422	340	4,740	-	10,300	41
	만1세	32,626	1,898	5,529	1,704	12,797	1	10,543	154
	만2세	53,947	4,573	11,117	3,797	26,447	6	7,633	374
	만3세	55,477	5,553	12,688	4,718	30,675	13	1,338	492
	만4세	49,334	5,199	11,713	4,652	26,967	14	419	370
	만5세	46,159	4,641	11,779	4,382	24,794	15	271	277
	만6세	3,961	228	785	252	2,635	4	39	18
	만7세이상	5,713	116	1,104	224	4,122	5	128	14
특수수요	다문화가정 아동	8,075	905	2,161	844	3,370	-	764	31

주: 나이 기준은 2008년 3월 1일 기준, 단 나이는 전부 만 나이로 표기
자료: 보건복지부(2009). 보육통계(2008.12.31기준)

나. 보육공급률 및 보육시설 미설치 지역

보육공급률이란 지역내 전체 영유아 인구수 대비 보육시설 정원을 비교한 비율이며 전체 영유아수 중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현원의 비율은 보육이용율이라고 할 수 있다. 전국적으로 보육공급률은 49.4%로 조사되고 있으며, 보육시설이용률은 38.8%이다. 아래의 표 <II-1-4>을 보면 광역시 등 대도시 지역보다는 도 지역에서 보육공급율과 이용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II-1-4〉 시·도 단위 보육시설 공급률 및 이용율

단위: 명, %

	영유아인구수(A)	보육정원(B)	보육현원(C)	공급률(B/A)	이용률(C/A)
전체	2,810,293	1,387,651	1,091,287	49.4	38.8
서울	530,922	225,001	186,691	42.4	35.2
부산	161,508	77,367	60,269	47.9	37.3
대구	130,826	68,584	53,463	52.4	40.9
인천	154,358	65,437	53,621	42.4	34.7
광주	88,509	55,777	41,890	63.0	47.3
대전	90,938	42,671	33,862	46.9	37.2
울산	66,862	27,728	21,715	41.5	32.5

	영유아인구수(A)	보육정원(B)	보육현원(C)	공급률(B/A)	이용률(C/A)
경기	734,107	328,517	257,166	44.8	35.0
강원	80,725	45,348	35,744	56.2	44.3
충북	86,100	52,588	40,060	61.1	46.5
충남	116,468	61,915	47,675	53.2	40.9
전북	101,755	71,677	53,680	70.4	52.8
전남	100,883	62,864	48,727	62.3	48.3
경북	140,643	79,172	59,968	56.3	42.6
경남	188,968	97,390	75,125	51.5	39.8
제주	36,721	25,615	21,631	69.8	58.9

자료: 서문희 외(2008). BTL방식의 보육시설 설치 방안 연구. 기획재정부·육아정책개발센터

〈표 II-1-5〉 국공립보육시설 미설치 지역 및 보육공급률별 읍면동 수

단위: 개

	영유아수 100명 미만 지역				
	국공립 미설치 지역수	설치지역 보육시설 공급률			계 (미설치 + 공급률 40%미만 지역)
		20% 이하	20~30%	30~40%	
서울	2	-	0	0	2
부산	3	-	0	0	3
대구	-	-	-	-	-
인천	10	-	0	1	11
광주	5	-	0	0	5
대전	2	-	0	0	2
울산	1	-	0	0	1
경기	15	-	1	0	16
강원	19	-	0	1	20
충북	34	-	2	0	36
충남	28	-	0	2	30
전북	56	-	2	0	58
전남	66	-	1	2	69
경북	91	-	2	5	98
경남	77	-	0	4	81
제주	-	-	-	-	-
계	409	-	8	15	432

주: 보건복지가족부 e-보육 자료와 행정자치부 주민등록인구 자료로 산출
자료: 서문희 외(2008). BTL방식의 보육시설 설치 방안 연구. 기획재정부·육아정책개발센터

그러나 <표 Ⅱ-1-5> 에서 보듯이, 아동수 100명 미만 지역(기초지자체 수준)의 국공립보육시설 미설치 지역 통계를 보면 전체의 409개로 그 중 경북(91개), 경남(77개)이 미설치 지역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보육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나 공급률이 40%미만인 지역은 전체 23개로, 이를 국공립 보육시설 미설치지역수와 통합하여 비교해보면, 경북(98개), 경남(81개), 전남(69개) 세 지역이 가장 큰 수로 나타나, 이들이 아동 수가 적은 지역에서 가장 보육시설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들 도 지역들이 농어촌 면적이 넓고 지역인구가 많은 것을 감안하면 우선적으로 보육시설 접근성을 높이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기존 연구(신나리 외, 2009)의 수집 자료를 이용하여 재분석해 본 결과, 영유아수가 매우 작은(60명 이하) 면 지역 중 보육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지역은 전국에서 221개로 나타나 이들 지역이 소규모 보육시설 설치를 우선적으로 고려해 볼만한 곳이라 할 수 있다(표 Ⅱ-1-6 참조). 그러나 지형상의 특성이나 지역민의 선호 등에 따라 실제적인 설치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음은 감안해야 한다.

〈표 Ⅱ-1-6〉 보육시설이 없는 영유아수 60명 이하 읍·면 지역

시도	수	지 역
인천	4	강화군(서도면, 양사면), 옹진군(덕적면, 자월면)
강원	12	춘천시(남면, 북산면), 강릉시(왕산면), 삼척시(가곡면, 노곡면, 신기면), 횡성군(갑천면), 영월군(북면, 상동읍, 수주면, 하동면), 정선군(동면)
경기	6	파주시(군내면, 진동면), 안성시(고삼면), 연천군(미산면, 장남면, 중면)
충북	21	충주시(살미면), 제천시(청풍면, 한수면), 보은군(내북면, 산외면, 속리산면, 장안면, 탄부면, 회남면, 회인면), 옥천군(안남면, 안내면, 청성면), 영동군(용화면), 괴산군(문광면, 소수면, 장연면), 음성군(원남면), 단양군(가곡면, 단성면, 적성면)
충남	11	보령시(미산면), 부여군(내산면, 양화면, 옥산면), 서천군(기산면, 마산면, 문산면), 청양군(운곡면), 홍성군(은하면), 예산군(대흥면), 태안군(이원면)
전북	22	익산시(웅포면), 정읍시(산내면, 영원면), 남원시(덕과면, 수지면), 김제시(광활면, 부량면), 완주군(경천면), **진안군(상전면, 용담면), 무주군(부남면),** 임실군(강진면, 덕치면, 삼계면, 성수면, 신덕면, 신평면, 지사면, 청웅면), 순창군(유등면, 적성면), 부안군(위도면)
전남	32	순천시(송광면), 담양군(남면), 곡성군(고달면, 목사동면, 오산면, 죽곡면), 구례군(문척면, 용방면), 고흥군(동일면, 영남면), 보성군(겸백면, 노동면, 문덕면, 미력면, 웅치면), 화순군(도암면, 동복면, 이서면, 청풍면), 장흥군(부산면, 유치면, 장동면), 강진군(대구면, 옴천면, 작천면), 영광군(낙월면, 대마면, 불갑면), 장성군(북일면), 완도군(금당면, 생일면), 신안군(팔금면)
경북	60	포항시(기북면, 죽장면), 김천시(감천면, 대덕면, 부항면, 증산면),

		안동시(남후면, **도산면**), 구미시(옥성면), 영주시(문수면, 평은면), 영천시(화북면), 상주시(내서면, 외남면, 은척면, 중동면, 화남면, 화북면), 문경시(동로면, 영순면), 군위군(고로면, 부계면, 산성면, 소보면, 우보면), 의성군(가음면, 구천면, 단밀면, 단북면, 단촌면, 비안면, 사곡면, 신평면, 안사면, 안평면, 옥산면, **춘산면**), 청송군(부남면, 부동면), 영양군(일월면, 청기면), 영덕군(남정면, 달산면, 지품면, 창수면), 청도군(각북면, 운문면), 고령군(덕곡면, 우곡면), 성주군(금수면), 예천군(개포면, 보문면, 상리면, 지보면, 하리면), 봉화군(법전면, 상운면, 재산면), 울진군(**서면**), 울릉군(서면)
경남	53	진주시(대평면, 미천면, 사봉면), 밀양시(상동면, 청도면), 거제시(남부면), 의령군(가례면, 궁류면, 낙서면, 대의면, 봉수면, 유곡면, 정곡면, 지정면, 칠곡면), 함안군(여항면), 창녕군(계성면, 길곡면, 성산면, 유어면, 이방면, 장마면), 고성군(개천면, 구만면, 대가면, 마암면, 삼산면, 영현면, 하일면), 남해군(상주면), 하동군(북천면), 산청군(생비량면, 신등면, 오부면, 차황면), 함양군(백전면, 병곡면, **서상면,** 유림면, 지곡면, 휴천면), 거창군(가북면, 고제면, 남하면, 북상면, 신원면), 합천군(대양면, 덕곡면, 묘산면, 봉산면, 쌍백면, 쌍책면, 청덕면)
계	221	

주1) 도산면, 춘산면, 서면, 서상면: 소규모 보육시설 설치 시범사업 참여지역
진안군, 무주군: 놀이버스 시범사업 참여지역
주2) 원자료는 신나리, 이정원, 송신영, 이은경(2009)의 '취약지역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및 운영모델 정립 방안'에서 차용하였으며 재분석한 결과임.

2. 센터중심 보육

보육시설 이외에 농촌지역에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은 주로 농림부에 의해 처음 시작되어 지자체 사업으로 이전된 여성농업인센터와 경상북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농촌보육정보센터가 있다.

가. 여성농업인센터

1) 일반개요

여성농업인센터는 농업 농촌기본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여성발전기본법 제18조~25조, 여성농어업인육성법 제13조(여성농어업인관련시설의 설치·운영에 근거하여 안정적인 영농활동 지원 및 젊은 여성농업인의 농촌정착을 도모하기 위해 설

립되었다. 2001년 농림부에 의해 전국 4개 지역(영동, 서천, 안동, 진주)에서 시범운영을 시작하였으며, 2005년부터는 지방으로 이양되어 지자체별로 독립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2009년 현재 38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여성농업인의 고충상담, 영유아보육, 방과후 학습지도, 농한기 문화활동 및 교양강좌, 도농교류사업 등 지역실정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사업예산은 2006년도에 개소당 10,903만원이며, 분권교부세를 포함하여 지방비가 85%, 자비 15%이며, 2007년에는 110백만원씩 지원하고 있다. 여성농업인센터는 개인이 위탁받아 운영하는 경우가 82.4%로 대부분을 차지하며, 매년 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였으나, 정부사업이 지방으로 이전되면서 당초 계획대로 큰 확충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2)]

2) 보육관련 사업 현황

여성농업인센터 업무의 80%정도가 보육업무이며, 지원예산의 60%이상이 보육부분에 투자되고 있다. 하지만 센터 보육아동수는 저출산현상과 농어촌지역 젊은인구 감소로 인한 아동 수 급감으로 인해 평균 27명(2007년 기준)으로 매우 적은 편이다. 보육아동수 감소의 영향은 비단 여성농업인센터에만 국한되지 않고 현재 농어촌지역 국공립, 민간 보육시설에도 동일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여성농업인센터장이 보육교사를 겸직하고 있는 경우는 약 36%정도이며, 보육교사는 1-8명으로 각 지역내 센터마다 편차가 큰 편이다. 각 지역마다 센터내 보육교사 모집시 농촌기피현상으로 인해 대부분의 센터가 보육교사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재 1곳을 제외한 모든 지역 센터가 자체적으로 차량운행을 하고 있으며, 평균 1일 차량운행시간은 4시간 정도로 농촌의 지형적 특성과 다른 면에 있는 아동까지 수용해야 하는 상황으로 인해 차량운행시간이 일반지역에 비해 긴 편이다.

나. 농촌 보육·정보 센터

「농촌 보육·정보 센터」는 경상북도가 총 31억을 투입(도비 20억원, 시군구비 11억원)하여 2005년 3월 상주 농촌 보육·정보 센터를 시작으로 2009년 현재 12개소가 운영 중에 있다. 여성농업인센터를 모델로 하고 있으며, 주요 사업은 40인미만 국공립보육시설운영, 방과후교실등의 보육시설과 정보센터로 구성되어 있다.

---

2) 김은설·이정원·지성애·이세원(2007). 농어촌 지역 육아지원 방안 연구. 육아정책개발센터 p39

정보시설은 경상북도청 농업정책과에서 관리하며 매년 도비 27.3%, 시·군비 63.7% 정도로 1개소당 연 91백만원을 지원하고 있고, 보육시설은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며 국비로 운영되고 있다(김은설 외, 2007). 또한 부정기 사업으로 문화교육이나 전문성 교육, 도농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다. 센터의 자세한 사업현황은 다음 표와 같다. 직원은 초기에 평균 1명씩의 상담원, 지도교사, 보육교사, 운전원, 취사원으로 시작하였으나 현재는 평균 2-3명으로 증가하였다. 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은 평균 18.5명의 아동이, 공부방은 32.3명이 이용하고 있다.

〈표 Ⅱ-2-1〉 농촌 보육·정보 센터 사업현황

시군	직원수 (명)			이용아동수 (명)		주요 사업내용
	계	정보 센터	보육 시설	공부방	보육 시설	
안동시 (임하)	5	3	2	37	13	한방건강교실,민요교실, 여성농업인행복찾기
안동시 (예안)	5	3	2	35	10	노래교실,기공체조 및 요가, 무료 한방진료
영천시	6	3	3	30	17	한글교실,한자교실, 사물놀이교실
상주시	8	3	5	41	24	리더쉽교육, 문화체험교실, 청소년성장캠프, 한여름밤의 문화제
경산시	8	4	4	25	20	가요교실, 한글
의성군	7	3	4	40	30	건강교실, 농업연구모임, 여성농민상담학교, 동호회지원
청송군	6	3	3	45	20	취미교실, 리더쉽교육, 책사랑방운영, 문화유적답사, 농산물가공법배우기
영양군	6	3	3	17	8	어르신건강교실,여성농업인건강교실
고령군	8	3	5	21	26	청소년 경제교실, 노인행복학교, 한자급수자격증반
성주군	6	3	3	36	22	여성농민 교육, 문화활동, 지도력발굴육성, 복지활동, 농외소득증진사업
칠곡군	5	3	2	30	7	여성농업인사물놀이,초등학생방학특강
울진군	5	1	4	30	25	노래교실, 한글문예교실

자료: 경상북도 농촌정책과 내부자료(2009.3.13현재).

3. 농어촌 영유아 보육지원 제도

가. 보건복지부

2004년「영유아보육법」일부개정을 통해 보육시설 설립시 설치기준 및 종사자 배치기준 등에서 도시지역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범위를 도서벽지 지역뿐만 아니라 농어촌 지역까지 확대하였다.

1) 인건비, 차량운행비 지원

보건복지부는 지역규모에 상관없이 21인 이상 국공립·법인 보육시설에 원장 인건비의 80%를 지원하고 있다. 보육교사 인건비에 있어서는 도시지역과 농어촌지역 적용기준이 조금 차이를 보이고 있다. 도시지역의 경우 영아반이 2개 이상인 국공립·법인 보육시설은 교사인건비의 80%, 유아반은 30%를 지원하지만 농어촌지역, 폐광지역, 도서벽지는 1세이하 영아반 1개반만 있는 경우에도 교사인건비의 80%를 지원하고 있다. 보육교사 인건비 이외에 농어촌 지역에만 추가적으로 지원되는 부분은 국공립 보육시설 보육교사 1인, 취사부 1인에 한해 지원되는 인건비 100%와 농어촌지역 보육교사(특수교사, 치료사 포함)에게 월 11만원씩 지원되는 특별근무수당이다. 또한 차량운영비의 경우 농어촌지역 모든 보육시설에 개소당 월 20만원씩 지원하고 있다.

2) 교사 대 아동 비율의 특례 인정

영유아보육법 제 52조 및 시행규칙 제 40조를 근거로 시·군·구청장은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할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후 도서·벽지·농어촌지역 등에 있는 보육시설로서 종사자 배치기준 중 교사 1인이 보육할 수 있는 영유아 수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총정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교사 대 아동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이러한 특례로 인해 발생한 수입금은 관할 시 시·군·구청장 지도·감독 하에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위한 급여 등에 사용하여야 한다.

〈표 Ⅱ-3-1〉 농어촌지역 교사대 아동수 특례비율

구분	0세	1세	2세	3세	4세이상
법적기준	3명	5명	7명	15명	20명
특례인정범위	4명 이내	7명 이내	9명 이내	19명 이내	24명 이내

자료: 보건복지부(2009). 보육사업 안내

나. 농림부

농림부는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젊은 층의 농어촌 거주를 유도하고, 농촌지역 활력화를 위해 2004년부터 직불성 육아비용 지원을 추진해 오고 있다(김은설 외, 2007). 대표적인 직불성 육아비용 지원정책은 '농어업인 양육비 지원사업' 으로, 이 사업은 농어업인 생활에 부담이 되는 영유아 양육비 지원을 통해 농어업인의 소득 안정 및 생산성 제고에 기여하고 젊은층의 농어촌 거주 유도, 농어촌 지역사회 활력 유지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크게 네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첫째,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자 둘째, 농지소유면적 합계가 5ha 미만면적의 농어가중 만5세이하 및 취학을 유예농지만 6세아를 둔 부모, 셋째, 대상아동의 부모 등 양육부담자가 농어업외 전업적 직업 없이 농어업활동에 실제 종사자 넷째, 대상아동의 부모 등 양육부담자의 농어업외 소득이 연간 3,500만원 미만인 농어가 이다.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는 2006년 정부보육료 지원단가 50% 지원에서 현재 70% 수준으로 상향조정되어 지원되고 있으며, 국비 50%, 지방비 50% 비율로 이루어지고 있다(표 Ⅱ-3-2 참조).

〈표 Ⅱ-3-2〉 농림부 육아 지원금 월지급 한도액 및 단가

단위 : 천명, 백만원

구 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사업량(천명)	27	30	33	30	54	49
	사업비계	29,204	38,308	43,998	53,566	82,216	81,296
	국 비	14,602	19,154	21,999	26,783	41,108	40,648
	지방비	14,602	19,154	21,999	26,783	41,108	40,648

자료 1: 농림부(2009). 농어업인 영유아양육비 지원사업
2.: 김은설 외(2007). 농어촌 지역 육아지원 방안 연구. 육아정책개발센터

2006년부터 보육시설과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 가정육아비용을 지원해 주던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사업은 2008년 '농어업인 양육비 지원사업' 으로 통합되어 현재 시설미이용아동에게는 정부인건비 지원시설 이용시 지원되는 법정저소득지원 단가의 35% 기준으로 가정 육아비용을 지원하고 있다(표 Ⅱ-3-3 참조).

〈표 Ⅱ-3-3〉 농림부 육아 지원금 월지급 한도액 및 단가

단위 : 원

연령별	연령 기준	월지급 한도액(원)	집행가능 비용
0세	´08.1.1～	268,000	● 수업료 및 급식비 * 급식비는 보육료 기준에 포함된 범위(급식1회, 간식2회)만 인정 * 입소료는 지원대상이 아님
1세	´07.1.1～´07.12.31	236,000	
2세	´06.1.1～´06.12.31	195,000	
3세	´05.1.1～´05.12.31	134,000	
4세	´04.1.1～´04.12.31	120,000	
5세	´03.1.1～´03.12.31	172,000	
6세(취학유예)	´02.1.1～´02.12.31	172,000	

자료: 농림부(2009). 농어업인 영유아양육비 지원사업 지침

다. 지자체 특수 시책사업

각 지자체에서도 농어촌 지역이나 특별수요가정에 지원되는 육아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경상북도는 다문화가정 자녀가 다니는 보육시범시설에 기자재 구입비, 차량운영비를, 충청남도는 여성결혼이민자가정 영유아에게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경기도 성남시와 인천 광역시, 잔라북도에서는 농어촌시설 차량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경상북도 포항시, 제주특별시에서는 읍면지역 보육시설에 냉난방비를 지원하고 있다. 그 밖의 농어촌지역과 관련된 지원정책은 다음 <표 Ⅱ-3-4>와 같다.

〈표 Ⅱ-3-4〉 2008년도 지자체 특수 시책 사업

지역		사업명	지원기준 및 내역	예산
인천	전체	농어촌시설 차량 운영비 지원	○대상 : 농어촌지역 보육시설(강화,옹진) ○내역 : 시설당 월 300,000원	31,200
	옹진군	외로운 섬 거주 영유아 교재지원	○자도 및 어린이집 없는 본도에 거주하는 만2세~만5세 영유아에게 연령별 적정 교재를 선정하여 분기별 교재 지원	36,000
울산	울주군	읍면지역 만5세아동 보육료 지원	○대상 : 읍면지역 만5세 보육 아동 (정부 지원 제외자) ○내역 : 60,000원×320명×12월	230,400
경기도	성남시	농어촌 차량 운영비 지원	○대상 : 농촌지역에 소재한 국공립보육 시설에 차량 운영비 지원 ○내역 : 월 200천원 운영비 지원	2,400
충청북도	도전체	오지지역 운영 시설 차량비 지원	○대상 : 오지지역 3개 보육시설 ○내역 : 3,000,000원/1회	9,000
충청남도	도전체	여성결혼이민자 가정 영유아 무상 보육료 지원	○대 상 : 여성결혼이민자가정 영유아 ○내역 : 보육료 전액지원 - 시설 유형별 수납한도액 범위 내	2,496,000
전라북도	전체	민간시설 농어촌 차량운영비	○93개소× 1,800,000원	167,400
	진안군	도·농 보육아동 공동캠프	○3,000,000원 × 1회 = 3,000,000	3,000
경상북도	포항시	취약농어촌시립 보육시설 난방비지원	○대상 : 농어촌 시립보육시설(구룡포,양포,대보) ○내역 : 시설당 1,200,000원/년	3,600
제주	도전체	읍·면지역 보육시설 프로그램운영비	○대상 : 읍·면지역 보육시설 ○내역 : 개소당/년/1,000천원	77,600
		읍면 보육시설 냉난방비	○대상 : 읍·면지역 보육시설 ○내역 : 개소당/년/800천원(공립·법인) 민간시설 규모별 차등지원	54,200

자료: 보건복지가족부(2008). 보육관련 지자체 특수시책사업 현황(2008)

4. 외국의 농어촌·벽지·도서지역 보육서비스

본 절에서는 외국 선진국의 농어촌 지역, 산간, 도서, 벽지를 대상으로 하는 보육서비스 사례를 모아 정리하였다. 농어촌 지역이 국토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호주와 뉴질랜드, 캐나다를 중심으로 특색있는 농어촌 보육서비스 제도를 찾아볼 수 있는 바, 특히 호주의 이동 보육서비스, 뉴질랜드의 놀이집단(플래이그룹), 캐나다의 가족보육과 농번기 보육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농어촌 지역만을 위한 특수 서비스는 아니지만 프랑스의 가정보육모제도 또한 우리나라 농어촌 벽지의 보육에 대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으므로 함께 정리해 보고자 한다.

가. 호주 : 농촌 또는 원거리 지역사회밀착형 보육서비스

호주 정부의 보육 서비스는 인정보육(approved care)과 보모, 조부모 등 개인에 의해 돌보게 하는 등록보육(registered care) 두 가지를 지원하는 보육지원금(Child Care Benefit, CCB)제도가 일반적이지만 DEEWR(The Department of Education, Employment and Workplace Relations:교육, 고용과 노사관계부)이 재정지원을 하는 비주류 서비스(non-mainstream services)가 보육서비스의 틈새를 메우고 있다. 도시에 비해 낮은 보육 서비스 이용률을 보이는 농촌과 오지마을 및 원주민 지역을 대상으로 연방정부가 비용을 지원하고 주정부 및 지방정부가 관리하는 비주류 서비스는 이동 보육서비스와 지역 놀이그룹, 그리고 다기능 원주민 아동 서비스가 있다.

1) 이동 보육서비스(Mobile child care services)

가) 이동보육서비스 운영 현황

이동 보육서비스는 농촌이나 오지 및 원주민 지역에 대한 방문 서비스이다. 시장성이 부족한 농촌이나 오지 지역에서 비영리 조직들이 보육서비스를 운영하여 보육서비스를 원하는 아동이 서비스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조력하는 프로그램이다. 따라서, 농촌 보다 도시 비중이 큰 ACT나 NT와 같은 주에서는 이동 보육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 반면 퀸즈랜드는 1991년부터, 뉴싸우스웨일즈는 1996년, 빅토리아가 1998년부터 이동보육서비스를 시작하였다.

이동보육서비스는 아동들에게 다른 아동들과 사회적으로 관계를 맺는 기회를 제공하며 교육의 기회 또한 제공한다. 서비스 제공 형태는 일반적인 보육 서비스로 충

족되지 않는 가족과 지역사회를 지원하는 서비스로 서비스 이용 부모의 요청에 따라 주 단위 또는 일 단위나 시간 단위 등 유연하게 지원된다.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는 이동보육서비스는 도시로부터 원거리에 있는 작은 농촌 마을을 매주 방문하여 종일보육을 제공기도 하고, 방학 중에만 제한적인 보육을 실시하거나, 양털 깎기에 바쁜 철에만 농장에 한시적인 놀이반을 운영하기도 한다.

지방 정부마다 다양한 운영 규정이 있는 바, 퀸즈랜드주 롱리피 지역에서는 원거리 마을에 주 1회 오전 9시~오후 4시까지 이동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며, 빅토리아주 코래가미테 지역에서는 지역 내 9개 마을에 오전 10시~오후 3시까지 주 1회 방문한다. 서비스 대상 역시 빅토리아 주는 5개월 이상 6세 이하 아동을 주 대상으로 하는 반면 퀸즈랜드는 6주~12세까지 아동을 대상으로 한다. 이동 보육서비스 이용료는 종일 보육을 기준으로 회당 15호주 달러 내외이고, 한 가족에서 2명 이상이 이동 보육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가격을 낮춰주기도 한다.

나) 이동보육서비스 프로그램

이동 보육서비스가 지역 주민의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운영되고 있으나 공인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장비를 갖추고, 아동의 연령과 학습단계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일반적으로는 보육교사가 이동 보육서비스 차량으로 함께 이동하여 프로그램을 진행하지만 개별 마을에 거주하는 자격을 갖춘 보육교사가 있을 경우 이동 보육서비스 차량만 지원하기도 한다.

보육 프로그램은 주로 놀이를 통해서 상호작용을 배우는 놀이반이 일반적이나, 장난감과 비디오 도서관이나 부모자원도서관, 부모 양육 지원 사업 등 지역의 사정에 따라 여러 가지 사업 아이템들로 구성되어 있다.

〈표 II-4-1〉 호주의 이동보육서비스 프로그램

· 놀이반과 보육시설에서 운영하는 보육과정 · 아동과 부모교육을 위한 프로그램 · 발달지체를 보이는 아동에 대한 조기 개입 · 부모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는 이동 도서관 · 작은 학교 또는 운동 경기 등과 같은 특별한 문화 프로그램

자료: http://www.corangamite.vic.gov.au, www.facs.gov.au

2) 놀이 그룹(Playgroup Australia)

놀이 그룹은 60년대에서 70년대에 걸쳐 놀이가 아동 발달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에 주목한 주민들의 자발적인 활동으로 시작되었다. 그 이후 20여년 간 호주 전역에서 다양한 놀이 그룹이 만들어졌고, 이들은 정보 교류 등을 목적으로 1984년 캔베라에서 '호주 놀이그룹'이라는 연합회를 조직하였다.

놀이 그룹은 아동에게 안전하고 여러 사람이 만날 수 있는 지역의 공간들-지역 센터, 체육관, 여성 센터, 유치원, 교회 회관이나 이웃의 가정-을 활용하여 그룹 모임을 한다. 모임에는 아동과, 부모, 조부모, 보모 들도 함께 참여한다. 놀이 그룹의 프로그램은 일정하게 짜여진 것이 아니라 그룹에 함께 한 사람들이 놀 거리를 결정하는데 대게 노래 부르기, 창의적 활동, 자유로운 옥외 활동, 만들기 활동과 피크닉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 비용은 무료 이거나 약간의 실비를 서로 거두어서 활용한다.

이처럼 자발적인 지역 주민과 아동의 모임인 놀이 그룹의 장점은 자연스럽게 지역 주민들과 친숙해지고 아동들의 사회성 발달도 촉진된다는 것이다. 놀이 그룹의 장점이 알려지면서 호주 연방정부가 놀이 그룹 프로그램 중 하나인 '지지적 놀이 그룹(Supported Playgroups)'에 대해서 재정적 지원을 하기 시작하면서 2007-2009년 동안 호주 전역에 200개의 '지지적 놀이 그룹'이 만들어졌다. '지지적 놀이 그룹'은 다문화 가족, 원주민 가족, 정신적·신체적 장애가 있는 부모 또는 아동의 가족, 10대 부모 가족, 사회적으로 소외된 가족들이 지역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놀이 그룹을 운영한다는 특징이 있다. 다른 놀이 그룹과 다르게 지지적 놀이 그룹은 코디네이터가 있고 코디네이터가 운영하는 모임에 2-3개월 동안 꾸준하게 주 1회 2시간씩 참여하여 놀이 그룹에서 활동하는 법을 습득한 후, 개별 놀이 그룹들을 만드는 과정을 거친다. 코디네이터는 놀이 그룹을 오랜 기간 운영해 왔던 지역 사람으로 사회적으로 소외된 가족들이 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 방법, 부모역할과 관련된 정보 등을 제공하면서 소외된 가족의 부모와 아이들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3) 다기능 원주민 아동 서비스(Multifunctional Aboriginal Children's Services;MACS)

다기능 원주민 아동 서비스는 호주 원주민이 살고 있는 토레스 섬 아동들을 대상으로 운영된다. 토레스 섬 지역 원주민들은 독특한 자신들의 문화를 유지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원주민 아동과 일반 아동간의 사회적 삶의 격차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다.

원주민 아동에 대한 보육서비스는 원주민 아동이 일반 호주 아동과 동등한 삶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포괄적 서비스의 일부분이다. 그런 점에서 아동 사망률을 낮추고, 모든 미취학 아동이 보육과 교육 서비스를 받도록 하여 인지능력을 향상시킨다는 커다란 목표 아래 원주민 아동 서비스는 '다기능'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다. 즉, 만 5세 아동에게 종일 보육을 제공하고 위에서 설명된 놀이 그룹에 참여하게 하고 지역 센터를 중심으로 영양 프로그램이나 부모 양육지원 프로그램과 같은 다양한 형태의 지원 프로그램들을 동시에 운영하는 특징을 갖는다.

나. 뉴질랜드: 농어촌 놀이그룹(Playgroup)[3)]

뉴질랜드의 농어촌, 특히 이민자 집단, 태평양의 군도지역, 다문화사회에서 가장 활발하게 조직되어 운영되고 있는 보육서비스 제도로서 '놀이집단(playgroup)'을 들 수 있다. 놀이집단이란 '지역사회에 기반을 두고 조직된 비영리 영유아 센터로서, 아동과 가족을 위해 보육과 유아교육을 제공하고 놀이는 목적으로 일단의 부모와 아동이 정기적으로 만나는 모임'이다(New Zealand Education Gazette, 1991년 2월 15일).

1) 놀이집단의 운영 및 현황

뉴질랜드 정부는 기존 보육시설로부터의 거리가 너무 멀고 보육시설을 바로 신설하는 것이 어려운 농어촌 지역을 중심으로 주민자체적으로 소규모의 놀이집단을 조직하도록 하고 있다. 놀이집단에 참여하는 아동은 대부분 3세이하의 영아들과 그 부모이다. 이 때 참여하는 부모는 정규보육교사 자격을 갖출 필요가 없고, 놀이집단 설립을 위해 정부의 인가나 승인을 받을 필요도 없으며, 다만 일정한 규준을 만족시키는 경우에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정부지원금은 교재교구 및 놀이집단 운영을 위해 필요한 물품 조달에 쓰이는 비용으로, 아동 1인별 시간당 $1.10를 기준으로 지급되고 있으며 인건비나 차량운행비는 포함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15명 아동이 다니는 놀이집단이 주당 2일씩 1년 동안 진행된다면 한 해 동안 $2640가 지원되게

3) 이 글의 대부분은 Simpson, M.이 Early Childhood Matters Conference. Melbourne Oct. 2002에서 발표한 Right from the Start: Parent-led playgroups in New Zealand-then, now, and later의 내용을 정리한 것임.

되는 것이다. 연간 평균 놀이집단별 보조금은 $2500정도이다. 보조금 수령을 위해 놀이집단이 지켜야하는 규준은 다음 <표 Ⅱ-4-2>와 같다.

〈표 Ⅱ-4-2〉 뉴질랜드 놀이집단 정부지원금 수혜 기준(일부)

- 놀이집단이 만나는 한 회기(session)은 하루에 최대 3시간을 넘지 않는다.
- 각 회기당 놀이집단에 출석한 아이들의 부모 중 절반(1/2)이상이 그 회기가 끝날 때까지 아이들과 같은 장소에 있어야 한다.
- 부모들은 놀이집단에 다니는 모든 아동에 대해 책임을 져야한다.
- 놀이집단은 비공식적이고 비영리의 지역사회 기반 단체로서 운영되어야 한다.

출처: New Zealand Education Gazette, 1991

놀이집단은 국비뿐 아니라 지방비를 신청할 수도 있는데 이는 놀이집단 운영자(coordinator) 채용을 위한 비용으로 활용될 수 있다. 각 놀이집단은 국가의 보조금에 대한 결산회계를 연말에 제출해야 하고 이는 다음 해 정부 보조금 수령에 영향을 미친다.

놀이집단을 관할하는 기관인 '영유아기 발달청(Early Childhood Development a Government agency: ECD)'에 따르면 2002년 현재 뉴질랜드 전역에서 860개 놀이집단이 운영되고 있고 11,068명의 2세이하 영아가 등록되어 있다(ECD Statistics, 2000 현재 이 수치는 기관형식의 영유아 보육/교육 서비스 이용아의 11%에 해당하는 것으로, 대단히 큰 비중이라 볼 수 있다.

2) 놀이집단의 교육내용

ECD는 신규 놀이집단을 설립하고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워크숍을 개최하며 놀이집단 운영과 행정업무에 대해 지도하고 보조금지원까지 관할한다. 일반적으로 ECD가 일년에 한 번 놀이집단을 방문하여 관리, 지도를 하지만 필요한 경우 즉, 신생집단이거나 운영이 원활치 못한 집단에 대해서는 연간 최대 10회까지 방문을 하기도 한다. 그러나 많은 놀이집단들은 이 같은 질적 지원이 충분치 못하다는 불만을 토로하고 있어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간 ECD가 놀이집단을 지원하기 위해 개발한 자료(책자)로는 다음 <표 Ⅱ-4-3>와 같은 것이 있다.

〈표 Ⅱ-4-3〉 뉴질랜드 정부가 놀이집단에 제공하는 자료

- 영유아교육의 내용과 선택 - 영유아교육의 질 - 지역사회 놀이집단의 설립 - 놀이집단 운영 지침 - 태평양 군도 영유아 집단 운영을 위한 지침 - 놀이집단 시설설비 가이드라인 - 놀이집단의 학습 환경: 수준 높은 놀이집단 운영 가이드

놀이집단은 집단에 속한 모든 아동에게 활동과 경험을 제공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교육프로그램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며 이는 보육시설이나 유치원의 교육과정과 크게 다르지 않다.

〈표 Ⅱ-4-4〉 뉴질랜드 놀이집단의 교육내용(일부)

- 분류과 구분에 대한 수학적 개념 - 영유아기 문자읽기 - 대근육운동, 균형잡기, 조화시키기 - 이후 아동기나 청소년기에 사용될 행동 기술 - 타인과 함께 하고 공유하는 법 등

놀이집단은 부모에게 놀이와 학습, 그리고 자신의 자녀에 대해 알도록 가르치고 지원하며, 부모는 놀이집단을 조직하고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자녀와 함께 참여하는 역할을 한다. 부모는 또한 관련한 기술을 익히고 상호 조력을 해야 하며, 아동은 집에서 하는 것과는 다른 활동에 참여하고 부모 외의 어른들과도 상호작용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3) 놀이집단의 유형

놀이집단의 유형으로는 크게 볼 때 세 가지가 있다.

첫째는 '일반 놀이집단(general playgroup)'으로, 이는 참여 가족들의 모국어와 문화를 지지하기위해 부모들이 만나는 지역사회 언어그룹이라고 할 수 있다. 참여 부모와 아이들은 주로 이민자나 외국 난민들로 자신의 모국어와 문화를 유지하고 싶어하는 목적을 지닌 경우가 많고, 자신의 뿌리와 언어를 찾고 싶어 하는 이민 2, 3세 가족들도 있다. 이러한 놀이집단은 대부분 영어와 함께 그 지역 언어가 공동으로

사용되는 완전한 이중언어 공동체가 될 수 있다. ECD는 「뉴질랜드 독립여성 난민 모임」과 함께 난민촌 내에서 놀이집단을 운영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또한 지역에 따라서 십대(teenage) 부모 가정이나 아버지를 위한 그룹을 운영하는 곳도 있다.

둘째는, '푸나 코훙가훙가' 놀이집단으로, 이는 전동 마오리 부족 거주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놀이집단이다. 이들도 마오리어와 영어를 이중언어로 사용한다.

셋째는 태평양 군도(사모아, 쿡 섬, 누이에, 토켈라우, 통가, 피지 등)와 파푸아뉴기니의 영유아 놀이집단이다. 이들 또한 언어와 문화의 유지에 힘쓰고 있다.

인종비율을 보면, 69%가 백인이고 15%가 남태평양인, 8%가 마오리족이다(ECD Statistics, 2001). 그러나 이 수치는 전체 5세이하 소수민족 아동 수에 비해 적은 수가 놀이집단을 이용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며, 많은 아동이 인가받은 보육시설을 이용한다고 할 수 있다.

〈표 Ⅱ-4-5〉 뉴질랜드 정부 발표 놀이집단의 이로움

대 상	내 용
아동	- 배우는 즐거움을 알게 됨 - 자기 표현력이 높아지고 친구를 갖게 되고 문제해결력도 높아짐 - 자신감, 신뢰감, 자아존중감, 타인 배려심이 높아짐 - 긍정적 사회성을 발달시킴
부모, 가족	- 정보와 지원 - 양육과 자녀발달에 대한 교육 - 다른 가족과의 만남 - 양육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책임감으로부터의 탈출 - 부모가 자녀가 발전하고 학습함으로써 가족생활이 풍요로와짐 - 자녀가 수준 높은 교육에 참여할 수 있음에 만족감 높음 - 새로운 지식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됨
사회	- 구성원이 유아기부터 건강하고 안전하게 발달할 수 있게 됨으로써 사회전체가 건강해짐

그럼에도, 뉴질랜드 정부는 이와 같은 놀이집단을 매우 성공적인 보육서비스 정책의 사례로 평가하고 있으며, 아동뿐 아니라 가족, 여성, 그리고 지역사회 전체에 좋은 교육적 혜택의 기회를 제공한다고 본다. ECD의 'Quality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책자에 의하면, 각 참여자가 얻는 혜택은 <표 Ⅱ-4-5>와 같다.

다. 캐나다: 온타리오주 농촌 보육제도

캐나다의 농촌 보육서비스는 온타리오주의 농림부(Ontario Ministry of Agriculture and Food)와 보건복지부(Ontario Ministry of Community and Social Services) 두 부처에서 관할한다. 온타리오주의 보육서비스의 주요 문제는 부모와 영유아가 필요한 보육서비스를 적절한 거리 내에서 제공받을 수 있는가의 'availability(접근성)'의 문제, 보육서비스 이용시 부모가 지불할 수 있는 가의 'affordabiliby(이용 가능성)'의 문제, 영유아의 신체·정서·사회·인지적 발달에 맞는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가의 'quality(질적 제고)' 등 3가지 문제점이다. 이 3가지 문제점은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밖에 보육시설 이용의 적은 수요자, 보육서비스에 대해 상대적으로 폭넓은 욕구, 연장보육서비스, 자격을 갖춘 교사확보 등의 문제들은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와 유사하다. 이에 온타리오주에서는 본 연구에서 추진하는 유사한 보육사업의 유형들을 이미 도입, 추진한 바 있는데, '집단가족 보육서비스(Group Family day care)'와 '농번기 보육서비스(seasonal on-farm care)가 그것이다. 이 내용들을 개략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4)]

1) 집단 가족 보육서비스(Group Family Day Care)

온타리오에서는 집단가족 보육서비스(2명의 보육교사가 한 가정집에서 6~10명의 아이를 보육하는 것)를 실시해 오고 있다. 이 서비스의 목적은 농촌 아이들이 사회·문화적으로 소외되는 것을 보완하기 위함이다. 그런데 몇 가지 문제점이 제기되었는데, 첫째 가정집에서 보육프로그램을 실시하다 보니, 생활을 해야 하는 그 가정집에 너무 많이 불편함을 끼친다는 점이다. 둘째, 보육교사의 녹초이다. 두 명의 보육교사가 휴식도 없이 하루종일 10명의 아이들을 보육함으로서 쉽게 지치게 되고, 결국 그만 두는 경우가 많다. 보조인력을 추가로 고용하지만 이는 다시 추가 비용을 발생하게 되는 구조를 낳게 되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집단가족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보육교사를 지지하고 관리·감독하는 체계화된 시스템을 마련하고, 보육시설의 교사와는 달리 가정에서 보육을 제공하기 때문에 이에 맞는 보육교사 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집단가족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정집에는 도시의 보육시설 시설·설비

---

4) 이 내용은 Gillian Doherty의 *Rural Child Care in Ontario* 보고서에서 발췌하였다.

기준과는 다른 농촌형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 농번기 보육서비스(seasonal on-farm care)

온타리오주의 농번기 보육서비스는 인근의 대학생—주로 유아교육·보육 전공자—의 인력풀을 최소한의 임금을 지불하고 활용하는 시스템이다. 일반적으로 5월에 학생들은 이틀에서 닷새 정도 농촌에서의 건강과 안전에 관한 특별교육을 받는다. 교육받은 학생(caregiver)들은 농촌가정에 파견되는데 이 때 아동 연령에 맞는 장남감, 교재·교구, 교육·보육 프로그램뿐 아니라 소화기와 구급약으로 구성된 놀이세트(a resou잎 학 kit)를 가지고 간다. 교육·보육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부모와 파견되는 대학생을 연결하는 센터—일종의 보육정보센터와 같은—의 직원이 코디네이터 역할을 하여 사전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파악해 놓는다.

그러나 이 보육서비스도 몇 가지 문제에 봉착하게 되었는데 부족한 재정, 아동과 파견 학생의 안전성의 문제, 파견 학생(caregiver)들의 높은 중도탈락율, 이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가정의 감소 등을 꼽을 수 있다.

3) 기타: Shaunavon Daycare Co-operative 프로그램[5)]

캐나다의 대표적인 농어촌 지역의 육아지원을 위해 2005년에 보고된 Saskatchewan 지방의 연구보고서 “Growing Minds"에 따르면, 농어촌에 추진해야 할 프로그램으로서 7가지 방안을 제안하였다.[6)] 여기서는 본 연구와 관련이 있는 Shaunavon Daycare Co-operative를 소개하고자 한다.

Shaunavon Daycare Co-operative은 농번기 동안 농촌 가정에 농촌가정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정방문 형식의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교통편과 연장보육, 주말보육을 제공한다. 이 프로그램은 지방자치단체의 ’지역 문제해결 프로그램

---

5) 김은설·이정원·지성애·이세원(2007)의 「농어촌 지역 육아지원 방안 연구」 연구보고서에서 발췌하였다.

6) 나머지 6가지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비용절감을 위해 농어촌 학교, 공공건물을 육아지원기관으로 활용한다. 둘째, 각종 자료, 수업재료, 교사, 운영위원 등등을 육아지원기관끼리 공유할 수 있는 통합허브모형 시스템을 구축한다. 셋째, pre-kindergarten을 활용한다. 넷째, 일종의 자원봉사 프로그램인 KidFirst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임신기 정보제공 및 지원, 보편적 임상검사, 평가, 가정방문 서비스, 정신건강과 관련 서비스, 조기교육 및 보육, 어려움에 처한 가족을 지원하다. 다섯째, Success By 6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학교교육을 시작하기 위해 필요한 신체적, 사회적, 정신적, 정서적 준비도를 진단해 준다. 여섯째, Quebec식의 공립보육시설을 증설하고 교사급여를 높이고 부모에게 지급하는 보육보조금 액수도 증액한다(김은설·이정원·지성애·이세원, 2007).

(Comunity solution program)'에서 추가 비용지원을 받고 있으며 이는 "농촌가정이 꼭 필요한 시기에 질 높은 보육에 대한 접근성을 가지도록"하는데 한 몫을 하고 있다.

라. 프랑스 가정보육(crèches familiales)

프랑스에서 0-3세 미만 영아와 때에 따라서는 6세까지의 유아에게도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정보육은 농어촌 지역이나 도서·벽지만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한 제도적 장치는 아니다. 즉 프랑스의 농촌뿐 아니라 도시지역 등 수요가 있는 어느 곳에서나 보육교사 자격과는 무관하게 일종의 보육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제도이며 전체 영아 보육서비스 중 18%가 가정보육시설에서 제공되고 있다. 그럼에도 이러한 형태의 가정보육제도를 살펴보는 것은 우리나라 농어촌 지역, 특히 소외되고 인구가 적으며 정식 보육교사를 채용하기가 어려운 산간이나 도서 지역 등에서 실용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보육서비스를 구상해보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줄 수도 있으므로 이에 대한 설명을 포함하고자 한다.

1) 가정보육시설

프랑스의 가정보육(crèches familiales)은 보육시설의 일종으로 1960년대부터 설립된 정부지원시설이다. 등록된 보육모들이 가정보육시설을 운영하며 이들은 지방정부로부터 인건비를 지급받는 대신 국가보육위원회의 관리감독도 함께 받고 있다.

사실 프랑스에서 등록된 보육모(assistante maternelle agréée)라 하면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개인자격으로 3세 미만 영아를 자신의 집에서 보육하는 경우와 다른 가정보육시설에 고용되어 보육하는 것이다. 가정보육시설에 고용된 경우에는 정기적으로 시설을 방문하여 영아에게 보육활동을 제공하고 소아과 의사의 정기검진에 데리고 가는 등 시설에서 맡겨진 일을 하게 된다(정미라 외, 2009).

2) 가정보육모(assistante maternelle)의 자격

1992년 법령에 따르면 가정보육모 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모자보건국에서 60시간 동안 교육을 받아야 하고, 보육시설에서 일정 기간 동안 실습을 받아야 한다. 자격이 인증된 보육모에게는 인증서(attestation)가 부여되며 유효기간은 5년이다. 전문교육과정은 5년마다 자격증을 갱신하기 위해 필요하다. 또한 자격인증을 받기 위

해서는 신체 건강하고, 영유아를 보육하기에 적합한 환경에 거주하고 있어야 하는데, 이는 영유아가 편하고 안전하며 발달에 적합한 공간이 확보되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보육아동의 수는 자신의 자녀를 포함하여 원칙적으로 3명이고 3명을 초과할 시에는 시·도 의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정미라 외, 2009).

마. 외국 사례의 시사점

본 장에서 소개되고 있는 외국의 농어촌 지역 영유아를 위한 특징적 육아지원제도는 크게 네 가지의 유형으로 구분될 수 있다. 국가특성이나 민족구성 환경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나기도 하지만 지금까지 살펴본 육아지원 제도는 다음과 같이 구분이 가능하며 각각을 특징을 살펴보면 우리나라 적용에 대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첫째, **가정집을 이용한 보육서비스의 제공**이다. 한 가족의 생활과 등록 아동에 대한 보육서비스가 같은 공간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보육시설과 다르고 우리나라의 가정보육시설과도 인원면에서 차이가 있다. 캐나다의 경우는 농어촌 아동에 대한 문화적 소외 보완을 위해 2명의 보육교사 최대 10명까지 가정에서 돌보는 집단가족 보육서비스를 실시하고 있고, 프랑스는 일정 교육을 받은 가정보육모(보육교사가 아님)가 자신의 자녀를 포함해어 3명 이내의 아동을 가정에서 보육하는 체제를 가지고 있다. 이 때 이들 보육교사나 보육모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관리·감독 시스템이 작용하고 동시에 프로그램과 인건비에 대한 지원 체계도 잘 갖추어져 있다. 그러므로 농어촌 지역, 특히 교사 채용이 쉽지 않은 산간이나 도서지방에서는 지역내 가능 인력과 가정집 공간을 활용하여 필요한 보육서비스 활동 장소를 고려해 봄직 하다.

둘째, **자율적 놀이집단의 활성화**이다. 지역민 간 자율적 연계성이 높은 농어촌지역의 특성을 살려 부모와 아동이 공동으로 참여하고 혜택을 얻을 수 있는 놀이집단을 구성하도록 정부가 지원함으로써 외부의 새로운 인적 인프라나 과다한 물적 투입이 없이도 원활하게 자체적으로 교육과 보육의 혜택을 얻을 수 있도록 한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보육이라는 면에서 볼 때 이용 시간이 제한적인 점이나 교육적 입장에서 볼 때 수준의 상승이 용이하지 않다는 것은 적용 시 유의해야 할 점이다.

셋째, **이동(mobile) 보육서비스의 제공**이다. 호주의 경우 농촌이나 오지민을 대상으로 지방정부가 지원하는 보육서비스를 차량을 이용해 종일반, 방학 중, 농번기 등 지역적 특성에 따라 제공하는 것으로 주로 주 1회씩 방문을 하고 있다. 지역이 넓고 아동가구가 넓은 면적에 산재해 있는 농어촌의 경우이동이 용이하지 않고 이

용 인구가 많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여 교사가 찾아가는 이동 보육서비스를 적용해 볼 만하다. 이 경우 시설을 짓거나 마련하여 영구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부담이 없고 시설설치비용이 절약된다는 점에서 농어촌에 적극 도입하여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마지막으로, **농번기를 중심으로 한시적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이다(seasonal service). 캐나다의 경우 방학을 맞은 대학생에게 단기 교육과정을 수료케 하고 파견학생보육교사로서 농어촌에서 보육활동을 하게 한다. 이러한 방식은 벼농사 중심 등 우리나라 농어촌에서 영아에 대한 일시보육 수요가 높은 계절제 보육이 필요한 지역을 탐색하여 적용해 볼 만하다.

Ⅲ. 농어촌형 보육서비스 모델의 개발

영유아 인구가 줄어들어 상대적으로 수요가 적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보육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육서비스 수혜를 받지 못하는 농어촌과 도서·벽지 지역을 대상으로, 작지만 질 좋은 국공립 보육시설을 설치하고자하는 노력이 '농어촌 소규모 보육시설' 사업이다. 또한 시설조차 설립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지역에는 시설 외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향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 이러한 취지에서 본 장에서는 농어촌형 소규모 보육시설과 시설외 보육서비스의 형태에 대해 모델을 제시함으로써 그 활용성을 생각해보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1. 배경: 농어촌 보육서비스 이용의 특징

캐나다 농정위원회 온타리오 연합회의 분과위원장인 크류(Crew, 2005)는 자신의 글에서 농어촌 지역 육아지원의 특성을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농어촌의 육아지원은, 농어촌 가정이 쉽게 접근할(accessible) 수 있어야 하고, 보육시간의 연장이나 계절에 따라 달라지는 보육수요에 융통적(flexible)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보육시설의 서비스는 농어촌 아동의 사회성발달과 성장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질 높고(high quality) 저렴하게(affordable) 제공되어야 한다(Crew, 2005, p.1)."

이러한 지적은 농어촌에서의 육아지원이 고려해야할 특성을 보다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다. 즉, 지역이 넓고 아동 수가 적은 농어촌의 경우 영유아가 보육시설에 장시간 셔틀버스를 타고 등하원해야 하거나 버스가 없는 병설유치원의 경우 먼 거리를 도보나 자가용을 이용해야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또한 농한기와 농번기에 아동 특히 영아에 대한 보육수요는 많은 차이가 있으며, 한 조사(서문희 외, 2006)에 따르면, 보낼 필요는 느끼나 비용부담 때문에 육아지원기관을 이용하지 않는다고 밝힌 농어촌 가구도 21.1%나 되었다. 이러한 지적들은 농어촌 육아지원의 기본 방향이 어떠해야 할지를 시사해주고 있다.

가. 영아보육에 대한 높은 수요

최근 연구(김은설 외, 2007)에 따르면, 농어촌지역 유아는 97.2%가, 만3세 미만의 영아는 35.1%가 보육시설 또는 유치원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아의 경우는 보육시설이 65.7%, 유치원이 31.1%로 조사되었으나 영아는 대부분이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다.

〈표 Ⅲ-1-1〉 농어촌 영유아 육아지원기관 이용 현황

단위 : %(가구)

구분	기관 이용			기관 미이용	계
	보육시설	유치원	기타		
전체					
영아	33.1	2.0	2.3	62.6	100.0(572)
유아	65.7	31.1	0.4	2.8	100.0(646)
환경별(영아)					
도시인접지역	29.0	1.6	3.3	66.1	100.0(186)
산간/해안지역	41.6	3.5	0.7	54.2	100.0(142)
중산간/평야지역	31.6	1.6	2.0	64.8	100.0(244)
환경별(유아)					
도시인접지역	56.3	35.1	4.6	4.0	100.0(151)
산간/해안지역	74.9	23.3	0.0	1.8	100.0(227)
중산간/평야지역	60.6	33.0	3.4	3.0	100.0(268)

출처: 김은설 외(2007). 농어촌 지역 육아지원 방안 연구. 육아정책개발센터

그러나 영아의 62.6%는 보육시설을 전혀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조손가정과 다문화가정이 늘어나는 양육환경적 측면과 여성 일손이 많이 필요한 농어촌의 경제활동적 현실을 생각해 볼 때 영아에 대한 보육서비스 제공이 매우 필요함을 짐작할 수 있다. 김은설 등(2007)은 농어촌에 국공립 영아보육시설의 신설이 우선적으로 필요함을 주장한 바 있다(표 Ⅲ-1-1 참조).

나. 보육료 지출에 대한 높은 부담감

농어촌의 영유아 가구를 대상으로 한 연구(김은설 외, 2007) 결과를 보면, 보육시설이나 유치원을 이용하는 가정에서 보육료나 교육비 지출에 대해 부담을 느낀다고 답한 경우가 5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Ⅲ-1-2 참조). 농어촌 지역 주민에 대한 육아비용 지원책이 꾸준히 진행되고 있고 많은 수가 수혜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

져 있으나 여전히 부모나 양육자가 느끼는 부담감을 무겁게 남아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부모 부담을 줄을 수 있는 방향으로, 즉 과감한 지원이 있는 국공립시설이 농어촌에 주 보육서비스 공급원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표 III-1-2〉 농어촌 주민의 보육료에 대한 부담감의 정도

단위 : %(가구)

구분	매우 부담스러움	부담스러움	부담스럽지 않음	전혀 부담스럽지 않음	계	x^2(df)
전체						
영아	16.4	34.1	30.4	19.2	100.0(214)	.641(3)
유아	14.0	39.8	28.5	17.7	100.0(628)	

* p< .05

출처: 김은설 외(2007). 농어촌 지역 육아지원 방안 연구. 육아정책개발센터

〈표 III-1-3〉 농어촌 영유아 가정 월평균 보육료 지출

단위 : 천원,명

	사례수	보육료	
		평균	표준편차
영아	214	90.7	109.4
유아	424	62.8	86.9

출처: 김은설 외(2007). 농어촌 지역 육아지원 방안 연구. 육아정책개발센터

다. 장시간의 차량 이동

농어촌 지역은 농토면적으로 인해 마을마을이 점조직식으로 흩어져 있으므로 영유아가 읍지역 근처의 보육시설을 다니는 데는 많은 동선이 필요하다. 이러한 현상은 보육시설이 운행하는 차량의 운행거리를 보면 알 수 있는 바, 서문희 등(2004)의 연구에서는 1일 평균 운행거리를 109.8km로 보고하고 있다(표준편차 98.4km). 또 다른 연구(서문희 외, 2006)는 농어촌에서 아동이 보육시설까지 차량으로 이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편도 평균 30.4분이고 최대로는 90분까지 걸린다는 것을 조사, 보고하였다. 또한 거리가 멀어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이 있다고 응답한 농어촌의 시설장이 23.9%여서, 상당한 수의 영유아가 이동거리로 인해 보육서비스를 받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농어촌에서 보육시설을 신설하는 경우 최대한의 많은 아동이 최소한의 이동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적정 위치를 선정하는 것이 매

우 중요한 고려 사항임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표 III-1-4〉 농어촌 보육시설 1일 차량 운행거리 및 월평균 소요비용

단위: ㎞, 만원, 개소

구분	1일 평균 운행거리	월평균비용	사례수
전체 평균	109.8	151.2	598
(표준편차)	(98.4)	(84.5)	
읍	98.3	146.3	286
면	120.1	155.5	312

출처: 서문희 외(2004). 농어촌 보육모형 개발 연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표 III-1-5〉 농어촌 보육시설 차량이용 등원 시간

단위: 분(수)

구분	평균	표준편차	최소	최대	사례수	t
전체	30.4	13.9	3	90	305	
지역						
읍	28.0	13.5	3	80	149	8.69**
면	32.6	14.0	5	90	156	

주: ** p<.01, *** p<.001
출처: 서문희 외(2006). 농어촌지역 소규모 보육시설 확충 및 운영방안. 농림부

〈표 III-1-6〉 거리가 멀어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 유무

단위: %(개소)

구분	없음	있음	계(수)	X2(df)
전체	76.1	23.9	100.0(343)	
지역				
읍	74.0	26.0	100.0(173)	0.9(1)
면	78.2	21.8	100.0(170)	

출처: 서문희 외(2006). 농어촌지역 소규모 보육시설 확충 및 운영방안. 농림부

2. 농어촌형 보육서비스 모델

앞서 살펴본 농어촌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본 장에서 제시하고자 하는 농어촌형 보육서비스의 새로운 운영 모델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 하나는 국공립보육시설의 농어촌 맞춤형 특수 유형인 소규모 보육시설이고 두 번째는 농어촌

특히 산간이나 도서벽지의 현실과 특성을 고려하여 기존의 시설 형태가 아니면서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새로운 접근 방식을 취한 모델들이다. 두 번째 형태에 속하는 것으로는 이동차량을 이용한 놀이버스, 부모협동 놀이그룹, 농번기 임시 보육방, 준공영 보육가정 등이 있으며 각각의 유형에 대한 설명을 다음에서 하고자 한다.

(1) 농어촌 국공립 소규모 보육시설

농어촌 소규모 보육서비스 설치 사업은 인구가 줄어들어 아동수가 적어진 농어촌 지역을 대상으로, 보육시설을 설치할 충분한 아동 수가 되지 못하는 소수 영유아의 보육수요에 부응하고자 보건복지부가 시작한 적극적인 보육서비스 제공 방안이다. 농어촌 중에서도 특히 이러한 지역은 경제적 수익이 보장되지 않아 민간보육시설이 진입을 기피하고 대규모 국공립보육시설 설치도 어려운 곳이다. 소규모 보육시설은 기존의 국공립보육시설과는 차별화된 형태로, 소수의 아동들이 존재하는 농어촌, 벽지, 도서 등에서 지역 특성에 맞는 정원 5~20명의 시설을 설치하고 탄력적인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목적을 둔다. 이를 통해 보육시설 미설치 지역이 감수해야 했던 보육시설 이용의 어려움을 해소하여 시설 접근성을 강화하고 보육의 사각지대 문제를 해결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가. 농어촌 소규모 보육시설이란?

소규모 보육시설이란 국공립 보육시설의 일종으로, 농어촌에 설립된 상시 3인 이상 20인 이하의 영유아를 보육하는 작은 규모의 보육시설을 의미한다. 소규모 보육시설 중 20인 이상으로 정원이 증가된 경우에는 국공립보육시설로 전환할 수 있다.

1) 소규모 보육시설 설치 근거

영유아보육법 제52조에 따르면 기존의 보육시설 설치 및 종사자 배치기준을 따르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승인을 득한 후 이를 달리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예외적 규정이 농어촌 소규모 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의 근거가 될 수 있다.

〈표 Ⅲ-2-1〉 소규모 보육시설 설치의 법적 근거 1

영유아보육법 제52조(도서·벽지·농어촌 지역 등 보육시설)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도서·벽지·농어촌지역 등에 있는 보육시설로서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보육시설의 설치기준 및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보육시설종사자의 배치기준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할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이를 달리 적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도서·벽지·농어촌지역 등의 구체적인 범위, 보육시설의 설치기준 및 보육시설종사자의 배치기준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8. 2. 29>

한편 위의 영유아보육법 제52조에 의해 정해진 보건복지부령(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는 보다 구체적으로 해당 지역에 대한 설치 및 종사자 배치 기준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표 Ⅲ-2-2〉 소규모 보육시설 설치의 법적 근거 2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40조(도서·벽지 및 농어촌 지역 등의 보육시설)

① 법 제 52조에 따라 보육시설의 설치기준 및 보육시설종사자의 배치기준을 달리 적용할 수 있는 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
2. 행정구역상 면 지역
3.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농어촌 지역
②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법 제52조에 따라 제1항에 따른 도서·벽지·농어촌 등의 지역에 대하여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달리 적용할 수 있는 보육시설의 설치기준 및 보육시설종사자의 배치기준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육시설의 규모에 관한 사항 중 최소 보육인원에 관한 사항
2. 보육교사 1명당 담당 영유아 수

즉, 소규모 보육시설은 국공립보육시설로서의 법적지위를 갖지만 최소 보육인원에 대한 예외 사항과 교사 1인당 아동 비율에 대한 허용 사항에 따라 10인 이하도 보육할 수 있는 특례를 누리게 되며, 설치주체는 시·군·구청이 된다.

2) 입지조건과 운영방식

입지조건은 보육시설 미설치 읍·면 지역 중 보육수요가 존재하면서 인근 보육시설을 이용하는데 거리상의 어려움으로 접근에 한계를 지니고 있는 지역이 대상이 되면 주변 환경은 아동보육에 적합한 지역이어야 한다.

보육공간은 마을회관, 공공기관의 유휴공간, 유휴교실, 보건지소, 폐가 등을 활용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 소규모 건물 신축이나 개인소유건물 임대도 가능하나, 임대의 경우 소규모 보육시설을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대책이 있어야 한다.

소규모 보육시설의 운영 방법은 지자체 직영과 위탁이 모두 가능하다. 즉 국공립 보육시설을 운영하는 기관의 장이 보육시설 종사자를 채용하여 직접 운영하거나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운영시간은 07:30-19:30까지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지역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이 가능하다. 소규모 운영임을 고려하여 휴가, 보수교육 등으로 교사의 공백이 발생할 경우, 대체교사를 우선 파견하는 것이 필요하다. 보육료는 정부지원단가 범위 내에서 결정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소규모 보육시설의 유형

소규모 보육시설의 운영 방식은 몇 가지 기준에서 크게 유형화될 수 있는데, 기존 국공립 보육시설의 분원의 형태로 운영하는 방식과 기존 시설과 상관없이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형태 등이 가장 대표적인 두 가지이다. 또한 분원 방식으로 운영되는 경우도 기존 국공립 보육시설의 아동 중 등하원 거리가 먼 특정 지역 거주 아동과 거기에 상응하는 수의 교사가 분리되어 나가 해당 지역에 설립된 소규모 보육시설로 옮겨감으로써 형성되는 '분리식 분원형' 모형과, 기존 시설과는 전혀 무관하면서 거리가 먼 곳에 설치된 소규모 보육시설이 기존 시설의 분원으로서 작용하는 '확장식 분원형' 등 두 가지의 형태로 다시 구분될 수 있다. 한편 분원형은 예산 운용의 방식에 따라, 기존 국공립시설(이하 본원)이 통합적으로 운용하는 '재정통합형 분원'과 '자립형 분원' 등 두 가지로 다시 구분이 가능하다([그림 Ⅲ-2-1]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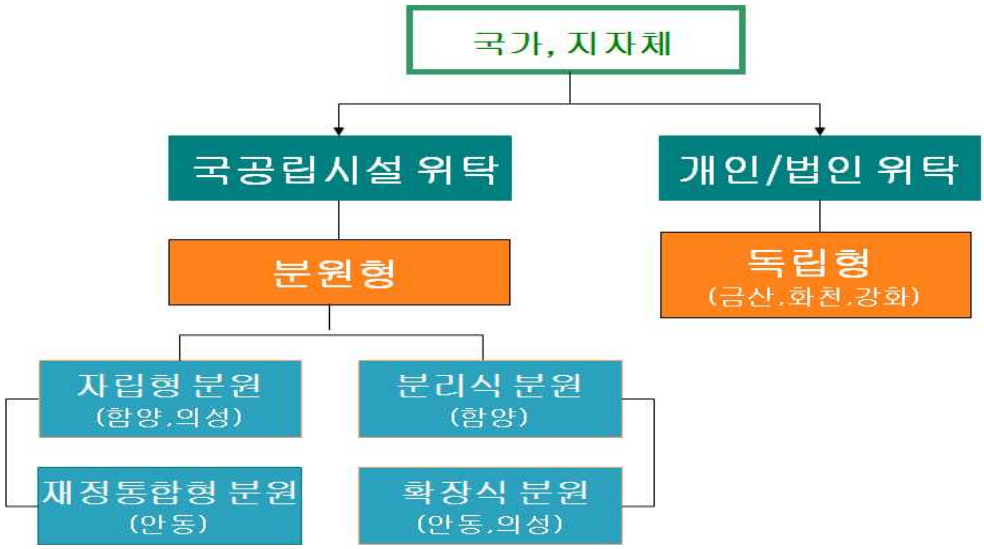

[그림 Ⅲ-2-1] 소규모 보육시설의 유형

1) 독립형 소규모 보육시설

인근의 기존 국공립시설과의 연계 없이 완전한 하나의 보육시설로서 소규모 보육시설 형태를 취하는 방식이다. 이의 현실화를 위해서는 e-보육상에 보육시설의 설립형태 구분에서 '국공립 소규모 시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시설 현장에 있는 소규모 시설의 시설장들이 모든 책임을 지고 운영을 한다. 분원형에 비해 자체 계획에 따라 운영을 하여 보육과정이나 예산운용을 측면에서 지역특성을 고려할 수 있는 융통성이 있고 소규모 시설 보육료 수입이 다른 곳으로 전출될 가능성이 없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교사 공급이나 운영비에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프로그램이 단순하거나 교구부족이 있을 수 있는 단점도 있다. 다만 국공립의 분원이 아니어서 지원받기가 쉽지 않으므로 소규모 설립 단계에서 지자체의 주선으로 소규모와 기존 국공립시설간 MOU나 자매결연 등을 맺음으로써 소규모 시설의 보육활동이 더욱 풍부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고 보육정보센터 등에서도 지원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추어져야 한다.

2) 분원형 소규모 보육시설

분원형 소규모 보육시설은 기존의 국공립보육시설이 관리 책임을 맡아 동일한 이름으로 다른 지역에 분원으로 설립한 소규모 보육시설을 의미한다. 분원형 소규모 보육시설은 시설유지관리비, 급간식재료구입, 교재교구 구입 등 다양한 비용의 측면에서 규모의 경제효과를 누려 소규모 시설 자체만으로 운영할 때 보다는 경제적으로 효율성이 있는 장점이 있을 수 있다. 또한 기존의 시설장이 관리하고 운영책임을 맡음으로써 경험에 의해 운영이 원활할 수 있고 교재교구의 풍부한 활용, 보육프로그램의 다양화, 교사 공급의 용이함 등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소규모 시설보다 많은 이점이 있다. 그러나 시설장이 관리하는 예산 범위가 커진다거나 분원 설치지역의 특성에 따른 일과운영 자율권에 제한이 있을 수 있는 등 염려되는 단점도 있다.

「소규모 보육시설 운영안내」와 「분원의 설치 및 운영안내」(부록 4 참조)는 분원운영에 대한 지침을 포함하고 있다. 분원의 운영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분원운영지원교사'를 선정하여 분원운영에 대한 기본적인 책임과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이때 분원운영 지원교사의 자격은 '보육교사 2급 이상 자격을 취득한 이후 1년 6개월 이상 보육업무 경력'이 있거나 '보육교사 3급 자격 취득 후 2년 6개월 이상 보육업무 경력'이 있어야 한다. 소규모 보육시설 내에서 시설장의 역할을 하는 경우이므로 가정보육시설장의 자격에 비추어 약간 요구 기간을 낮춘 정도로 정해졌다. 분원운영지원교사는 별도로 추가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

가) 시설장과 교사

국공립보육시설 본원의 시설장은 분원의 일반적인 모든 업무에 대한 최종 책임을 지며, 이에 더해 분원운영지원교사 및 분원 보육교사의 임면, 안전 및 위생 관리 감독, 취사부 및 보육보조인력의 임면, (본원이 분원의 재무, 회계를 관리하는 형태로 분원을 운영하는 경우) 예·결산 회계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분원운영지원교사는 시설장을 대리하여 분원을 이끌어가면서 특히 일과운영 계획, 보육실 환경 구성, 조리실 관리, 교재교구 선정, 부모상담, 급간식 식단 운영 등을 진행하고 예결산 회계가 본원에서 분리되어 있는 경우는 e-보육 관리와 회계 업무를 모두 수행하고 추후 본원에 보고하는 일을 하여야 한다. 업무와 분원에 관한 사항은 부록의 운영안내 부분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분원형 소규모 보육시설은 초기 아동모집 방식에 따라 분리식 분원과 확장식 분

원으로 구분될 수 있다.

나) 분원형의 종류

(1) 분리식 분원과 확장식 분원

기존 국공립보육시설의 일부 아동과 교사가 신설되는 소규모 보육시설의 구성원이 되어 따로 독립하여 분원을 형성하게 되는 모델이다. 현재 중심지역의 한 시설을 다니고 있으나 거리가 너무 멀어 차량 이동시간이 길으로 인해 아동들의 건강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경우 유용한 방식이다. 2009년 시범사업에서는 경상남도 함양군의 경우가 이에 속한다.

아동 수 정원은 본원과 분리하여 보고되어야 하고 예산 수립과 운용은 본원과 분원이 통합적 체제 속에서 수행할 수 있으나, 분원이 독립적으로 예산 운용을 할 수도 있다. 종사자는 본원에서 채용하여 파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분원의 입장에서 볼 때 이미 본원의 운영방식에 익숙하여 본원교육과정을 따르는 것이 용이하고 본원에 대한 소속함이 크게 나타나며 아동 모집의 어려움을 던다는 장점이 있고 본원의 입장에서도 예산을 통합적으로 운용하여 편리함이 있다.

그러나 시설장의 책임과 업무가 증가하고 공동 보육과정운영이 어려울 수 있다는 단점도 있다. 이럴 경우 예산사용을 철저히 관리하고 마구잡이식 분원 설치를 주의해야 한다.

분원형이라는 점은 같으나 분리식이 기존 보육시설에서 아동과 교사를 옮겨 신규 시설을 만드는 형태라면 확장식은 보육시설이 없는 산간, 벽지, 도서 지역을 대상으로 보육시설 이용을 희망하는 아동을 위해 소규모 보육시설을 설치하고 운영의 원활화를 목적으로 거리상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국공립보육시설과 계약을 맺어 분원으로 운영하는 모형이다. 분리식과는 달리 본원의 시설장이 새로운 수의 아동과 교사와 건물을 하나 더 관리, 운영하게 되는 것이다[7]. 수적으로, 재정적으로 규모가 커진 경우이다. e-보육상 아동수는 본원과 분리되어 보고되고 분원 근무를 위한 신규 교사 채용이 필요하다.

분원은 예·결산, 재정 업무를 본원에서 총괄적으로 수행하는지 본원과 분원이 구분하여 독립적으로 수행하는지에 따라 재정통합형 분원과 자립형 분원으로 나눌 수 있다.

---

7) 분리식 분원형에서도 분리되어 나간 아동 수만큼을 본원에 보충하여 보육할 수 있다. 그러나 농어촌의 경우 현재 정원 미달이 많으므로 여의치 않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추측된다.

(2) 재정통합형 분원과 자립형 분원

재정통합형 분원은 재무, 회계를 본원에서 맡아하고 분원은 표준보육과정에 근거하여 일과를 운영하고 재정 업무 이외의 모든 활동을 주도적으로 행하는 방식이다. 본원 시설장이 계획, 운용하고 결산함으로써 효율적일 수 있고 규모의 경제 효과도 얻을 수 있으나 수입 출처가 불분명할 수 있어 분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목적에서 시작된 방식일지라도 결과적으로는 본원에 이익이 될 가능성도 있다. 그러므로 예산운용에 대한 관리감독이 철저해야할 필요성이 높고 더불어 소규모 특성에 따른 자율적 보육과정운영의 가능성을 열어두어야 한다.

자립형 분원은 본원에 대하여 분원으로서 명칭과 지위를 가지고 있어 본원 시설장이 관리, 운영에 대한 최종책임을 지고 있긴 하나 예결산 회계, 보육과정을 비롯한 모든 업무를 본원과는 분리해서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형태의 분원 모델이다. 현지특성과 상황에 맞는 예산 사용이 가능하고 필요한 경우 본원의 기자제, 교재교구를 활용할 수는 있어 독립적인 측면과 분원으로서의 잇점을 모두 누릴 수 있다. 반면에 아동수가 급격히 줄어들 경우 운영비 부족의 가능성이 있을 수 있고 오지인 만큼 원활한 교사 공급이 어려울 수 있으며 분원에서 독립적으로 e-보육, 회계 등 업무를 처리해야 하므로 분원운영지원교사에 주어지는 부담이 크다는 단점도 있다.

다. 설치기준

소규모 보육시설은 현재 보육시설이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지역, 특히 면, 리 지역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시설이 설치되어 있어도 지역 면적이 넓어 이동 이용이 용이하지 않은 경우에 설치하게 된다. 기존 연구(서문희 외, 2006)에 의하면 등하원시 차량으로 이동하는 아동 중 최장 편도 90분까지 탑승을 한다는 조사결과가 있으므로, 보육시설이 농어촌에 많은 수가 설치되어 있고 정원이 미달된 곳이 많다 하더라도 여전히 적절한 위치에 균등하게 배치되어 있지 못하고 지역이 넓고 주거지가 산재되어 있는 면지역은 소외되고 오히려 읍에만 주로 설치되어 아동을 멀리 이동시켜야 하는 어려움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소규모 보육시설을 설치한다. 또한 국공립설치 대상 지역 중 수요가 매우 적은 경우에도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설치할 수 있다.

설치는 사전 수립된 보육시설 수급계획을 포함한 보육계획에 따라야 하며, 철저한 수요조사를 통해 이용희망자와 장래성도 추측해 보아야 한다. 현재 이용자를 중심으

로 보았을 때 향후 6년 이상 운영 지속 가능성을 확신할 수 있을 때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다. 소규모 보육시설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1의 규정에 의해 설치하고 「보육사업안내」의 보육시설 입지조건을 원칙적으로 준수해야 한다.

보육아동 수가 5명 이하 정도로 매우 적어 보육교사 1명만이 근무하는 극소규모 보육시설인 경우 보육실은 영아반/유아반으로 나눌 수 없고 1개의 공간으로 만들어져 보육교사가 모든 아동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환경이 되어야 한다. 영아를 위한 수면 공간 등은 키낮은 파티션이나 가리개 등으로 구분되어 교사가 항상 살펴볼 수 있는 범위에 있어야 하고 2 개의 방으로 나누어져서는 안된다. 벽으로 나누어진 방을 활용하여 보육실로 쓰는 농어촌 주택에 설치된 소규모 보육시설인 경우에도 벽을 개조하여 낮은 유리창문을 달거나 미닫이 등을 설치하여 교사가 유아들과 함께 다른 공간에 있더라도 동일 공간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의 효과를 내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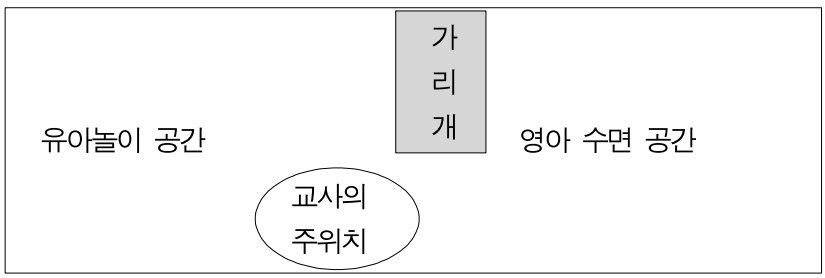

[그림 III-2-2] 영유아 혼합반 1인 교사 체제의 보육실 모형 예

라. 운영 규칙

소규모 보육시설은 기존의 국공립보육시설과 운영 규칙에서 비슷하고 가정보육시설과 비슷한 면도 많다. 그러므로 여기에서는 기존의 규칙과 차이나는 부분을 중심으로 소규모에만 적용되는 원칙들을 제시하고자 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록 4>에 수록된 「소규모 보육시설 운영 안내」를 참조하면 된다.

1) 반편성 및 혼합반

보육대상은 만0세 ~만5세 아동을 원칙으로 하고 반편성과 혼합반 기준은 보육사

〈표 Ⅲ-2-3〉 운영방식에 따른 소규모 보육시설의 유형

유형 / 구분	분원형 소규모 보육시설			독립형 소규모 보육시설 (소규모 일반형)
	분리식 분원형	추가식 분원형		
특징	- 국공립 본원의 아동과 교사 일부가 나가서 소규모를 구성함	- 새로이 설립된 분원이 독립적으로 교사와 아동을 모집함. 일부 아동은 본원에서 분원으로 옮겨갈 수 있음		- 분원이 아닌 독립된 국공립으로서의 소규모 보육시설
아동 수(정원)	본원과 분리	본원과 분리	본원과 분리	독립 정원
종사자	본원 파견 원칙, 분원 채용 가능	분원 채용 우선, 파견 가능	분원 채용 우선, 파견 가능	현지 채용
예산 운용	재정통합형	**재정통합형 분원**	**자립형 분원**	독립
장점	- 규모의 경제 효과 : 시설유지관리비, 급간식재료구입, 교재교구 및 가구, 필요물품구입 - 시설장의 국공립 운영 경험 보장 - 일정기간 후 교사 자리 이동 가능 ⇨ 교사 공급 원활 - 보육과정 운영 프로그램 다양화 - 교재교구 등의 풍부한 활용가능 - 본원과 통합하여 체험활동, 현장학습 활동(공동보육과정운영) - 운영비 부족을 메꿀 수 있음 - 책임운영교사의 부담감이 덜함 - 국가적으로 시설장1명 인건비절감 - 교사 유고시 본원의 교사 활용 - 분원 이용자에게 본원 운영 노하우의 적용이라는 점에서 신뢰감을 줌			- 시설 현장에 있는 시설장이 모든 책임을 지고 운영함. 자율권이 있음 - 소규모 시설 보육료 수입이 다른 곳에 쓰일 염려가 없음 - 자체 계획에 따라 운영을 하여 지역특성을 고려한 융통성이 있음 - (분원경우의) 본원시설장에게 업무 부담을 주지 않아도 됨. - '본원으로부터 소외된 분원'이라는 인식이 없어 이용자의 소속감, 자부심 높음.
	- 아동 수 부족 문제 없음 - 본원 운영방식에 익숙하여 본원교육과정을 따르기 용이 - 본원에 대한 소속감이 큼 - 예산의 통합적 운영 용이	- 본원 시설장의 전체 계획, 운용, 결산 등 총괄적 지휘 및 효율적으로 운용 가능 - 식료품, 교재교구 대량구입 가능으로 비용 절감 효과	- 현지 특성과 상황에 맞도록 예산의 독립적 사용 가능	
단점	- 본원 예산 중 일부가 분원에 쓰임으로 본원예산 축소가능성 - 시설장의 책임, 업무 부담 증가 - 소규모 특성을 살린 보육과정운영이 상대적으로 어려움	- (본원분리식의 단점 동일적용) - 총수입 출처 불분명 가능성 - 목적은 분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것이나, 결과적으로는 본원에 이익될 가능성 높음.	- 교사 공급의 어려움 가능성 - 운영비 부족 가능성 - 분원에서 독립적으로 e-보육, 회계처리를 해야 하고 행정업무가 많아짐.	- 교사 공급의 어려움 가능성 - 프로그램의 단순화, 교구 부족 - 운영비 부족 가능성 - 분원에서 독립적으로 e-보육, 회계처리를 해야 하고 행정업무가 많아짐.
유의점	- 마구잡이식 분원 설치를 금함. - 예산운용 관리감독 철저 - 소규모 특성에 따른 자율적 보육과정운영 가능성을 열어둠 - 분원책임교사 수당지급 - 아동수 통합 불가. e보육상 분원으로 따로 보고토록 함.	- 시설장의 예산운용에 대한 관리감독 철저 - 소규모 특성에 따른 자율적 보육과정운영 가능성을 열어둠 - 분원책임교사 수당지급 - 아동수 통합 불가. e보육상 분원으로 따로 보고토록 함.	- 분원 몫의 운영비가 본원의 예산운용에 혼용되지 않도록 감독함. - 분원책임교사 수당지급 - 아동수 통합 불가. e보육상 분원으로 따로 보고토록 함.	- 아동수 영아 2인 미만이 될 경우 운영비 부족 가능성. 폐원승인요청가능 - 보육정보센터나 인근 국공립보육시설에서 프로그램 조력, 교재교구 대여 등 대여 - 교사 추가1인 인건비 100%지원

업안내를 따르도록 한다. 그러나 몇 가지 예외가 있는 바, 농어촌 특례에 따라 교사 대 아동 수 기준 적용을 받으며 규모가 비슷한 점에서 가정보육시설에 준하여 2세와 3세의 혼합반도 가능하다. 또한 지역특성에 따라 영아반만을 운영할 수 있고 특히 전체 아동 수가 5명 이하인 경우 연령과 무관하게 혼합반을 구성할 수 있다.

2) 운영시간 및 차량운행

운영시간은 원칙적으로 국공립보육시설 운영시간과 같은 07:30~19:30으로 하고, 지역사정에 따라 연장보육, 야간보육, 주말보육을 수행할 수 있다. 농어촌 기준에 준하여 차량운행비를 지원한다.

3) 취사부와 보육보조인력

소규모 보육시설에는 아동수와 상관없이 취사부를 둘 수 있으며 취사부 인건비는 100%지원 된다.

도서・벽지 지역에 다수 교사를 채용하기가 어려운 경우 소규모 보육시설은 보육보조인력을 둘 수 있다. 보육보조인력은 보육교사의 업무를 보조하는 역할을 하는 인력으로, 육아경험이 있는 55세 이하의 인격과 소양을 갖춘 자로 소규모 보육시설 운영자가 선발하게 된다. 소규모 보육시설의 경우 아동수가 적더라도 취사부 인건비를 지원하므로 취사부를 활용하여 교육을 이수하게 하고 보육보조인력의 역할을 겸할 수 있게 한다. 보육보조인력은 교사의 지시를 받아 보조업무를 하며 한 반을 단독으로 맡을 수는 없고 일정 수의 추가 아동을 더 보육할 수 있다. 이는 원칙상의 교사 대 아동 비율 규칙을 '성인 대 아동' 비율로 조정하게 적용하는 것으로 소규모 보육시설에만 예외적으로 적용된다. 보육보조인력이 투입될 때 반편성 기준은 다음 <표 Ⅲ-2-4>와 같다.

〈표 Ⅲ-2-4〉 보육보조인력 활용시의 반편성 인원 조정

아동연령	0세	1세	2세	3세	4세 이상
교사 대 아동 비율[주1)]	1:4	1:7	1:9	1:15	1:24
보육보조인력 활용시 추가 아동수	+2	+3	+5	-	-
성인 대 아동 비율[주2)]	2:6(1:3)	2:10(1:5)	2:14(1:7)	1:15	1:24

주1) 농어촌 특례를 적용한 비율임.
주2) 괄호 안은, 농어촌 특례를 적용하지 않았을 때 교사 대 아동 비율 원칙과 동일한 비율임을 보여 줌.

4) 인건비 지원

분원이 아닌 독립식 소규모 보육시설을 운영하는 시설장은 국공립보육시설 시설장 자격(일반 시설장 자격)을 갖춘 경우 가능하다. 아동 수가 20인 이하임을 감안하여 시설장이 보육교사를 겸임할 수 있으며 이 때 시설장은 현행 '현원 21인 이상 국공립보육시설에 시설장 인건비 80% 지원'이라는 규정 적용의 예외로 인정받아 아동수 11인 이상인 경우 인건비 80%, 5인 이상 10인 이하인 경우 60%지원을 가능하게 한다. 그러나 시설장 인건비 60%가 영아담당시 보육교사 인건비 80% 지원 기준에 못 미칠 때는 후자를 택하여 교사인건비로 지원한다. 아동수가 5인 미만인 경우는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 기준을 따른다.

교사 인건비 지원에 있어, 현재 규정은 아래의 <표 Ⅲ-2-5>와 같으나 이를 완화하여 20명 이하 소규모인 점을 감안하여 지원규정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 즉, 영아반 교사는 연령과 무관하게 아동 2명 이상이면 80%지원을 하고, 유아반 교사는 농어촌에서 유아가 초등병설 유치원을 많이 이용하는 현실을 고려하여 현원 5명 이상이면 인건비 30%가 지원되어야 하는 쪽으로 완화될 필요가 있다.

〈표 Ⅲ-2-5〉 국공립보육시설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 기준

현행 교사 인건비 지급 기준	소규모 시설 교사 인건비 지급 기준
○ 영아반 교사: 인건비 80% 지원 - 0세반: 아동 3명 기준 2명까지 지원 - 1세반: 아동 5명 기준 3명까지 지원 - 2세반: 아동 7명 기준 4명까지 지원 ○ 유아반 교사: 인건비의 30% 지원 - 3세반: 아동 15명 기준 8명까지 지원 - 4세이상반: 아동 20명 기준 11명까지지원	○ 영아반 교사: 인건비 80%지원 - 연령무관 아동 2명 이상 시 지원 ○ 유아반 교사: 인건비 50%지원 - 연령무관 아동 3명 이상 시 지원

이에 더하여 농어촌 특례를 적용하여 추가 교사 1인에 대해 인건비 100%를 지원한다. 이에 더하여 농어촌 보육교사 수당, 분원인 경우 분원운영지원교사 수당 등 지원금이 다양하다.

소규모 보육시설도 국공립보육시설에 속하기 때문에 운영기준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교사의 채용이 쉽지 않은 농어촌, 도서, 벽지, 산간 지역에 소수 영유아와 가정을 위한 특수한 형태의 보육시설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몇몇

예외적 허용 기준들을 논의하였다. 이를 정리하면 <표 Ⅲ-2-6>와 같다.

〈표 Ⅲ-2-6〉 소규모 보육시설 적용을 위한 변경/신규 운영 기준

	소규모 보육시설	일반 국공립보육시설
반편성 및 혼합반	- 만2세와 3세의 혼합반 가능 - 아동총수 5명이하인 경우 전연령 혼합반 가능 - 영아반만으로 구성 가능	- 영아와 유아 혼합반 불허
취사부 및 보육보조인력	- 아동수와 상관없이 취사부 채용, 취사부 인건비 100%지원 - 취사부를 보육보조인력으로 활용 (보육보조인력 투입으로 보육아동수 대비 성인 비율 제고)	- 보육보조인력 없음
종사자 인건비	- 20명 이하 시설에도 시설장 인건비 지원 - 추가 교사1인 인건비 100% 지원 - 영아반 교사: 아동 현원 2명 이상시 80%지원 유아반 교사: 아동 현원 3명 이상시 50%지원	- 현원 21인 이상 시설 시설장 인건비 지원 - 유아반 교사: 3세 8명이상, 4세 11명이상시 인건비 30%

마. 소규모 보육시설의 지도·감독 및 폐원

소규모 보육시설에 대한 지도 및 감독, 그에 따른 벌칙 등은 모두 영유아보육법에 따른다. 다만 소규모 보육시설에 대해 달리 적용되는 규정(반편성, 보육보조인력 등)을 감안하여 지도 및 감독이 실시되어야 한다.

소규모 보육시설이 설치된 지역의 영유아 수가 급격히 줄어들거나 더 이상 증가하지 않아 등록아동이 2명 이하로 감소한 경우, 이러한 상태가 6개월이상 지속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시설의 폐원을 명령할 수 있다. 또한 2명 이하의 상태로 3개월이 지속된 경우에도 운영의 어려움을 시설장이 증명하고 폐원을 요청한다면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방자치단체장은 폐원할 수 있다.

시설이 폐원되어 건물이 더 이상 보육시설로 사용되지 않을 경우, 시설과 설비, 교재, 교구 등 모든 집기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 귀속되고 시·군·구청장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여기에는 지역주민의 마을회관, 초중등학생의 공부방, 노인복지관, 여성인력개발센터 등 다목적 활용이 포함된다.

(2) 이동식 놀이 버스

가. 사업의 목적

이동식 놀이 버스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운영(위탁 운영 포함)하는 가정 육아 지원을 위한 사업이다. 아동은 주변의 사물이나 장난감 등 새로운 것에 흥미를 가지고 놀이를 하는 과정에서 사물을 관찰하고, 신체 및 감각기관을 발전시키는 가운데 발달과업을 성취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놀이는 아동 발달을 위한 가장 중요한 수단이라 할 수 있다.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경우 자연스럽게 놀이를 통한 상호작용을 경험하게 되지만, 미이용 아동의 경우 부모의 특별한 관심이 없는 경우 놀이를 통한 발달과업을 성취하기가 어렵다. 특히, 조손가족, 다문화 가족 등이 증가되고 있는 농어촌 영유아 가구의 경우 다양한 자극에 노출될 가능성이 작고 언어 능력의 발달이 지연되는 등의 문제점 등이 나타나고 있으나, 원거리로 인하여 보육 서비스 기회가 제한되어 있다.

농어촌에 거주하는 시설 미이용 영유아에 대한 이동식 놀이 버스 서비스를 통하여 아동 발달을 촉진하고, 육아 관련 교육 기회가 희박한 주양육자에게 놀이 및 상호작용의 중요성 교육 기회를 증진시키고자 한다. 이를 통해 양육자의 육아 방식 개선을 유도함으로서 공보육 서비스 기회가 없는 농어촌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고자 한다.

나. 사업 구성

1) 사업 개요

이동식 놀이 버스는 놀이감(역할놀이, 신체놀이, 음률놀이, 조작놀이 등)과 언어활동용 도서를 가지고 농어촌 마을에 방문하여 놀이교실과 놀잇감 및 도서 대여사업 및 각종 문화 프로그램 등의 특별지원사업을 수행한다. 사업 대상자는 보육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농어촌 마을의 영유아 및 부모 또는 영유아 양육자이다.

이와 같은 사업 수행을 위하여 놀이버스 운영본부를 설치하고, 운영본부는 보육전문요원과 지역사회자원을 활용하여 사업을 수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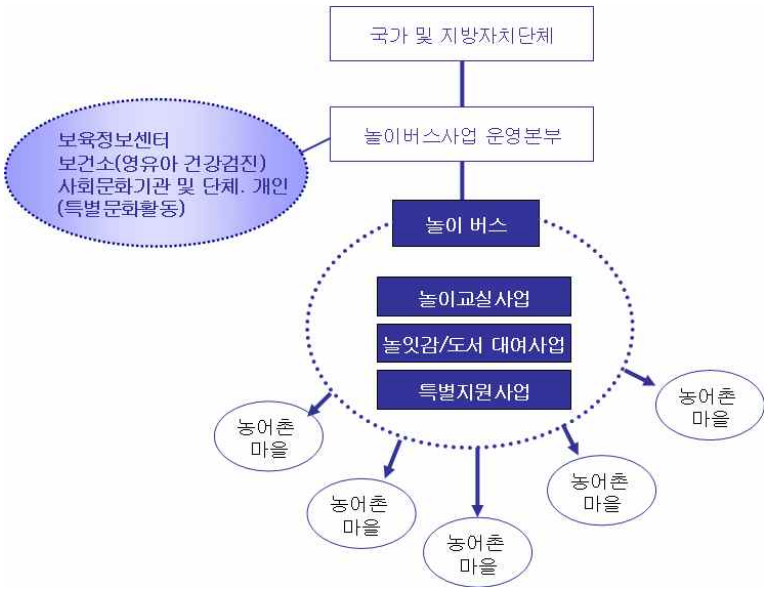

[그림 Ⅲ-2-3] 이동식 놀이버스 사업 모형

2) 운영 인프라

이동식 놀이 버스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놀잇감 및 도서와 관리체계, 이동 수단인 차량이 최소한의 인프라로 확보되어야 하며, 활용가능한 지역사회 자원 네트워크를 조직하는 것 또한 운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

먼저, 구비되어야 하는 놀잇감 및 도서는 아동의 연령별 발달을 촉진하고, 상호작용을 용이하게 하며, 안전성, 무해성이 입증된 품목들이어야 한다. 주 1회 놀이 버스 서비스를 이용하는 아동 1명은 년간 최대 놀잇감과 도서 200여종을 대여할 수 있기 때문에 놀이버스 운영 본부는 연령별로 각각 이용할 수 있는 놀잇감 100여종 이상과 도서 100여종 이상을 구비해야 한다. 즉, 하나의 놀이 버스 운영본부는 1,000여종 이상의 놀잇감과 장난감이 구비되어야 한다. 또한, 놀잇감 및 도서 대여사업이 아동의 균형잡힌 발달을 촉진할 목적을 가진다고 할 때, 놀잇감은 신체놀이, 음률, 조작, 역할 놀이를 할 수 있도록 영역별 구성이 되어야 한다.

〈표 III-2-7〉 놀이 버스 놀잇감 및 도서구성

구분	종류	구성
신체놀이	굴리기, 끌기, 만들기, 탈 것, 던지기(다트 등) 등	연령별 25종 이상
역할놀이	주방놀이(소꿉), 병원놀이, 시장놀이, 각종 상점 등	연령별 25종 이상
음률놀이	실로폰, 탬버린, 짝짝이, 건반악기, 타악기 등	연령별 25종 이상
조작놀이	각종 퍼즐 및 블록, 각종 소리나는 도구들	연령별 25종 이상
비디오/도서	인지능력개발, 창의력 개발, 생활습관 등	연령별 100종 이상
육아용품	전동 유축기, 젖병 소독기 등	선택사항

다음은 놀잇감 및 도서의 관리 체계이다. 놀잇감에 대한 안전점검은 상시 이루어져야 하며 소모품·부속품 또한 적시에 교환되어야 한다. 대여 물품의 청결을 위하여 주기적으로 세척 및 소독되어야 한다. 연 2회 모든 놀잇감은 고온 살균처리되어야 하며, 대여를 위해 놀이 버스에 싣는 놀잇감 및 도서는 자외선 멸균 과정을 거쳐야 한다.

둘째, 이동식 놀이 버스는 놀잇감 및 도서 수납이 가능하도록 개조할 수 있고, 대출 및 반납업무가 가능한 컴퓨터를 장착하여 빠른 시간 내에 도서 또는 놀잇감 대출 및 반납 사업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그 밖에 영유아 및 부모가 안전하게 도서 또는 놀잇감을 선택할 수 있도록 차량의 안전 관리를 수행해야 한다. 또한, 차량 내부 통로는 평판 작업을 하여 아동의 넘어짐을 방지해야 하며, 차량 출입 계단은 유아의 보폭에 맞는 보조 계단을 설치하여야 한다.

셋째, 지역사회 전문 기관 및 인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놀이 버스의 특별지원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전문 기관 및 인력의 범위는 놀이 버스가 순회하는 농어촌 지역이 상대적으로 문화 향유 및 의료 혜택의 기회가 적다는 점을 감안하여 놀이 버스 이용 영유아 및 부모에 대한 의료 및 문화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 자원을 중심으로 한다.

3) 운영 프로그램

이동식 놀이 버스는 정기적으로 마을을 방문하여 대여 사업, 놀이 교실 사업, 특별지원 사업을 운영한다.

대여 사업은 놀이 버스 순회 마을의 미취학 영유아 및 주양육자를 대상으로 한다. 대여물품의 분실 및 손실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회원제로 운영하여야

하며, 놀이 버스 운영본부는 대여 관련 규정을 만들어서 활용할 수 있다. 적어도 1회에 놀잇감 2개, 도서 및 비디오 2개 이상을 대여할 수 있고 놀잇감 사용 매뉴얼을 함께 제공하기를 권장한다. 특히, 다문화 가정이 많은 점을 감안하여 다국어로 번역된 매뉴얼 활용을 적극 권장한다.

놀이 교실 사업은 3명 이상의 집단 활동을 원칙으로 하나, 마을 영유아 상황에 따라 1:1 활동도 가능하다. 놀이 교실 사업은 마을 유아의 발달 상태와 흥미, 계절과 놀이교실 운영 환경을 고려하여 마을별 놀이 교실 활동 계획을 수립하고 보육 교사에 의해서 수행되어야 한다. 놀이 활동 계획에는 영유아의 기본 생활 습관, 미술, 과학, 음률 활동과 사회성 발달 등을 도모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집단 활동은 마을회관, 정자 등의 장소를 활용하여 1회 90분 이상 진행되며, 1:1 활동은 1회 30분 가량 가정 방문을 통하여 진행한다. 부모 또는 주 양육자가 놀이 교실 활동을 통하여 영유아와 상호 작용 방법 및 놀이 방법을 습득할 수 있도록 놀이 교실 활동에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해야 한다.

특별 지원 사업은 부모 교육, 각종 공연, 아동 발달 검사, 건강 검진 등의 각종 특별 프로그램을 지역 기관 및 단체로부터 지원받아 개설하는 것이다. 특별 지원 사업은 놀이 교실 사업을 대체하여 운영될 수 있다.

4) 운영 인력

이동식 놀이 버스 운영 인력은 최소한 전문 보육 인력 1명과 운전 및 대여 사업 지원 인력 2명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전문 보육 인력은 초대졸 이상의 보육교사자격증 소지자로 놀이 교실 월별 운영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놀이교실을 운영하며 놀이 교실 내 상호작용 과정에서 부모의 양육문제를 상담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운전 및 대여 사업 지원 인력은 놀이 버스의 운전을 담당하며, 놀잇감 및 도서 등의 대여와 반납, 장난감 세척 및 소독 관련 업무를 지원한다.

〈표 Ⅲ-2-8〉 종사자 구성 및 자격과 직무내용

구분	자격	직무 내용
전문 보육 인력	· 보육교사자격증 소지자	· 놀이교실 운영
운전 및 대여 사업 지원 인력	· 운전면허 1종 · 컴퓨터 조작능력 소유	· 버스 운영 및 관리 · 장난감 대여 및 반납관련 업무
운영 관리 지원인력	· 컴퓨터 조작능력 소유	· 회원 관리 업무 · 장난감 세척 및 소독 지원

다. 사업 추진체계

이동식 놀이 버스 사업은 수행 주체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며, 보육정보센터 등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사업 수행 주체는 놀이 버스 운영본부를 설치하여 사업을 수행한다. 각각의 역할은 다음의 <표 Ⅲ-2-9>과 같다.

〈표 Ⅲ-2-9〉 이동식 놀이 버스 추진체계

추진주체		기능
보건복지가족부 보육기반과		· 농어촌 가정육아 지원 계획 수립 및 국고보조 · 지자체 사업 계획 심사 및 선정 · 사업 평가 및 관리
시·도 및 군 보육업무 담당부서		· 사업 운영 주체 선정 및 평가 · 예산 배정 및 회계 관리
이동식 놀이 버스 운영본부 (보육정보센터 등)	관리자	· 운영 계획 수립 · 종사자 임용 및 자산 관리(장난감, 도서, 차량 등) · 지역 인프라 연계 · 사업 평가
	종사자	· 프로그램 운영 · 지역 아동 관리
부모		· 적극 참여, 서비스 평가

(3) 부모협동 놀이그룹 사업

가. 사업의 목적

'부모협동 공동놀이'란 영유아보육법에 의거한 보육시설은 아니지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보육서비스의 일종으로, 농어촌·도서·벽지 지역에 거주하는 부모들이 '자치적으로 다 같이' 자신의 자녀를 포함하여 영유아의 보육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원칙적으로 보육교사를 별도로 고용하지 않고 영유아 자녀가 있는 부모들이 순번을 정해서 보육교사의 역할을 주도적으로 수행한다. 따라서 이 사업에 참여하는 부모들은 사업의 대상(객체)이자 동시에 공동으로 책임을 지고 실질적으로 사업을 이끌어 가는 주체이다.

‘부모협동 공동놀이’사업은 인근에 보육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는 지역에 우선적으로 지원함으로서 자녀보육에 대한 부모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부모들이 공동보육이란 방식을 통해 육아정보를 교류하고, 육아의 어려움을 서로 의지하며 해소해 나가며 아동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도모하는 데에 사업의 목적이 있다.

나. 운영모델

1) 설치 기준 및 설치 절차

부모협동 놀이그룹 사업이 운영할 수 있는 지역은 보육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지역에 설치하거나 또는 인근에 보육시설이 설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 면적이 넓어 실질적으로 기존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 설치할 수 있다.

설치기준의 기본 요건은 이 사업을 운영하려는 장소의 내부구조와 시설설비가 보육활동을 할 수 있는 곳으로 인정된 경우로 한하며, 해당 지역의 교회·절·성당과 같은 종교단체 건물이나 마을회관과 같은 공공건물, 폐가 등에 설치할 수 있다.

설치 전에 본 사업의 수요 및 지역여건, 지속적인 운영 가능성 등에 대해 마을 이장 또는 관할 시장·군수와 충분한 상담이 이루어 진 후에 관할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때 놀이그룹 참여 부모가 5인 이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2) 운영방법

이 사업의 규모는 상시 영유아 3인 이상을 보육할 수 있어야 하며, 명칭은 “○○부모협동 어린이 놀이방” 등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이 사업의 운영 책임은 놀이그룹에 등록한 모든 부모가 지며, 실질적인 운영 방법은 ‘부모자치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예컨대, 운영시간이나 이용료 등은 ‘부모자치 운영위원회’에서 협의를 걸쳐 자율적으로 책정한다.

보육대상은 원칙적으로 해당 지역에 거주하면서 놀이그룹에 등록한 부모들의 영유아(0세~만 5세) 자녀에 한한다. 놀이그룹에 등록한 부모들이 순번을 정해서 보육교사로 활동하면서, 취사·청소·장난감 정리 등 보육과정 이외의 활동을 병행한다. 구체적인 보육교사의 역할의 범위와 내용도 ‘부모자치 운영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다. 놀이그룹의 일일 보육교사로 참여하는 부모 중 담당 시간동안 일어나는

일을 일차적으로 책임지는 부모를 '그룹리더'라 명명한다. 즉, 그룹리더는 순번을 정해서 참여하는 모든 부모가 담당한다. 그룹리더는 원활한 보육활동을 위하여 해당지역 보육정보센터에 컨설팅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때 보육정보센터는 그룹리더의 요청에 응해야 한다.

〈표 III-2-10〉 부모참여놀이그룹사업의 '부모자치운영위원회' 지침

- 놀이그룹 운영의 자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부모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높이기 위하여 '부모자치 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 '부모자치 운영위원회'의 정수는 놀이그룹에 등록한 가구 총수의 30%이내로 구성하며, 면장, 마을대표, 부녀회장 등 지역사회인사를 포함한다.
- '부모자치 운영위원회'의 장(이하, 위원회장)을 선출하며 위원회장은 놀이그룹의 대표자로 활동한다. 위원회장의 임기는 1년이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부모자치 운영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의결정족수는 운영위원회의 과반수 참석과 과반수 찬성이다.
  ① 놀이그룹 운영 규정의 제정이나 개정에 관한 사항
  ② 놀이그룹 예산 및 결산의 보고에 관한 사항
  ③ 영유아의 건강·영양 및 안전에 관한 사항
  ④ 보육시간, 보육과정, 이용료 등 보육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⑤ 참여 부모의 역할 범위와 활동에 관한 사항
  ⑥ 그 밖에 보육시설 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사항
- 위원회장은 분기별로 군수에게 놀이그룹의 운영현황을 보고한다.

한편, 등록한 부모들이 순번으로 보육교사로서 활동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부모자치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보육교사 또는 아이돌보미 교육 이수자 등을 고용할 수 있는데 이 때 발생하는 인건비는 자체적으로 해결한다.

부모 대 아동비율은 영아의 경우, 놀이집단에 참석한 영아의 부모 중 1/2이상이(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함) 영아들과 함께 같은 장소에 있어야 한다(예: 영아가 5명이 있다면, 부모는 2.5명으로 최소 3명의 부모가 있어야 한다). 유아의 경우, 놀이집단에 참석한 유아의 부모 중 1/3이상이(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함) 유아들과 함께 같은 장소에 있어야 한다(예: 유아가 10명이 있다면, 부모는 약 3.3명으로 최소 3명의 부모가 있어야 한다).

영유아의 안전관리에 대한 문제가 우려되므로 상행보험과 배상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그 외의 사항은 국공립보육시설 기준을 참고하여 '부모자치 운영위원

회’에서 정한다.

3) 지도·감독 및 운영 위반시 조치사항

가) 지도·감독

놀이그룹의 ‘부모자치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운영현황을 분기별로 관할 시장·군수에게 보고하고, 시장·군수는 1주 이내에 시·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할지역의 놀이그룹의 운영 전반에 대하여 매년 2회 이상 지도·점검하게 한다. 중점 점검 사항으로는 ‘지침(규정)에 따른 운영 준수 여부’, ‘부모 대 아동수 비율 준수 여부’, ‘회계관리 및 처리의 적정성(수입지출 근거확인)’, ‘운영시간 준수 여부’, ‘급간식 운영 및 건강·위생관리 실태’, ‘안전관리 실태(안전교육, 비상대비, 놀이시설, 보험가입 등)’ 등이다. 지도·점검결과 시정 등의 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문서로써 지도하고 그 이행결과를 확인한다.

나) 운영 위반시 조치사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부모협동 놀이그룹 운영시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국비(지방비포함)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 부모협동 놀이그룹 사업의 업무 수행 중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가한 경우
- 설치 후 3년 이내 운영을 중단한 경우. 단, 자연재해 제외
- 사업 목적 이외에 국고(지방비포함) 지원금을 사용한 경우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고(지방비포함) 지원금을 교부받은 경우

(4) 농번기 임시 보육방 운영 모델

가. 사업의 목적

농번기 임시 보육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운영(위탁 운영 포함)하는 가정 육아 지원을 위한 사업이다.

농번기 임시 보육방은 농번기 보육 등의 특수보육 기회의 확대를 위하여 농업 종사자 가정의 영유아가 3명 이상 있는 마을(인근 마을과 공동 설치 가능)을 대상으로 보육서비스 제공할 목적을 가지고 있다. 농번기 보육을 위하여 보육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마을회관, 교회 또는 지역주민 일반 가정을 이용하여 안전, 위생 등의 최소 설치 규정을 충족시키는 곳에 일정시기 동안 보육방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따라서, 농번기에 한시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여 해당 지역 국공립 보육시설이 위탁 운영하게 하는 보육지원 사업이다. 이 같은 일시보육방 설치·운영을 통해서 농번기 농촌 가정의 일손 부족에 따라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방치될 위험을 감소시키고 보육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데 목적이 있다.

나. 사업 구성

1) 사업 개요

현대의 농어촌은 농어업에 종사하더라도 특수작물재배 등 농번기·농한기가 따로 없거나 전통적인 벼농사와는 다른 경우도 많아 시기별 필요성의 편차가 그다지 크게 벌어지지는 않고 있지만, 중산간/평야지역, 농어업 증가지역 등은 벼농사 중심지역으로 초여름~가을에 보육 서비스 필요성이 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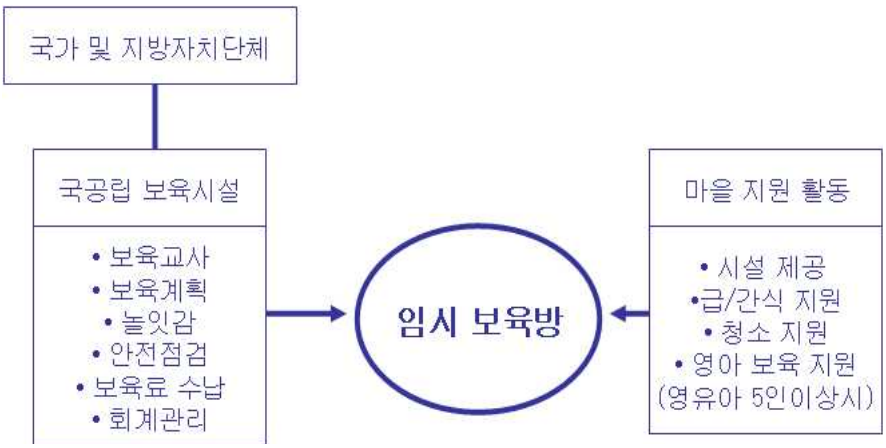

[그림 III-2-4] 임시 보육방 사업 모형

농번기 임시 보육방은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년간 최대 6개월까지만 서비스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엄격한 보육 시설 설치 규정을 따르지 않는다는 점에서 보육시설은 아니다. 단지, 보육방을 개설함으로서 보육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농어촌 마을의 영유아의 건강한 발달과 부모 또는 영유아 양육자를 지원한다.

2) 운영 인프라

마을회관, 노인정, 교회 등 마을 공동시설 및 마을 주민의 주택에도에 설치할 수 있다. 설치된 농번기 임시 보육방은 취사시설과 화장실, 세면대 설비가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보육방 면적은 가능한 영유아 1인당 면적 2.64m^2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주민 주택에 설치하여 면적 기준을 준수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방 2칸을 활용할 수 있으나 방 간에는 실내에서 이동이 가능하여야 하며 벽면 등에 가리지 않고 보육교사가 보육인원을 한 눈에 볼 수 있어야 한다.

보육방 내부 설비는 유아의 안전을 위하여 창문, 문 등에 안전장치를 하여야 하며, 기존 집기 및 교구장이나 수납장으로 사용하는 집기에도 안전조치를 해야 하며 소화기 등의 소방안전관련 물품을 구비해야 한다. 아동 연령별 보육 프로그램이 가능한 정도의 교재교구가 구비되어야 한다.

보육방 운영을 위탁받은 국공립 보육시설장은 보육방 개소 2주전까지 전기안전점검과 소방안전점검을 받고 그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3) 운영 프로그램

농번기 임시 보육방의 운영 시간은 보육방 설치의 목적이 부모가 일하는 시간에 아동을 안전하게 보육하기 위해서이기 때문에 보육방이 설치된 마을 여건에 따라 보호자와 보육방 운영자의 협의에 의하여 기준시간 초과보육 및 휴일보육을 운영할 수 있다.

보육방에는 아동 연령에 적합한 교재교구 및 놀이감을 비치하고 보육교사가 표준보육과정에 의거하여 보육서비스를 제공한다.

농번기 보육방은 국공립 보육시설 이용료의 70%를 내고 다닐 수 있다.

4) 운영 인력

농번기 임시 보육방은 보육방을 운영하는 국공립 보육시설 소속의 임시 보육교사

를 한 명 파견한다. 농어촌의 부모들도 자녀를 잘 키우고자 하는 욕심과 교육열이 도시와 다르지 않고, 오히려 교육/보육 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에 대해 조바심을 더욱 느끼고 있기 때문에 농번기 임시 보육방은 설치 시기가 한정적임에도 불구하고 질 높은 보육을 할 수 있도록 보육교사를 파견한다.

또한, 교사보조 및 취사와 급·간식, 청소 등의 업무는 지역 주민 인력으로 지원할 수 있다. 마을에서는 급·간식 지원 인력 1명은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하며, 동일한 사람이 급·간식 지원 활동을 지속적으로 할 필요는 없으나 보육방 급·간식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

보육 대상 영아와 유아가 혼재되어 5명 이상인 경우 마을은 육아경험이 있는 지원 인력 1명 이상을 추가로 배치해야 한다. 이들은 영아에 대한 기저기 갈기, 우유 먹이기, 재우기 등의 보살핌과 보육교사가 지정하는 시간과 위치에서 아동 안전 상태의 점검 및 보호, 그리고 보육교사의 보육활동 중 환아 등 특별 보살핌이 필요한 아동 지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또한, 수업 및 교재교구 준비도 지원할 수 있다. 자원활동을 할 주민이 교육을 원하는 경우 건강가정지원센터 아이돌보미 교육을 이수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표 Ⅲ-2-11〉 종사자 구성 및 자격과 직무내용

구분	자격	직무 내용
보육 교사	· 보육교사자격증 소지자	· 보육 프로그램 운영
마을 지원 인력	· 육아 및 가사 경험 · 교사 보조업무 수행시 아이돌보미 교육 이수	· 급·간식 · 청소 · 보육교사 보조(5명이상 수용시)

다. 사업 추진체계

농번기 임시 보육방 사업은 수행 주체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며, 국공립 보육시설 등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각각의 역할은 다음의 <표 Ⅲ-2-12>과 같다.

〈표 III-2-12〉 농번기 임시 보육방 추진체계

추진주체		기능
보건복지가족부 보육기반과		· 농어촌 가정육아 지원 계획 수립 및 국고보조 · 사업 계획 심사 및 선정 · 사업 평가 및 관리
시·도 및 군 보육업무 담당부서		· 사업 주체 선정 · 예산 배정 및 회계
국공립 보육시설	관리자	· 운영 및 보육 계획 수립 · 종사자 임용 및 교재교구 지원 및 관리 · 안전점검 · 보육료 수납 및 회계관리 · 사업 평가
	종사자	· 프로그램 운영 · 주민 자원 인력 관리
마을 부녀회 또는 자치기구		· 사업 운영 지원
부모		· 서비스 평가 · 이용료 납부

(5) 준공영(準公營) 섬마을 보육가정

가. 사업의 목적

'준공영 섬마을 보육가정'이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시설은 아니지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보육서비스의 일종으로, 인근의 보육시설을 이용하기가 어려운 지역 중에서 도서지역에 한정하여 해당 도서지역의 주민이 자신의 집에서 영유아의 보육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 때, 자신의 집에서 영유아를 보육하는 자를 '보육모'라 한다. 국고 및 지방비의 지원을 받는다는 '공적인' 성격과 보육의 장소가 보육모 개인의 집이라는 '사적인' 성격을 모두 지녔다는 점에서 '준공영'이란 명칭을 사용한다.

이 사업은 보육시설을 설치하기가 어려운 도서지역에 사는 영유아들에게 비록, 제도권 보육시설은 아니지만 이용료 지원을 동일하게 보장하는 등 보육의 기회균등을

제공하고, 지역주민의 보육 수요를 충족시키며, 더 나아가 보육모와 취사부에게 인건비를 지원하면서 일자리 창출의 효과도 볼 수 있는 사업이라 하겠다.

나. 운영모델

1) 설치 기준 및 설치 절차

'준공영 섬마을 보육가정'을 운영할 수 있는 지역은 보육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도서지역 중 육지와 교량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는 소외지역에 한정한다.

설치의 기본 요건은 보육모의 가정집 내부구조가 보육활동을 할 수 있는 곳으로 인정된 장소이어야 한다. 준공영 섬마을 보육가정은 상시 보육모의 자녀 포함 총 5인 이하의 영유아를 보육할 수 있으며, 이 때 총 영유아에서 보육모 자녀는 과반을 넘을 수 없다. 예를 들어, 총 영유아수가 5인이라면 보육모 자녀는 2명까지 가능하다. 따라서 보육가정의 설치 기준으로 최대 정원 5명 영유아에 맞는 규모인지, 보육실, 화장실, 주방, 놀이기구 등의 기본적인 시설·설비가 가능한 지 등을 고려해야 하겠다.

설치 절차는 '준공영 섬마을 보육가정'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설치인가 신청서를 관할 시장·군수에게 제출하되, 사전에 이 사업의 수요 및 지역여건, 지속적인 운영가능성 등에 관하여 관할 시장·군수와 충분히 상담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최종적으로 관할 시장·군수는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가한다.

2) 운영방법

이 사업의 명칭은 "○○ 섬마을 놀이방"으로 보육대상은 만 0세~만 5세의 취학전 아동을 원칙으로 하지만, 필요한 경우 만 12세까지 연장하여 보육할 수 있다.

보육료 지원은 일반 보육시설 이용할 때와 동일하게 보육료 지원을 받을 수 있으나, 보육모의 자녀들은 보육료 지원을 받지 못한다. 이러한 경우 보육시설이나 유치원 미이용 아동 양육수당비는 받을 수 있다.[8)]

---

8) 기관 미이용의 경우 받을 수 있는 양육비는 두 종류가 있다. 첫째,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지급하는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 양육수당'으로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중 만0~1세 아동에서 일정 소득이하(최저생계비의 120%이하)의 아동에 대하여 월 10만원의 양육수당을 지원하는 것(2009년 7월부터 시행)과 둘째, 농림부에서 지급하는 양육비로서 지원대상 기준은 영유아가 보육시설이나 유치원에 다니지 않을 경우, 만 0~4세는 법정 저소득층 자녀에게 지원하는 보육료 지원액의 35%, 만 5세는 50%를 지원한다.

보육가정의 운영시간은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보호자의 근로시간 등을 참작하여 조정 운영할 수 있다. 또한 보육가정은 공휴일을 제외하고 연중 계속 운영하여야 하며, 지역 및 시설 여건에 따라 보호자와의 협의에 의하여 기준시간 초과보육 및 휴일보육을 운영할 수 있다.

보육가정 사업의 가장 특징적인 것은 보육모의 존재이다. 보육교사 공급이 수월하지 않는 도서지역임을 감안하여 해당 지역 주민들 중에서 다음의 자격 중 하나를 갖추어야 한다.

① 보육교사 자격증 소지자
② 유치원교사 자격증 소지자
③ 초·중등학교 교사 자격증 소지자
④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⑤ 간호사 자격증 소지자
⑥ 아이돌보미 교육이수자
⑦ 지역주민 5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보육정보센터에서 실시하는 신규 보육시설장 교육 총 40시간의 수업을 이수한 자
※ 지방자치단체는 보육정보센터에 보육모의 '신규 보육시설장 교육' 을 요청할 수 있다.

보육모의 인건비는 100% 지원한다. 이 때 보육모의 자격에 따라 인건비 수준이 달라지는 바, 보육교사나 유치원교사 자격자등 ①~⑤에 해당하는 자는 국공립시설 보육교사 인건비 기준의 70% 수준으로, ⑥~⑦에 해당하는 자는 보육교사 인건비 기준의 60% 수준으로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경력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보육모는 표준보육과정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도서지역의 자원을 활용하여 보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총 영유아 중 보육모 자녀를 제외하고 영아가 과반이상일 경우, 취사부를 두어야 한다. 예를 들어, 영유아 총 5인이 보육모 자녀가 2명, 보육모 자녀가 아닌 아동이 3명인 경우 3명 중 영아가 2명 이상이면 취사부를 두어야 한다. 이 때 취사부는 자격을 갖출 필요가 없으며 아이를 키워본 경험이 있는 65세 이하인 자로 필요시 보조인력으로 활동할 수 있다. 취사부의 인건비는 100%지원하며 기준 금액은 국공립 보육시설 취사부 인건비의 50%에 해당한다.

영유아의 안전관리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상해보험과 배상보험은 의

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보험가입에 관한 사항은 국공립보육시설 기준을 따른다.

3) 지도·감독 및 운영 위반시 조치 사항

가) 지도·감독

준공영 섬마을 보육가정을 운영하는 자(보육모)는 6개월 간격으로 관할 시장·군수, 시·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할지역의 놀이그룹의 운영 전반에 대하여 매년 2회 이상 지도·점검하게 한다. 중점 점검 사항으로는 '지침(규정)에 따른 운영 준수 여부', '부모 대 아동수 비율 준수 여부', '회계관리 및 처리의 적정성(수입지출 근거확인)', '운영시간 준수 여부', '급간식 운영 및 건강·위생관리 실태', '안전관리 실태(안전교육, 비상대비, 놀이시설, 보험가입 등)' 등이다. 지도·점검결과 시정 등의 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문서로써 지도하고 그 이행결과를 확인한다.

나) 운영 위반시 조치사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준공영 섬마을 보육가정 운영자에게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국비(지방비포함)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 부모협동 놀이그룹 사업의 업무 수행 중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가한 경우
- 설치 후 3년 이내 운영을 중단한 경우. 단, 자연재해 제외
- 사업 목적 이외에 국고(지방비포함) 지원금을 사용한 경우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고(지방비포함) 지원금을 교부받은 경우

Ⅳ. 농어촌 보육서비스 유형별 수요 조사의 분석

농어촌 지역 즉, 행정구역 상 군지역의 보육담당 공무원과 읍·면(특히 면) 지역의 주민 중 영유아 부모를 대상으로 앞서 논의한 농어촌 지역 보육서비스 모델에 대해 설명을 하고 각각에 대한 수요를 조사하였다. 본 장은 그 수요조사의 결과를 문항별로 분석하여 제시하고 있다.

즉, 본 수요조사는 제1차와 제2차 등 2회에 걸쳐 진행된 바, 1차는 전국 87개 군지역의 공무원이 대상이었고 2차는 1차 조사에서 응답하지 않은 군 지역을 대상으로 영유아 가정이 많은 것으로 추정되는 면지역을 표집하여 주민 가구 방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제1차 조사는 2009년 6월 ~7월에 걸쳐 e-메일 설문조사를 통해 이루어졌다. 전국 87개 군(郡)지역에 대한 전수 조사를 의도하였으나 61%정도인 52명의 군 공무원만이 조사에 참여하여 응답하였다. 조사에 응한 군지역은 다음 <표 Ⅳ-0-1>과 같다.

〈표 Ⅳ-0-1〉 농어촌 보육서비스 제1차 군단위 수요조사 참여 지역

시·도	군
인천광역시	강화
울산광역시	울주
경기도	양평, 여주, 가평
강원도	영월, 고성, 평창, 정선, 양주, 횡성, 인제
충청북도	증평, 음성, 청원, 단양, 진천
충청남도	금산, 연기
전라북도	무주, 완주, 순창, 부안
전라남도	영암, 영광, 신안, 진도, 완도, 담양, 고흥, 강진, 구례, 장흥, 화순, 함평
경상북도	울진, 의성, 봉화, 칠곡, 청송, 성주, 청도, 영양, 예천, 군위
경상남도	하동, 고성, 함양, 함안, 거창, 의령, 산청
총 10개 시·도	총 52개 군

군청 보육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제1차 조사에서 누락된 군지역의 주민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조사의 특징은 영유아를 양육하고 있는 부모, 즉

직접 수요자의 의향을 조사하였다는 점과 가정방문에 따른 조사 결과를 생산하였다는 점, 그리고 각각의 마을(리) 단위로 1명씩을 표집하여 전체 면의 수요를 계산하였다는 점 등이다. 물론 면의 모든 리를 방문, 조사하지는 못하였으므로 여기에 제시되고 있는 숫자는 최소 추정치라고 할 수 있다. 참여자는 **전국 10개군 54개 면(面) 주민 총 352명(345여개 行政里 포함)**으로, 참여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본 보고서 1장 3절 연구방법 부분의 설문조사 방법 내용 〈표 Ⅳ-0-2〉 을 참고할 수 있다.

〈표 Ⅳ-0-2〉 농어촌 보육서비스 제2차 읍면단위 수요조사 참여 지역

해당 도	해당 군 및 읍·면
충북	보은군(내북면, 산외면, 속리산면, 장안면, 탄부면, 회남면, 회인면),
충남	서천군(기산면, 마산면, 문산면)
전북	임실군(강진면, 덕치면, 삼계면, 성수면, 신덕면, 신평면, 지사면, 청웅면)
전남	곡성군(고달면, 목사동면, 오산면, 죽곡면) 보성군(겸백면, 노동면, 문덕면, 미력면, 웅치면)
경북	김천시(감천면, 대덕면, 부항면, 증산면) 상주시(내서면, 외남면, 은척면, 중동면, 화남면, 화북면) 영덕군(남정면, 달산면, 지품면, 창수면)
경남	창녕군(계성면, 길곡면, 성산면, 유어면, 이방면, 장마면) 합천군(대양면, 덕곡면, 묘산면, 봉산면, 쌍백면, 쌍책면, 청덕면)
계	총 10개 군 54개 면

1. 농어촌 소규모 보육시설

가. 제1차 군단위 공무원 수요조사

군 보육담당자에 대한 소규모 보육시설 설치 수요조사는 세 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는 산간, 도서 등 거주지 특성상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영유아의 수, 둘째, 소규모 보육시설 설치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 셋째, 소규모 보육시설 설치에 대한 의지 등이 그것이다.

1) 기존 보육시설에의 접근성

각 지역별로 보육시설의 위치가 거리상 너무 멀어 이용을 못하고 있는 영유아가

얼마나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가장 많은 인원이 조사된 곳은 경상북도로 총 4개군에서 49~54명으로 보고되었고 다음으로는 인천광역시 강화군 10명, 전라북도 9명 등의 순이었다. 응답율이 높았던 전라북도와 강원도, 경상남도의 군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미이용 아동의 수가 많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어 이 지역 농어촌은 보육시설 이용율이 높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미이용 영유아가 많은 지역의 특성을 보면 산간지역인 경우가 가장 많고(6개 도), 인천광역시와 전라남도의 경우 도서지역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들 산간, 도서 지역 영유아에 대한 지자체별 특수 지원사업을 전혀 실시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국공립 또는 소규모 보육시설이 우선 설치될 필요가 있는 곳을 짐작할 수 있게 한다. 자세한 조사결과는 <표 Ⅳ-1-1>에 나타나있다.

〈표 Ⅳ-1-1〉 거리가 멀어 보육시설 이용을 하지 못하는 영유아 현황

단위: 명

도명	군명	읍·면 명	인원	지역특성
인천광역시	강화군	삼산면	10	도서지역
충청남도	금산군	남이면	2	산간지역
전라북도	완주군	동상면	4	산간지역
	부안군	위도면	5	무응답
전라남도	신안군	흑산면	5	도서지역
경상북도	울진군	서면(왕피리)	10-15	산간지역, 기타
	의성군	춘산면	24	산간지역, 기타
	봉화군	재산면	10	산간지역
	영양	일월면	5	산간지역
경상남도	고성군	상리면	8	기타

2) 소규모 보육시설 설치 필요성

농어촌, 도서, 벽지 대상 소규모 보육시설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보는 지역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16개군 지역에서 수요가 나타났고 지역적으로는 전라북도가 4개(25%)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은 전라남도 3개, 경상남도 3개로 조사되었고 미이용 영유아가 가장 많은 것으로 응답하였던 경상북도는 2개의 수요만을 보고하여 소규

모 보육시설의 설치가 적정하지 않다고 보는 듯하다.

전라북도의 경우 무주군과 완주군, 부안군, 순창군 등 4개 군에서 소규모 보육시설 설치 필요성을 보고한 바, 거리가 멀어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아동뿐 아니라 이용을 하고는 있더라도 이동거리가 먼 산간지역이 많아 거주지 가까이에 소규모 보육시설이 설치되어야 할 것으로 군 공무원들이 보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표 Ⅳ-1-2〉 소규모 보육시설 설치 필요 지역

단위: 개(%)

도명	군명	읍·면명	전체
인천광역시	강화군	-	1(6.3)
강원도	정선군	화암면	2(12.5)
	횡성군	갑천면	
충청남도	금산군	-	1(6.3)
전라북도	무주군	적상면, 부남면	4(25.0)
	완주군	동상면	
	순창군	-	
	부안군	주산면	
전라남도	신안군	흑산면	3(18.8)
	고흥군	동일면,남양면	
	함평군	-	
경상북도	울진군	서면	2(12.5)
	의성군	-	
경상남도	고성군	상리면	3(18.3)
	함양군	서상면	
	의령군	-	
전체	총 16개 군	최소 18개 면	16(100)

- : 무응답

3) 소규모 보육시설 설치 의향

다음으로는 소규모 보육시설 설치 사업에 참여하여 실제로 설치하고자 하는 의향이 있는지를 조사하였다. 이에 대해 앞서 필요성을 언급하였던 대부분의 군지역이 설치 의향이 있는 것으로 응답하여 16개 군 중 14개 군이 여기에 포함되었다. 소규모 보육시설이 필요하다고 한 지역 중 강원도 횡성군과 전라북도 순창군이 시설 설

치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하였고 특이하게 강원도 영월군은 필요성에는 응답하지 않았다가 설치의향에는 긍정적인 응답을 하였다. 이는 응답자의 착오일수도 있지만 소규모 시설 설치 사업 자체에 대해 매우 긍정적임을 보여주는 응답일 수도 있다.

〈표 Ⅳ-1-3〉 소규모 보육시설 설치 의향이 있는 지역

단위: 개

도명	군명	읍·면명	전체
강원도	영월군 정선군	- 화암면	2
경상남도	고성군 함양군 의령군	상리면 서상면 -	3
경상북도	울진군 의성군	서면 -	2
인천광역시	강화군	-	1
전라남도	신안군 고흥군 함평군	흑산면 동일면,남양면 -	3
전라북도	무주군 완주군 부안군	적상면, 부남면 동상면 주산면	3
충청남도	금산군	-	1
전체			15

- : 무응답

소규모 보육시설을 설치할 의향이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예상되는 어려움이 어떤 것인지 알아보았다. 가장 많은 지역에서 어려움이 심할 것으로 보고 있는 문제로는 '교사의 확보 등 지역특수성으로 인한 관리의 어려움'을 꼽았다(12개 군 지역). 다음으로는 많은 지역에서 '인구 감소로 소규모 시설의 장기적 운영이 어려울' 것으로 보았고(11개 군 지역), '국고 지원금 이외에 군 자체 재정 부족'도 어려운 문제점이 될 것으로 내다보았다(11개 군 지역). 10개 지역에서 군 공무원의 업무과다를, 8개 지역에서 보육시설을 운영할만한 공간이 불충분함을, 4개 지역에서는 인근 기존 보육시설의 반발이 심할 것으로 보고하였다(표 Ⅳ-1-4 참조).

〈표 Ⅳ-1-4〉 소규모 보육시설 설치시 예상되는 어려움

단위: 개

도명	군명	읍·면명	국고지원금 외 군 자체 재정 부족	담당 공무원 업무 과중	보육시설 설치 공간 불충분	인근 기존 보육시설의 반발	인구 감소로 장기적 운영 어려움	지역 특수성으로 관리어려움
인천광역시	강화군	-	○		○		○	○
강원도	영월군	-				○	○	○
	정선군	화암면			○		○	○
충청남도	금산군	-	○		○		○	
전라북도	무주군	적상면, 부남면	○	○	○		○	○
	완주군	동상면	○	○	○	-	-	○
	부안군	주산면	-	-	-	-	-	-
전라남도	신안군	흑산면	○	○			○	○
	고흥군	동일면,남양면	○	○	○	○	○	○
	함평군	-	○	○		○	○	○
경상북도	울진군	서면	○	○				○
	의성군	-	○	○			○	○
경상남도	고성군	상리면	○	○	○		○	○
	함양군	서상면	○	○				
	의령군	-		○	○	○	○	○
계	15		11	10	8	4	11	12

○ : 어려움 있음
- : 무응답

나. 제2차 면단위 주민 수요조사

1) 조사대상지의 일반적 사항

지역내 총 가구수 평균은 44.2가구이며 그 중 30대까지의 젊은 세대 가구수는 평균 4가구, 미취학 아동수는 평균 3.7명이었다. 미취학 아동이 평균보다 높은 지역은 경북 영덕군, 경남 창녕군, 전남 곡성군, 경북 상주시로 나타났다. 미취학 아동중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아동수는 평균 2.2명이었으며, 기관이용 아동수가 2명이 안되는 지역은 전남 보성군, 경북 김천시, 경북 영덕군 이었다.

〈표 Ⅳ-1-5〉 지역내 리(里)당 가구 및 아동 현황

단위: 가구, 명

구분	리당 가구수		리당 젊은가구수		리당 미취학아동수		리당 기관이용 아동수	
	평균(수)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전체	44.2(352)	28.07	4.0(352)	3.43	3.7(352)	2.03	2.2(352)	1.67
충북 보은군	35.8 (46)	21.37	2.7	1.23	3.5	1.76	2.0	1.73
충남 서천군	40.0 (17)	14.77	3.1	1.14	3.6	1.87	2.0	1.41
전북 임실군	52.9 (56)	37.96	4.1	2.59	3.6	1.70	2.6	1.43
전남 곡성군	54.5 (26)	20.57	7.0	5.70	4.1	2.30	2.4	1.63
전남 보성군	40.6 (36)	25.33	3.0	1.77	3.5	1.95	1.9	1.66
경북 김천시	37.3 (24)	22.16	3.2	2.68	2.9	2.33	1.4	1.32
경북 상주시	29.4 (40)	10.65	3.4	1.79	4.0	1.99	2.3	1.88
경북 영덕군	65.6 (27)	46.74	3.7	1.94	4.5	2.24	1.9	1.41
경남 창녕군	42.1 (36)	15.97	5.6	3.09	4.3	2.26	3.2	1.75
경남 합천군	46.3 (44)	24.25	4.5	5.92	2.9	1.93	2.0	1.76

이동거리가 멀어서 기관을 이용하지 못하는 아동이 있는 경우는 전체 11.4% 정도이었으며, 그 중 경북 상주시(30.0%), 경북 영덕군(22.2%), 충북 보은군(28.3%)이 이동거리가 멀어 기관을 이용하지 못하는 아동이 있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 미이용 아동수는 평균 2.1명이었다.

〈표 Ⅳ-1-6〉 이동거리 때문에 기관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 수

단위: %, 명, (명)

구분	아동여부(%)			里당 아동수(명)	
	있다	없다	계	평균	표준편차
충북 보은군	28.3	71.7	100.0 (46)	2.3	1.11
충남 서천군	17.6	82.4	100.0 (17)	2.3	0.58
전북 임실군	1.8	98.2	100.0 (56)	1.0	0.00
전남 곡성군	0.0	100.0	100.0 (26)	0.0	0.00
전남 보성군	8.3	91.7	100.0 (36)	2.0	1.73
경북 김천시	4.2	95.8	100.0 (24)	1.0	0.00
경북 상주시	30.0	70.0	100.0 (40)	2.0	1.60
경북 영덕군	22.2	77.8	100.0 (27)	2.2	0.98
경남 창녕군	2.8	97.2	100.0 (36)	2.0	0.00
경남 합천군	0.0	100.0	100.0 (44)	0.0	0.00
계	11.4	88.6	100.0 (352)	2.1(40)	1.22

2) 소규모 보육시설 설치 필요성

소규모 보육시설을 설치할 필요성을 느끼는지 주민에게 질문해 본 결과, 전체적으로 75.9%가 필요하다는 응답을 하였고 그 중 50%는 매우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에 비해 별로 필요치 않거나 전혀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은 24.1%로 나타났다.

〈표 Ⅳ-1-7〉 소규모 보육시설 설치 필요성

단위: %(명)

구분	매우 필요	조금 필요	거의 불필요	전혀 불필요	계
충북 보은군	43.5	30.4	15.2	10.9	100.0 (46)
충남 서천군	29.4	47.1	5.9	17.6	100.0 (17)
전북 임실군	7.1	75.0	14.3	3.6	100.0 (56)
전남 곡성군	42.3	11.5	46.2	0.0	100.0 (26)
전남 보성군	52.8	13.9	27.8	5.6	100.0 (36)
경북 김천시	41.7	37.5	12.5	8.3	100.0 (24)
경북 상주시	50.0	17.5	15.0	17.5	100.0 (40)
경북 영덕군	70.4	25.9	3.7	0.0	100.0 (27)
경남 창녕군	2.8	80.6	16.7	0.0	100.0 (36)
경남 합천군	38.6	40.9	18.2	2.3	100.0 (44)
계	37.9	38.0	17.6	6.5	100.0 (352)

<표 Ⅳ-1-7>에서 필요성을 매우 높게 인식하며 소규모 보육시설 설치가 매우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은 군지역으로는 영덕(70.4%), 보성(52.8%), 상주(50.0%), 보은(43.5%), 곡성(42.3%), 김천(41.7%)의 순으로 나타나, 경북이 3개 군, 전남이 2개 군, 그리고 충북 1개 군에서 필요성이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군별 비율을 면단위로 확장하여 살펴보면 실제로 시설이 설치될 필요성이 있는 지역이 어디인지를 보다 정확히 알 수 있다.

다음 <표 Ⅳ-1-8>에서는 리단위로 조사한 결과를 면단위로 묶어 가능한 수요자 수를 추정해 보았다. 전체 **응답 면지역 중 필요성이 100.0%로 나왔거나 이용 예상 영유아 수가 25명 이상으로 추정되는 면지역을 선정한 결과**, 총 19개면 120여개의 리에 대한 자료를 얻을 수 있었다.

〈표 Ⅳ-1-8〉 소규모 보육시설 설치 수요 읍·면 현황

도명	군명	읍면명	응답자(명)	필요성(%)	예상 최소 이용 영유아수(명)	이용의향(%)
충북	**보은**	**회인**	**7**	**100.0**	**25.9**	**100.0**
충남	서천	마산	6	100.0	13.2	100.0
전북	임실	청웅	7	100.0	16.8	100.0
	임실	성수	7	100.0	16.1	100.0
	임실	**덕치**	**7**	**100.0**	**30.1**	**100.0**
전남	곡성	오산	6	66.7	25.2	83.3
	보성	노동	6	50.0	28.2	83.3
	보성	**문덕**	**8**	**87.5**	**32.8**	**100.0**
경북	**김천**	**증산**	**6**	**100.0**	**27.0**	**100.0**
	상주	화남	7	57.1	28.0	85.7
	영덕	**달산**	**7**	**100.0**	**34.3**	**85.7**
	영덕	**지품**	**7**	**100.0**	**28.7**	**85.7**
	영덕	창수	6	100.0	19.2	100.0
경남	창녕	성산	6	100.0	16.2	100.0
	창녕	**유어**	**6**	**100.0**	**24.0**	**100.0**
	창녕	계성	6	100.0	13.8	83.3
	창녕	길곡	6	100.0	12.0	100.0
	합천	**묘산**	**7**	**100.0**	**25.9**	**100.0**
	합천	쌍백	6	100.0	16.8	100.0
계	10개 군	19개면	124	92.7	22.9	95.1

주: 음영처리된 면지역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소규모 보육시설 설치가 필요하다.

이 중 충북 보은군 회인면, 전북 임실군 덕치면, 전남 보성군 문덕면, 경북 영덕군 달산면, 지품면, 그리고 경남 창녕군 유어면과 합천군 묘산면이 가장 필요성이 높으면서 예상 이용영유아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시지역으로 경북 김천시 증산면이 포함이 되었다. 이러한 면 지역이 가장 최우선적으로 소규모 보육시설이 필요한 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표 Ⅳ-1-8 참조).

결과적으로 앞서 1차 조사에서 군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소규모 보육시설 수요와 2차 조사에서 주민을 대상으로 한 수요조사 결과를 종합해 보면 26개 군 내 최소 37개면에서 시설이 설치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Ⅳ-1-9 참조).

〈표 Ⅳ-1-9〉 소규모 보육시설 우선설치 필요 군 및 읍·면 현황

도명	군명	읍·면명	비고
인천광역시	강화군	삼산면	시범사업포함지역
강원도	정선군	화암면	
	횡성군	갑천면	
충청북도	보은군	회인면	
충청남도	금산군	남일면	시범사업포함지역
	서천군	마산면	
전라북도	무주군	적상면, 부남면	
	완주군	동상면	
	순창군	-	
	부안군	주산면	
	임실군	청웅면, 성수면, 덕치면	
전라남도	신안군	흑산면	시범사업포함지역
	고흥군	동일면, 남양면	
	함평군	-	
	곡성군	오산면	
	보성군	노동면, 문덕면	
경상북도	울진군	서면	시범사업포함지역
	의성군	춘산면	시범사업포함지역
	김천시	증산면	
	상주시	화남면	
	영덕군	달산면, 지품면, 창수면	
경상남도	고성군	상리면	
	함양군	서상면	
	의령군	-	
	창녕군	성산면, 유어면, 계성면, 길곡면	
	합천군	묘산면, 쌍백면	
전체	총 26개 군	최소 36개 면	

2. 이동식 놀이 버스

가. 제1차 군단위 공무원 수요조사

이동식 놀이 버스 운영 사업 수요를 판단하기 위하여, 전국 52개 군 보육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중, 이동식 놀이 버스 설치 의향이 있는 군은 인천 강화군, 경기 가평군, 강원 횡성군, 충북 증평군과 진천군, 충남 금산군과 연기군, 전북 부안군, 전남 장흥군, 경북 성주군, 경남 고성군, 함양군, 함안군 등 13개 군 지역이다.

〈표 Ⅳ-2-1〉 이동식 놀이 버스 운영 참여의향

도명	군명	읍·면명
인천광역시	강화군	-
경기도	가평	가평, 청평, 설악, 상,하,북면
강원도	횡성군	-
충청북도	증평군 진천군	- -
충청남도	금산군 연기군	- -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군 전체읍
전라남도	장흥군	-
경상북도	성주군	-
경상남도	고성군 함양군 함안군	- 9개읍면 전읍면
전체	13	

- : 무응답

이동식 놀이 버스 서비스 제공의 일차적 고려 조건은 주민들의 수요가 있는가의 여부이다. 그런 점에서 이동식 놀이 버스 운영 의향이 있다고 밝힌 13개 군 중에서 담당 공무원의 판단에 경기 가평군, 충남 금산군, 전남 장흥군, 경남 고성군과 함안군 등 5개 군은 주민 수요 조건이 충분하다. 이동식 놀이 버스 이용료를 지불할 수 있는 재정적 상태에 대해서는 경기 가평군과 충남 금산군이 재정상태가 양호하다고 판단한 반면, 경남 고성군과 함안군은 보통이고 전남 장흥군은 주민의 이용료 부담이 부담스럽다고 판단하였다.

다음으로 사업 운영자인 군의 경우 경기 가평군은 군 재정은 충분하지 않지만 군청에서 사업 수행을 위해 인력 지원 자원과 담당 공무원의 관리 역량은 사업을 수행하기에 큰 어려움이 없다고 하였다. 충남 금산군은 군 재정과 인력 지원 모두 충분하지 못하지만 사업을 수행할만한 담당 공무원의 관리 역량이 있다고 하였다. 전남 장흥군은 담당 공무원의 관리 역량이 충분히 있고 군청의 인력 지원도 큰 어려움 없이 지원 가능하지만 군 재정이 대단히 열악한 정도라고 응답하였고 경남 함안군은 담당 공무원의 관리 역량과 군 재정이 보통수준이며 인력 지원이 더 어렵다고 응답하였다. 반면, 고성군은 재정과 인력지원이 대단히 불충분한 정도일 뿐만 아니라 담당 공무원의 관리 역량 역시 크게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다. 주민 수요가 충분하여 이동식 놀이 버스 사업을 희망한 군 지역의 보육정보센터 등의 지원 기관은 거리가 멀거나 도 단위에 1개소씩 설치되어 있어 모두 충분하지 않은 상태이다(<표 Ⅳ-2-2참조).

〈표 Ⅳ-2-2〉 이동식 놀이 버스 운영 희망 지역 여건

지역		지자체			주민		지원기관
시/도	군	재정	인력 지원	담당 공무원의 관리 역량	지속적 주민 수요	이용료 지불 여건	
인천광역시	강화군	○	○	○		○	
경기도	가평군	○			★		○
강원도	횡성군	○	○	○		○	○
충청북도	증평군	○	○	○		○	
	진천군					○	○
충청남도	금산군	○	○		★		○
	연기군	○	○	○			
전라북도	부안군	-	-	-	-	-	-
전라남도	장흥군	○			★	○	○
경상북도	성주군	○	○	○			○
경상남도	고성군	○	○	○	★		○
	함양군	○	○				○
	함안군		○		★		○

- : 무응답, ○ : 어려움 있음, ★: 주민수요 높은 곳

주민 수요가 있는 군을 중심으로 이동식 놀이 버스의 적정 이용료와 운행주기를 조사한 결과 월 10,000원의 이용료에 대해서는 경남 고성군을 제외하고 부담가능하다는 의견이었다. 고성군은 영아와 유아 모두 월 5,000원의 이용료를 부담하는 안을 제안했다(표 Ⅳ-2-3 참조). 다음으로 이동식 놀이 버스가 주 1회 마을을 방문하는 것에 대해서 경기 가평군과 경남 함안군은 주 2회 방문을 희망하였다.

〈표 Ⅳ-2-3〉 이동식 놀이 버스 희망 이용료

단위: 원

도명	군명	이용료 1만원	적정이용료		주 1회 방문	적정 방문 주기
			영아	유아		
인천광역시	강화군	적당	-	-	적당	
경기도	가평	부담되지 않음	-	-		주 2 회
강원도	횡성군	매우 부담	3,000	5,000	적당	
충청북도	증평군	매우 부담	3,000	5,000	적당	
	진천군	적당	-	-		더 늘려야 함
충청남도	금산군	적당	-	-	적당	
	연기군	적당	5,000	10,000	적당	
전라북도	부안군	부담 큰 편	5,000	10,000	적당	
전라남도	장흥군	적당	-	-	적당	
경상북도	성주군	적당	-	-	적당	
경상남도	고성군	부담 큰 편	5,000	5,000	적당	
	함양군	적당	-	-	적당	
	함안군	적당	-	-		주 2 회

나. 제 2차 읍면단위 주민 수요조사

다음은 이동식 놀이 버스 운영 사업에 대한 수요를 조사한 결과이다. 조사는 6개 도 54개 군 352개 마을에서 시행되었다.

〈표 Ⅳ-2-4〉 이동식 놀이 버스 운영 필요성

단위: %(명)

구분		필요성					이용의향	(수)
		매우 필요	조금 필요	거의 불필요	전혀 불필요	계		
전체		59.4	30.1	6.5	4.0	100.0	90.3	(352)
충북	보은군	45.7	23.9	15.2	15.2	100.0	71.7	(46)
충남	서천군	82.4	0.0	11.8	5.9	100.0	94.1	(17)
전북	임실군	64.3	32.1	3.6	0.0	100.0	96.4	(56)
전남	곡성군	80.8	7.7	11.5	0.0	100.0	88.5	(26)
	보성군	83.3	13.9	2.5	0.0	100.0	97.2	(36)
경북	김천시	50.0	33.3	12.5	4.2	100.0	83.3	(24)
	상주시	70.0	17.5	7.5	5.0	100.0	90.0	(40)
	영덕군	85.2	14.8	0.0	0.0	100.0	100.0	(27)
경남	창녕군	22.2	77.8	0.0	0.0	100.0	100.0	(36)
	합천군	36.4	52.3	4.5	6.8	100.0	86.4	(44)

〈표 Ⅳ-2-5〉 이동식 놀이 버스 운영 수요 읍·면 현황

도명	군명	읍면명	응답마을 수(명)	필요성(%)	예상 최소 이용 영유아수(명)*	이용의향(%)
충북	보은군	내북면	(6)	100.0	13.2	100.0
충남	서천군	마산면	(6)	83.3	12.0	100.0
		문산면	(6)	83.3	15	83.3
전북	임실군	청웅면	(7)	100.0	16.1	100.0
		신평면	(7)	100.0	28.0	100.0
		신덕면	(7)	100.0	20.3	100.0
		강진면	(7)	100.0	14.0	100.0
		덕치면	(7)	100.0	18.9	100.0
		지사면	(7)	100.0	11.9	100.0
전남	곡성군	고달면	(8)	100.0	21.0	100.0
		오산면	(6)	100.0	27.0	100.0
	보성군	노동면	(6)	100.0	19.8	100.0
		미력면	(7)	100.0	13.3	100.0
		문덕면	(8)	100.0	24.8	100.0
		웅치면	(8)	100.0	27.2	100.0
경북	김천시	감천면	(6)	100.0	13.8	100.0
	상주시	화남면	(7)	100.0	21.7	100.0
		중동면	(6)	100.0	22.2	100.0
		외남면	(6)	100.0	10.8	100.0
	영덕군	남정면	(7)	100.0	14.7	100.0
		달산면	(7)	100.0	30.1	100.0
		지품면	(7)	100.0	25.9	100.0
		창수면	(6)	100.0	16.2	100.0
경남	창녕군	성산면	(6)	100.0	13.8	100.0
		이방면	(6)	100.0	19.2	100.0
		유어면	(6)	100.0	27.0	100.0
		계성면	(6)	100.0	13.2	100.0
		장마면	(6)	100.0	28.2	100.0
		길곡면	(6)	100.0	12.0	100.0
	합천군	봉산면	(6)	100.0	16.2	100.0
		묘산면	(7)	100.0	25.2	100.0
		덕곡면	(4)	100.0	5.2	100.0
계			(208)		597.9	

* 면 단위에서 예상 최소 이용 영유아수는 마을 당 예상 아동 수와 마을 수를 합산한 결과임.

그 결과 89.5%가 이동식 놀이 버스 사업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고 사업 시행시 90.3%가 이용하고 싶다고 응답하였다. 개별 군 단위로 필요성과 이용 의향에 대해서

는 각각 경북 영덕군과 경남 창녕군이 100%, 전남 곡성군 88.5%, 전북 임실군 96.4%, 경남 합천군 86.4%이다(표 Ⅳ-2-4 참조).

충남을 제외하면, 5개 도에서 이동식 놀이 버스 운영 필요성과 이용 의향이 100%인 읍·면 현황을 요약한 <표 Ⅳ-2-5>에 따르면, 208개 마을에서 598명의 영유아가 이동식 놀이 버스 사업에 대한 수요가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지역별로는 충분 보은군 1개면 6개 마을, 전북 임실군 6개면 42개 마을, 전남 곡성군 2개면 14개 마을과 보성군 4개 면 29개 마을, 경북 김천시 감천면 6개 마을, 상주시 3개면 19개 마을, 영덕군 4개면 27개 마을, 경남 창녕군 6개면 36개 마을, 합천군 3개 면 17개 마을이 이동식 놀이 버스 설치와 이용을 희망하고 있다.

앞서 시범 사업 결과 1대의 이동식 놀이 버스가 월 2회 34개의 마을을 순회하고 있다는 점에서 볼 때, 전북 임실군, 전남 보성군, 경북 영덕군, 경남 창녕군은 군 단위에서 이동식 놀이 버스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수요가 존재한다.

3. 부모협동 놀이그룹

가. 제1차 군단위 공무원 수요조사

군 보육담당자에게 '부모협동 놀이그룹'사업에 관한 질문은 다음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는 '부모협동 놀이그룹'사업이 필요한 지역 둘째, 설치가 필요한 지역이 있다면 설치·운영의 의향은 있는지, 셋째 설치·운영에 있어서 문제점은 무엇인지, 넷째 슈퍼비전으로서 보육정보센터에서 파견한 보육전문요원의 적절한 방문 횟수에 대한 생각 등이다. 이에 대한 설문결과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가) 설치 필요지역 및 운영 의향

설문조사에 응답한 52명의 군지역 보육담당 공무원 중에서 '부모협동 놀이그룹'이 필요하고 운영할 의지가 있다고 지역은 강원도 2곳, 경남 2곳, 전남 2곳, 전북 2곳, 충남 1곳, 충북 2곳 등 총 11곳으로 보고되었다. 이는 응답자의 약 1/5정도에 해당하는 수치이며, 필요한 지역 분포를 보면 인천광역시와 경상북도만 제외하고 전국에 걸쳐 응답했다. 구체적인 지역은 다음 〈표 Ⅳ-3-1>와 같다.

〈표 Ⅳ-3-1〉 부모협동 놀이그룹 지원 필요 지역

단위: 개

도명	군명	읍·면명	전체
강원도	영월군 인제군	- -	2
경상남도	고성군 거창군	- -	2
전라남도	신안군 장흥군	- -	2
전라북도	완주군 부안군	- -	2
충청남도	금산군	-	1
충청북도	증평군 진천군	- -	2
전체			11

다음 <표 Ⅳ-3-2>는 이 사업을 정부가 지원할 경우 참여할 의향이 있는 지에 관한 질문의 결과이다.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지역은 총 11곳으로 나타났지만, 참여의향 질문에서는 이 보다 적은 총 9곳으로, 참여할 의향이 없는 2곳은 경남 거창군, 충남 금산군으로 집계되었다.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지역 대부분에서 향후 사업을 추진할 의향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Ⅳ-3-2〉 부모협동 놀이그룹지원 참여의향

단위: 개

도명	군명	읍·면명	전체
강원도	영월군 인제군	- 모든 읍면	2
경상남도	고성군	-	1
전라남도	신안군 장흥군	- -	2
전라북도	완주군 부안군	13개 전체 읍면 부안군 전체	2
충청북도	증평군 진천군	- -	2
전체			9

나) 사업추진시 예상되는 어려움 및 기타사항

다음 〈표 Ⅳ-3-3〉는 참여 의향을 보인 9곳을 대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할 경우, 예상되는 어려움에 대한 응답결과이다. ○가 어려움이 있다는 표시인데, 먼저 지역별로 보면 강원도의 영월군과 경남의 고성군, 충북의 증평군 등 3곳이 5개 항목 모두 어려움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추진시 어려움이 가장 적은 지역으로 충북의 진천군으로 '보육정보센터 등 관련지원기관'항목에서만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항목별로 보면, '보육정보센터 등 관련지원기관'항목에서 모든 지역이 어려움이 있다고 응답했는데, 이는 이들 지역이 사회·문화적 시설로부터 소외된 지역임을 반증한다. 이들 지역에 '부모협동 놀이그룹'사업을 추진할 경우, 정기적으로 수퍼비젼의 역할을 하는 기관과의 긴밀한 연계를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어려움이 예상되는 항목으로 '놀이그룹을 운영할 만한 공간'을 꼽은 지역인 5곳으로 나타났다. 이 사업이 실행하기 위한 적절한 장소로는 마을의 교회, 절, 성당과 같은 종교단체 기관, 마을회관, 폐가 등으로 제시하였다.

〈표 Ⅳ-3-3〉 부모협동 놀이그룹 지원 참여시 예상되는 어려움

단위: 개

도명	군명	읍·면명	담당 공무원의 관리 역량	놀이 그룹을 운영할만한 공간	놀이 그룹에 참여할 지역 주민	지속적으로 운영 가능한 주민 수요	보육정보센터 등 관련지원기관	기타
강원도	영월군	-	○	○	○	○	○	-
	인제군	모든 읍면						-
경상남도	고성군	-	○	○	○	○	○	-
전라남도	신안군	-	○	○			○	-
	장흥군	-					○	-
전라북도	완주군	13개 전체 읍면						-
	부안군	부안군 전체		○		○		-
충청북도	증평군	-	○	○	○	○	○	-
	진천군	-					○	-
전체			4	5	3	4	6	

○: 어려움 있음

나. 제2차 읍면단위 주민 수요조사

농어촌 지역에 사는 부모들에게 '부모협동 놀이그룹'을 운영하고자 하는 부모의 수요가 있는지를 알아본 설문조사 결과,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33.2%, '없다'고 응

답한 경우는 66.8%로서, 부모들이 자치적으로 공동보육을 하려는 수요는 그다지 많지 않은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는 농사일이란 것이 때로는 마을 전체의 노동력이 동원되어야 하는 등 항상 많은 노동력을 요하는 일인 만큼, 부모가 자녀양육에만 전념하는 것—순번을 정해 순환적으로 보육지원을 한다고 하더라도—을 부담스러워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대체적으로 '부모 협동 놀이그룹' 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부모들의 수요가 적은 가운데, 전체 평균에 대비하여 상대적 수요가 많은 지역은 '경남 합천군'(59.1%), '경북 김천시'(54.2%), '경남 창녕군'(50.0%) 순으로 나왔다. 이와는 반대로 이 사업에 대해 수요가 가장 낮은 지역 순으로는 경북 영덕군'(96.3%), '충남 서천군'(82.4%), '경북 상주시'(77.5%)로 집계되었다(표 Ⅳ-3-4 참조).

〈표 Ⅳ-3-4〉 '부모협동 놀이그룹'을 운영하고자 하는 부모들의 예상 수요(군단위)

단위: %(명)

구분	있음			없음			계	
	매우 많음	조금 있음	소계	거의 없음	전혀 없음	소계		
전체	6.5	26.5	33.2	50.0	16.8	66.8	100.0	(352)
충북 보은군	13.0	15.2	28.3	41.3	30.4	71.7	100.0	(46)
충남 서천군	5.9	11.8	17.6	29.4	52.9	82.4	100.0	(17)
전북 임실군	1.8	21.4	23.2	76.8	0.0	76.8	100.0	(56)
전남 곡성군	7.7	23.1	30.8	69.2	0.0	69.2	100.0	(26)
전남 보성군	16.7	19.4	36.1	41.7	22.2	63.9	100.0	(36)
경북 김천시	20.8	33.4	54.2	45.8	0.0	45.8	100.0	(24)
경북 상주시	2.5	20.0	22.5	30.0	47.5	77.5	100.0	(40)
경북 영덕군	0.0	3.7	3.7	3.7	0.0	96.3	100.0	(27)
경남 창녕군	0.0	50.0	50.0	50.0	0.0	50.0	100.0	(36)
경남 합천군	2.3	56.8	59.1	31.8	9.1	40.9	100.0	(44)

그렇다면, '부모협동 놀이그룹'에 대한 상대적으로 높은 수요를 보인 '경남 합천군'(59.1%), '경북 김천시'(54.2%), '경남 창녕군'(50.0%) 지역을 읍·면 단위로 좀 더 상세하게 살펴보자.

경남 합천군 내에서도 '쌍백면'이 83.3%로 운영하고자 하는 부모 예상 수요가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은 '묘산면' 71.4%, '봉산면' 66.7% 순으로 나타났다. 경북 김천시 내에서는 '감천면'이 가장 수요가 많은 지역으로 나타났다. 경남 창녕군 내에서는 이방면, 계성면, 장만면 등 3 지역에서66.7%가 수요가 있다고 동일하게 나왔다.

한편 '부모협동 놀이그룹'을 설치하다면 이를 이용하는 예상 가구수를 묻는 질문

에서 경남 합천군 묘산면이 23.1가구로 가장 많이 응답하였으며, 경남 창녕군 이방면이 15.0가구, 경남 합천군 쌍백면이 12.0가구로 조사되었다.

〈표 Ⅳ-3-5〉 '부모협동 놀이그룹' 사업의 부모 및 가구 예상 수요(읍·면 단위)

단위: %, 명

도명	시군명	읍면명	응답수(명)	있음	없음	계	예상 최소 이용 가구수(명)
경남	합천군	봉산	(6)	66.7	33.3	100.0	10.8
		묘산	(7)	71.4	28.6	100.0	23.1
		쌍책	(6)	50.0	50.0	100.0	4.2
		덕곡	(4)	50.0	50.0	100.0	3.2
		청덕	(8)	50.0	50.0	100.0	8.8
		대양	(7)	42.9	57.1	100.0	6.3
		쌍백	(6)	83.3	16.7	100.0	12.0
경북	김천시	부항	(6)	50.0	50.0	100.0	4.8
		대덕	(6)	50.0	50.0	100.0	6.0
		증산	(6)	33.3	66.7	100.0	1.8
		감천	(6)	83.3	16.7	100.0	10.8
경남	창녕	성산	(6)	50.0	50.0	100.0	4.8
		장만	(6)	66.7	33.3	100.0	13.2
		계성	(6)	66.7	33.3	100.0	6.0
		이방	(6)	66.7	33.3	100.0	15.0

종합해 보면, 이 사업을 운용하고자 하는 부모 수요가 높은 지역은 경남 합천 쌍백면과 경북 김천시 감천면이며 이용 가구수가 높게 나온 지역은 경남 합천군 묘사면과 경남 창녕군 이방면으로 집계되었다. 두 항목 모두 높게 나온 지역은 '경남 합천군 쌍백면'인 것으로 나타났다(표 Ⅳ-3-5 참조).

4. 농번기 임시 보육방

가. 제1차 군단위 공무원 수요조사

농번기 보육방 설치가 필요한 읍/면이 있다고 응답한 군은 전체 52개 군 중에 9개 군이었고, 설치를 희망하는 지역 역시 설치가 필요하다는 지역과 동일하게 강원

도 영월군, 정선군, 양주군, 전라북도 완주군, 경상북도 성주군, 경상남도 고성군과 의령군 총 9개 군 지역이었다.

이들 9개 군 지역 중에, 주민의 수요가 높다고 응답한 지역은 강원도 영월군, 정선군과 경상남도 고성군, 의령군 4개 지역이었고 나머지 5개 지역은 주민 수요가 지속적으로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응답하지 않았다(표 Ⅳ-4-1 참조).

농번기 임시 보육방에 대해 주민 수요가 높은 4개 군 중, 강원도 정선군과 경상남도 의령군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공무원의 관리 역량, 마을에 보육방을 설치할 공간과 자원활동을 할 수 있는 지역 주민 그리고 보육 계획과 교재교구 등을 지원해 줄 지원기관 모두 큰 어려움이 없다고 평가하였다. 반면, 경상남도 고성군은 마을 주민의 지원 인력을 얻기 어렵다고 평가하였고, 강원도 영월군은 보육방을 운영할 만한 공간이 부족하고 담당 공무원도 관리하기에는 업무가 많아 역부족이라고 평가하였다(표 Ⅳ-4-2 참조).

〈표 Ⅳ-4-1〉 보육방 설치 의향

단위: 개

도명	군명	읍·면명	전체
강원도	영월군 정선군 양주군	- 화암면, 정선읍 남면, 동면, 해안면	3
충청북도	진천군	-	1
전라북도	완주군	동상면	1
경상북도	봉화군 성주군	- 선남,벽진,초전면	2
경상남도	고성군 의령군	상리면 지정면, 화정면	2
전체			9

다음으로 임시 보육방 설치 운영을 관리하게 될 지원기관으로 강원도 영월군은 보육정보센터를, 강원도 정선군과 경상남도 고성군은 국공립 보육시설을 선호하였다. 영월군은 지역 여건에 대한 평가에서도 업무를 지원할 담당 공무원의 여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를 제기했듯이 보육정보센터를 지원 기관으로 하는 것이 공무원의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강원도 정선군과 경상남도 고성군은 동일하게 보육정보센터와 거리가 너무 떨어져서 국공립 보육시설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표 Ⅳ-4-3 참조).

〈표 Ⅳ-4-2〉 보육방 설치시 지역 상황

단위: 개

지역		지자체 여건		지역여건			지원기관
시/도	군	재정	담당 공무원의 관리 역량	보육방 운영 공간	활용가능한 지역인력	지속적 주민 수요	
강원도	영월군		○	○		★	
	정선군					★	
	양주군	-	-	-	-	-	-
충청북도	진천군	-	-	-	-	-	-
전라북도	완주군				-	-	
경상북도	봉화군	-	-	-	-	-	-
	성주군	-	-	-	-	-	-
경상남도	고성군				○	★	
	의령군					★	

- : 무응답, ○ : 어려움 있음, ★: 주민수요 높은 곳

〈표 Ⅳ-4-3〉 보육방 지원 기관 선호

단위: 개

도명	군명	읍·면명	지원기관	이유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보육정보센터	공무원 부담 줄어듦
	정선군	정선읍	국공립 보육시설	보육정보센터는 거리상 너무 멀기때문에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국공립 보육시설	-
전라북도	완주군	삼례읍	국공립 보육시설	책임관리가 가능하고, 교사(업무)활용도가 좋음
경상북도	봉화군	봉화읍	국공립 보육시설	-
	성주군	성주읍	국공립 보육시설	보육시설관리가 편할 것 같아서
경상남도	고성군	고성읍	국공립 보육시설	보육정보센터부재

- : 무응답

임시 보육방에 영유아를 보냈을 때, 이용료를 국공립 이용료의 70%로 책정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강원도 영월군과 정선군은 국공립 이용료의 70% 정도의 이용료가 적당하다고 평가하였지만, 경상남도 고성군의 경우 국공립 이용료의 70% 수준이 다소 부담스럽다고 평가하였다. 경상남도 고성군에서 판단하는 적절한 보육료는 영아와 유아 동일하게 국공립 보육료의 50%선 수준이라고 보았다(표 Ⅳ-4-4 참조).

〈표 Ⅳ-4-4〉 보육방 이용료

단위: 원

도명	군명	읍·면명	보육방 이용료 책정	적정보육료	
				영아	유아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적당하다		
	정선군	정선읍	적당하다	-	-
	양주군	양구읍	적당하다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너무 부담될 것이다	-	-
전라북도	완주군	삼례읍	별로 부담되지 않는다	-	-
경상북도	봉화군	봉화읍	조금 부담될 것이다	-	-
	성주군	성주읍	적당하다	-	-
	군위군	군위읍	적당하다	-	-
경상남도	고성군	고성읍	조금 부담될 것이다	50%수준	50%수준

- : 무응답

나. 제2차 읍면단위 주민 수요 조사

다음은 농번기 임시 보육방 운영 사업에 대한 수요를 조사한 결과이다. 조사는 6개 도 54개 군 352개 마을에서 시행되었다.

〈표 Ⅳ-4-5〉 농번기 임시 보육방 운영 필요성

단위: %(명)

구분		필요성					이용의향	(수)
		매우 필요	조금 필요	거의 불필요	전혀 불필요	계		
전체		48.9	35.5	12.5	3.1	100.0	84.9	(352)
충북	보은군	50.0	32.6	13.0	4.3	100.0	82.6	(46)
충남	서천군	64.7	5.9	23.5	5.9	100.0	82.4	(17)
전북	임실군	16.1	75.0	8.9	0.0	100.0	92.9	(56)
전남	곡성군	73.1	3.8	23.1	0.0	100.0	84.6	(26)
	보성군	86.1	13.9	0.0	0.0	100.0	94.4	(36)
경북	김천시	50.0	41.7	4.2	4.2	100.0	87.5	(24)
	상주시	60.0	12.5	12.5	15.0	100.0	75.0	(40)
	영덕군	40.7	37.0	22.2	0.0	100.0	77.8	(27)
경남	창녕군	44.4	52.8	2.8	0.0	100.0	94.4	(36)
	합천군	36.4	38.6	22.7	2.3	100.0	75.0	(44)

그 결과 84.4%가 농번기 임시 보육방 사업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고 사업 시행시 84.9%가 농번기 임시 보육방에 자녀를 보낼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개별 군 단위로 필요성에 대해서는 각각 전남 보성군이 100%, 경남 창녕군 97.2%, 경북 김천시 91.7%, 전북 임실군 91.1%이다. 설치시 이용 의사는 전남 보성군이 94.4%, 경남 창녕군 94.4%, 경북 김천시 87.5%, 전북 임실군 92.9%이다.

〈표 Ⅳ-4-6〉 농번기 임시 보육방 운영 수요 읍·면 현황

도명	군명	읍면명	응답마을 수(명)	필요성(%)	예상 최소 이용 영유아수(명)*	이용의향(%)
충북	보은군	회인면	(7)	100.0	14.7	100.0
전북	임실군	청웅면	(7)	100.0	5.6	100.0
		성수면	(7)	100.0	4.2	100.0
		신덕면	(7)	100.0	7.0	100.0
		덕치면	(7)	100.0	4.2	100.0
전남	곡성군	죽곡면	(6)	100.0	8.5	83.3
	보성군	노동면	(6)	100.0	8.0	66.7
		미력면	(7)	100.0	6.3	100.0
		겸백면	(7)	100.0	11.9	100.0
		문덕면	(8)	100.0	10.4	100.0
		웅치면	(8)	100.0	4.8	100.0
경북	김천시	감천면	(6)	100.0	3.2	66.7
		증산면	(6)	100.0	10.2	100.0
	상주시	중동면	(6)	100.0	10.8	100.0
		외남면	(6)	100.0	8.5	83.3
		내서면	(7)	100.0	2.4	85.7
	영덕군	지품면	(7)	100.0	10.2	85.7
		창수면	(6)	100.0	10.2	100.0
경남	창녕군	성산면	(6)	100.0	7.8	100.0
		유어면	(6)	100.0	10.8	100.0
		계성면	(6)	100.0	3.0	100.0
		장마면	(6)	100.0	12.0	100.0
		길곡면	(6)	100.0	1.2	100.0
계			(151)		175.9	

* 면 단위에서 예상 최소 이용 영유아수는 마을 당 예상 아동 수와 마을 수를 합산하여 이용의향을 고려한 결과임.

충남을 제외한 5개 도에서 농번기 임시 보육방 운영 필요성이 100%인 읍·면 현황을 요약한 <표 Ⅳ-4-6>에 따르면, 151개 마을에서 176명의 영유아가 농번기 임시 보육방 사업에 대한 수요가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지역별로는 충분 보은군 1개면

7개 마을, 전북 임실군 4개면 28개 마을, 전남 곡성군 1개면 6개 마을과 보성군 5개면 36개 마을, 경북 김천시 2개면 12개 마을, 상주시 3개면 19개 마을, 영덕군 2개면 13개 마을, 경남 창녕군 5개면 30개 마을이 농번기 임시 보육방 설치와 이용을 희망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농번기 임시 보육방이 3명 이상의 영유아가 있어야 최소 운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2개 마을 이상이 공동으로 설치 한다고 하더라도 설치가 가능한 지역은 마을당 1.5명 이상의 수요가 있어야 가능하다. 마을당 1.5명 이상의 수요가 있는 지역은 충북 보은군 회인면, 전남 곡성군 죽곡면, 보성군 노동면, 겸백면, 경북 김천시 증산면, 상주시 중동면, 영덕군 지품면과 창수면, 경남 창녕군 유어면, 장마면 등 10개 면 지역이다. 이중, 이용 의향이 100%가 되지 않는 전남 곡성군 죽곡면, 보성군 노동면, 영덕군 지품면을 제외하면 7개 면에서 만이 설치가 가능한 것으로 보여진다(표 Ⅳ-4-6 참조).

5. 준공영 섬마을 보육가정

가. 제1차 군단위 공무원 수요조사

군 보육담당자에게 '준공영 섬마을 보육가정'[9]설치 수요에 관한 질문은 다음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는 준공영 섬마을 보육가정 설치가 필요한 지역이 있는지 둘째, 설치 필요 지역이 있다면 설치하고 운영할 의향은 있는지, 셋째 설치·운영에 있어서 문제점은 무엇인지, 넷째 적절한 이용료는 어느 정도라 생각하는지, 기타 의견 등이다. 이에 대한 설문결과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1) 설치 필요성 및 어려운 점

설문조사에 응답한 52명의 군지역 보육담당 공무원 중에서 '준공영 보육가정'이 필요하고 운영할 의지가 있다고 지역은 경남의 고성군, 의령군 2곳 충남 금산군 1곳 등 총 3곳으로 보고되었다.

---

9) 연구 중반까지는 '준공영 보육가정'이라고 하였으나, 시군구 공무원을 대상으로 각 보육서비스 사업에 대해 자문회의(11월 13일)에서 이 사업은 도서지역에 국한하여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수렴하여 '준공영 섬마을 보육가정'이라 개칭하였다. 따라서 연구초기에 실시한 공무원대상의 수요조사에서 '준공영 보육가정'이란 용어를 사용하였고 설문조사 결과를 다룬 부분에서는 이를 그대로 사용하였다.

〈표 Ⅳ-5-1〉 준공영 보육가정 설치 필요성 및 운영의향

단위: 개

도명	군명	읍·면명	전체
경상남도	고성군 의령군	- -	2
충청남도	금산군	-	1
전체			3

이들 3곳에서 '준공영 보육가정' 사업을 설치, 운영에 있어 어려운 점을 묻는 질문에서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타났다. 경남의 2곳 모두가 군자체 재정항목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설치, 운영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그러나 충남의 금산군은 이와는 정반대로 군자체 재정 항목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응답하였다.

〈표 Ⅳ-5-2〉 준공영 보육가정 설치시 예상되는 어려움

단위: 개

도명	군명	읍·면명	군 자체 재정	담당 공무원의 관리 역량	보육방 운영할 공간	보육모 활용 가능 인력	자속 운영 가능한 주민 수요	이용료 지급할 수 있는 주민재정 상태	보육 정보센터 등 지원기관
경남	고성군	-		○	○	○	○	○	○
	의령군	-		○	○	○	○	○	○
충남	금산군	-	○						

○: 어려움 있음.

나. 제2차 읍면단위 주민 수요 조사

'준공영 보육가정' 사업에 대한 공무원 대상 수요조사에서도 3곳밖에 나오지 않았고, 이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시범지역이 아직 없는 상황에서, 이 사업에 대한 부모들의 수요는 어느 정도인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1) 설치 필요성 및 이용 의향

'준공영 보육가정' 사업의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서 전체를 보면, 필요하다가 70.7%, 필요하지 않다가 29.3%로 필요하다는 응답이 월등히 많았다.

지역별로 보면,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인 지역은 전북 임실군으로 91.1%가 응답하였다. 전체를 기준으로 높게 나온 그 밖의 지역으로는 전남 보성군 80.6%, 경북 김천시 79.2%, 경북 영덕군 74.1% 순으로 보고되었다. 전남 곡성군은 전체에 비해 조금 낮은 69.2%가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여 이 사업의 수요가 높은 지역이라 하겠다(표 Ⅳ-5-3 참조).

〈표 Ⅳ-5-3〉 '준공영 보육가정' 설치 필요성(시·군)

단위: %(명)

구분	필요함			필요하지 않음			계	
	매우 필요	조금 필요	소계	거의 불필요	전혀 불필요	소계		
전체	22.7	48.0	70.7	22.4	6.8	29.3	100.0	(352)
충북 보은군	28.3	30.4	58.7	28.3	13.0	41.3	100.0	(46)
충남 서천군	35.3	23.5	58.8	17.6	23.5	41.2	100.0	(17)
전북 임실군	5.4	85.7	91.1	8.9	0.0	8.9	100.0	(56)
전남 곡성군	26.9	42.3	69.2	30.8	0.0	30.8	100.0	(26)
전남 보성군	50.0	30.6	80.6	19.4	0.0	19.4	100.0	(36)
경북 김천시	20.8	58.3	79.2	16.7	4.2	20.8	100.0	(24)
경북 상주시	37.5	27.5	65.0	15.0	20.0	35.0	100.0	(40)
경북 영덕군	25.9	48.4	74.1	25.9	0.0	25.9	100.0	(27)
경남 창녕군	2.8	63.9	66.7	33.3	0.0	33.3	100.0	(36)
경남 합천군	11.4	45.5	56.8	31.8	11.4	43.2	100.0	(44)

준공영 보육가정의 필요성이 높게 나온 지역을 중심으로 읍·면 단위로 상세하게 분석하였다. 이 사업의 필요성이 가장 높게 나온 전북 임실면 내에서 설치 필요성이 100%나온 읍·면이 무려 총 4군데(청웅면, 성수면, 신덕면, 덕치면)로 집계되었다. 이외에 전남 보성군의 문덕면, 경북 영덕면의 지품면, 경남 창녕군의 길곡면이 필요성이 100%로 나온 지역이다.

또한 이들 지역에서 예상 이용하는 최소 영유아수도 대체로 높게 나왔다. 예상 최소 이용 영유아가 가장 많은 지역은 전남 보성군의 문덕면으로 31.2명이 집계되었으며, 전북 임실의 덕치면이 30.1명, 경남 영덕군의 지품면이 28.0명이라 응답하였다.

준공영 보육가정이 설치된다면 이용할 의향이 있는 지를 묻는 질문에서 대부분 이용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북 임실면 내에서 100%로 설치 필요하다고 응답한 청웅면, 성수면, 신덕면, 덕치면 4 곳에서 이용 의향도 100%로 나와, 이

들 지역의 준공영 보육가정의 수요가 상당히 높음을 재차 확인할 수 있다. 전남 임실군 강진면도 이용 의향은 100%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 밖의 전남 보성군 문덕면, 경북 영덕군 지품면, 경남 창녕 길곡면 지역도 설치 필요성과 이용 의향 모두 높게 나왔다.

〈표 Ⅳ-5-4〉'준공영 보육가정' 설치 및 이용 예상수요(읍·면)

단위: %, 명

도명	시군명	읍면명	응답수(명)	필요성(%)	예상 최소 이용 영유아수(명)	이용의향(%)
전북	임실	청웅	7	100.0	18.2	100.0
		성수	7	100.0	16.1	100.0
		신덕	7	100.0	23.8	100.0
		덕치	7	100.0	30.1	100.0
		신평	7	85.7	25.2	85.7
		강진	7	85.7	14.7	100.0
		지사	7	85.7	13.3	85.7
		삼계	7	71.4	13.3	71.4
전남	보성	겸백	7	85.7	13.3	85.7
		문덕	8	100.0	31.2	87.5
		웅치	8	87.5	20.8	87.5
경북	김천	감천	6	83.3	13.8	66.7
		부항	6	83.3	12.0	83.3
		증산	6	83.3	19.2	83.3
		달산	7	71.4	14.7	57.1
경북	영덕	지품	7	100.0	28.0	85.7
		창수	6	83.3	16.2	66.7
전남	곡성	죽곡	6	83.3	13.2	66.7
		고달	8	75.0	23.2	87.5
경남	창녕	길곡	6	100.0	10.8	83.3

2) 보육모 유무 및 예상 보육모 수

'준공영 보육가정'사업을 실질적으로 이끌어 갈 '보육모'가 해당 지역에 있는지는 이 사업에 있어 수요 못지않게 중요한 사항이다. 보육모로서 일할 사람이 해당 지역에 있는지, 있다면 몇 명 정도인지 알아보았다.

전체를 기준으로 보육모로 일할 사람이 '있다'가 27.3%, '없다'가 72.7%로 보육모로 일할 사람이 없는 지역이 훨씬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있다고 가장 많이 응답한 지역은 '전남 보성군'으로 무려 69.5%가 있다고 하였다. 그 다음으로 충남 서천군

52.9%, 전남 곡성군 38.5%, 충북 보은군 32.6% 순으로 나왔다(표 Ⅳ-5-5 참조).

〈표 Ⅳ-5-5〉 '준공영 보육가정'의 보육모로서 일할 사람의 유무(시·군)

단위: %(명)

구분	있다	없다	계
전체	27.3	72.7	100.0(352)
충북 보은군	32.6	67.4	100.0(46)
충남 서천군	52.9	47.1	100.0(17)
전북 임실군	21.4	78.6	100.0(56)
전남 곡성군	38.5	61.5	100.026)
전남 보성군	69.5	30.6	100.0(36)
경북 김천시	16.7	83.3	100.0(24)
경북 상주시	30.0	70.0	100.0(40)
경북 영덕군	3.7	96.3	100.0(27)
경남 창녕군	11.1	88.9	100.0(36)
경남 합천군	9.1	90.9	100.0(44)

이러한 결과는 앞서 <표 Ⅳ-5-4>에서 살펴본 설치 필요성이 높은 지역과 일치하는 지역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지역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준공영 보육가정의 설치가 필요한 지역에서 보육모로 활동할 수 있는 사람은 반드시 많다고는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준공영 보육가정의 설치 필요성은 높지만 이를 운영하기 위한 보육모로 활동할 사람은 해당 지역에는 많지 않다는 것이다.

오히려 설치 필요성이 낮은 지역인 충남 서천군, 충북 보은군에서 보육모로 일할 사람이 상대적으로 많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가운데, '준공영 보육가정' 설치의 필요성과 보육모로 일할 사람의 있다 두 가지 항목 모두 높게 나온 지역은 전남 보성군이 유일하다.보육모로 일할 사람이 있다고 응답이 높게 나온 군 지역을 읍·면 단위로 다시 상세하게 분석한 결과가 다음 <표 Ⅳ-5-6>이다.

전남 보성군 중에서도 문덕면이 보육모로서 일할 수 있는 사람수가 31.2명으로 가장 많은 지역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보성군 웅치면이 25.2명으로 그 다음을 많은 지역으로 조사되었으며, 전남 곡성군의 목사동면도 12.0명으로 보육모로 일할 사람이 많은 지역에 속한다. 반면, 앞의 <표 Ⅳ-5-5>에서 보육모로 활동할 사람이 있다고 높은 응답을 보인 충남 서천군, 충북 보은군, 경북 상주시의 경우는 보육모로 활동할 수 있는 사람수는 그다지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5-6〉 '준공영 보육가정'의 보육모로서 일할 사람의 유무 및 사람 수(읍·면)

단위: %(명)

도명	시군명	읍면명	응답수 (명)	있음(%)	보육모로서 일할 수 있는 사람 수(명)
전남	곡성	목사동	3	50.0	12.0
		고달	4	50.0	9.2
전남	보성	노동	4	66.7	8.0
		문덕	8	100.0	31.2
		웅치	6	75.6	25.2
충남	서천	마산	6	66.7	5.2
		문산	6	66.7	8.0
충북	보은	속리산	2	33.3	2.0
		탄부	3	42.9	3.9
		회남	3	50.0	3.0
		내북	2	33.3	2.0
경북	상주	중동	2	33.3	2.0
		은척	3	42.9	6.0
		화남	5	71.4	9.0

Ⅴ. '09 농어촌 보육서비스 시범 사업 현황

보건복지부에서는 2009년 초 농어촌지역의 보육사각지대가 가진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정책적 노력의 일환으로 소규모 보육시설 설치 시범사업을 시작하였다. 본 장에서는 '09년 제1차 시범사업에 포함된 농어촌 지역에서 사업의 진행 경과를 살펴보고 관련자 면담을 통해 알게 된 지역별 현황과 문제점 등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1. 사업개요

가. 예산지원

2009년 시범사업에서 책정하고 있는 예산은 각 소규모 보육시설 사업단위당 88백만원이며, 이는 100% 국비지원이고 지역여건에 따라서 지자체의 경상보조가 따랐다. 이 예산은 설치비(또는 리모델링비), 기자재 구입비, 기타 경비로 사용되었고 보육교사 등 인건비는 정부지원시설 기준에 따라 별도 지원되었다. 물론 각 종사자당 농어촌 근무 특별수당(월11만원)도 지급되었다.

나. 시범사업 추진 일정

시범사업에 대한 추진일정은 다음의 [그림 Ⅴ-1-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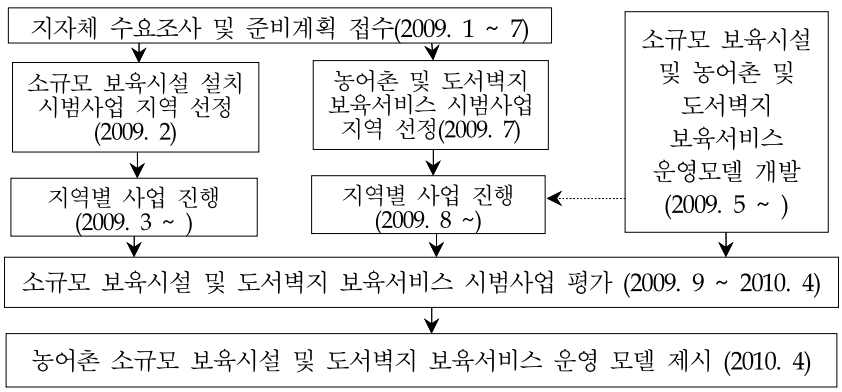

[그림 Ⅴ-1-1] 소규모 보육시설 설치 시범사업 추진 일정

2. 시범 사업 참여 지역과 추진 경과

(1) 농어촌 소규모 보육시설

가. 시범 사업 참여 지역

보건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농어촌 소규모 보육시설 설치 시범사업 계획서를 제출받아 그 중 일부를 사업 참여지역으로 선정하였다. 초기 10개 군 지역에서 계획서를 제출하였으나 현지 점검 등 적합성 검토를 거쳐 그 중 8개 지역을 최종 선정하게 된 바, 선정지역은 다음 <표 Ⅴ-2-1>과 같다.

〈표 Ⅴ-2-1〉 소규모 보육시설 설치 시범 사업 참여 지역

시·도	시·군 면명
인천광역시	강화군 삼산면
강원도	화천군 상서면
충청남도	금산군 남일면
전라남도[주1)]	진도군 조도면, 신안군 장도면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의성군 춘산면, 경주시 산내면[주2)]
경상남도	함양군 서상면

주1) 전라남도의 두 시범지역인 진도군과 신안군은 사업진행 일정이 늦어져서 본 보고서가 최종 작성된 2010년 4월 말 현재 개원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전체적인 경과보고나 평가 부분에 이 두 지역을 누락되어 있다.
주2) 사업 초기 대상지는 '경북 울진군 서면'이었으나 지역 사정으로 사업지에서 제외되고 2009년 말 '경주시 산내면'으로 변경됨. 경주는 일정상 늦게 선정되고 진행된 까닭에 본 보고서의 분석 대상에서는 제외됨.

나. 추진 경과

본 절에서는 시범 사업에 참여하는 각 지역별 추진 경과를 정리해 보고자 한다.

1) 인천광역시 강화군 삼산면

가) 지역특성

삼산면은 강화군에 속한 도서지역으로, 강화대교가 연결되어 있는 강화 본도의 여객터미널에서 카페리선을 이용해 5-6분 정도 이동을 하면 닿게 되는 '석모도'라는 섬

에 있다. 이 지역은 노인가구나 조손가정이 많은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산업면에서 관광업이 발달하여 관광업, 서비스업 종사자들이 많은 편이다. 부속섬이라고는 하나 면적이 꽤 넓고(42.841㎢) 마을 간 이동 거리가 길어 보육시설까지 대부분의 아동이 차량을 이용하고 있다.

삼산면에서 운영중이던 민간보육시설이 2008년 5월 폐지됨으로써 면 내에 2개의 초등병설 유치원만이 있으나 영아를 중심으로 한 보육시설에 대한 수요가 있어 소규모 보육시설 설치가 필요하다는 점이 인정되어 사업이 진행된 결과 2010년 3월 개원하였다. 그러나 초기 예상한 이용 희망 아동의 수는 영유아 총 13명이었으나 2010년 4월 현재 8명의 영아가 보육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나) 사업특성

이 지역 시범사업의 특성은 민간단체(전국경제인연합회)가 국고 지원금에 더하여 많은 지원금을 제공하였다는 점이다. 지자체가 공모에 응하여 얻은 결과이긴 하나 소규모 사업을 성공시킬 수 있는 매우 큰 원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었다. 왜냐하면 설치 공간이 부적절하여 새로운 건물을 지을 필요가 있었으므로 군비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적절한 재정이 확보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책정 예산은 총 365,000천원으로 국고 88,000천원을 제외한 277,000천원은 전경련 지원금으로 시범사업 8개 지역 중 가장 높다.

다) 현황

새로이 설립된 시설은 단층단독건물로, 20명 정원이며 연면적이 431m^2이고 보육실 면적은 132m^2 규모이다. 보육실은 영아반과 유아반 등 2개로 구성되고 유아용 화장실, 교사실이 구비되어 있으며 차량도 운행되고 있다. 특히 보육시설 경영 전문업체인 P사가 시설 설계를 맡아 적정 수준의 건축과 시설, 설비 환경이 구비되었다. 운영은 지역의 한 법인 단체가 위탁을 받아 시설장 및 교사를 고용하는 방식을 위하였고 교사는 시설장 포함 3명, 취사부 1명이 근무하고 있다.

예산이 비교적 풍족한 상황에서 준공되었으므로 교재·교구도 잘 갖추어져 있고 자유놀이 영역구성도 매우 잘되어 있는 편이다. 등하원용 차량은 위탁체인 지역 사찰에서 기부한 것으로 충분한 크기이나 별도의 기사는 없이 시설장이 운행을 직접 하고 있다. 시설장에 의하면 위탁을 법인인 사찰이 받음으로써 시설 운영비가 절감되는 경우가 있는데 잉여 물품이나 과일, 떡 등 간식을 무상으로 제공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또한 전경련은 사업의 자체 홍보를 위해 유명 연예인을 불

러 외벽 벽화그리기 등 행사를 진행하였으므로 시설은 외부도 잘 꾸며진 모습이다.

〈표 Ⅴ-2-2〉 강화군 소규모 보육시설 아동 및 종사자 현황

반 구성	A 반(3명)		B 반(5명)		비고
연령	0세	1세	1세	2세	
아동 수(총 8명)	1명	2명	1명	4명	다문화 가정 아동 없음
종사자(총 4명)	보육교사 1명		보육교사 1명		시설장, 취사부

라) 운영 상태

시설장 면담 시 개원한 지 1개월여가 지난 상태이므로 운영의 원활화는 논의 대상이 되기 어려운 상태였다. 첫 달은 위탁체가 운영비를 완전 지원하였으므로 운영상 어려움은 없는 결과를 보이고는 있었으나 아동 8명으로 운영을 유지하는 것은 사실상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였다. 보육교사 2명이 모두 영아반을 담당함으로써 80%인건비가 지원되고 시설장에게도 시설장 인건비 80%가 지원되고 있었다. 또한 취사부 인건비와 교사 1인에 대한 인건비 100% 지원도 이루어졌다. 그러나 시설장은 운전기사에 대한 인건비 지원이 없다는 점을 어려움으로 들었다. 차량 운영비는 국비 20만원과 군비 30만원 등 50만원 지원이 되고 있어 타지역보다는 지원이 많은 편이었다.

마) 요구 및 전망

부모면담에서 보면 부모들이 걱정하는 바는 보육시설이 지속적으로 지역에서 운영되고 폐지되는 일이 없는 것이었고 대체로 만족하였다. 시설이 전혀 없던 지역에서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는 변화에서 만족도가 가장 컸다. 그러나 지역 특성상 보육료 지원 대상이 아닌 경우가 많아 보육료에 대한 부모 부담이 크다는 점, 특히 연중 시기에 따라 수입이 일정치 않다는 점이 부담을 더 크게 하였다. 또한 관광이나 서비스업에 종사자가 많아 주말보육에 대한 수요가 높았으나 시설장은 교사가 소수여서 형편상 주말보육이 어렵다는 응답을 하였다. 또한 유아 보육이 필요하다는 부모의 요구가 있었고 차량 안전을 위해 카시트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시설장에 의하면 보육아동 수는 날씨가 온난해지면 좀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

나 이 경우 더 먼 지역까지 차량을 운행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최소 편도 30분이상). 그리고 보육시설 가까이에 골프장이 들어설 계획이어서 젊은 세대의 이주가 어느 정도 예상되어 보육수요는 꾸준이 있을 것으로 전망하였다.

2) 강원도 화천군 상서면

가) 지역특성

산간 군부대 내 군관사 지역으로, 인근 보육시설을 이용하기에는 거리상 멀어(차량 편도 20분 이상)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이다. 보육시설이 설치된 건물은 보건지소로 사용되었던 곳으로 군 소유지이며 주변에 학교와 병설유치원, 보건지소 등 공공기관이 자리하고 있다. 이용 희망 영유아는 17명으로 조사되었으나 2010년 4월 13일 현재 14명의 영아가 재원하고 있으며 유아는 병설유치원을 이용하고 있다.

나) 사업특성

<건물 입구와 차량>

<보육실 내부>

[그림 Ⅴ-2-1] 강원도 화천군 봉오다솜어린이집 전경

건물을 새로 신축하지 않고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리모델링만 하여 사용할 것이므로 국고 지원금 88,000천원과 추가 군비 20,000천원으로 사업을 진행하였다. 농촌이면서 군인 관사 지역이라는 특수성으로 민간보육시설 진입이 불가능한 곳이고 보육수요가 국공립시설 설치 가능한 정도는 아니므로 소규모 보육시설 설립이 가장 적

절하다고 볼 수 있다.

다) 현황

사용 건물의 부지면적은 161m^2, 건축면적은 73.89m^2(22평정도)이고 보육실 면적은 37.39m^{2}로 정원은 17명이다. 건물내 보육실은 2개이고 유희실 1개, 유아용 화장실, 교사실, 주방, 그리고 실외 간이 놀이터를 구비하고 있으며 교사는 시설장 포함 3명이고 취사부 1명이 있다. 아동은 1세 6명, 2세 8명으로 총 14명이다.

〈표 Ⅴ-2-3〉 화천군 소규모 보육시설 아동 및 종사자 현황

반 구성	C 반	S 반	비고
연령	1세	2세	
아동 수(총14명)	6명	8명	다문화 가정 아동 없음
종사자(총 4명)	보육교사 1명	보육교사 1명	시설장, 취사부

라) 운영 상태

총 1억 8백만원이 소요된 사업이나 기자재 구입비용이 부족하여 교구 등 설비가 풍부하지는 못한 편이다. 그리고 원래 있던 건물을 개조한 상태라 보육실이 좁은 문제점이 있고 특히 1세 6명을 위한 보육실의 공간이 협소하였다. 교구도 풍족하지는 않은 상태였다.

차량은 운행을 하고 있으며 유류비 30만원(국비포함)을 지원받고 있다. 그러나 차량을 어린이집 명의로 할부 구입을 하여 차량비용을 매달 지급해야 하는 것은 운영비 구조에 어려움을 가중할 것으로 보인다. 차량 이용 시 가장 먼 영아가 시설에서 집까지 10분 거리이므로 주민 거주지와의 접근성은 적절하다고 하겠다.

마) 요구 및 전망

부모 면담을 통해 보면,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는 영유아의 부모는 매우 만족도가 높은 편이었다. 원래 이용하던 보육시설이 상당히 거리가 먼 화천읍(편도 30분이상 소요)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근처에 보육시설이 설립된 데 대해서는 환영하였다. 그러나 이들의 우려 중 가장 큰 것은 현재 만2세가 만3세가 되는 내년에는 보낼 곳이 다시 없어지는 것이다. 인근의 병설유치원은 만3세 정원이 4명이라 턱없이 부

족하며 봉오다솜 소규모 보육시설도 규모상 유아기 아동을 받는 것은 무리이기 때문이다.

앞으로의 아동 수라는 측면을 보면, 군부대가 많은 지역적 특성으로 영유아 인구 감소로 인한 원아모집의 어려움을 크게 없을 것으로 전망되며 농어촌이지만 젊은 세대의 군인 가족이 많은 지역이라 농번기, 농한기가 특별히 없다는 특징이 있어 아동수의 유지에 있어서도 안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

3) 충청남도 금산군 남일면

가) 지역특성

소규모 보육시설이 설치될 건물은 읍지역과 10km떨어진 곳에 위치한 면소재지로서 주변이 면사무소, 학교, 보건소, 주택가로 형성되어 있다. 금산군내 타지역에 비해 인구가 많은 편으로 특히 다문화가정이 많다. 대다수 주민이 농업을 하며 농번기 종일 보육 수요가 높다. 소규모 시설이 들어서기 전 영유아들은 편도 30분이상의 읍지역내 기존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어 거리가 멀었고 지형이 산지지형이어서 도로가 곡선이 많고 특히 동절기에 위험한 요소가 많았다. 이용을 원하는 아동은 10여명으로 조사되었다. 다문화가정이 많아 부모교육이 동시에 이루어질 필요도 있다.

나) 사업특성

과거 보건지소이던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1층과 2층을 모두 활용하여 보육공간을 확보하였으며 소요예산은 국고지원금 88,000천원과 이후 기능보강비 지원을 추가로 받아 진행하였다. 설치지역이 타지역과 달리 산간벽지라기보다는 면소재지이므로 차량을 활용하여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4개 '리'지역들로부터 아동을 모집하였다. 사용건물의 연면적은 155m^2이고 보육실은 65m^2면적으로, 정원 20명 규모이다.

다) 현황

2009년 9월, 소규모 시설 중 가장 먼저 개원을 한 곳으로, 사용건물의 연면적은 155m^2이고 보육실은 65m^2면적으로, 정원 20명 규모이다. 현재 보육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아동의 수는 총 17명으로 영아가 10명 유아가 7명으로 구체적인 반구성은 다음 <표 Ⅴ-2-4> 와 같다.

1층에 보육실 2개와 조리실, (소규모) 교사실, 화장실이 있고 2층에 보육실 1개와 화장실을 마련하였다. 이전 건물 사용의 구조를 그대로 두고 집기 등 설비는 영유아

용으로 바꾼 형태이다. 차량운행을 하고 있으며 운전은 시설장이 하고 있다.

〈표 Ⅴ-2-4〉 금산군 소규모 보육시설 아동 및 종사자 현황

반 구성	A 반	B 반	C 반	비고
연령	1세	2세	3~5 세	
아동 수(총17명)	3명	7명	7명	다문화 가정 아동 4명
종사자(총 5명)	보육교사 1명	보육교사 1명	보육교사 1명	시설장, 취사부

라) 운영

2010년 들어 건물의 2층을 리모델링하고 유아반을 추가하여 교사 1명을 추가 채용하는 등 확장을 한 상황이고 초반기 아동의 수요가 많았기 때문에 가능한 사업확장이었다. 시설장은 교사겸직을 하지 않고 시설장 인건비 80%가 지원되고 있으며 초기 사업비가 충분하지 않아 교재교구는 부족한 편이다. 현재 개원한지 8개월 정도가 지난 현재 운영비가 넉넉하지는 않으나 부족하지는 않은 편이나 교재교구 구입비가 마련되지 않고 있다. 여기에 문제되는 것이 차량 구입에 대한 할부금 납입(우러 50만원정도)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인데, 할부 납입이 끝나면 운영비에 여유가 있을 듯하다.

마) 요구 및 전망

시설장 면담에 의하면 개원 초기에는 운영비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었으나 아이사랑 카드 활용이 정상화되고 아동 수를 늘이면서 운영이 비교적 원활해졌다. 현 상태에서는 보육시설의 실외 환경이 보다 잘 조성되기를 바라는 요구가 있다. 즉 외벽을 좀 더 보육시설답게 꾸미고 바깥 놀이 장비가 구비될 수 있었으면 하였다.

농업이 주 산업인 전형적인 농촌이며 다문화 가정이 점차 늘고 있고 앞으로 태어날 아동도 몇몇 있다하며, 기존 보육시설까지의 거리가 먼 지역이어서 최소 6~7년간 시설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데 아동 수는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었다.

이 시설이 지닌 한 가지 특이점은 지역 내 유치원과 매우 근거리에 있으며 보육시설이 유아를 받기로 한 시점부터 병설 유치원을 운영하는 학교와 갈등 관계가 있다는 것이다. 병설유치원을 다니던 4명의 유아가 보육시설로 옮기고자 하였으나 학교와의 마찰이 심하여 기존 아동은 그대로 유치원을 다니도록 하고 보육시설은 전

해에 영아반이었던 아동을 포함하여 새로운 수요를 개발하였다. 그러나 이 또한 갈등의 요소가 되어 상호 비방하는 사건이 생기는 등 지역 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4) 전라남도 진도군 조도면(2010년 5월 개원 예정)

가) 지역특성

진도군에 속한 군도 중 하나로 도서지역이며 면소재지로 진도 본도로부터 날씨가 좋을 때 20분 이상 배를 타고 이동해야 가야 하는 섬이다. 소규모 보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건물은 면사무소 부지내에 위치한다. 보육수요가 높고 근처에 초등학교와 병설유치원이 있다. 초기에 이용을 희망하는 영유아는 총 14명으로 조사되었다.

나) 사업특성

조도면 복지회관 건물을 리모델링하고 있으며 시설면적은 214.65m^2, 보육실 면적은 40m^2로 조리실, 목욕실, 화장실, 양호실, 비상재해대비시설 등을 모두 갖추고 있다. 연령에 따라 3개 반을 운영할 계획이며 교사도 3명 채용을 계획하고 있다. 국고지원금 88,000천원 범위내에서 시설, 설비을 마련할 계획이다.

다) 추진일정

초기 사업의 추진계획에 의하면 2010년 2월 개원 예정이었으나 일정이 늦어져 2010년 4월 현재 위탁체 선정을 겨우 마무리한 단계이며 앞으로 보육교사 채용과 아동 모집 등을 거쳐 5월 말경 개원을 예정하고 있다.

5)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가) 지역특성

인구 2,104명, 아동수 35명(주민등록상)의 농촌 지역으로, 현재 인근의 보육시설을 이용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편도 40분여이다. 주민은 모두 20여년 전 안동호 수몰지구에서 이 지역으로 이주한 가구들이며 자신의 농토를 확보한 경우도 거의 없고 일정한 소득이 없는 가정이 많다. 마을은 주변 다른 리(里)와 거리를 두고 떨어진 섬(island)형이며 초기 주민등록상 조사에 의한 아동 수보다 실제 수는 반 이하의 매우

소수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소규모 보육시설 설치 계획에 대하여 주민들은 환영하는 분위기였으며, 특히 영아를 둔 가정은 농번기 보육 수요가 높아 적극 추진을 찬성하고 있다. 인근 마을에 유치원이 있어 보육시설 설치에 따른 원생이동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었으나 영아를 중심으로 한 보육만을 제공하고 있다.

나) 사업특성

안동시 서부복지회관 1층을 리모델링하여 보육시설로 구성하였으며 운영은 기존 국공립보육시설의 분원방식(녹전어린이집 서부분원)을 취했다. 이를 위해 안동시 보육정책위원회를 개최하여 분원운영에 따른 논의를 거쳐 안동시의회 임시회에서 조례개정을 추진하였다. 원래 노인을 위한 복지시설을 준비하는 건물이었으나 이를 보육시설로 돌리면서 노인단체 등과 마찰이 있어 이를 해결하고 지행하면서 일정이 지연되기도 하였으나 결국 2010년 3월 초에 개원할 수 있었다.

초기에 국고 88,000천원과 지방비 35,000천원을 확보하여 진행하였으나 이후 개원하기까지 시설설비(12,000천원), 교재교구 등 각종 기자재(49,700천원)를 구비하고 차량을 구입(27,000천원)하며 특히 2010년 들어 장애아를 위한 설비(20,000천원)를 갖추다보니 지방비를 더 많이 투입하게 되어 결국 총 108,700천원의 지방비(시비)가 국비에 추가로 들어가게 되었다.

시설장은 이 분원으로부터 차량으로 15분가량 떨어져 있는 본원의 시설장을 겸하고 있으나 본원과는 무관하게 교사를 새로 채용하고 아동도 별도로 모집되었다.

다) 현황

건물 전체를 리모델링하면서 1층을 보육시설에 맞게 수리하였고 다른 소규모 보육시설에 비해 공간이 매우 넓어 여유 있어 보인다. 시설내부는 보육실 2개, 화장실, 원장실, 유희실, 화장실, 주방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다년간 국공립시설의 시설장 일을 해온 본원의 시설장이 설계부터 관여하여 보육시설 구성과 설비는 우수하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여유공간으로 유희실을 따로 둘 수 있고 거기에 다양한 영역별 교구를 갖추고 있어 아동들에게 좋은 환경이 되고 있었다. 아동 수 및 기본 현황은 다음 <표 Ⅴ-2-5>과 같다.

〈표 Ⅴ-2-5〉 안동시 소규모 보육시설 아동 및 종사자 현황

반 구성	A 반	B 반	비고
연령	1세	2세	
아동수(총11명)	4명	7명	다문화 가정 아동 6명
종사자(총 5명)	보육교사 1명	보육교사 1명	시설장, 취사부, 기사

다문화 가정 출신 아동이 많은 편이며 특히 1명은 편도 25분 거리의 외진 지역에 살고 있고 한 번도 교육적 혜택을 받아본 적이 없는 다문화 아동이어서 본 시설이 많은 책임과 보람을 가지고 보육하고 있었다.

> 아이가 외국인 엄마 밑에서 말도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 자랐어요. 애기를 데려와 여기 좋은 환경에서 돌봐주니까 오던 첫 날부터 그 애는 어린이집에 계속 있겠다고 그러고 집에 안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좋아하는 아이를 보니 너무 마음이 애잔해서 얼마나 눈물이 나던 지요... 정말 다문화 가정 아이들에 대해 보육서비스를 적시에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러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그들을 보육시설로 이끌어 내야한다고 생각해요(2010년 4월 16일 안동시 녹전어린이집 서부분원 시설장 면담 중).

<보육시설 입구> <유희실 내부>

[그림 Ⅴ-2-2] 경북 안동시 녹전어린이집 서부분원 전경

라) 운영

인근의 국공립시설 시설장이 분원 시설장을 겸하는 방식을 취하며 교사 2명 중 1명이 책임교사로서 활동하고 있다. 그러나 시설장 면담에 따르면, 사실상 시설장 업무는 본원 시설장이 모두 수행하고 있어 힘들며 특히 필요한 급·간식 재료 등을 매일 사다 분배해 주는 일이 두 곳을 왔다갔다 해야해서 어렵다고 하였다. 운영의 방식은 앞서 설명한 분원형 소규모 보육시설 중 '재정통합형 분원'에 가까운 형태로 예결산 등 재정, 보육과정운영 등 모든 면에서 본원에 속하여 함께 진행되었다. 그러나 직영식과도 다른 점은 보육시설 면적, 아동수, 교사수 등 독립적인 모든 현황 자료가 본원에 합쳐져서 보고되고 있다는 점이다. 즉, 분원 아동수를 본원에 합치더라도 본원의 정원인 39인에 못 미쳐, 물리적으로는 떨어진 분원건물에 있지만 아동들은 모두 본원 소속인 경우와 차이가 없어 분원이 독립시설인 경우에만 주어질 수 있는 농어촌 교사 1인 100%인건비 지원이라든지 차량운행비지원 등이 없었다. 차량운행비로는 월 40~45만원 가량을 예상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지원이 전혀 없는 것이다. 2010년 4월 현재 1개월여 운영을 한 결과를 보면 분원에 부족한 것을 본원 경영에서 모두 가져와 사용을 함으로써 지탱이 되는 상황이었고 따라서 시설장은 앞으로의 운영에 대해 걱정이 많았다.

보육교사는 시설이 있는 마을 출신의 젊은이를 채용하여 매우 안정적이었고 다른 1명은 안동시로부터 통근을 하고 있었다. 아동의 가정에서 너무 늦게까지 보육하는 것을 원하지 않아서 대부분 4시 30분 정도면 귀가를 시작한다고 하였다.

마) 요구 및 전망

시설장 면담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운영에 대한 우려가 컸다. 시설설치 과정에서는 안동시가 전폭적으로 지원비를 투입하여 훌륭한 시설설비를 갖추게 되었으나 본원의 운영비에서 일부를 분원으로 돌려야 하는 상황까지 나타나 운영에 대해 회의적이었다. 이런 점에서 시설에 주어지는 차량지원비나 교가 추가 인건비 등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원하였다. 즉 분원의 재정적 운영을 독립적으로 풀어주기를 원하고 있었으며 본원시설장이 분원장을 겸직하는 것이 매우 힘든 일이라 이것도 시정이 되기를 바랐다. 뿐만 아니라 책임을 맡은 교사도 교사대로 아동을 돌보는 일에 덧붙여 관리해야 할 부분이 많아 힘들기 때문에 분원은 독립 시설장을 두고 따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었다. 이러한 점에서 분원을 맡고 있는 본원시설장과 책임교사에게는 특별한 수당이나 인센티브도 있는 편이 좋겠다고 하였다.

그리고 지역 특성상 다문화가정이 많아 다문화 가정 아동에 대한 정책적 배려와 그 부모에 대한 교육 등 특별 지원이 강화되기를 바랬다. 이 오지 마을에 다문화가정지원센터 등은 너무나 먼 얘기이고 전혀 혜택이 없다고 하였다. 그리고 다문화 아동을 많이 돌보아야 하는 보육교사에 대해 다문화아동 교육을 위한 교사교육을 강화해 주기를 요구하였다.

본 보육시설이 설립된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는 아동 수 증가의 안정성이라는 측면에서 전망이 그다지 밝지 않았다. 지금 현원인 11명이 본 소규모 시설을 다닐 수 있는 대부분 아동이며 이들이 좀 더 나이가 들면 유치원으로 가야 할 것이므로 빠르게는 내년부터도 줄어들 가능성이 있었다. 유아반이 생길 경우 유아반 교사 인건비가 문제된다고 보았다. 앞으로 몇몇 지역 총각이 결혼을 해 다문화가정을 이룬다면 아동 수가 늘어날 수 있겠으나 그것도 많은 수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하였으므로 안동시 보육시설의 경우 장기 전망이 어려웠다. 그러나 시설자체가 복지관 건물에 들어서 있어서 폐원이 된다 하더라도 건물의 용도 전환은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았다.

6) 경상북도 의성군 춘산면

가) 지역특성

산간지역으로 인구 1,755명, 아동수 29명의 촌락이다. 농업이 주산업인 곳으로 주민들은 소규모 보육시설 설치에 대해 적극 찬성하며 특히 농번기 일손 부족이 있는 영아 가정에서 호응이 높았다.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기존 보육시설은 편도 20분의 이동시간이 필요하며 국공립시설은 편도 50분에 위치하고 있어 소규모 보육시설이 매우 요구되는 지역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인근에 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이 있어 아동의 이동이 있을 것에 대해 반발하는 경향도 있었다. 이 지역은 전형적 농촌으로 다문화가정이 점차 늘고 있는 특징이 있다.

나) 사업특성

무료로 임대되는 마을회관내 유휴공간을 리모델링하여 보육시설을 설치하였으며 국고 지원비 88,000천원과 지방비 10,000천원을 함께 사용하여 초기 설치비로 투입하였다. 특히 분원인 춘산어린이집은 경상북도에서 선정한 다문화 시범 어린이집에 포함되어 다문화 아동을 위한 추가적인 차량 유류비지원, 기자재 지원 등 지자체의 지원을 받고 있다.

다) 현황

연면적은 95.36m^{2}이고 보육실 면적은 63.06m^{2}로, 정원 20명 규모의 시설이다. 기존 국공립시설의 분원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교사는 0세반 1명, 1세반 1명, 2세이상반 1명 등 3명을 채용하였다. 구체적인 아동 수와 반구성, 종사자 현황은 다음 <표 Ⅴ-2-6>과 같다.

특히 다문화 가정배경을 가진 아동이 많아 이들에 대한 특별한 보육이 필요하나 부족한 형편이다. 차량은 군비 지원(추가 26,000천원)을 통해 구입하여 운행하고 있으며 운전은 시간제 급여를 받는 기사(월 50만원 정도)가 맡고 있다.

〈표 Ⅴ-2-6〉 의성군 소규모 보육시설 아동 및 종사자 현황

반 구성	A 반	B 반	C반	비고
연령	1세	2세	3세 이상	
아동 수(총20명)	5명	8명	7명	다문화 가정 아동 17명
종사자(총 6명)	보육교사 1명 (분원책임교사)	보육교사 1명	보육교사 1명	시설장(본원), 취사부, 기사

라) 운영

인근 기존 국공립 보육시설의 분원으로 운영되고 있어 시설장은 본원과 분원, 두 곳의 운영 책임을 모두 맡고 있다. 분원의 운영 현황은 적절하나 부족분 발생이 있는 경우도 있어 이럴 때는 본원의 운영비 일부를 전출금으로 하여 활용하기도 하는 것으로 면담에서 나타났다. 가장 어려운 부분은 “유아반 인건비”로, 현재 규정상 ‘만 3세 유아반의 경우 현원 8명 이상이 되어야 인건비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어 7명 현원인 춘산 어린이집의 경우는 교사 인건비 30% 지원이 없어 문제가 된다. 앞으로 영아가 유아반으로 옮겨가게 되면 영아도 수가 줄어 인건비 지원이 안되므로 이에 대한 우려가 컸다. 시설장이 두 곳을 운영하는 것에 부담을 느끼고 힘들어 하는 면도 있으나 군에서는 재위탁시 우선권을 주겠다는 인센티브 계획을 갖고 있다.

마) 요구 및 전망

의성의 춘산 소규모 보육시설은 분원형으로 운영상 많은 혜택을 보고 있는 것으로 담당 공무원이 보고하였다(2010. 4). 그러나 아동 수가 특히 적은 지역임을 감안

하여, 엄격한 교사 대 아동 비율을 일반 시설 수준보다는 풀기를 바라며 따라서 영아반의 경우 아동이 1명이라도 교사 인건비는 80% 지원해주기를, 그리고 유아반은 최소 요구 인원이 안되더라도 인건비 30%지원이 있기를 바랬다. 그렇지 않으면 운영이 매우 어려워진다는 이유 때문이다. 그리고 '소규모 시설'은 모든 면에서 차별화하여 일반 국공립과는 다른 시설임을 보여주는 "소규모 국공립"이라는 지정 현판을 부여하고 부착함으로써 기준이 다른 시설임을 쉽게 알 수 있도록 가시화해 주었으면 하였다.

분원형 운영으로서 문제점 한 가지는 보육행정시스템 상에서 시설장이 본원과 분원 두 곳에 등록이 될 수 없어 분원 시설장에는 책임교사를 시설장으로 올려 놓아 행정상 부적절하다는 점이다. 이러한 불편함은 빠른 시일 내에 해소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의 수요를 살펴보면, 다문화 가정이 늘어가는 추세이고 입소 대기아가 몇 명 있는 것으로 추산컨대, 의성 소규모 시설은 최소 10년 이상 전망이 안정적이라고 할 수 있겠다. 대기아가 있기는 하지만 보다 큰 일반 시설로 전환할 정도의 수요가 있는 것은 아니어서 소규모 시설이 적소에 설치되었다고 공무원은 평가하였다.

7) 경상남도 함양군 서상면

가) 지역특성

농업 위주 산간지역으로 기존의 보육시설까지 이동시간은 편도 30분가량이었다. 인구는 1,979명, 아동인구는 64명(2009. 6월 현재)으로 이 지역 영유아 17명이 30분이상 차량으로 이동하여 인근 서상면의 국공립 보육시설에 다니고 있었다. 따라서 소규모 시설 설립에 대한 부모의 기대가 크고 환영하는 분위기였다. 초등병설유치원이 1곳 있으나 소규모 보육시설은 영아중심으로 운영할 예정이므로 둘 사이 갈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다. 다문화가정이 많고 영유아 인구가 많아서 원아모집이 어려운 점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군 특수시책사업으로 출산장려정책이 잘 진행되고 있어 다자녀 출산 가정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점이 특이사항이다.

나) 사업특성

국고 88,000천원과 지방비를 포함하여 총 200,000천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공유지에 단층건물을 신축하였으며, 건물 연면적은 90m^2이고 보육실 면적은 54m^2로, 20명 정원 규모이다. 운영방식은 기존 국공립 보육시설(안의 어린이집)의 분원형태이고 현

재 서상면에 주소를 두고 안의면까지 이동하여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기존에 2세이하 영아 17명이 신설 소규모 보육시설로 옮겨 왔다. 아동과 함께 교사 3명도 서상면 시설로 이동을 하였으므로 교사 채용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 분원인 소규모 보육시설의 재정적 운영은 본원과 독립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운영이 어려울 경우는 지자체가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다) 현황

2010년 3월 말 현재 17명의 영아가 보육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으며 교사 3명을 포함하여 종사자는 총 6명이다. 아동을 연령 혼합반을 하지 않고 연령별도 각각 별도의 반을 구성하여 보육의 질을 높이고 있다. 단층 건물에 보육실 3개, 유희실 1개, 화장실 3개, 주방, 사무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보육시설 진입로 주변이 낮은 낭떠러지가 있으나 서상면에서 가드레일을 설치하여 안전성을 높였다. 건물은 남향으로 볕이 잘 들고 시설장의 본원(함양군 서상어린이집) 운영을 통한 오랜 노하우로 영역구성 등 실내 기자재, 교구 등은 잘 갖추어져 있는 편이었다. 특히 본원 근무 경력이 높은 분원 책임 교사가 있어 거의 독립적으로 일과 진행이 가능하였다.

〈표 Ⅴ-2-7〉 함양군 소규모 보육시설 아동 및 종사자 현황

반 구성	A 반	B 반	C반	비고
연령	0세	1세	2세	
아동 수(총17명)	3명	7명	7명	다문화 가정 아동 소수
종사자(총 6명)	보육교사 1명 (분원책임교사)	보육교사 1명	보육교사 1명	시설장(본원), 취사부, 기사

라) 운영

함양의 서상 어린이집은 차량 30분 거리에 있는 국공립 안의 어린이집의 분원으로 시설장이 동일 인물이다. 그러나 예산 운영 등 재정 부분은 책임교사가 맡아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특별활동 프로그램, 교재교구 등은 본원과 교류하는 등 소규모 운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운영의 묘를 살려 해결해 가고 있다. 특히 특별활동 프로그램의 경우 일주일에 한 번씩 2세반 아이들이 차량을 타고 이동해 본원으로 가며 거기서 수업이 이루어진다. 시설장은 일주일에 한두 번 분원을 방문하여 점검을 하고 확인하는 정도로 분원운영을 지원하며 원래 본원을 다니던

아동들이므로 첫 달의 보육비 수납 등도 크게 문제 되지 않았으며 시설장이 분원이 부족한 부분을 본원이 채워줄 수 있다는 기본적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 시설장 겸직에 대해서도 별 부담을 느끼지 않고 있으며 시간이 좀 더 지나 운영이 안정되면 그 때에는 독립시킬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차량은 군과 본원이 반반 분담하여 구입하여 운행하고 있다.

마) 요구 및 전망

부모 면담을 통해 보면 멀리 다닐 필요 없이 집 가까이 보육시설이 생긴 데 대해 매우 만족하고 있었다. 그리고 원래 다니던 보육시설의 시설장이 같이 운영하는 분원이라는 점에 대해 안심하는 점도 있었다. 그러나 기존 본원과 비교할 때 시설면에서 부족함으로 느끼는 점이 있는데 특히 실외놀이터가 없다는 점을 아쉬워하며 실외 놀이기구가 구비되기를 희망하였다.

지역 특성상 다자녀 가구가 많고 지역 내 골프장 설립 계획이 있는 등 앞으로도 영아 수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을 보이고 있으며, 많은 지원으로 인해 보육료 부담을 느끼지 않는 가정이 대부분이어서 함양의 분원식 소규모 시설은 어느 정도 운영 전망이 밝다고 하겠다.

8) 시범사업 참여 지역의 시설 설치 현황

지금까지 살펴본 소규모 보육시설 설치 시범사업 참여 9개 지역의 사업 진행 경과를 총괄적으로 정리해 보면, 도서지역이 2곳, 산간지역 6곳, 지자체 또는 민간 지원금이 책정된 곳이 4 지역, 그리고 2009년 연내 시설 개원 예정인 곳이 3 지역이다(표 V-2-8 참조). 그리고 신축건물을 사용하는 경우가 2곳이고 나머지는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한 경우이다. 아동수는 최소가 8명이고 최대 20명까지 등록되어 있다.

3 곳의 지자체에서 자체예산을 더 투입하여 시설설비 구비, 자동차 구입 등에 지원을 많이 하였으며 방문 관찰해 본 결과 자체예산 투입액이 높은 지역일수록 환경이 우수한 것으로 보였다. 지역마다 현 상황에서 요구하고 있는 사항들이 다르게 나타났으며 특히 안동시의 경우 재정통합형 분원 운영으로 인해 운영이 원활하지 않은 결과가 나타나 본원과 독립적으로 회계관리를 하는 자립형 분원으로 전환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었다.

〈표 Ⅴ-2-8〉 소규모 보육시설 시범사업 참여지역별현황

지역명	지리 특징	예산 (천원)	운영 방식	아동 수(명)	교사 수(명)	개원일	설치형태	요구 사항
강화군	도서	365,000	위탁	8	2	2010. 3	신축	주말보육
화천군	산간	88,000	위탁	14	2	2010. 3	리모델링	유아보육
금산군	산간	88,000	위탁	17	3	2009. 9	리모델링	실외 환경
진도군	도서	88,000	위탁	-	3	2010. 5	리모델링	(개원준비)
안동시	산간	196,700	국공립 분원	11	2	2010. 3	리모델링	자립형분원으로 전환
의성군	산간	98,000	국공립 분원	20	3	2009.10	리모델링	인건비지원 조건완화
함양군	산간	129,000	국공립 분원	17	3	2010. 2	신축	실외놀이터

(2) 이동식 놀이 버스: 전라북도 '매직버스'

가. 사업 개요

2009년 7월 보건복지가족부 농어촌 보육지원사업 공모에 전라북도 '장난감 및 동화책 이동 매직버스' 사업이 선정되었고, 전라북도보육정보센터가 사업을 담당하고 있다.

사업 선정 후, 2개월의 기간 동안 전담인력과 버스, 놀잇감 및 도서 구입, 프로그램 개발 등의 인프라를 구축하고 지역 내 전문가 간담회 등을 통하여 지역 사회의 합의를 끌어냈다. 더불어 사업 위탁체 및 사업 인력이 개별 마을을 방문하고 주민 간담회 등을 통하여 사업을 홍보하는 방식으로 서비스 이용 대상 아동 및 활동 지역을 발굴하였다(표 Ⅴ-2-9 참조).

2개월의 준비 기간을 거쳐 2009년 9월부터 무주, 진안, 장수 지역에 매직버스가 운행되기 시작하였다. '장난감 및 동화책 이동 매직버스'가 순회할 마을은 육아아동수에 비해 인프라 가 부족한 지역과 교통편 및 프로그램 연계활동이 가능한 16개 마을을 선정하였다. '장난감 및 동화책 이동 매직버스'는 격주로 마을을 방문하며, 운행일은 월, 화, 목, 금 4일이고 수요일에는 차량과 운영장비 등을 정비하고 있다.

매직버스 서비스 개시 후 서비스를 희망하는 마을 및 가정이 증가되기 시작하여

2009년 12월 현재 3개 군 32개 마을에서 146명의 아동이 매직버스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표 Ⅴ-2-9〉 매직버스 시범사업개요

일정	주요 내용
2009. 7	· 보건복지가족부 농어촌 보육지원사업 공모 선정
2009. 7~8	· 사업 위탁체 전북보육정보센터 · 사업 전담 인력 채용 · 사업 인프라 구축 —차량 임대 및 개조 —놀잇감 및 도서 구입 —놀잇감 보관 창고 개설, 놀잇감 관리 방안 수립 —놀이 프로그램 개발 · 전문가 간담회 개최 —참석자 : 도시자, 담당공무원, 시설장, 학부모 등 —논의 내용 : 매직버스 운영 관련 의견 청취 · 활동지역 발굴 —대상 마을 선정→마을 이장면담→주민 간담회→활동 마을 선정
2009. 9~12	· 매직버스 운영 · 매직버스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 · 활동지역 발굴 —대상 마을 선정→마을 이장면담→주민 간담회→활동 마을 선정

1) 운영체계

가) 인프라

(1) 차량 임대 및 개조

시범 사업 지역인 전북에서는 1t 트럭을 임대하여 놀잇감 및 도서 대여용 차량으로 개조하였다. 트럭의 짐칸을 두 칸으로 나누어서 한 면은 서가로 꾸미고 다른 한 면은 놀잇감 보관대로 개조하였다(그림 Ⅴ-2-3 참조).

[그림 Ⅴ-2-3] 매직버스 차량

(2) 놀잇감 및 도서 관리

놀잇감 및 도서는 대여 사업을 위하여 연령별 도서 1,583권과 신체 발달 및 인지 능력 발달영역별 놀이감 570종을 구입하였다. 도서 구입 방법은 우수 추천 도서 및 수상작을 중심으로 구매하고, 다문화 부모를 위하여 번안 도서를 마련하였다. 놀잇감은 부모 또는 양육자가 전문성 없이 활용할 수 있는 놀잇감을 중심으로 동일종류 3종 이상 구매하였다.

〈표 Ⅴ-2-10〉 매직버스 사업 구성

놀잇감		도서	
신체발달	110종	감각도서	200권
탈 것	153종	영아도서	59권
완구류	210종	유아도서	133권
블록 등	107종	아동도서	1191권
계	570종	계	1,583권

놀잇감과 도서를 보관할 수 있도록 사업 운영 주체인 보육정보센터내 20여평의 면적의 보육정보실을 장난감 보관 창고로 개조하다. 놀잇감 및 도서 대여시 위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보육정보센터가 사회적 일자리 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는 장난감 세척사업단에 세척 및 소독 사업을 외주하였다.

이와 같은 인프라가 갖추어진 상태에서 놀잇감 및 도서 관리방식은 매일 오후 대여사업이 끝나면 매직버스는 장난감 세척사업단에 회수한 놀잇감을 내려놓고 세척된 놀잇감을 받아서 장난감 보관 창고에 등록한다. 그리고, 다음 날 일정에 필요한 놀잇감 및 도서를 받아 대여 사업을 시작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3) 홈페이지 개설 및 회원관리

매직버스는 회원제로 운영된다. 매직 버스 사업 대상 마을 주민에 한하여 회원가입신청서를 제출하면 누구나 매직버스 관련 프로그램을 지원받을 수 있다. 회원가입을 위해서는 인적사항을 적은 신청서,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면 매직버스 이동 경로에 따라서 2주 1회 놀이 활동과 대여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매직버스 홈페이지는 매직버스 소개, 버스 운행 일정, 놀잇감 및 동화책 정보가 수록되어 있고, 그룹 또는 개별 놀이 활동 일지를 매일 업데이트 하여 매직버스 관련 정보를 수록하고 있다. 하지만, 매직버스 이용자가 조손가족 및 다문화 가족이 많다는 점에서 홈페이지의 이용도는 높지 않다.

〈표 Ⅴ-2-11〉 매직버스 홈페이지 구성

메뉴	주요 내용
매직버스 안내	· 매직버스 소개 · 보육정보센터 소개 · 이용안내(회원가입 문서)
찾아가는 마을	· 매직버스 마을 방문 계획표
오늘의 일기	· 그룹 또는 개별 놀이 활동 일지
찾아가는 놀잇감	· 놀잇감 사업 개요 · 놀잇감별 정보(놀잇감 사진, 사용연령, 활용방법) - 신체, 악기, 완구, 이동, 탈것, 함께 놀이
찾아가는 동화책	· 동화책 사업 개요 · 도서별 정보(도서 사진 및 서지 사항) - 아동, 영아감각, 영아놀이, 영아도서, 유아도서 - 엄마도서, 부모자료
찾아가는 육아지원	· 장난감 놀이방법 · 동화책 놀이방법 · 육아정보지(월1회 발간, 다국어 지원)
회원게시판	·

나) 프로그램

(1) 대여사업

〈표 Ⅴ-2-12〉 매직버스 사업 프로그램

사업명	주요 내용	비고
대여 사업	· 동화책 1,600권, 장난감 570종 · 1회 14일 대여. 장난감 2종, 동화책 2권	2주 1회
교육 사업 (개별, 집단)	· 놀잇감 활용 놀이 활동 · 만들기, 그리기 등의 놀이 활동 · 부모교육 · 아이와 함께하는 활동지, 육아정보지 등 제공	2주 1회
특별 사업	· 건강검진, 발달상담, 인형극 등의 문화체험 · 지역 내 전문자원 활용	월 1회

전북 매직버스 이용자는 2009년 12월 현재 146명의 영유아이다. 월 500여종의 장난감 및 동화책이 이용자에게 대여되고 있다. 원활한 대여 사업을 위하여 동화책 및 장난감 카다로그와 놀이감 매뉴얼을 제작하여 홈페이지에 수록해 놓았다(표 Ⅴ-2-11 참조).

(2) 교육사업

매직 버스 사업은 마을 순회를 통해 아동 발달을 도모하는 놀이와 상호작용을 집단 활동으로 수행할 것으로 기획되었다. 하지만, 시범 사업을 운영하면서, 당초에 확보한 주민등록가구와 거주 가구가 상이한 점과 다문화 아동모의 입출입 제약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다. 또한, 가구별 거리가 멀어 마을 중심지에서 그룹별 활동이 이루어 지지 않음, 가구별 이동거리가 도보로 10분 이상이 되며 그룹으로 5가구 이상 모이기 어려운 현장 상황이 발생하였다. 5가구이상 모이는 지역은 마을별 활동을 진행하고 가정별로 이동거리가 멀어 마을별 활동이 어려운 경우에는 개별('가가호호')방문 서비스를 도입하였다.

전북지역 3개 군에서는 현재 8개 마을에서는 집단 활동을 24개 마을에서는 아동가구에 대한 개별 방문 사업으로 매직 버스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집단 또는 개별 방문 사업 모두에서 전문 인력이 영유아 및 부모(또는 주양육자)와 함께 만들기, 그리기 등의 놀이 활동을 함께 한다.

[그림 Ⅴ-2-4] 그룹 놀이 활동

[그림 Ⅴ-2-5] 개별 놀이 활동

〈표 Ⅴ-2-13〉 매직버스 교육사업 프로그램

활동명	활동방법
글과 그림 짝짓기 놀이	- 그림책의 글과 그림이 각각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글과 그림을 분리한 뒤 서로 짝짓는 활동
소리나는 책 만들기	- 카세트테이프에 이야기를 녹음하여 소리나는 책 만드는 활동
낱말 수집하기	- 책에 나오는 다양한 낱말들을 일정한 기준(또는 주제)을 정해 모으는 활동
독서 골든벨	- 또래나 가족까리 팀을 나누어 동화책에 대한 퀴즈 게임 진행, 매직버스 활동 마무리

또한, 매직 버스가 방문하지 않는 기간에도 부모(또는 주양육자)가 영유아와 함께 놀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각종 활동지를 배포하여 지속적인 놀이 활동을 촉진하고 있다.

(3) 특별지원 사업

매직버스는 마을별로 1회씩의 특별 사업을 기획하여 수행하였다. 특별 사업은 지역 복지관, 인형극 및 마술 자원 봉사자, 병원 등을 연계하여 수행하였다.

〈표 Ⅴ-2-14〉 매직버스 특별지원사업 프로그램

구분	활동명	활동방법
전문기관 연계프로그램	영유아 건강검진	- 성장 및 발달이상, 비만, 안전사고, 청각 및 시각이상, 치아 우식증 등 고위험군 선별
	인형극 공연	- 문화적, 예술적 체험기회
	우리 소리를 찾아서	- 우리가락 및 민요를 통해 감성 높이기
	마술공연	- 다양한 문화에 대한 이해
	산타잔치	- 마을 잔치
상담	육아 상담	- 아동 발달 체크, 행동수정 방법 지원 등

다) 인력

전북 매직 버스 사업프로그램의 운영 인력은 2명이지만, 다수의 지원 인력의 보조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신규 서비스에 대한 활발한 홍보를 위하여 놀이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전문 보육인력 보다 레크레이션 자격을 갖춘 사회복지사를 고용하여 마을 주민들과 친밀성을 확보하는 데에 주력하였다. 사업이 안정화된 후, 전문보육인력으로 교체하여 부모 상담 및 놀이 활동 등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보육정보센터에 소속된 대체교사 들이 마을 집단 놀이 활동을 지원하였고, 보육전문요원이 각종 육아지원 정보지 등을 생산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지원하고 있다.

〈표 Ⅴ-2-15〉 매직버스 사업인력

구분		주요 활동	비고
운영 인력	· 사회복지사 1명	· 놀잇감 활용 놀이 활동	레크레이션 자격증
	· 운전기사 1명	· 운전 및 대여 사업	
지원 인력	· 보육전문요원	· 아이와 함께하는 활동지 제작 지원 · 육아정보지 제작지원 · 홍보물 제작지원 · 홈페이지 컨텐츠지원	보육정보센터직원
	· 대체교사 다수	· 놀잇감 활용 놀이 활동지원	보육정보센터소속
	· 마을 이장	· 주민 홍보 및 참여 독려	

라) 추진체계

전북보육정보센터가 사업의 중심이 되어 지역내 전문인력, 보육전문인력을 확보하여 놀이버스 사업을 직접 이끌어가는 인력으로 활용하고 있다. 그리고 센터내 장난감 보관창고의 교재교구, 장난감 등을 버스에 교체하여 싣고 한 번 사용 후 회수된 장난감 등은 세척장에서 소독된다. 장난감 세척기 구비가 매우 중요하지만 비용과 인력이 많이 드는 일인데, 정보센터가 갖추고 있는 자원을 활용할 수 있어 효율적이다. 다음 [그림 Ⅴ-2-6]을 보면 놀이버스가 가는 3개 군 32개 마을은 매직버스 홈페이지를 활용해 이용의 편리성을 도모하고 있다는 점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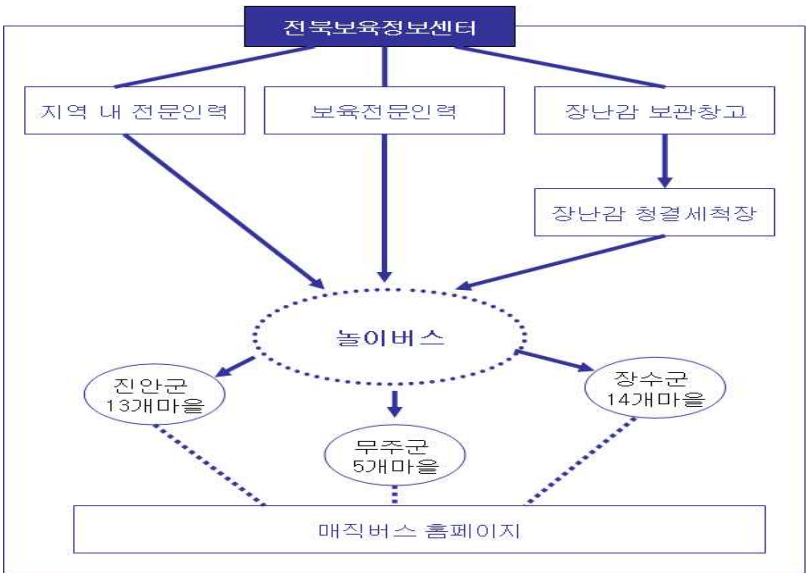

[그림 Ⅴ-2-6] 매직버스 추진체계

2) 이용자 현황

전북 매직 버스 서비스 이용자 현황을 살펴보면, 3개 군 32개 마을에서 146명의 영유아가 월 2회 8개 마을은 집단 활동, 24개 마을에서는 개별 가정 방문 서비스를 통해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표 Ⅴ-2-16 참조).

〈표 Ⅴ-2-16〉 매직버스 서비스 이용자 현황

지역			형태	장소	이용아동	비고
장수	장수읍	필덕마을	개별	가정	2	
		별혜는 마을	개별	가정	2	다문화
		안양 마을	개별	가정	1	
		식천마을	집단	마을회관	16	다문화
		관두마을	집단	육아방	22	
	계북면	계북마을	집단	자치센터	10	다문화
	계남면	계남마을	집단	문예회관	12	다문화
	산서면	하월마을	개별	가정	1	다문화
		월호마을	개별	가정	2	
		구암마을	개별	가정	2	
		미하리마을	개별	가정	2	
		초장마을	개별	가정	1	다문화
	번암면	번암마을	집단	자치센터	4	다문화
		중동마을	개별	가정	3	다문화
진안	백운면	석무마을	개별	가정	1	
		반송마을	개별	가정	2	
		동산마을	개별	가정	1	
		백암마을	개별	가정	3	
	동향면	내금마을	개별	가정	1	
		하양지마을	개별	가정	1	다문화
	안천면	노체마을	개별	가정	1	다문화
		안천마을	집단	자치센터	11	
	정천면	학동마을	개별	가정	1	다문화
		봉학마을	개별	가정	2	다문화
		조포마을	개별	가정	2	
		양명마을	개별	가정	1	다문화
	주천면	주천마을	집단	자치센터	22	다문화
무주	안성면	공진마을	개별	가정	2	
		죽천리마을	개별	가정	1	
		상이목마을	개별	가정	2	
	적상면	적상마을	집단	자치센터	11	
		유평마을	개별	가정	1	
계		32마을			146명	

(3) 부모협동 놀이그룹: 전북 장수군 관두마을

가) 추진배경

'부모협동 놀이그룹 사업'의 시범 대상지역으로 선정된 곳은 전북 장수군 장수읍 장수리 관두마을이다. 이 마을은 2009년 3월 신규로 행정리를 지정받은 마을로서 전체세대(378세대)의 20%정도가 영유아를 보육하고 있으며 특히 다문화가정이 많은 마을이다. 장수군은 전체 인구의 65%가 농업에 종사하는 농촌지역으로 일손 부족으로 부부 노동력을 필요로 하고 있으나 영유아의 양육문제로 부모 모두가 노동에 투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농사일에 투입하지 못하고 있는 양육자는 대체로 결혼이주여성의 어머니로서 한국어가 익숙하지 않은 상태로 보육시설 미이용시 자녀의 언어발달장애 및 학습장애로 이어져 향후 학교부적응 등 방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따라서 영유아기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들이 공동으로 육아방을 운영하여, 양육자들 간의 협조를 통해 농업, 지원봉사 등의 사회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으며, 아이를 그룹으로 돌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여 영유아에게는 즐겁고 행복한 놀이 및 전인발달의 기회와 풍부한 학습상황을 제공하고 부모에게는 육아부담을 완화하여 마음놓고 경제활동과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였다.

나) 사업 신청 가정의 현황

다음은 관두마을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실린 내용이다. 관두마을의 영유아의 현황을 보면, 0~6세까지 영유아가 총 100명으로 이 중 시설 이용아는 48명이고 미이용 아동수는 52명으로 미이용 아동수가 조금 더 많다.

〈표 Ⅴ-2-17〉 관두마을 영유아 일반현황

세대수	아동수 (0~6세)	시설이용 아동수	시설미이용 아동수	다문화가정 자녀수	보육시설수 (장수읍)	비고
378세대	100명	48명	52명	15명	2개소	

주: 관두마을 사업계획서

이 사업의 수요를 조사한 결과, 다음 <표 Ⅴ-2-18>를 보면 전체 영유아 100명 중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영유아는 총 50명이었으며 이 중 영아 17명, 유아 33명으로 유아가 훨씬 더 많았다. 일반적으로 유아는 시설에 보내기를 원하고 실제 이용율도 높다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특이한 점이라 하겠다.

〈표 Ⅴ-2-18〉 부모협동 놀이그룹 수요조사

단위 : 세대. 명

전체 세대수	영유아 부양세대	아동수			육아방 참여 희망아동수		
		계	영아	유아	계	영아	유아
378세대	75세대	100	40	60	50	17	33

주: 관두마을 사업계획서

다음 <표 Ⅴ-2-19>는 이 사업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가정의 부모 직업현황이다. 부모 모두 농업에 종사하는 가정이 가장 많고, 공무원(10명), 공기업(9명), 회사원(5명), 금융기관(4명) 순으로 나타났다. 어머니가 직업이 없는 경우가 36명 중 11명으로 이는 어머니의 2/3는 직업이 있는 것으로 부모가 순번을 정해서 보육모 역할을 수행하는 이 사업에서 보육모의 역할 배분을 어떻게 할 지는 본 사업계획서에는 나타나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보육모의 역할 배분이 중요한 과제라 하겠다.

〈표 Ⅴ-2-19〉 참여희망세대 부모 직업현황

단위 : 명

계		농업		회사		공무원		공기업		금융기관		무직		기타	
부	모	부	모	부	모	부	모	부	모	부	모	부	모	부	모
36	36	12	12	4	1	10	6	6	3	2	2	2	11	1	1

주: 관두마을 사업계획서

다) 설치 현황 및 운영방법

관두마을의 '공동 놀이그룹 사업'은 '공동육아방'이란 이름으로 놀이방을 개설하고 마을이장과 주민대표자(부녀회장)가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한다.

이 마을에서 공동육아방은 아파트 단지 내 유휴공간을 사용한다(그림 Ⅴ-2-7 참조).

[그림 Ⅴ-2-7] 관두마을 부모협동 놀이사업 위치

내부 평면도는 다음 [그림 Ⅴ-2-8]과 같다. 놀이기구방, 취침방, 주방이 같은 공간 내에 있고 화장실은 복도로 나와 경로당 옆에 위치해 있다. 놀이방과 취침방은 커텐으로 구분되어 있다. 경로당이 바로 앞에 위치해 있어 육아방과 연계해서 운영할 수도 있는 여지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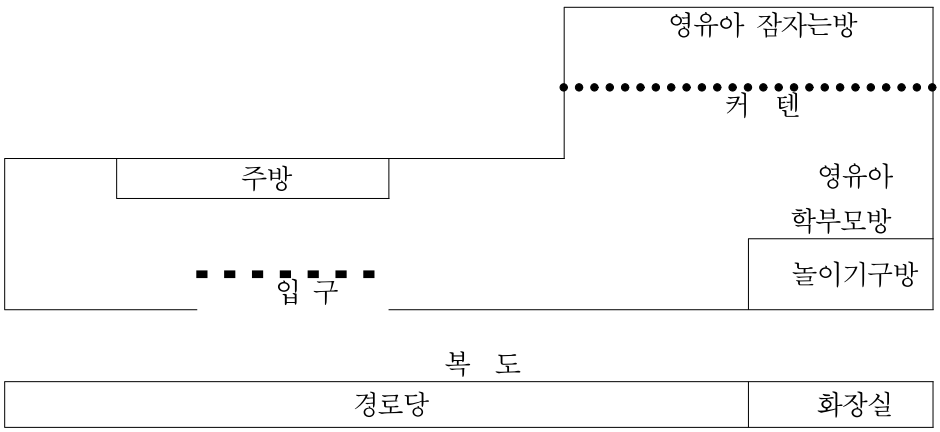

[그림 Ⅴ-2-8] 관두마을 부모협동 놀이사업 평면도

관두마을에서 계획한 부모협동 놀이사업의 운영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의 보육은 참여 부모가 공동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교대로 한다. 둘째, 놀이방 청소와 아이 간식 준비는 공동육아방에 참여하는 부모들이 근무조를 편성하여 실시한다. 셋째, 운영시간은 평일 아침 8시부터 오후 6시까지며 토요일과 공휴일에도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한다.

한편, 이 사업을 통해 육아부담 경감으로 경제활동 참가율 및 출산율의 증가, 공동양육으로 인한 주양육자의 삶의 질 향상 및 영유아의 건전한 성장·발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한편, 영유아 안전 관리에 대한 문제가 우려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으로 보험가입을 의무화할 계획이며, '영유아보육법'에 의거 인가된 시설과 같이 보육에 대한 공적책임의 부담이 존재하는 등의 문제점과 이에 해결방안이 과제로 남아 있다.

Ⅵ. 농어촌 보육서비스 시범사업 평가

1. 사업의 평가 계획

차후 소규모 보육시설 시범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개선에 도움을 될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하고 정련된 소규모 보육시설 운영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각 지역별로 시범사업의 진행과정과 효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게 된다. 평가는 1차 평가와 2차 평가로 나누어 실시될 것으로, 1차 평가는 설치 과정 및 시설설비 수준의 적절성을 평가하는 데 목적을 두고, 2차 평가는 시설 운영의 효과성과 서비스 만족도를 평가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표 Ⅵ-1-1〉 소규모 보육시설 설치 시범사업 평가 계획

구분	1차 평가	2차 평가
목적	- 설치과정 및 시설설비 수준 적절성 평가	- 시설 운영 효과성 및 서비스 만족도 평가
시기	- 시설 개원 후 2주 이내	- 11월 3째 주
방법	- 지자체 자체평가	- 지자체 자체평가 - 연구진 관찰 - 사용자 만족도 조사
주요내용	- 보육시설 설치계획의 적절성 - 사업추진 과정의 합리성 - 홍보 추진 정도 - 시설 기본 설비 적절성	- 계획 대비 목표 달성 - 보육시설 운영관련 실적 - 예산 집행 합리성 - 수요자 및 공급자 만족도

1차 평가는 개원한 시설을 대상으로 개원 후 2주 이내에 실시하며 지자체의 자체평가 방법을 취한다. 여기에서는 보육시설 설치 계획이 적절했는지, 사업추진 과정은 합리적이었는지, 홍보는 적절히 추진해 왔는지, 시설 기본 설비는 우량한지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표 Ⅵ-1-2〉 소규모 보육시설 설치 시범사업 1차 평가 세부 내용

항목	평가 내용	평가기준
계획의 적절성	보육정책위원회 개최	- 소규모 보육시설 설치관련 지방보육정책위원회 개최
	지역의견 수렴	- 설치 계획 수립시 대상지역민에 대한 보육수요 조사
추진의 합리성	관련 기관과의 협력	- 시도 보육정보센터, 설치 지역 내 타보육시설 등과의 협의
	지역사회 참여 정도	- 계획수립 단계부터 지역주민 또는 관련 전문가 참여
	일정 관리	- 계획수립시 제안 일정과 실체 추진 일저의 일치
홍보의 적절성	위탁자 선정	- 공개적인 과정을 거친 위탁자 선정
	홍보전략수립	- 소규모 보육시설 설치관련 홍보전략 수립여부
	홍보실시	- 인터넷, 각종 활자매체 등 다양한 방법 홍보
시설 설비의 적절성	영유아용 가구와 설비	- 가구, 화장실, 설비의 영유아용 적합성
	보육실과 조리공간 분리	- 보육실과 조리실 경계가 뚜렷하고 조리공간에 아동 접근 차단
	안전 시설 및 설비	- 화재예방 안전점검 통과. 낙상 및 미끄럼 방지 장치
	위생 시설 및 설비	- 조리실과 음식저장 관련 안전 정도
	교사 대 아동 비율	- 소규모 시설 지침사의 비율 준수
	교사 및 대체교사 확보	- 지침상의 정정 인원확보. 교사 교육 등 상황에 대한 교사수급 계획수립
	취사부 위생 교육	- 취사부 위생교육 이수 여부
	교재・교구	- 각 영역 별 다양성, 충분성

2차 평가는 11월 말 경 이루어질 것이고, 지자체 자체평가와 연구진의 관찰, 이용자 만족도 조사 등 3개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실시된다. 평가 내용을 보면, 계획대비 목표달성, 보육시설 운영관련 실적, 예산 집행 합리성, 수요자 및 공급자 만족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규모 보육시설 사업뿐 아니라 부모양육 지원 관련 시범사업 참여 지역에 대해서도 이와 동등한 수준의 평가가 이루어질 것이다.

평가실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표 VI-1-1>과 <표 VI-1-2>, <표 VI-1-3>에 제시되어 있다.

〈표 VI-1-3〉 소규모 보육시설 설치 시범사업 2차 평가 세부 내용

항목	세부내용		지표	방법
사업성과	- 계획대비 목표달성도		- 보육충족률(계획대비 현원)	시설장 면담(연구진)
	- 보육시설 운영관련 실적	시설 운영	- 운영위원회 설치 여부	시설장 면담(연구진)
		서비스 질	- 아동 생활태도 개선 정도 - 아동 안전 증진 정도	부모 조사
			- 표준보육과정 활용정도	연구진 관찰, 면담
		지역사회연계	- 부모참여 프로그램실시 - 지역사회 자원 활용정도	시설장 면담(연구진)
예산	- 예산집행의 합리성		- 계획대비 집행률	지자체 자체평가
만족도	- 수요자 만족도	이용 편의성	- 이동 거리 - 보육 시간 - 가계 부담	부모 만족도조사
		서비스만족도	- 보육시설 물리적 환경 - 아동 안전 - 위생 및 급간식 - 아동생활태도 - 교사와 상호작용 - 보육 프로그램	
	- 공급자 만족도	근무여건	- 근무환경	보육교사/시설장 만족도조사(면담)
		운영여건	- 행정적 지원 - 재정적 지원 - 지역사회 여건	

2. 소규모 보육시설 시범사업의 평가 및 전망

농어촌 소규모 보육시설은 보건복지가족부의 2009년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현재 전국 8개 군 지역[10]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 중 충청남도 금산군과 경상북도 의성군 등 2개 지역의 보육시설이 2009년도에 개원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신안과 진도를 제외한 나머지 4개소가 2010년에 개원하였다. 본 절에서는 개원한 6개 소규모 보육시설을 중심으로 그 결과를 정리하였다.

가. 시범 사업의 평가

평가는 크게 1차와 2차 평가로 나눌 수 있는 바, 1차 평가는 지자체의 담당 공무원이 자체평가지를 통해 자기보고하는 식으로 이루어졌다.

평가의 체계와 내용은 본 장의 2절 중 라항에 자세하게 수록되어 있다.

1) 1차 평가

1차 평가의 목적은 설치과정 및 시설설비 수준의 적절성을 평가하는 것이었다. 평가 시기는 시설 개원 후 2주 이내로 계획하였고 지자체 자체평가를 실시하였다. 평가의 시기는 다음 <표 Ⅵ-2-1>에 나타나있다. 평가방식은 자체평가지를 이메일로 담당 공무원에게 송부하여 일정 시간동안 평가하게 하고 결과를 다시 이메일로 회수하였다.

여섯 개 보육시설의 1차 평가의 결과를 보면, 항목에 따라 조금씩 차이는 있으나 대체적으로 순조롭게 진행되었다고 하겠다. 세부 항목별로 살펴보면 우선, '계획의 적절성' 항목에서 당연 설치 가능 지역인 경북 의성군을 제외한 나머지 5곳 모두 보육정책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를 실시하였으며, 경남 함양군을 제외한 나머지 5개 보육시설이 지역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응답하였다.

---

10) 최초 9개 군 지역 중 경상북도 울진군이 진행을 포기한 상태이므로 2009년 12월 현재 최종 8개 군이 됨.

〈표 Ⅵ-2-1〉 소규모 보육시설 개원 현황 및 1차 평가 시기

	보육시설명	개원일시	원아수	교사수	1차 평가 시기
충청남도 금산군	해맑은 어린이집	2009. 9. 1	17	3	2009. 9. 10 ~ 14
경상북도 의성군	춘산 어린이집	2009. 11. 1	20	3	2009. 11. 11 ~ 15
경상남도 함양군	안의 어린이집 서상 분원	2010. 3. 2	17	3	2010. 3. 18 ~ 29
강원도 화천군	공립봉오다솜 어린이집	2010. 3. 2	14	2	2010. 3. 26 ~ 4. 2
경상북도 안동시	녹전 어린이집 서부분원	2010. 3. 18	11	2	2010. 4. 1 ~ 16
인천광역시 강화군	삼산군립 어린이집	2010. 3. 2	8	3	2010. 3. 22 ~ 30

주) 시설장포함 교사수임. 보육보조인력이 1명 있고 취사부가 1명 있음.

‘추진의 합리성’ 항목에서 경북 의성군, 경남 함양군, 강원 화천군, 경북 아동시 등 4개 보육시설에서 관련 기관과의 협력 과정을 거쳤으며 예정 계획대로 추진된 곳은 충남 금산군, 강원 화천군, 경북 안동시 등 3곳에 불과하였다. 예정대로 추진하지 못한 지역의 그 이유를 보면, 경북은 사업자 선정과 공사기간 연장을, 경남 함양군은 예산 부족을, 인천 강화군은 전경련 주도의 일정에 맞추다 보니 일정이 늦어졌다는 등을 꼽았다.

‘홍보의 적절성’ 항목에서는 위탁자 선정이 불필요한 분원형 3곳(경북 의성군, 경남 함양군, 경북 안동시)을 제외한 나머지 3 곳에서 보육시설장을 공개로 선정하는 절차를 밟았으며 6곳 전 지역에서 소규모 보육시설 개소에 관해 주민회의, 이장회의, 안내문 발송, 전화, 현수막, 초대장 발송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 설비의 적절성’ 항목에서는 대체로 적절하다고 평가하였으나, 세부 항목 중 교재·교구는 6개 보육시설 모두 보통이거나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응답하였다.

〈표 Ⅵ-2-2〉 농어촌 소규모 보육시설 1차 평가 결과(2010년 4월 개원 기준)

항목	평가 내용	충남 금산군	경북 의성군	경남 함양군	강원 화천군	경북 안동시	인천 강화군
계획의 적절성	보육정책위원회 개최	심의 실시	심의 미실시 (당연 설치 가능지역)	심의 실시	심의 실시	심의 실시	심의 미실시
	지역의견 수렴	실시(전화)	실시(전화)	실시하지 않음	실시(기타)	실시(전화, 방문)	실시(전화)
추진의 합리성	관련 기관과의 협력	의견수렴 실시않음(인근의 반대의 견피함)	수렴함	수렴함	수렴함	수렴함	수렴하지 않음 (인근보육시설 및 정보센터 전무)
	지역사회 참여 정도	없음	전문가 참여함	없음	없음	있음	있음
	일정 관리	일정대로 추진됨	일치 않음 (사업자 선정, 공사기간 연장)	일치하지 않음 (예산 미확보)	거의 일치함	거의 일치함	일치하지 않음. (전경련 주관이어서 다소 차이 발생함)
홍보의 적절성	위탁자 선정	공개 선정함	선정불필요 (분원형)	선정불필요 (분원형)	공개 선정함	선정불필요 (분원형)	공개 선정함
	홍보실시 여부	실시함	실시함	실시함	실시함	실시함	실시함
	홍보방법	주민회의시 홍보	안내문 발송,전화, 이장회의시 홍보		현수막 등	지역사회추진위원회 모임, 회의실시, 개원소식과 초대장 발송 등	면사무소 및 지역주민에게 홍보함. 전경련에서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 홍보실시
시설 설비 의 적절성	영유아용 가구와 설비	적절	적절	충분치 않음	적절	적절	적절
	보육실과 조리공간 분리	적절	적절	적절	보통	적절	적절
	안전 시설 및 설비	적절	적절	적절	보통(입구에울타리 설치필요)	적절	보통
	위생 시설 및 설비	적절	적절	적절	적절	적절	적절
	교사 대 아동 비율	적절	적절	적절	적절	적절	적절
	교사 확보	보통정도	적절	적절	적절	보통	보통
	취사부 위생 교육	보통정도	적절	적절	적절	적절	적절
	교재・교구	충분하지않음	보통정도	적절(탐구활동 영역 보강필요)	보통(언어·탐구활동영역보강필요)	보통(표현·탐구활동영역 보강필요)	적절

2) 2차 평가

2차 평가는 사업의 성과와 이용자 및 근무자의 만족도를 살펴보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하였다. 사업의 성과라는 측면에서 살펴보면, 금산과 의성은 최초의 계획보다는 국비지원금 집행이 지체되어 개원이 조금 늦어졌으나 연내에 개원을 하였다는 점에서 사업 진행이 순조로웠다고 보아야 한다. 2차 평가의 항목별로 두 소규모 보육시설을 논의해 보고자 한다.

가) 사업 성과: 계획대비 목표달성도

금산군 보육시설이 9월 1일에 개원함으로써 원래 여름동안 개원하고자 한 계획에서 1-2개월 늦어졌으나 국비지원이 늦어지고 새롭게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계획보다 지체되었음을 감안하면 적정하게 진행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의성의 경우도 계획보다 2개월 정도 늦게 11월 1일에 개원을 하였으나 공사가 초기 추측보다 기간이 많이 걸렸기에 진행이 늦은 결과가 나온 것이다. 의성은 자체 지방 사업비를 1,000만원 추가하여 건물 공사를 더욱 견고히 하였다고 평가가 되어 사업은 적절히 진행되었다고 볼 수 있다.

보육인원 충족률을 보면 금산은 초기 10명을 계획하였으나 11명을 보육하고 있고(20명 정원) 의성의 경우는 20명 계획에 18명으로 2명이 부족하다. 그러나 분원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의성춘산어린이집의 경우 상대적으로 아동 수나 예산운용에서 안정적인 것으로 시설장 면담에서 나타나고 있어 향후 정원이 증원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교사수에 있어서도 두 시설 모두 모집에 어려움을 전혀 느끼지 않았고 계획한 수대로 채용을 한 상황이다.

나) 사업 성과: 시설운영관련 실적

개원한 지 얼마되지 않았기에 아직 운영위원회를 조직하지는 못하고 있고 부모참여 프로그램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지는 못하다. 지역사회 자원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금산 해맑은 어린이집의 경우 지역의 주민 2명을 각각 취사부와 보육보조인력으로 채용하여 취사는 물론 등하원 지도, 영아 수면 지도 등 보조적인 일을 맡기고 있다. 보육보조인력의 경우 충남도비로써 인건비가 지원되고 있다. 개소시 지역 주민에게 많은 홍보를 하여 동네 잔치식으로 개소식을 진행하여 인식을 높였고 여러 명이 대기하면서 입소를 원하고 있는 상태이다.

금산의 경우 교사 경력이 오래인(8년) 시설장이 보육시설을 운영하고 있고 의성의

경우는 분원이므로 본원의 경력있는 시설장이 직접 운영을 하고 있어 운영에 안정의 꾀하고 표준보육과정을 활용하기 위한 노력도 진행하고 있다.

다) 이용 실태 및 만족도

개원한 6개의 소규모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영유아의 부모를 대상으로 만족도를 조사하였다. 먼저 아동들의 가정적 특성을 살펴보고 구체적인 만족도 조사결과를 제시하고자 한다.

(1) 시설 이용 영유아 양육 특성

소규모 보육시설을 이용하기 이전 낮동안 누가 주로 돌보아 주었는지에 대해 살펴 본 결과 경북의성 춘산 어린이집[이하 의성], 경남함양 안의 어린이집[이하 함양], 인천강화 삼산군립 어린이집[이하 강화], 강원화천봉오다솜 어린이집[이하 화천], 경북안동 녹전 어린이집(서부 분원)[이하 안동] 모두 어머니가 주 양육자인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충남 금산 해맑은 어린이집[이하 금산]은 아버지가 주 양육자였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또한 의성과 안동에서는 조부모가 낮동안 주양육자였다는 응답도 1/3정도 되었다.

〈표 VI-2-3〉 소규모 보육시설 이용 이전 주양육자

단위: %(명)

지역	부	모	조부모	기타	계
의성	13.3(2)	53.3(8)	26.7(4)	6.7(1)	100.0(15)
금산	72.7(8)	18.2(2)	-	9.1(1)	100.0(11)
함양	5.9(1)	82.4(14)	5.9(1)	5.9(1)	100.0(17)
강화	-	62.5(5)	25.0(2)	12.5(1)	100.0(8)
화천	-	70.0(7)	10.0(1)	20.0(2)	100.0(10)
안동	-	60.0(6)	40.4(4)	-	100.0(10)
계	15.5(11)	59.2(42)	16.9(12)	8.5(6)	100.0(71)

소규모 보육시설을 이용하기 이전 다른 육아지원기관을 이용한 경험이 있었는지에 대해 살펴본 결과 안동과 의성은 이용하지 않은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었으며, 금산은 이용한 경우와 이용하지 않은 경우가 각각 절반 정도이었다. 또한 함양, 강화, 화천은 이용하지 않은 경우가 절반 이상으로 나타났다. 육아지원기관을 이용하지 않았다면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의성은 거리가 멀기 때문인 경우와 자녀가 어리기 때문에 이용하지 못했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비용이 부담되어 보내지 못했다는 응

답은 두 번째로 많았다. 금산, 함양, 화천, 강화, 안동은 자녀들이 어리기 때문에 보내지 못했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비용이 부담되거나 양육자가 있는 경우, 거리가 멀기 때문에 육아지원기관을 이용하지 않았다는 응답도 있었다.

〈표 VI-2-4〉 보육시설/유치원 이용 경험

단위: %(명)

지역	있음	없음	계
의성	6.7(1)	93.3(14)	100.0(15)
금산	54.5(6)	45.5(5)	100.0(11)
함양	41.2(7)	58.8(10)	100.0(17)
강화	25.0(2)	75.0(6)	100.0(8)
화천	33.3(3)	66.7(6)	100.0(9)
안동	-	100.0(10)	100.0(10)
계	27.1(19)	72.9(51)	100.0(70)

〈표 VI-2-5〉 보육시설/유치원 미이용 이유

단위: %(명)

지역	거리 멈	비용 부담	자녀 어림	양육자 있음	자녀 적응 못함	기타	계
의성	35.7(5)	21.4(3)	35.7(5)	-	-	14.3(2)	100.0(14)
금산	-	20.0(1)	80.0(4)	-	-	-	100.0(5)
함양	-	-	80.0(8)	10.0(1)	-	10.0(1)	100.0(10)
강화	16.7(1)	-	50.0(3)	16.7(1)	-	33.3(2)	100.0(6)
화천	-	16.7(1)	83.3(5)	-	-	-	33.3(6)
안동	20.0(2)	-	70.0(7)	-	10.0(1)	10.0(1)	100.0(10)
계	15.7(8)	9.8(5)	62.7(32)	3.9(2)	2.0(1)	29.4(15)	100.0(51)

(2) 시설 이용 영유아 부모 특성

의성 부모들의 특성은 부모 연령은 아버지는 주로 30-40대, 어머니들은 20-30대가 가장 많았다. 부모들의 국적은 아버지는 모두 한국인이었으며, 어머니들은 베트남 출신이 가장 많아 60%이상이 다문화가정이었다. 아버지 학력은 고졸이 가장 많았으며, 어머니는 중졸이하가 가장 많았다. 부모들 직업은 농어업 등의 일을 하고 있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어머니들 중 1/3이 전업주부 이었다.

금산 부모들의 특성을 살펴보면, 부모들의 연령은 아버지는 주로 30-40대, 어머니들은 30대가 가장 많았다. 부모들의 국적은 아버지는 모두 한국인이었으며, 어머니

들중 1/3은 베트남 출신으로 전체 30%는 다문화가정이었다. 학부모들의 학력은 고졸이 가장 많았으며, 대졸이상도 전체의 1/3 정도이었다. 부모들 직업은 아버지는 농업어업 등 농촌관련 일을 하고 있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어머니들은 전업주부(무직이라고 응답한 경우 포함)가 가장 많았다.

〈표 VI-2-6〉 소규모 보육시설 이용 영유아 부모특성

단위:명

구분		의성		금산		함양		강화		화천		안동	
		부	모	부	모	부	모	부	모	부	모	부	모
연령	20대	-	5	1	1	-	5	-	1	1	1	-	2
	30대	4	6	4	9	7	9	6	6	5	9	5	6
	40대	5	2	5	-	5	3	1	1	1	-	2	-
	50대이상	1	-	-	-	-	-	-	-	-	-	-	-
	계	10	13	10	10	12	17	7	8	7	10	7	8
국적	한국	10	3	10	7	15	12	7	8	7	10	8	4
	베트남	-	9	-	4	-	4	-	-	-	-	-	5
	필리핀	-	-	-	-	-	-	-	-	-	-	-	1
	기타	-	1	-	-	-	-	-	-	-	-	-	-
	계	10	13	10	11	15	16	7	8	7	10	8	10
학력	중졸이하	1	6	1	3	1	2	-	1	-	-	-	1
	고졸	6	4	7	4	10	12	4	1	3	7	6	6
	대졸이상	3	2	3	3	3	-	3	6	4	3	1	2
	계	10	12	11	10	14	14	7	8	7	10	7	9
직업	농어업등	8	7	6	2	8	5	2	-	-	-	6	5
	판매·서비스직	-	1	-	-	-	-	1	1	-	-	-	1
	사무기술직	-	1	2	1	2	1	-	-	2	-	-	-
	자영업	-	-	-	-	2	2	3	2	-	1	-	-
	운수업	-	-	-	-	-	-	-	-	1	-	-	-
	기능·숙련공	1	1	-	1	-	1	-	-	-	-	-	-
	전업주부	-	3	-	3	-	4	-	2	-	9	-	3
	무직	-	-	-	3	-	-	-	1	-	-	-	-
	기타	1	-	2	-	1	1	1	2	5	-	-	-
	계	10	13	8	10	13	14	7	8	8	10	6	9

함양 부모들의 특성을 살펴보면, 부모들의 연령은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30대가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은 40대가 많았다. 부모들의 국적은 아버지는 모두 한국인이었으며, 어머니들중 1/3은 베트남 출신으로 전체 30%는 다문화가정이었다. 학부모들의 학력은 고졸이 가장 많았으며, 부모들 직업은 아버지는 농업어업 등 농촌관련 일을 하고 있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어머니들 역시 농촌관련 일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은 전업주부가 가장 많았다.

강화 부모들의 특성을 살펴보면, 부모들의 연령은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30대가 대부분이었다. 부모들의 국적은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한국인이었다. 학부모들의 학력은 아버지는 고졸과 대졸이상이 비슷하게 나타난 반면, 어머니들은 대졸이상이 대부분이었다. 부모들 직업은 아버지는 자영업에 종사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은 농업관련 일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 어머니들은 자영업과 전업주부가 가장 많았다.

화천 부모들의 특성을 살펴보면, 부모들의 연령은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30대가 대부분이었다. 부모들의 국적은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한국인이었다. 학부모들의 학력은 아버지는 대졸이상과 고졸이 비슷하게 가장 많았으며, 어머니들은 고졸이 가장 많았다. 부모들 직업은 아버지는 사무직에 종사하거나 군인 등 기타 직업군에 종사하고 있었으며, 어머니들은 전업주부가 거의 대부분이었다.

안동 부모들의 특성을 살펴보면, 부모들의 연령은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30대가 대부분이었다. 부모들의 국적은 아버지는 대부분 한국인이었으며, 어머니들은 베트남인 경우가 1/2로 가장 많았으며, 필리핀 국적도 1명 있어 전체 60% 정도가 다문화가정이었다. 학부모들의 학력은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고졸이 가장 많았으며, 부모들 직업은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농업어업 등 농촌 관련일에 종사하는 경우가 절반이상으로 가장 많았다(표 Ⅵ-2-6 참조).

(3) 보육시설 이용 영유아 가구 특성

의성 가구특성을 살펴보면, 조부모와 함께 사는 3세대 가족이 가장 많았으며, 두 번째로 많은 가족유형은 부부와 자녀만 사는 2세대 가족이었다. 이외에 어머니와 자녀만 사는 편부모 가정도 1명 있었다. 월평균 소득은 100만원 미만이 40% 정도 이었으며 그 다음은 100-200만원 미만으로 거의 80% 이상이 200만원 미만의 소득수준을 보이고 있었다.

금산 가구특성을 살펴보면, 조부모와 함께 사는 3세대 가족이 가장 많았으며, 두 번째로 많은 가족유형은 부부와 자녀만 사는 2세대 가족이었다. 월평균 소득은 100-200만원 미만이 절반가까이 되었으며, 그 다음은 100만원 미만으로 거의 80% 이상이 200만원 미만의 소득수준을 보이고 있었다.

함양 가구특성을 살펴보면, 부부와 자녀만 사는 2세대 가족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은 조부모와 같이 사는 3세대 가족이었다. 월평균 소득은 100-200만원 미만이 약 60% 정도 이었으며 그 다음은 100만원 미만으로 거의 90%미만이 200만원 미만

의 소득수준을 보이고 있었다. 강화 가구특성을 살펴보면, 부부와 자녀만 사는 1세대 가족이 절반이상으로 가장 많았으며, 월평균 소득은 200-300만원 미만이 가장 많았으며, 300만원 이상인 경우도 25% 정도 이었다.

〈표 VI-2-7〉 소규모 보육시설 이용 영유아 가구특성

단위:명

구분		의성	금산	함양	강화	화천	안동
가구특성	부부+자녀	5	5	10	6	9	2
	조부모+부부+자녀	6	6	7	2	1	7
	모+자녀	1	-	-	-	-	-
	기타	2	-	-	-	-	1
	계	14	11	17	8	10	10
월평균 소득	100만원미만	6	3	6	1	-	3
	100-200만원 미만	5	5	10	1	3	4
	200-300만원 미만	2	2	1	4	5	2
	300만원 이상	1	1	-	2	2	1
	계	14	11	17	8	10	10

화천 가구특성을 살펴보면, 부부와 자녀만 사는 2세대 가족이 거의 대부분이었으며, 월평균 소득은 200-300만원 미만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은 100-200만원 미만으로 나타났다. 300만원 이상의 소득가정도 20% 정도 이었다. 안동 가구특성을 살펴보면, 조부모와 함께 사는 3세대 가족이 70%이상으로 가장 많았다. 월평균 소득은 100-200만원 미만이 40%로 가장 많았으며, 100만원 미만 소득가정은 30%로 나타났다(표 VI-2-7 참조).

(4) 보육시설 이용 실태

소규모 보육시설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 알아본 결과 의성, 금산, 함양, 안동 모두 공통적으로 자녀들 교육을 위해서 선택한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은 친구를 사귀게 해주기 위해, 부모가 일을 해서 선택하였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금산에서는 보육시설을 선택한 이유로 이전에 자녀가 다녔던 보육시설과 거리가 멀어서 선택했다는 경우와 자녀가 이전 보육시설을 싫어해서 옮기게 되었다는 응답이 선택이유에 포함되어 있었다. 화천과 안동에서는 집에서 자녀를 양육하기 힘들기 때문에 소규모 보육시설을 선택했다는 응답도 포함되어 있었다(표 VI-2-8 참조).

소규모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시간에 대해 알아본 결과 의성은 월-금 하루 8시간

이상 이용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금산, 화천, 안동은 월-금 하루 8시간 미만을 이용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함양은 월-토 하루 8시간 미만을 이용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강화는 월-금 하루 8시간 미만을 이용하는 경우와 월-토 하루 8시간 미만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비슷하게 나타났다. 의성, 함양에서는 전체 이용자의 절반이 토요일까지 이용하고 있었으며, 강화는 1/3이 토요일까지 이용하고 있었다. 금산, 화천, 안동은 토요일까지 이용하는 아동은 없었다(표 VI-2-9 참조).

〈표 VI-2-8〉 소규모 보육시설 선택이유

단위: %(명)

지역	자녀 교육위해	친구 사귀게 하기위해	부모가 일을 해서	이전 보육시설 거리 멈	이전 보육시설 싫어함	집에서 양육 힘듦	기타	계
의성	40.0(6)	33.3(5)	26.7(4)	-	-	-	-	100.0(15)
금산	36.4(4)	9.1(1)	27.3(3)	18.2(2)	9.1(1)	-	-	100.0(11)
함양	41.2(7)	23.5(4)	35.3(6)	-	-	-	5.9(1)	100.0(17)
강화	25.0(2)	25.0(2)	50.0(4)	-	-	-	-	100.0(8)
화천	10.0(1)	80.0(8)	-	-	-	10.0(1)	-	100.0(10)
안동	70.0(7)	20.0(2)	-	-	-	10.0(1)	-	100.0(10)
계	38.0(27)	31.0(22)	23.9(17)	2.8(2)	1.4(1)	2.8(2)	1.4(1)	100.0(71)

〈표 VI-2-9〉 소규모 보육시설 이용시간

단위: %(명)

지역	월-금 하루 8시간미만	월-금 하루 8시간이상	월-토 하루 8시간미만	월-토 하루 8시간이상	계
의성	13.3(2)	40.0(6)	26.7(4)	20.0(3)	100.0(15)
금산	63.6(7)	36.4(4)	-	-	100.0(11)
함양	17.6(3)	11.8(2)	52.9(9)	17.6(3)	100.0(17)
강화	37.5(3)	25.0(2)	37.5(3)	-	100.0(8)
화천	100.0(10)	-	-	-	100.0(10)
안동	90.0(9)	10.0(1)	-	-	100.0(10)
계	47.9(34)	21.1(15)	22.5(16)	8.5(6)	100.0(71)

(5) 보육시설 이용의 효과

소규모 보육시설 이용후 자녀들의 변화 1순위에 대해 살펴본 결과, 의성, 금산, 함양 모두 자녀들이 말이 많아져서 가족들과 대화가 많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점을 가장 많이 응답하였다. 강화와 화천은 말이 많아지거나 숙면을 취하게 되었다는

경우가 비슷하게 나타났다. 안동에서는 식사태도가 좋아졌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그 이외에 자녀변화에 대해서 의성은 자녀들의 식사태도가 좋아지고, 친구가 생겼으며, 표정이 밝아지는 등 전반적으로 자녀들이 사회성이 좋아지고 있다는 평가를 하고 있었다. 금산에서는 식사 태도가 좋아지고 신체가 건강해지고 숙면을 취하게 되며, 자녀들 표정이 밝아지는 등 신체적인 발달에 도움이 된다는 평가를 대체적으로 하고 있었다. 함양에서는 표정이 밝아졌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으며, 강화, 화천, 안동은 숙면을 취하게 되며, 친구가 생겼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이런 긍정적 변화 이외에 화천에서는 아동이 피곤해하거나 짜증이 많아졌다는 평가의견도 있었다.

〈표 VI-2-10〉 소규모 보육시설 이용후 자녀변화(1순위)

단위:명

지역	대화 많아짐	식사태도 좋아짐	독서 좋아하게 됨	신체 건강해짐	숙면 취함	친구 생김	표정 밝아짐	양치, 세수 잘함	외모 관심가짐	피곤해함	짜증 많아짐	기타	계
의성	5	3	1	1	-	2	2	1	-	-	-	-	15
금산	5	2	-	1	1	-	1	-	1	-	-	-	11
함양	6	4	1	1	-	1	2	-	-	-	-	2	17
강화	2	1	-	-	2	1	1	-	-	1	-	-	8
화천	2	-	-	-	2	1	1	1	-	2	1	-	10
안동	1	4	2	-	2	1	-	-	-	-	-	-	10
계(%)	29.6	19.7	5.6	4.2	9.9	8.5	9.9	2.8	1.4	4.2	1.4	2.8	100.0(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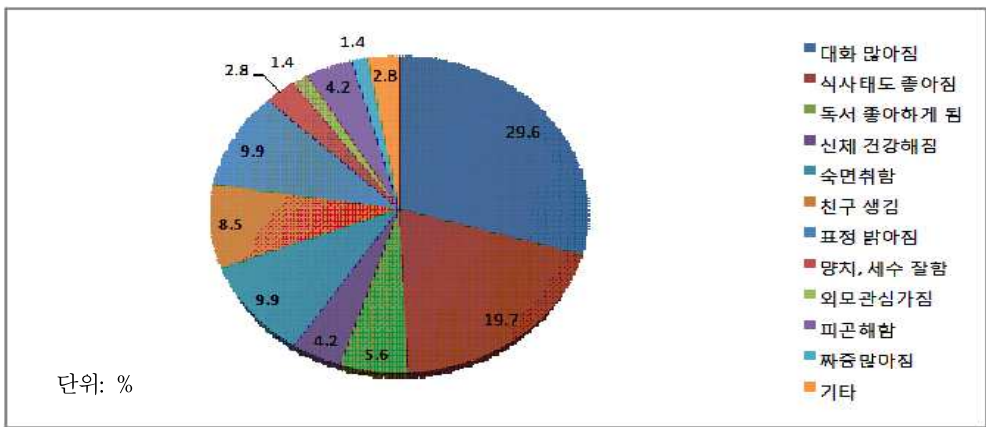

[그림 VI-2-1] 보육시설 이용후 자녀변화(1순위)

소규모 보육시설 이용후 자녀들의 변화 2순위에 대해 살펴본 결과, 의성과 금산 모두 표정이 밝아졌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함양, 강화, 화천은 규칙적인 생활을 하게 되었다는 평가가 가장 많았다. 안동에서는 친구가 생겼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은 표정이 밝아졌다는 응답과 규칙적인 생활을 하게 되었다는 응답이 비슷하게 나타났다. 그 이외에 의성에서는 식사 태도가 좋아지고, 숙면을 취하거나 양치, 세수를 잘하는 등 전반적으로 기초생활습관이 향상되었다는 평가를 하고 있었다. 금산에서는 친구가 생기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게 되었다는 긍정적 평가 이외에 짜증이 많아졌다는 부정적인 평가도 있었다. 강화와 화천에서는 표정이 밝아졌다는 긍정적 평가가 있었으며, 함양과 안동에서는 긍정적인 평가 이외에 짜증이 많아졌다는 부정적인 평가도 나타나고 있었다.

〈표 VI-2-11〉 소규모 보육시설 이용후 자녀변화(2순위)

단위:명

지역	표정 밝아짐	식사 태도 좋아짐	대화 많아짐	친구 생김	숙면 취함	양치, 세수 잘함	규칙적인 생활	짜증 많아짐	독서 많이 함	기타	계
의성	2	1	1	1	2	2	2	-	-	2	13
금산	5	-	-	2	-		1	1	-	-	9
함양	-	-	1	2	-	2	6	1	1	1	15
강화	1	-	-	-	-	1	6	-	-	-	8
화천	1	-	-	-	-	-	8	-	-	1	10
안동	2	1	1	3	1	1	2	1	-	-	10
계(%)	16.9	3.1	4.6	12.3	4.6	9.2	38.5	4.6	1.5	6.2	100.0(65)

(6) 만족도

의성의 학부모 만족도에 대해 살펴본 결과 원장, 교사의 인품, 급식과 간식, 보육시설·설비의 위생정도, 운영시간, 집과의 거리 등 보육시설 운영 및 서비스에 대해서는 만족도가 높았다. 하지만 어린이집 주변환경이나 차량운행, 보육시설의 안전성 측면에 대해서는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개선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의성의 경우 차량운행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로 보인다(표 VI-2-12 참조).

금산 학부모 만족도에 대해 살펴본 결과, 대부분의 학부모들의 만족도가 높은 편이었다. 특히 원장, 교사의 인품과 보육시설의 시설·설비 위생정도, 급식과 간식, 보육프로그램 등 어린이집 서비스에 대해서 만족도가 더 높았다. 만족하지 못하는 점에 대해

서는 거의 응답이 없었지만 1-2명의 학부모는 집과의 거리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거나(1명), 어린이집 주변환경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1명)가 있었다(표 Ⅵ-2-13 참조).

〈표 Ⅵ-2-12〉 의성 소규모 보육시설 부모 만족도

단위: %(명)

구분	매우 만족함	만족함	만족하지 않음	전혀 만족하지 않음	계
집과의 거리	35.7(5)	50.0(7)	7.1(1)	7.1(1)	100.0(14)
원장, 교사의 인품	73.3(11)	20.0(3)	6.7(1)	-	100.0(15)
시설·설비 위생	53.3(8)	40.0(6)	6.7(1)	-	100.0(15)
급식과 간식	60.0(9)	40.0(6)	-	-	100.0(15)
비용(보육료 등)	25.0(4)	62.5(10)	12.5(2)	-	100.0(16)
보육프로그램	46.7(7)	53.3(8)	-	-	100.0(15)
운영시간	40.0(6)	60.0(9)	-	-	100.0(15)
주변 환경	12.5(2)	25.0(4)	56.3(9)	6.3(1)	100.0(16)
차량운행	-	-	38.5(5)	61.5(8)	100.0(13)
시설의 안전성	26.7(4)	40.0(6)	33.3(5)	-	100.0(15)
계	37.6(56)	39.6(59)	16.1(24)	6.7(10)	100.0(149)

〈표 Ⅵ-2-13〉 금산 소규모 보육시설 부모 만족도

단위: %(명)

구분	매우 만족함	만족함	만족하지 않음	전혀 만족하지 않음	계
집과의 거리	40.0(4)	50.0(5)	10.0(1)	-	100.0(10)
원장, 교사의 인품	81.8(9)	18.2(2)	-	-	100.0(11)
시설·설비 위생	63.6(7)	36.4(4)	-	-	100.0(11)
급식과 간식	63.6(7)	36.4(4)	-	-	100.0(11)
비용(보육료 등)	18.2(2)	81.8(9)	-	-	100.0(11)
보육프로그램	63.6(7)	36.4(4)	-	-	100.0(11)
운영시간	36.4(4)	63.6(7)	-	-	100.0(11)
주변 환경	27.3(3)	63.6(7)	9.1(1)	-	100.0(11)
차량운행	36.4(4)	63.6(7)	-	-	100.0(11)
시설의 안전성	36.4(4)	63.6(7)	-	-	100.0(11)
계	46.8(51)	51.4(56)	1.8(2)	-	100.0(109)

함양의 학부모 만족도에 대해 살펴본 결과 원장, 교사의 인품, 급식과 간식, 보육시설·설비의 위생정도, 차량운행, 집과의 거리, 보육프로그램 등 보육시설 운영 및

서비스에 대해서는 만족도가 높았다. 하지만 어린이집 비용(보육료 등), 보육시설 운영시간, 어린이집 주변환경, 시설의 안정성 부분에서는 절반이상은 만족하고 있는 반면,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도 다소 있었다. 특히 보육시설 주변환경에 대해서는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편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개선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표 Ⅵ-2-14〉 함양 소규모 보육시설 부모 만족도

단위: %(명)

구분	매우 만족함	만족함	만족하지 않음	전혀 만족하지 않음	계
집과의 거리	64.7(11)	35.3(6)	-	-	100.0(17)
원장, 교사의 인품	41.2(7)	58.8(10)	-	-	100.0(17)
시설·설비 위생	31.3(5)	68.8(11)	-	-	100.0(16)
급식과 간식	29.4(5)	70.6(12)	-	-	100.0(17)
비용(보육료 등)	25.0(4)	56.3(9)	18.8(3)	-	100.0(16)
보육프로그램	25.0(4)	75.0(12)	-	-	100.0(16)
운영시간	12.5(2)	75.0(12)	12.5(2)	-	100.0(16)
주변 환경	23.5(4)	41.2(7)	35.3(6)	-	100.0(17)
차량운행	29.4(5)	70.6(12)	-	-	100.0(17)
시설의 안전성	29.4(5)	64.7(11)	5.9(1)	-	100.0(17)
계	31.3(52)	61.4(102)	7.2(12)	-	100.0(166)

〈표 Ⅵ-2-15〉 강화 소규모 보육시설 부모 만족도

단위: %(명)

구분	매우 만족함	만족함	만족하지 않음	전혀 만족하지 않음	계
집과의 거리	12.5(1)	62.5(5)	25.0(2)	-	100.0(8)
원장, 교사의 인품	75.0(6)	25.0(2)	-	-	100.0(8)
시설·설비 위생	75.0(6)	25.0(2)	-	-	100.0(8)
급식과 간식	62.5(5)	37.5(3)	-	-	100.0(8)
비용(보육료 등)	25.0(2)	50.0(4)	25.0(2)	-	100.0(8)
보육프로그램	50.0(4)	50.0(4)	-	-	100.0(8)
운영시간	50.0(4)	37.5(3)	12.5(1)	-	100.0(8)
주변 환경	28.6(2)	42.9(3)	28.6(2)	-	100.0(7)
차량운행	57.1(4)	28.6(2)	14.3(1)	-	100.0(7)
시설의 안전성	62.5(5)	37.5(3)	-	-	100.0(8)
계	50.0(39)	39.7(31)	10.3(8)	-	100.0(78)

강화 학부모 만족도에 대해 살펴본 결과 원장, 교사의 인품, 급식과 간식, 보육시설·설비의 위생정도, 시설의 안정성, 보육프로그램 등 보육시설 운영 및 서비스에 대해서는 만족도가 높았다. 하지만 집과의 거리, 보육시설 비용(보육료 등), 보육시설 운영시간, 어린이집 주변환경, 차량 운행 부분에서는 절반이상은 만족하고 있었지만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도 다소 있어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표 VI-2-15 참조).

〈표 VI-2-16〉 화천 소규모 보육시설 부모 만족도

단위: %(명)

구분	매우 만족함	만족함	만족하지 않음	전혀 만족하지 않음	계
집과의 거리	100.0(10)	-	-	-	100.0(10)
원장, 교사의 인품	80.0(8)	20.0(2)	-	-	100.0(10)
시설·설비 위생	100.0(10)	-	-	-	100.0(10)
급식과 간식	100.0(10)	-	-	-	100.0(10)
비용(보육료 등)	80.0(8)	10.0(1)	10.0(1)	-	100.0(10)
보육프로그램	70.0(7)	30.0(3)	-	-	100.0(10)
운영시간	90.0(9)	10.0(1)	-	-	100.0(10)
주변 환경	30.0(3)	20.0(2)	50.0(5)	-	100.0(10)
차량운행	100.0(10)	-	-	-	100.0(10)
시설의 안전성	90.0(9)	10.0(1)	-	-	100.0(10)
계	84.0(84)	10.0(10)	6.0(6)	-	100.0(100)

화천의 학부모 만족도에 대해 살펴본 결과 집과의 거리, 원장, 교사의 인품, 시설·설비의 위생, 급식과 간식, 보육시설·설비의 위생정도, 시설의 안정성, 보육프로그램, 운영시간 등 보육시설 운영 및 서비스에 대해서는 만족도가 높았다. 하지만 보육비용에 대해서 대부분이 만족하고 있었지만 만족하지 못하는 의견이 1명 있었으며, 특히 보육시설 주변환경에 대해서는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절반가까이 나타나 이에 대한 개선책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표 VI-2-16 참조).

안동의 학부모 만족도에 대해 살펴본 결과 보육시설 운영 및 서비스, 주변환경, 비용 부분에서 모두 만족하고 있었다. 집과의 거리 부분에서는 대부분이 만족하고 있었지만 불만족인 경우가 1명정도 나타났다(표 VI-2-17 참조).

〈표 Ⅵ-2-17〉 안동 소규모 보육시설 부모 만족도

단위: %(명)

구분	매우 만족함	만족함	만족하지 않음	전혀 만족하지 않음	계
집과의 거리	30.0(3)	60.0(6)	10.0(1)	-	100.0(10)
원장, 교사의 인품	70.0(7)	30.0(3)	-	-	100.0(10)
시설·설비 위생	50.0(5)	50.0(5)	-	-	100.0(10)
급식과 간식	50.0(5)	50.0(5)	-	-	100.0(10)
비용(보육료 등)	44.4(4)	55.6(5)	-	-	100.0(9)
보육프로그램	50.0(5)	50.0(5)	-	-	100.0(10)
운영시간	50.0(5)	50.0(5)	-	-	100.0(10)
주변 환경	40.0(4)	60.0(6)	-	-	100.0(10)
차량운행	60.0(6)	40.0(4)	-	-	100.0(10)
시설의 안전성	50.0(5)	50.0(5)	-	-	100.0(10)
계	49.5(49)	49.5(49)	1.0(1)	-	100.0(99)

나. 시범사업의 전망

소규모 보육시설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용할 것인지를 조사해봄으로써 수요에 대한 전망을 해 보았다. 또한 부모의 요구를 조사하여 앞으로의 개선방향에 대해 탐색해 보았다.

1) 이용 계획

향후 소규모 보육시설을 이용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 질문해 본 결과, 의성과 금산, 함양, 화천은 모두 절반 이상이 앞으로 계속 보낼 계획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그에 비해 함양과 강화는 유치원에 보낼 계획이라는 응답이 절반이상으로 나타났으며, 금산에서는 유치원에 보낼 계획이라는 응답이 1/3정도 되었다. 특히 안동은 50%가 유치원에 보낼 계획이라고 응답하였다. 따라서 대부분의 소규모 보육시설에서는 모두 현재 다니고 있는 아동이 4-5세 유아가 되기 전까지는 보육시설을 계속 이용할 계획이지만 4-5년 이후에는 보다 큰 규모 시설이나 유치원으로 보낼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소규모 보육시설은 유아보다는 영아기에 부모들이 선호하는 시설이라고 생각해볼 수 있겠으며, 향후 보육시설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원아 확보가 가장 시급한 과제로 보인다(표 Ⅵ-2-18 참조).

〈표 VI-2-18〉 향후 소규모 보육시설 이용계획

단위: %(명)

지역	앞으로 계속 보낼 계획임	규모가 큰 어린이집 보낼 계획임	유치원에 보낼 계획임	잘 모르겠음	계
의성	73.3(11)	6.7(1)	13.3(2)	6.7(1)	100.0(15)
금산	54.5(6)	-	36.4(4)	9.1(1)	100.0(11)
함양	52.9(9)	-	35.3(6)	11.8(2)	100.0(17)
강화	37.5( )	-	62.5(5)	-	100.0(8)
화천	70.0(7)	-	30.0(3)	-	100.0(10)
안동	30.0(3)	-	50.0(5)	20.0(2)	100.0(10)
계	54.9(39)	1.4(1)	35.2(25)	8.5(6)	100.0(71)

〈표 VI-2-19〉 소규모 보육시설 추가 이용 계획

단위: %(명)

지역	형제/자매 보낼 생각 있음	자녀 더 낳으면 보냄	보낼 계획 없음	계
의성	18.2(2)	36.4(4)	45.5(5)	100.0(11)
금산	20.0(1)	40.0(2)	40.0(2)	100.0(5)
함양	20.0(3)	20.0(3)	60.0(9)	100.0(15)
강화	14.3(1)	42.9(3)	42.9(3)	100.0(7)
화천	30.0(3)	10.0(1)	60.0(6)	100.0(10)
안동	30.0(3)	40.0(4)	30.0(3)	100.0(10)
계	22.4(13)	29.3(17)	48.3(28)	100.0(58)

향후 소규모 보육시설에 다른 형제나 자매를 보낼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 질문한 결과 의성은 보낼 계획이 없다는 응답이 절반가까이 되었으며, 자녀를 더 낳으면 보내겠다는 응답이 1/3정도 이었다. 금산은 보낼 계획이 없거나 자녀를 더 낳으면 보내겠다고 응답하였다. 함양과 화천은 보낼 계획이 없는 경우가 절반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다른 형제나 자매를 보내거나 자녀를 더 낳으면 보내겠다는 응답이 각각 20% 미만으로 나타났다. 안동은 자녀를 더 낳으면 보내겠다는 응답이 40%, 보낼 계획이 없거나 다른 형제나 자매를 보낼 계획이라는 응답이 각각 30% 정도이었다. 결과적으로 의성의 경우는 2-6명 정도가 현재 다니는 아동의 가정으로부터 추가 수요가 있고 금산의 경우는 1-3명의 추가 수요를 고려할 수 있다. 또한 함양은 3-6명, 강화는 1-4명, 화천은 3-4명, 안동은 3-7명의 추가 수요를 고려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는 현재 다니고 있지 않은 가정의 수요가 포함되어 있지 않음을 고려해야 한다(표 VI-2-19 참조).

2) 부모의 요구

향후 소규모 보육시설의 발전을 위해 꼭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를 질문해본 결과 모든 소규모 보육시설에서 다양한 특별활동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소규모 시설인 만큼 외부 강사를 이용한 특별활동은 운영하기 실제로 교사가 행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다. 그런 반면 이에 대한 부모의 기대나 요구는 도시지역에 비해 오히려 클 수 있으므로 이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된다.

한편 의성은 부모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두 번째로 많았으며, 보육시설의 우수한 시설·설비, 우수한 교사, 교사대 아동수가 줄여야 한다는 점도 중요하게 필요한 부분이라고 응답하였다. 금산은 보육시설의 우수한 시설·설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두 번째로 많았으며, 부모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 우수한 교사, 교사대 아동수를 줄여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었다. 함양에서는 우수한 교사를 유치해야 한다는 응답이 두 번째로 많았으며, 부모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 교사대 아동수를 줄여야 한다는 점도 필요사항으로 보고 있었다. 강화 에서는 다양한 특별활동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가 거의 대부분이었으며, 우수한 시설설비나 교사대 아동수를 줄이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는 의견도 있었다. 화천에서는 다양한 특별활동 프로그램과 교사대 아동수를 줄여야 한다는 의견이 동일하게 나타났으며, 안동에서는 특별활동 다양화 이외에 부모의 적극적 관심과 참여, 우수한 시설설비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표 VI-2-20〉 소규모 보육시설 발전에 필요사항

단위: %(명)

지역	다양한 특별활동 프로그램	부모의 적극적 관심/참여	우수한 시설·설비	우수한 교사유치	교사 대 아동수 줄임	계
의성	53.3(8)	26.7(4)	6.7(1)	6.7(1)	6.7(1)	100.0(15)
금산	54.5(6)	9.1(1)	18.2(2)	9.1(1)	9.1(1)	100.0(11)
함양	47.1(8)	11.8(2)	5.9(1)	23.5(4)	11.8(2)	100.0(17)
강화	75.0(6)	-	12.5(1)	-	12.5(1)	100.0(8)
화천	50.0(5)	-	-	-	50.0(5)	100.0(10)
안동	60.0(6)	20.0(2)	20.0(2)	-	-	100.0(10)
계	54.9(39)	12.7(9)	9.9(7)	8.5(6)	14.1(10)	100.0(71)

3) 종합적 평가

현재 운영 중인 두 곳의 소규모 보육시설에 대한 조사와 관찰, 면담한 내용을 중심으로 지금까지의 사업에 대한 평가와 장기적인 전망을 종합적으로 해보자면, 몇 가지의 사안으로 논의는 모아질 수 있다.

가) 시설 설치 입지의 적절성: 소규모 시설의 정체성

소규모 보육시설은 애초에 영유아 수가 3인 이상 되는 농어촌 마을 중 인근 보육시설을 이용하기 어려운 산간이나 도서지역에 작은 규모 설치하여 차량도 운행하지 않고 그 마을내에서 폐쇄적으로 운영될 것이라고 예측한 모델이었다. 그러나 시범사업을 통하여 설치된 두 시설은 산간 벽지의 외딴 마을이라기 보다는 몇몇 개의 마을들을 아울러 주민이 함께 이용하도록 하는 면소재지 등 중앙 위치에 있는 지역에 자리잡았다. 금산 소규모의 경우 남일면 면사무소에서 50여m 떨어진 곳에 위치에 있으며 100m 내에 초등학고 병설 유치원도 있다.

초기 소규모 시설 모델의 가정은 산간 벽지에 설치 될 것이므로 무엇보다 교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그에 따라 아동 1명당 교사 비율을 늘이고 보조인력을 활용하는 데 허용적일 것 등 여러 가지 기존의 규제들을 느슨하게 할 것을 논의하였다. 또한 아동들의 보육 수요가 계속될 수 있을 지, 극소수로 인해 운영이 많이 곤란할 것임을 걱정하였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시설은 면의 중심 지역에 설치되었고 교사는 전혀 문제없이 채용할 수 있었으며 아동 수도 대기아까지 두며 10명을 훌쩍 넘게 모집되었다. 차량으로 (주: 금산의 경우 해당) 30분 정도의 시간을 들여 인근 4~5개 마을 아동들을 등하원시키고 있어 전혀 기존 국공립의 운영 형태와 차이를 못 느끼게 하고 있다.

그러면 일반국공립시설을 설립하지 않고 소규모를 설치하는 것의 장점은 무엇인가? 본 연구를 위하여 개최하였던 지방자치단체 보육담당공무원 자문회의에서 많은 참석자들이 동의한 것은 “농어촌은 소규모 국공립 보육시설로 나아가야 한다”는 점이다. **농어촌의 아동 수가 많지 않고 심지어 점차 줄어드는 현실에서,** 또한 접근성을 높이고 신속히 보육혜택을 돌려주기 위해서는 대규모 국공립을 한 곳에 천천히 짓기 보다는 **아이들이 사는 곳 가까이에 쉽게 오갈수 있는 거리내 소규모 국공립을 신속히 설치하여 보육수혜율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나) 소규모 보육시설에 대한 규제의 완화: 운영비의 문제

규모가 작은 시설이다 보니 운영비 부족에 대한 우려가 가장 크다. 아무리 인건비 지원이 된다고 하여도 보육료 수입으로 시설장 인건비와 교사인건비(20~70%)를 충당하기는 쉽지가 않다. 따라서 아동 수에 따른 **시설장 인건비 지원과 그 외 전 시설에 취사부 채용, 2, 3세 혼합반, 5명 이하 시 전연령 혼합반 가능** 등의 완화된 규정을 제시하였다. 시설장 인건비가 해결되고 소규모 보육시설을 영아반 중심으로 운영한다면 농어촌 지역에 있는 소규모 보육시설의 운영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이 가능하다. 차량운행지역도 일반 국공립에 비해 범위가 넓지 않을 것이므로 추가적인 운행비 지원은 고려치 않아도 된다. 소규모와 일반국공립의 차이는 이와 같은 운영 규정의 완화에 있다.

다) 독립형과 분원형 운영 방식

시범 지역 중 금산은 독립형 소규모이고 의성은 분원형 소규모이다. 앞서 소규모 시설의 유형별 비교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각각의 장점과 단점이 대비되고 있다. 둘 간의 차이점을 살펴보면, 먼저 시설장이 가진 경험의 차이가 있다. 분원형 시범시설의 경우 20년이나 되는 시설장의 경험이 소규모 시설 본원장으로서 역할을 보다 익숙하게 수행할 수 있게 하는 듯하며 시설 설비 측면이나 교재교구의 구비 등도 기존 국공립 물품을 공유함으로써 훨씬 풍족한 모습을 보인다. 즉, 연구자의 관찰에 의하면 보다 안정적인 분위기이고 보육과정의 운용에 있어서도 본원에서 파견된 경험 많은 교사가 담당함으로써 노하우를 가지고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금산은 시설장이 신임으로 국공립을 처음 책임 맡아 의욕은 넘치나 안정적인 운영의 모습이 덜하다. 특히 부모 만족도나 공무원 조사에서 나타났고 연구진의 관찰에서도 본 바와 같이, 교재교구의 구비가 빈약하여 실제 보육과정 상의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가능하다면 인근의 국공립보육시설과 결연을 맺어 교재교구를 대여받는 등 지역사회와의 연계 방식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소규모 보육시설은 처음부터 독립형으로 진행하기 보다는 분원형으로 설립하는 것이 다양한 방면에서 유용할 것으로 보인다. **분원형이 되면,**

첫째, 운영비에서 구입 등 규모의 경제를 살릴 수 있어 효율적이다.

둘째, 시설장 인건비를 따로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셋째, 교재 교구와 설비를 보다 풍부하게 갖출 수 있다.

넷째, 일정 기간 경과 후 아동 수 감소 등으로 시설이 폐원되는 경우 인력, 물자 등을 국공립에 그대로 흡수할 있으므로 위험 부담이 적다.

다섯째, 시설장의 운영 노하우가 소규모 시설을 보다 쉽게 초기에 운영 정상화 시킬 수 있다.

그러나, 시설장이 본원과 분원 두 곳 중 하나에 상주할 수 없고 시간을 정해 이동해야 하는 문제는, 독립형에서 시설장이 소규모만 책임지고 상주하는 것에 비해 문제에 덜 민감할 수 있게 하고, 또 시설장이 보육교사를 겸직할 수 없어 교사채용 수는 늘어나는 결과가 되는 단점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어촌 소규모는 여러 가지 편리한 점 때문에 분원형을 지향하는 것이 더 적당한 것으로 사료된다.

라) 교재 교구 및 시설 설비의 부족

지자체의 경상보조가 없는 경우 초기 설치비 및 운영비가 풍족하지 않아 시설 설비, 교재 교구가 부족할 수 있는다는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그러나 이 점은 앞서 논의한 바와 마찬가지로 소규모 시설이 최근거리 국공립보육시설을 거점으로 삼아 지자체가 주관하여 결연을 맺거나(이 때 국공립시설장은 위탁에 대한 보장 등 인센티브가 주어질 수 있음) 가능하면 보육정보센터의 도움을 받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혹은 설치시부터 국공립의 분원으로 설립하는 방법이 있으며 이 때에도 국공립시설장에게 위와 비슷한 동기부여가 있어야 할 것이다.

마) 장기적 전망

전국 전수조사는 아니지만, 본 연구가 수행한 수요조사에 따르면, 현재 최소 36개의 소규모 보육시설이 우선적으로 설립될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들이 있다. 26개 군지역에서이다. 이들은 대부분 아동 수 25명이 넘는 곳이며 일부는 그 지역 공무원들이 설치, 운영할 의지를 보인 곳이다. 소규모 보육시설을 오지 외딴 마을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규모가 있는 마을에 설치하여 인근을 4-5개 마을을 대상으로 차량을 운행하여 운영하는 형태를 취한다면, 아동 수급이나 교사 수급 면에서 전망이 밝고 위험부담이 적다. 기존의 농어촌 국공립에 비해 설치 비용이 적고 아동수 감소에 덜 민감할 수 있으며 특히 영아 보육에 중점을 두어 출산률 제고에도 일조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다문화 가정이 많아지는 현 시점에서 보육시설의 접근성을 높이고 외국 어머니를 둔 자녀들이 언어발달이나 문화에서 실조를 겪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적은 예산으로 시급하게 진행될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소규모이므로 새로이 단독 건물을 지을 필요가 없어 기존의 건물 일부을 수리, 사용하

는 쪽으로 진행한다면 더욱 효율적일 것이다.

기존 시설들에 비해 규정을 완화하는 문제도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전망한다. 왜냐하면 현재 시설이 없고 기존 국공립과도 멀리 떨어진 지역에만 설치가 가능하고 민간 시설은 수익을 생각하면 아예 진입을 고려치 않는 곳이므로 소규모라는 새로운 형태만 규정하여 일관성 있게 진행한다면, 앞으로의 전망을 어둡지 않을 것으로 본다. 오히려 농촌형으로서 가장 적합한 형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3. 이동식 놀이 버스 사업 평가 및 전망

가. 사업 성과 평가

운영 모델에서 제안 했듯이, 이동식 놀이 버스 사업[11]의 성과를 서비스 제공 범위와 이용자 만족도의 측면에서 평가하였다.

가) 서비스 제공 범위

전북 진안·무주·장수군 지역은 보육시설이 없는 곳이 24개 읍·면 가운데 13개면이다. 보육시설이 없는 13개 면 중, 12개 면 32개 마을에 매직버스 서비스가 공급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시설미이용 아동에 대한 서비스 지원율은 5.2%로 그 포괄범위가 넓지 않다.

〈표 Ⅵ-3-1〉 매직버스 사업대상지역 아동현황

단위: 명,%

구 분	계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아동인구현황	4,691	1,644	1,630	1,417
보육시설 이용아동	1,857	626	581	650
시설미이용 아동현황	2,834	1,018	1,049	767
매직버스 이용 아동수	146	49	17	80
시설미이용 아동 지원율	5.2	4.8	1.6	10.4

11) 전북의 시범사업 명칭은 '매직버스사업' 이므로 이하에서는 매직버스로 통일하여 사용하였다.

나) 이용자 만족도

전체 매직 버스 이용자의 41.1%에 대한 이용자 만족도를 조사하였다. 매직 버스 이용 아동은 만 0세 10.5%, 만 1세 17.5%, 만 2세 36.8%, 만3세 17.5%, 만 4세와 5세가 각각 8.8%이다. 아동의 가구 구성은 3세대 가족이 59.3%, 2세대 가족이 40.7%이며, 주양육자는 아동 모가 63.3%, 조부모 18.3%이며 아동부가 6.7%이다. 매직 버스 서비스는 당초에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을 목표로 하였으나, 집단 활동에 참여하는 어린이 집 및 유치원 취원 아동 또한 28.1%가 있다.

아동 부의 국적은 모두 한국이지만, 37.9%의 아동은 어머니가 결혼 이민자이며 부모 모두 30대인 경우가 50%를 다소 넘는다. 부모는 주로 농축산업에 종사하지만 자영업, 기능·숙련공, 사무기술직, 판매·서비스직에 종사하는 경우도 다수 있다.

〈표 VI-3-2〉 매직버스 서비스 평가 응답자 현황

(단위: %, 명)

구분	비율	구분	비율
아동연령		가구구성	
만0세	10.5	부부+자녀	39.0
만1세	17.5	3세대 가족	59.3
만2세	36.8	모+자녀	1.7
만3세	17.5	평균소득	
만4세	8.8	100만원 미만	29.5
만5세	8.8	100~200만원 미만	57.9
주양육자		200~300만원 미만	8.8
부	6.7	300만원 이상	3.5
모	63.3	기관이용현황	
조부모	18.3	어린이집	21.1
친인척	3.3	유치원	7.0
이웃 등	8.3	미이용	71.9
계	100.0(60)	계	100.0(60)

이동식 놀이 버스 시범 사업의 프로그램 구성 및 질에 대한 이용자의 만족도는 기대 이상으로 높다. 매직 버스 이용 아동의 주양육자는 2주에 한 번 방문하는 방문 주기의 적절성을 제외한 모든 매직버스 서비스의 질과 방법에 대해서 90%이상이 만족하고 있다. 가가 호호 방문 및 주민 간담회 등을 통한 회원 가입 절차와 놀이 활동 내용에 대해서는 모든 이용자가 만족한다. 가정 방문시 30분, 집단 활동시 90분

의 놀이 활동 시간에 대한 만족도와 장난감 활용 방법을 주양육자에게 교육하는 것에 대한 만족도 역시 98%이상이다

〈표 Ⅵ-3-3〉 매직버스 서비스 평가 응답자 현황

(단위: %, 명)

구분	부	모	구분	부	모
국적			연령		
한국	100.0	62.1	20대	10.0	38.6
일본	-	1.7	30대	53.3	54.4
중국	-	6.9	40대	36.7	7.0
베트남	-	24.1	직업		
필리핀	-	5.2	농축산업	53.6	34.0
학력			자영업	14.3	8.0
중졸이하	3.4	12.5	판매・서비스직	7.1	8.0
고졸	72.4	50.0	사무기술직	10.7	6.0
대졸	24.1	33.9	기능・숙련공	14.3	2.0
모름	-	3.6	전업주부(무직포함)		42.0
계	100.0(60)		계	100.0(60)	

〈표 Ⅵ-3-4〉 매직버스 서비스 만족도

(단위: %, 명)

	항목	매우 만족	만족	불만족	매우 불만족	계	(수)
대여 용품	장난감 종류	39.0	52.5	8.5		100.0	(60)
	장난감의 질	47.5	49.2	3.4		100.0	(60)
	도서 종류	48.3	44.8	6.9		100.0	(60)
	도서의 질	48.3	48.3	3.4		100.0	(60)
서비스	방문주기(2주에 한 번 방문)	25.4	52.5	22.0		100.0	(60)
	장난감과 책의 대여일수	29.3	65.5	5.2		100.0	(60)
	장난감 활용방법 안내	32.8	65.5	1.7		100.0	(60)
	매직버스 선생님과 놀이 활동 시간	46.4	51.8	1.8		100.0	(60)
	매직버스 선생님과 놀이 활동 내용	46.4	53.6			100.0	(60)
이용	회원 가입 절차	35.2	64.8			100.0	(60)

14일 주기로 2종의 장난감과 2권의 도서 대여 방법에 대해서도 94.8%가 만족하고 있으며, 대여 도서 및 장난감의 질에 대해서도 96%이상 만족하고 있다. 장난감 종류와 도서의 종류에 대해서는 좀 더 다양한 것을 대여하고 싶다는 의견이 있으나 90% 이상 만족하고 있다. 이와 같이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만큼, 14일에 한 번 마을을 방문하는 것에 대해서 그 시기를 단축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22.0%있다(표 Ⅵ-2-24 참조).

다음은 매직 버스 서비스가 시설 미이용 아동의 가정 내 양육 지원 서비스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아동 양육 지원의 효과에 대한 이용자의 평가이다. 서비스 이용자들은 매직 버스 서비스가 다양한 장난감과 도서를 이용한 아동 정서 및 발달에 도움을 받았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다양한 장난감 활용으로 아동 발달 도움이 61.7%, 다양한 도서 활용으로 아동 정서 도움이 18.3%이다. 또한, 매직버시 서비스가 시설 미이용 아동의 가정 내 양육 지원 서비스를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아이와 보내는 시간이 증가되고 놀이하는 방법을 인식하게 되었다는 측면은 상당히 고무적이다. 이용자의 10.0%가 아이와 놀이하는 방법 인지 효과에, 8.3%가 아이와 보내는 시간 증가되었다고 평가하였다(표 Ⅵ-3-5 참조).

〈표 Ⅵ-3-5〉 매직버스 서비스 효과

항목	비율(수)
아이와 놀이하는 방법 인지	10.0
다양한 장난감 활용으로 아동 발달 도움	61.7
다양한 도서 활용으로 아동 정서 도움	18.3
아이와 보내는 시간 증가	8.3
아이가 선생님과 시간을 보내는 동안 개인 시간 활용 기회 증진	1.7
계	100.0(60)

나. 사업 추진시 유의점 및 제언

이동식 놀이 버스 서비스 이용자들은 놀이 활동과 아동 양육에 대한 부모 상담 등을 통해서 공공 보육 서비스를 경험하고 있다. 앞서의 이용자 평가 결과에 따르면, 놀이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아이와 상호작용하는 시간 또한 증가했다는 점에서 서비스 확대시 보육 시설 미이용 아동의 가정 내 양육 지원 효과가 증대될 것이라는 점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놀이 버스 서비스는 부모 상담을 할 수 있는 일정 경력이 있는 보육 교사가 운영할 필요가 있다. 또한, 부모와 아동의 상호작용을 지원할 수 있는 각종 보육 자료를 제공하고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하여 특별지원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사업 수행 주체의 지원이 부가되어야 한다.

가정 육아 지원을 위하여 단순한 대여 사업이 아니라 놀이 활동 촉진에 사업의 목표가 있다 할 때, 적절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보육 관련 기관을 통한 서비스 전달 체계의 확보다 사업 성공의 중요한 요건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사업상 장난감 관리, 회원관리, 영유아 교육활동 진행등이 함께 이루어져야 하며, 각종 홍보지 활동 자료 등이 적시에 공급되어야 한다. 따라서, 보육전문인력의 지원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자원확보를 위하여 보육정보센터가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다.

다음으로 시범 사업을 통하여 놀이 버스 서비스의 실 수요자의 현황을 분석한 결과 현재나 미래 모두 기관 이용을 하지 않는다는 30.6%에 지나지 않는다. 즉, 보육시설 미이용 이유는 거리가 멀어서와 자녀가 어려서가 각각 34.9%이며, 향후 69.4%가 어린이 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할 계획이 있다는 점과 매직 버스 이용자가 주로 만 2세 미만 영아라는 점은 향후 이동식 놀이 버스 서비스의 수요자는 소수의 유아와 다수의 영아일 것이라는 점을 예측하게 한다. 그런 점에서, 놀이 버스 사업은 영아와 다문화 및 조손 가구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육아지원 서비스로서의 성격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표 Ⅳ-3-6〉 매직버스 이용자의 기관 이용에 대한 의견

기관 미이용 이유	비율	향후 기관이용 계획	비율
거리가 멀어서	34.9	어린이집	61.2
집에 봐 줄 사람이 있어서	9.3	유치원	8.2
비용이 부담돼서	9.3	미이용	30.6
자녀가 어려서	34.9		
기타	11.6		
계	100.0(60)	계	100.0(60)

그러므로, 아동의 인지적·정서적 발달에 상대적으로 소홀한 조손 가정과 다문화 가정을 중심으로 한 특화된 서비스의 개발이 요청되며, 영아 발달을 위한 다양한 자극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다. 이동식 놀이 버스가 균형잡힌 발달이 더딜 수 있는 영유아에 대한 지원 서비스라는 점에서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에 대한 놀이 버스 사업이 확장될 필요가 있다. 특히, 이동 거리가 증가 하더라도 거리상의 이유와 아동 발달에 크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가족 환경으로 인하여 보육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영유아를 발굴하여 놀이 지원 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데에 역점을 두어야 하겠다.

4. 부모협동 놀이 그룹 사업 평가 및 전망

가. 사업 평가

부모협동 놀이그룹 사업의 평가는 현재 관두마을 1 곳에서만 실시하고 있는 관계로 구조화된 설문조사보다는 면담방식이 적절하다고 보고, 연구진이 방문하여 학부모 및 공무원을 대상으로 본 사업에 대해 전반적인 의견을 묻었다[12].

관두마을에서 실시하고 있는 부모협동 놀이그룹은 '관두 육아원'이란 이름으로 2009년 11월 6일에 개원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부모자치 운영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이용료 없이 자율적으로 이용 및 운영을 하고 있다. 시범지역은 다문화 가정이 많은 곳으로 이 부모협동 놀이그룹은 다문화 상호간, 다문화-비다문화 가정 간 교류가 활발할 수 있는 장이 되었다.

'부모자치 운영위원회'는 총 5명으로 이들이 순번을 정해 '관두육아원'의 청소, 관리를 비롯한 운영을 맡고 있다. 등록한 영유아 수는 2010년 4월 현재 총 46명이고 만 1세부터 만 5세까지 연령이 다양하며, 일간 10여명이 상시 이용하고 있다. 오전 9시부터 개방하나 많은 수가 오전보다는 오후, 유치원이나 보육시설에서 귀가한 아동과 부모가 이 놀이그룹을 이용하고 있다고 하여 제안된 초기 모델과는 다른 형태로 운영되고 있었다.

이용자가 지적한 몇 가지 문제점을 보면, 첫째, 공동보육에 대한 부담감이었다. 요컨대, 영유아들을 보육하면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 책임에 대한 부담감이 커서 부모들이 보육교사 활동하기를 주저한다는 것이다. 둘째는, 보육활동에 대한 대가라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인건비도 제공되지 않는 상황에서 부모들의 지속적인 자율 봉

12) 평가를 위해 처음 방문한 시기는 2009년 12월 10일이었다. 불행히도 이 시기는 그 해 전국적으로 '신종플루(H_1N_1)'가 창궐하였던 이유로, 전북의 관두 육아원이 일시적으로 문을 닫고 있었다. 이에 이용자 3명의 부모를 면접하는 데 그쳤고, 2010년 4월 운영위원 및 마을 이장과의 전화통화를 통해 다시 현황 및 애로점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였다.

사란 한계가 있으며 관리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점이다. 현재 관두육아원의 부모들은 이용료를 수납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 이용료를 수납하게 되면 이용하는 가정이 감소할 것이라고 관두육아원 '부모자치 운영위원회'의 위원장(대표 부모)은 예상하고 있었다. 또한 관리에 대한 책임을 자원봉사자인 운영위원장이 진다는 것도 과한 조치라는 의견이 있었다. 셋째는 보육시설에 속하지 않는 형태이므로 지자체의 담당 공무원이 관리하는 영역 바깥에 있다는 점이다. 자율에 맡겨진 운영을 공무원이 지도 점검하는 것도 애매하고 감독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여 적정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넷째, 놀이그룹이 위치하고 있는 곳이 아파트의 관리동내 공간으로 이를 사용하기 위한 유지 관리비가 전혀 지원되지 않아 마을비로 충당하고 있다는 점이다. 월 50여만 원에 이르는 전기세, 수도세 등 관리비용이 필요한 것으로 나왔으며 이를 주민공동 비용으로 지불하고 있어, 장기적인 대응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그 밖에 인상적인 것은 관두육아원은 등록한 부모들을 대상으로 일본어, 중국어와 같은 '외국어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는 점인데 이는 다문화가정의 외국이민자인 어머니들의 자원봉사로 이루어지는 것이었다. 교육시간에는 영유아 자녀들을 데리고 와서 함께 수업을 받는다고 했으며 학부모들의 참여도와 반응도 좋다고 하여 매우 성공적인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다.

관두육아원을 담당하는 공무원의 면담을 통해 국고지원액 3300만원은 관두육아원을 설치하는 데 적은 액수는 아님에도 불구하고, 영유아 보육에 필요한 교재교구, 도서를 충분히 구입하지 못한 점, 씽크대 설치 및 가스렌지를 구입해 놓고 사고 발생을 우려하여 이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예산 집행을 치밀하게 계획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었다. 화장실은 육아원 맞은 편에 공동화장실을 이용하는 데 영유아들이 사용하기에는 크기나 높이가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사업평가에서 지적되었다. 이 역시 예산 계획에서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라 하겠다. 육아원 내에 아이들이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는 간이 화장실의 설치를 부모들은 원하고 있었다.

그 외에 요구사항으로는 영유아의 안전장치로서 CCTV나 IP-TV가 설치되기를 바라는 목소리가 있었다. 부모 몇 명과 아동 다수가 있는 상황에서 안전을 섬세히 살필 수 있기를 바라는 요구였다.

나. 사업전망

본래 이 사업은 보육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취약지역에 우선적으로 제공하는 보육

서비스라는 취지에서 보면, 관두육아원은 인근에 보육시설과 유치원이 있다는 점에서 선정 지역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 실제 육아원의 운영시간은 오후 2시 이후라고 하는데, 이는 아이들이 보육시설을 다녀온 후에 이용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편으론 육아원을 운영하는 '부모자치 운영위원회'의 어머니들은 자녀양육에 관심도 많고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열정도 지닌 '의식있는' 부모들이었다.

부모의 자발적이고 자치적인 운영이 이 사업의 성공을 가늠하는 요건이라면, 이 사업은 도서·벽지 등의 너무 외진 지역보다는 관두마을처럼 젊은 부모들이 거주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지역은 보육시설이 이미 설치되어 있는 지역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취약지역 보육서비스사업이란 본래 사업의 취지와 맞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딜레마를 어떻게 해결할 지가 앞으로의 과제라 하겠다.

또한 자율적 운영을 기본으로 한다고 하지만 부모협동 놀이그룹에 대한 장기적 관리와 시설환경에 대한 기본적인 감독은 지자체의 책임으로 두고 담당자가 정기적인 방문을 통한 관심을 가지는 것도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수요조사에 의하면 다른 모델에 비해 그다지 높은 수요 비율을 보이고 있지는 않지만 상부상조 전통이 깊고 다문화가정이 많아지는 농어촌의 특성과 일시적인 보육을 빈번히 필요로 하는 현상을 고려하면 농어촌에 필요한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시범사례에서 보듯이 설치 위치가 면내 중심지에 있어 보육시설이나 유치원과 이용자가 중첩되고 관리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점은 향후 사업확대를 생각할 때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문제들이다.

Ⅶ. 정책적 제언

본 장에서는 지금까지 논의한 농어촌 지역 소규모 보육시설 모델을 비롯하여 도서·벽지형 보육서비스 모델인 이동식 놀이버스, 부모협동 놀이그룹, 농번기 보육방, 준공영 섬마을 보육가정 등 4가지 형태에 대한 운영 방식의 개발, 시범적용, 수요조사, 사업평가 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얻게 된 결론을 제시하고, 향후 설립사업을 추진해 감에 있어 중요하게 고려하여야 할 점들을 지적해 보고자 한다.

1. 농어촌 소규모 보육시설

소규모 보육시설은 농어촌 국공립 보육시설 설치 사업의 새로운 한 가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농어촌의 줄어드는 인구와 앞으로의 추계 전망조차 어려운 영유아 인구수 감소를 생각한다면, 농어촌 국공립 보육시설은 규모면에서 작은 쪽으로 방향을 잡는 것이 유용하다. 왜냐하면 규모가 클수록 넓은 지역을 대상으로 해야 하고 농어촌의 특성상 그 넓이라는 것은 영유아가 이동이 어려운 지경에 이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눈이 많이 오는 겨울이나 홍수가 지는 여름을 생각하면 지역의 구조에 따라 농어촌에서는 이동이 거의 불가능하거나 위험해질 염려가 클 수 있다. 그러므로 접근성 제고라는 측면에서 농어촌 국공립은 현재의 시설분포를 고려했을 때 상호 갈등을 유발하지 않는 지역이라면 소규모 국공립 보육시설을 지향하는 편이 바람직하다.

소규모 보육시설 모델은 초기에 가정했던 교통수단의 접근이 힘든 도서, 벽지 등 오지 지역민을 위한 보육서비스라기보다는 국공립시설 중 규모가 작은 시설이 영유아 수가 적기는 하지만 일정기간 꾸준히 수요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 농어촌 지역에 설치되는 방식으로 정의되어야 한다. 즉, 3~5명의 극소수 보다는 10~20명 정도의 영유아를 목표로 하고, 1개 면내의 3~5개 마을(리) 아동을 통틀어 대상으로 보육하는 형태가 되도록 한다. 이렇게 되면 비록 규모는 작더라도 농어촌 지역의 지형 특성상 이동수단인 차량이 반드시 필요하게 되지만, 아동들의 이동 시간은 상대적으로 많이 줄어들게 되어 접근성은 높아지는 결과를 낳는다.

소규모 보육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우선 기존 국공립 보육시설 설치와

운영에 맞추어져 있는 많은 기준들이 소규모의 시설 운영과 이용에 적합하도록 개정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주요 사안으로서, 시설장 인건비의 지원, 유아반 교사에 대한 인건비 지원 조건 및 지원 비율 완화, 영유아 혼합반 허용 등을 지적하였다.

소규모인 만큼 가장 많은 염려를 낳고 있는 것이 작은 수의 보육 아동으로 인한 운영의 어려움이다. 그러나 시범사업의 결과를 보면, 재정을 통합하여 분원으로 운영하고 있는 한 지역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지역에서 운영이 무난히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보다 상대적 비교를 해본다면, 자립형 분원으로 운영되는 방식이 독립형 소규모로 운영되는 것보다는 더 안정적이었으며 이것은 특히 설치 초반기에 그러한 성격을 띤다. 장차 운영이 안정되고 분원으로 둘 이유가 전혀 없어지는 때가 온다면 그 때에 분원을 독립형으로 전환하면 된다는 한 시설장의 의견은 의미가 있다. 시설장 인건비 지원액을 온전히 절감할 수 있다는 것도 큰 장점이 될 수 있다. 반면 분원 운영을 1차적으로 책임지는 '분원 운영 지원 교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진다. 다음의 [그림 Ⅶ-1-1]은 농어촌 소규모 보육시설을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기존의 국공립보육시설장에게 위탁하여 분원식으로 운영하는 방법임을 간략히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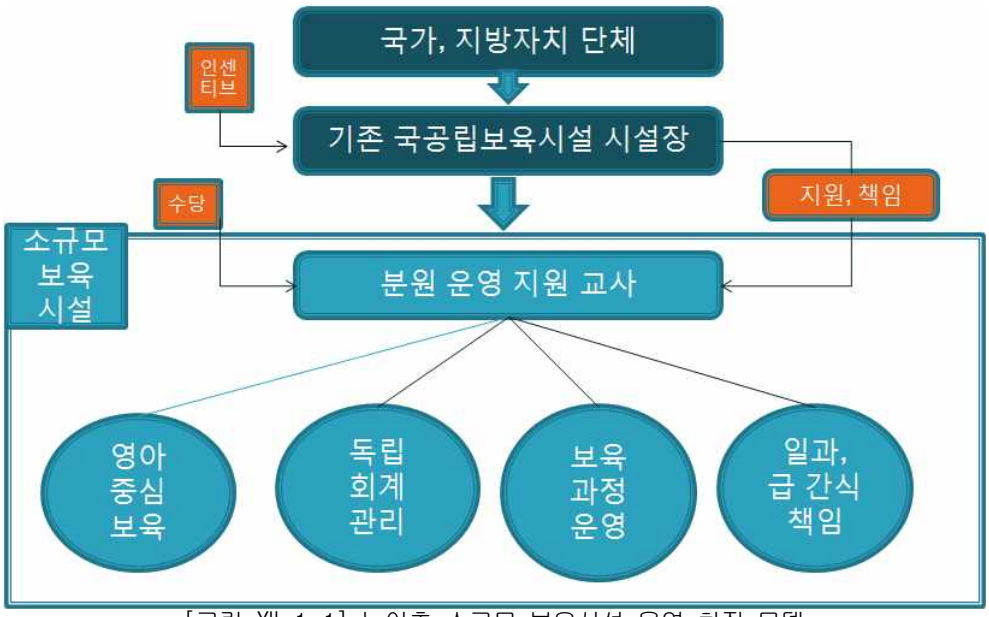

[그림 Ⅶ-1-1] 농어촌 소규모 보유시설 운영 최적 모델

2. 이동식 놀이 버스 사업

이동식 놀이 버스 사업은 소규모 보육시설 사업과 함께 가장 농어촌 지역 관련자로부터 가장 환영을 받고 있는 아이템이다. 소규모 보육시설 설치가 용이하지 않은 지역을 중심으로 놀이 버스가 순회하는 방식은 농어촌 지역 영유아의 보육 및 교육적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획기적인 사업이라고 하겠다. 많은 지자체 보육담당 공무원이 이 사업에 대해 공감하고 있고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이동식 놀이 버스의 시범사업 결과를 보면, 140여명 이용자 중 70%가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있는 영아들이고 나머지 30%정도가 보육시설에 다니면서 오후에 이 버스를 이용하고 있는 유아들인 것으로 잠정 집계되었다. 이 사업이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을 위한 서비스 사업임을 고려한다면 시설 이용자들에게는 이중으로 국가지원이 들어가는 셈이 되지만, 완전히 배제할 필요는 없고 용이한 경우 이용하는 것을 허용해 줄 수 있다.

현재 2010년 사업으로 이 이동식 놀이버스를 신청한 지자체가 추가로 4개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이 사업을 지방보육정보센터가 주축이 되어 진행해 가는 것을 가장 바람직하다고 본다. 왜냐하면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많은 교재교구 등 물자조달뿐만 아니라 생각보다 많은 인력이 필요하고 여러 지역을 순회하기 위한 체계적인 계획과 신속한 진행이 필요하며 여기에는 보육전문인력의 노하우가 요구되기 때문이다. 보육정보센터의 소재지로부터 거리상 멀리 떨어진 군지역인 경우는 군청에 '이동식 놀이버스 운영 지사'를 두고 보육정보센터의 파견인력으로 구성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동식 놀이버스는 영유아 특히,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영아 가정, 자체 이동이 어려운 조손가정, 특별한 교육과 사회적 교류가 필요한 다문화가정 등 농어촌 특유의 수요를 지니고 있는 가정에 유용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3. 부모협동 놀이그룹

부모협동 놀이그룹은 시범사업의 결과를 적용하고 수요조사를 통해 결론을 내려볼 때 사업확대 시에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고 추진할 경우 우선 해결해야 할 문제점들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농어촌 주민이 가진 활발한 상호 교류와 상부상조의

특성을 십분 활용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시작된 논의이지만, 실제로는 아동들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 보육교사 또는 시설장이 존재하지 않는 자발적 협동의 형태가 지속적인 운영을 어렵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육에 대한 수요를 가진 부모가 많은 시간을 투자하며 놀이그룹 참여하고 여러 아동을 돌보는 것은 자신의 수요를 충족하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였으며, 자발적인 봉사로서 참여할 수 있는 여유는 없었다. 즉, 놀이그룹에 대한 공동의 책임과 참여를 요구하는 방법이었지만 책임의 소재가 운영의 핵심이 되면서 공동 책임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전북 장수군의 시범사업은 본 연구가 제안하고 있는 방식을 그대로 따르고 있지는 않다. 먼저 설치 지역이 보육시설 이용이 불가능한 지역이 아니라는 점은 설치 목적에서부터 차이를 가져온다. 또한 본 보고서에서 제시하는 사업안내를 보면, 운영위원회의 장이 일차적 책임이 있고 이들의 요구에 의해 놀이 그룹이 신청되면 이는 지자체 장의 '인가'가 필요한 '사업'이 되어야 한다. 즉, 놀이 그룹의 이용은 등록된 이용자만이 할 수 있고 이용자는 이용료를 지불해야 하며, 운영을 이끌어가는 자치운영위원회는 이용료를 활용하여 운영을 하고 필요한 경우 보육교사나 관리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보다 정규화된 사업으로서 부모협동 놀이그룹을 제안하고 있는 바, 이러한 방식이 적절한 지역과 주민의 수요가 있고 담당 공무원이 지도와 감독을 진행할 수 있는 곳이라면 다시 한 번 정확한 시범사업을 실시해 볼 필요도 있겠다.

4. 농번기 임시 보육방

농번기 임시 보육방은 매우 제한적으로 설치될 수 있는 모델로, 소규모 보육시설이 보육시설이 없는 면지역 중 규모가 있는 마을에 설치되는 목적이라면, 보육방은 소규모 시설에 대한 보완적 방식이 될 수 있다. 즉, 시설이 설치되기에는 아동 수가 너무 적고 설치할 물리적 공간이 부족한 곳, 지속적인 수요가 보장되지 않는 곳 등 보육시설 설치가 부적절하지만 여전히 소수의 보육수요가 존재하는 곳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수요조사 결과에 따르면 마을 당 원하는 아동의 수가 2명이 채 되지 않아 설치할 수 있는 곳은 현실적으로 극히 적은 것으로 보이나, 향후 장기적 시설 설치가 부적절한 지역에 대한 임시적인 보육서비스 지원 모델을 구상해 두는 것은 필요하다. 임

시적, 한시적 보육방이므로 인력 채용과 유지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바, 최인근 국공립보육시설을 모시설로 두고 임시적으로 파견되어 근무하는 방식을 취하는 것이 용이해 보이며, 국공립보육시설에는 관련해서 위탁재계약, 또는 보육방 휴지기나 폐쇄기에 모든 물적, 인적 자원을 회수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등 인센티브를 제시하여 운영을 지원케 할 수 있다.

5. 준공영 섬마을 보육가정

준공영 섬마을 보육가정은 말 그대로 도서지역을 위한 보육서비스로 한정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보육교사가 없고 독립 시설이 없으며 모든 규제사항과 규칙에서 벗어나 있을 뿐 아니라, 그럼에도 인건비와 보육료가 지원되는 매우 특수한 형태의 모델이기 때문이다. 일반적인 농어촌은 물론이거니와 육지와 연결되어 있어 보육교사의 출퇴근이 가능한 도서지역도 제외되는, 매우 엄격한 설치 제한을 가진 보육서비스라고 하겠다. 그러나 이러한 형태가 허락될 수 있는 도서·벽지의 주민도 국가가 주도하고 지원하는 보육서비스의 수혜대상자가 될 수 있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두기 위해서도 보육가정 사업 모델은 개발될 필요가 있었고, 가능하다면 특정 지역을 두고 시범실시해 볼 필요가 있겠다.

위에 제시된 다섯 가지 모델 중 소규모 보육시설 모델과 농번기 보육방 모델은 이미 있는 영유아보육법과 시행규칙에서 설치 근거를 찾아 시행하는 데 문제가 없어 보이며, 나머지 세 가지의 농어촌 및 도서·벽지형 보육서비스는 시행규칙 상에 “보육시설에 준하는 형태로서 지역 특성에 따라 보육서비스 제공 기능 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라는 항목을 추가하고 본 보고서에 제시된 사업안내에 의거한다면 설치 및 운영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본다.

참 고 문 헌

경상북도 농촌정책과(2009). 내부자료.

김은설·이정원·지성애·이세원(2007). 농어촌지역 육아지원 방안연구. 육아정책연구소.

김경희·박분희·양미경(2000). 농어촌 지역의 영유아 보육정책 개발연구. 농림부.

나정·서문희·이미화·김문정(2004). 「2004 전국 보육·교육 실태조사」 자료 심층분석. 육아정책개발센터.

농림부(2009). 농어업인 영유아양육비 지원사업 지침.

박대식·정명채·송미령 외(2004). 농산어촌 복지·교육·지역개발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방안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백화종·황나미·원종욱·최병호·김미곤·노대명·선우덕·서문희·변용찬·박세경·김태완(2003). WTO체제하의 농어촌 복지수요와 대응방안.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가족부(2009). 가족사업안내

보건복지가족부(2008). 보육관련 지자체 특수시책사업 현황.

보건복지가족부(2009). 보육사업안내

서문희·김유경·박세경(2004). 농어촌 보육모형 개발 연구. 보건복지부·한국보육사회연구원.

서문희·이미화·김은설·이세원(2006). 농어촌 지역 소규모 보육시설 확충 및 운영 방안. 농림부·육아정책개발센터.

서문희·김은설·박수연·유웅상·오병욱·김형은(2008). BTL 방식의 보육시설 설치방안연구. 기획재정부·육아정책개발센터.

신나리·이정원·송신영·이은경(2009). 취약지역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및 운영모델 정립 방안. 보건복지가족부·육아정책개발센터

여성가족부(2006). 보육통계.

이숙희·서영숙·김미숙(2001). 인터넷을 이용한 농촌 보육 프로그램 및 부모상담 프로그램의 개발 연구. 중앙대 아동복지학과.

정미라·조희연·안재진(2009). 프랑스의 육아정책. 육아정책개발센터.

조흥식·김태성·남기철(2001). 농촌지역 사회복지실태 및 욕구조사.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지성애·김영옥·홍혜경(1998). 농어촌 보육시설의 안전점검 척도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영유아보육학 제 15집. 한국영유아보육학회

지성애·박희숙(2000). 도시와 농어촌의 보육 만족도 비교. 한국영유아보육학 제17집. 한국영유아보육학회.

지성애·김영옥(2003). 농어촌 보육시설의 현황과 활성화 방안. 한국영유아보육학 제 17집. 한국영유아보육학회.

통계청(2009). 인구총조사 데이터. kosis.nso.go.kr

_____(2009). 인구동향조사 데이터. kosis.nso.go.kr

홍혜경·지성애·김영옥(1997). 농어촌 어린이집의 안전사고 현황. 추계 한국 영유아보육학회 발표논문집. p. 53-75, 1997.

Doherty, G.(1994). *Rural Child Care in Ontario*. A background paper for a conference on rural child care co-sponsored by: Ontario Ministry of Agriculture and Food Ontario Ministry of Community and Socail Services.

New Zealand Education Gazette, 1991년 2월 15일자.

NSW(1998). Centre Based and Mobile Child Care Services Miscellaneous Amendments Regulation 1998, Minister for Community Services in NSW

Simpson, M.(2002). *Right from the Start: Parent-led playgroups in New Zealand-then, now and later*. A paper presented in Early childhood Matters Conference, Melbourne, New Zealand.

http://www.deewr.gov.au/EarlyChildhood/OfficeOfEarlyChildhood/Child_Care_Handbook_2008-2009/

http://www.longreach.qld.gov.au/services/mobile_child_care.shtml

http://www.longreach.qld.gov.au/

부 록

<부록 1> 군지역 공무원 대상 소규모 보육시설 수요 조사 설문지

<부록 2> 마을주민 대상 소규모 보육시설 수요조사 설문지

<부록 3> 소규모 보육시설 사업대상 지역 이용자 만족도 조사 설문지

<부록 4> 이동식 놀이 버스 이용자 만족도 조사 설문지

<부록 5> 소규모 보육시설 운영안내

<부록 6> 이동식 놀이버스 운영안내

<부록 7> 농번기 임시보육방 운영안내

<부록 8> 부모협동 놀이그룹 운영안내

<부록 9> 준공영 보육가정 운영안내

<부록 1> 군지역 공무원 대상 소규모 보육시설 수요 조사 설문지

농어촌 소규모 보육서비스 수요조사

안녕하십니까?

육아정책개발센터는 유아교육 및 보육 정책연구를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국가 육아정책 전문 연구기관입니다.

육아정책개발센터에서는 보건복지가족부와 함께 농어촌지역의 틈새 보육수요를 알아보기 위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작성하신 설문지는 국가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사용될 것이오니 정확하고 성실한 응답을 부탁드립니다. 응답자료는 연구이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2009년 5월
육아정책개발센터
소 장 조 복 희

연락처: 조혜주(02-398-7715, thgid@daum.net)

응답자 정보	_____시·도 _____군청 _____ 과
	직위: _____ 보육업무담당경력 _____년_____개월
	전화번호:

1. 귀하가 근무하는 군에 소재한 읍·면과 보육시설 이용 현황을 알려주십시오.(2009년 5월 현재)

읍·면 명(名)	미취학 아동수(명) (연령 0-6세)	보육시설 수						보육 시설 현원	보육 시설 정원
		국공립	법인	민간	가정	기타	계		
총(개)	총 (명)								

2. 귀 군에 다음과 같이 특별한 보육 수요를 가진 아동의 밀집지역(동일 읍·면에 7-8명 이상 거주)이 있다면 해당 정보를 기입해 주십시오.

특별 수요 유형	해당 읍·면·동 이름	가구수	영유아수
다문화 가정		약 _____가구	약 _____명
조손가정		약 _____가구	약 _____명
한부모 가정		약 _____가구	약 _____명

2-1 귀 군에서는 특별수요를 가진 영유아에 대해서 2009년 현재 군 자체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까?

구분	지원 사업
1. 다문화 가정 영유아	□① 있다(☞2-2번으로) □② 없다
2. 조손 가정 영유아	□① 있다(☞2-2번으로) □② 없다
3. 한부모 가정 영유아	□① 있다(☞2-2번으로) □② 없다

2-2. 지원 사업 내용은 무엇입니까?

구분	사업 내용
1. 다문화 가정 영유아	사업명: 대상인원: 명 예 산: 천원
2. 조손 가정 영유아	사업명: 대상인원: 명 예 산: 천원
3. 한부모 가정 영유아	사업명: 대상인원: 명 예 산: 천원

3. 귀 군내 읍·면에 거주하는 영유아 중 거리가 멀어서 보육시설 또는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이 있습니까?

□① 있다 (☞ 3-1 응답 후 4번으로) □② 없다 (☞4번으로)

3-2. 지역 특성상 거리가 멀어 보육시설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못하는 영유아에 대해서 2009년 현재 귀 군에서는 자체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까?

□① 있다 (☞3-3번 응답후 4번으로) □② 없다 (☞3-4번 응답후 4번으로)

3-1. 있다면 어느 읍·면에서 몇 명이나 있다고 보십니까? 또한 지역특성은 어떠합니까?

_____읍/면/동 약_____명 □ 산간지역 □ 도서지역 □ 기타
_____읍/면/동 약_____명 □ 산간지역 □ 도서지역 □ 기타
_____읍/면/동 약_____명 □ 산간지역 □ 도서지역 □ 기타

3-3. 지자체 고유의 지원 사업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사업명 : _____
대상인원 : _____ 명
예산 : _____ 천원

3-4. 지원 사업을 하고 있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가장 큰 이유 한 가지만 골라 주십시오.

□ 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함
□ ② 재정 부족
□ ③ 지자체 인력 부족
□ ④ 지자체의 의지 부족
□ ⑤ 부모의 요구가 크지 않음
□⑥기타( )

다음은 보건복지가족부가 산간, 도서 벽지 및 농어촌 영유아를 위해 구상하고 있는 새로운 정책대안에 관한 의견조사입니다. 아래에 주어진 설명글을 잘 읽어 보시고 질문에 답해 주십시오.

2009년 **소규모 보육시설 설치 사업**은 기존 보육시설의 이용이 어려운 산간이나 도서 지역에 3-20명 규모의 보육시설을 새로이 설치하도록 보건복지가족부가 각 시설별로 88백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전국 7개 군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소규모 보육시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4. 최근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농어촌 지역 중 보육시설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에 살고 있는, 소수의 아동들을 위한 **소규모 보육시설 설치 사업**을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판단하시기에 귀 군 내에 소규모 보육시설 설치가 필요한 지역이 있습니까? (위 □속의 설명을 참조하세요.)

□① 있다 (_____읍/면) (☞5번으로) □② 없다 (☞응답 후 6번으로)

5. 소규모 보육시설 설치가 필요한 읍/면 지역이 있다면, 귀 군에서 소규모 보육시설 설치 사업에 참여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① 있다 (_____읍/면)(☞5-1 응답 후 6번으로) □② 없다 (☞6번으로)

5-1. 사업 참여 의향이 있으신 경우, 해당 읍면동에서 소규모 보육시설 사업을 수행한다면 다음의 문제들에 대해 어느 정도 어려움이 예상되는지 답해 주십시오

	매우 심함	심한 편	보통	심하지 않음	매우 심함	잘 모름
국고 지원금 이외에 군 자체 재정 부족						
담당 공무원의 업무 과중						
보육시설을 운영할만한 공간의 불충분						
인근 기존 보육시설의 반발						
인구 감소로 소규모 시설의 장기적 운영 어려움						
지역 특수성으로 인한 관리의 어려움(교사 확보 등)						
기타(_____)						

※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농어촌 지역 보육 공급을 늘리고 부모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방식의 육아지원서비스(2009년 한정 국비 100%지원)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현재 고려하고 있는 육아지원서비스 방안으로, 각각을 잘 읽어보시고 주어진 질문에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농번기 임시 보육방 사업

· **목적** : 농어촌 농번기 보육서비스 제공
· **대상** : 농업 종사자 가정 영유아
· **설치 요건**
- 농번기 동안 마을회관, 교회 또는 지역주민 일반 가정집 중 방 1-2개 이용이 가능한 지역
  * 바닥난방, 세면, 화장실, 취사실 사용이 가능한 곳
  * 영유아 3명 이상(인근 마을과 공동 설치 가능)

· **운영 방법(A안: 인근 국공립 보육시설의 분원식 운영)**
- 가장 가까운 국공립 보육시설 한 곳으로부터 아동 연령에 적합한 교구 및 놀이감 대여
  * 국공립 보육시설 교구 및 놀이감 구입 지원(국비 100%)
- 국공립 보육시설 소속 임시 보육교사 1명 채용 및 파견
  * 인건비 - 국비 50 : 지방비 50
  * 지역 주민 인력지원 - 교사보조인력 및 취사와 급·간식, 청소 지원
- 국공립 보육시설이 농번기 보육방 운영계획 및 보육과정 운영 지원
- 이용료: 국공립 보육시설 이용료의 70%에 준함. 아동은 국공립보육시설의 아동으로 등록됨.

· **운영 방법(B안: 보육정보센터 중심 지자체 직영 방식)**
- 위와 동일. 다만 국공립 보육시설 대신 시·도 소재 보육정보센터가 중심 역할을 함.

· **지원 체계**
- 해당 군청 - 보육방 설치 관련 요건 검토, 시설 안전 점검 및 행정지원, 지도감독
- 시도 보육정보센터 - 지역 주민 보조 인력에 대한 교육 실시

· **예산**(개소당 첫 1년 예산) - 10,800천원
- 시설설치비(환경개선비-일회성): 5,000천원
- 교사 인건비 1,200천원 × 4개월
- 교구 및 놀이감 1,000천원

6. 귀 군 내에는 농번기 보육방 설치가 필요한 읍/면이 있습니까?

□① 있다 (☞7번으로)　　□② 없다 (☞8번으로)

7. 농번기 보육방 설치가 필요한 지역이 있다면, 귀 군은 농번기 보육방을 설치하고 운영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① 있다 (_____읍/면)(☞ 7-1, 2, 3, 4번 후 8번으로)　　□② 없다 (☞8번으로)

7-1. 보육방 운영 의향이 있으신 경우, 해당 읍/면에 농번기 보육방을 설치, 운영하는데 있어 다음의 항목들에 대한 해당 지역의 상황은 어떠한지 답해주십시오

	매우 충분	충분	보통	불충분	매우 불충분	잘 모름
군 자체 재정						
담당 공무원의 관리 역량						
보육방을 운영할만한 공간						
지역 주민 중 활용가능한 인력						
지속적 운영을 가능하게 하는 주민 수요						
보육정보센터 등 관련 지원기관						
기타_____)						

7-2. 농번기 보육방 설치가 필요한 지역이 있다면, 귀하는 두 개의 운영방법(A안과 B안) 중 어느 것을 선호하십니까?

□①A안 (이유:)　　□②B안(이유:)

7-3. 보육방 이용료를 국공립 보육시설의 70%에 준하여 책정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너무 부담될 것이다 (☞ 7-4번)
□ ② 조금 부담될 것이다 (☞ 7-4번)
□ ③ 적당하다 (☞ 8번)
□ ④ 별로 부담되지 않는다 (☞ 8번)
□ ⑤ 전혀 부담되지 않는다 (☞ 8번)

7-4. 적절한 보육방 이용료는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영아 1인당 월 _____원　　유아 1인당 월 _____원

8. 이 밖에 농번기 보육방 설치 계획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십시오

_____

_____

준공영(準公營) 보육가정 사업

· **목적 :** 산간 또는 도서 지역 등 인근 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없고 소규모 보육시설 설치 역시 불가능한 지역 거주 영유아에 대한 지원

· **대상** : 산간 또는 도서 지역 영유아

· **설치 요건 :**

- 지역주민 중 자격 갖춘 보육모(아이돌보미 교육에 준하는 교육 이수자) 1인 이상 거주 지역
- 보육모 1명당 3-5명 내외의 지역 아동(아동 연령에 따라 다름. 보육사업안내에 준함)
- 최소 보육가정 시설 규정 - 바닥 난방, 취사 시설, 세면 설비, 보육 아동과 보육모가 한 공간에서 놀이할 수 있을 만한 면적의 방

· **운영 방법 :**

- 운영시간: 3시간, 5시간, 8시간
- 교구 및 놀이감 지원(국비 100%)
- 보육모 인건비 지원(국비 50 : 지방비 50)
- 이용료: 아이돌보미의 80% 정도의 비용에 준하여 이용 시간당 책정함

· **지원 체계 :**

- 해당 군청: 보육가정 설치 및 시설 안전 점검 지원, 지도·감독 군 지역 내 보육가정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교재교구, 놀이감 교환 서비스
- 시도 보육정보센터 : 보육모 신청자 5인 이상시 보육모 자격 교육과정 개설(5회, 40시간)
- 월 1회 보육과정 담당자 순회 교육 실시
- 년 1회 보육모 보수 교육 실시

· **예산**(개당 첫 1년 예산) 8,000천원~10,000천원

- 시설설치비(환경개선비-일회성): 5,000천원
- 보육모 수당 400천원 × 12개월
  * 보육가정 운영비 및 보육모 인건비는 보육료로써 충당할 수 있음
- 교구 및 놀이감 1,000천원
- 보육과정 담당자 순회 교육 수당 및 운영비 100천원 * 12개월
- 보육모 교육 관련 1,000천원~3,000천원

9. 귀 군에 준공영 보육가정 설치가 필요한 읍/면이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11번으로)

10. 준공영 보육가정 설치가 필요한 지역이 있다면, 귀 군은 보육가정을 설치하고 운영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① 있다 (_____읍/면)(☞10-1번으로) □② 없다 (☞11번으로)

10-1. 준공영 보육가정 운영 의향이 있으신 경우, 해당 읍면에서 본 사업을 진행한다면 다음의 항목에 대한 해당 지역의 상황은 어떠한지 답해주십시오

	매우 충분	충분	보통	불충분	매우 불충분	잘 모름
군 자체 재정						
담당 공무원의 관리 역량						
보육방을 운영할만한 공간						
지역 주민 중 활용가능한 인력						
지속적으로 운영 가능한 주민 수요						
이용료를 지급할 수 있는 주민의 재정 상태						
보육정보센터 등 관련 지원기관						
기타(_____)						

10-2. 준공영 보육가정 이용료를 아이돌보미 사업에 준하여 책정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주민들에게) 매우 부담이 크다 (☞ 10-3번)
□ ② 부담이 큰 편이다 (☞ 10-3번)
□ ③ 적당하다
□ ④ 별로 부담되지 않는다
□ ⑤ 전혀 부담되지 않는다

10-3. 적절한 준공영 보육가정 이용료는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해당 단위(시간/월)에 ○ 표해 주세요.

영아 1인당 _____원(시간당/월) 유아 1인당 _____원(시간당/월)

11. 이 밖에 준공영 보육가정 설치 계획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십시오

_____

_____

장난감 버스(장난감 이동 도서관) 사업

· **목적** : 농어촌 및 산간 지역 영유아 부모들의 자녀교육 지원
· **대상** : 농어촌 및 산간 지역 영유아 가정
· **운영 방법 :**
- 주 1회 장난감 버스 순회
- 버스탑승인력 : 보육 교사 또는 유아놀이전문가 1-2명
  운전 및 대여 사업 지원 인력 1명(공익근무요원 활용 가능)
- 놀이 공간으로 개조된 버스(버스 의자 제거 및 서가와 장난감 트레이 설치. 바닥 안전장치)
- 교구, 장난감
- 방문시 1-2시간 놀이 및 학습, 마을 방문 서비스
- 이용료 : 월 1만원
- 인건비 : 전문 인력 1-2명(국비 50:지방비 50)
  지원 인력 1명(지방비 100)
- 운영비 : 차량 개조비, 교재교구 및 장난감 구입 (국비 100%)

· **지원 체계**
- 해당 군청: 장난감 버스 관리 및 안전 점검 지원, 새로운 교재교구의 구입
  * 2-3개의 군청이 1대의 장난감 버스를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음
- 시도 보육정보센터: 장난감 버스 전문 인력 관리, 교재교구 본 도서관으로서의 기능

· **예산** (버스 1대당 년간 예산) 60,000천원
- 인건비 : 1,500천원 * 12개월 * 2명
- 차량 개조비: 10,000천원
- 운영비 : 14,000천원

12. 귀하가 근무하시는 군에 장난감 버스 순회가 필요한 읍/면이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14번으로)

13. 장난감 버스 순회가 필요한 지역이 있다면, 귀 군은 장난감 버스 순회 사업을 지원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① 있다 (_____읍/면)(☞13-1번) □② 없다 ☞(☞14번으로)

13-1. 장난감 버스 순회 운영을 지원할 의향이 있으신 경우, 해당 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다음 항목들에 대한 해당 읍면의 상황은 어떠한지 답해주십시오

	매우 충분	충분	보통	불충분	매우 불충분	잘 모름
군 자체 제정						
군청의 사업 지원 인력 공급						
담당 공무원의 관리 역량						
지속적으로 운영 가능한 주민 수요						
이용료를 지급할 수 있는 주민의 재정 상태						
보육정보센터 등 관련 지원기관						
기타(_____)						

13-2. 장난감 버스 이용료를 월 1만원 책정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부담이 크다 (☞ 13-3)
□ ② 부담이 큰 편이다 (☞ 13-3)
□ ③ 적당하다 (☞13-4)
□ ④ 별로 부담되지 않는다(☞ 13-4)
□ ⑤ 전혀 부담되지 않는다 (☞ 13-4)

13-3. 장난감 버스를 사용하는 가정의 적절한 이용료는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영아 1인당 월 _____원 유아 1인당 월 _____원

13-4. 장난감 버스가 마을에 주 1회 방문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더 자주 방문해야 한다 (적정 방문: 주 ____회)
□ ② 적당하다
□ ③ 방문 주기를 늘려야 한다 (적정 방문: ____ 일마다 1회)

14. 이 밖에 장난감 버스 사업 계획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십시오

_____

_____

공동 놀이 그룹 사업

· **목적 :** 농어촌 및 산간 지역 보육시설 미이용 유아들의 교육 및 학습 욕구를 충족
· **대상 :** 농어촌 및 산간 지역 보육시설 미이용 영유아 및 부모
· **운영 방법**
: 이동의 어려움으로 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마을의 교회, 마을회관, 가정을 이용하여 영유아와 부모가 함께 이용하는 놀이공간을 설치
: 마을 놀이방 운영
- 인력 : 마을 영유아 부모들을 순회 놀이교사로 활용
- 바닥 안전장치가 된 놀이방에 교재교구 및 장난감, 교육용 영상자료 제공
- 월 2회 1-2시간 시 · 도 보육정보센터 보육 전문 요원이 방문하여 부모와 아이가 함께 하는 부모 참여형 프로그램 실시

· **지원 체계**
: 해당 군청 - 군 지역 내 놀이 그룹의 교구 및 놀이감 순환 서비스
: 시도 보육정보센터 - 보육 요원 파견

· **예산** (놀이 그룹 1개당 년간 예산) 2,200천원
: 보육 전문 요원 수당 : 50천원 * 12개월 * 2회
: 교구 및 놀이감 1,000천원

15. 귀 군내에는 놀이 그룹 지원이 필요한 읍/면이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17번으로)

16. 놀이 그룹 지원이 필요한 지역이 있다면, 귀 군은 놀이 그룹을 지원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① 있다 (_____읍/면/동)(16-1번으로) □② 없다 (17번으로)

16-1. 놀이 그룹 지원 의향이 있으신 경우, 해당 읍면동에 놀이 그룹 사업 수행에서 다음의 항목들에 대해서 해당 읍면동의 상황은 어느 정도 인지 답해주십시오

	매우 충분	충분	보통	불충분	매우 불충분	잘 모름
담당 공무원의 관리 역량						
놀이 그룹을 운영할만한 공간						
놀이 그룹에 참여할 지역 주민						
지속적으로 운영 가능한 주민 수요						
보육정보센터 등 관련 지원기관						
기타(_____)						

16-2. 보육 전문 요원의 놀이 지도 등을 위하여 월 2회 방문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더 자주 방문해야 한다 (적정 방문: 주 ____회)
□ ② 적당하다
□ ③ 방문 주기를 늘려야 한다 (적정 방문: ____ 일마다 1회)

17. 이 밖에 놀이 그룹 설치 계획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십시오

_____

_____

18. 위에 제시된 방안들 이외에, 국비 지원이 가능할 경우 농어촌 영유아 보육 또는 양육 서비스의 지원 방안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귀하가 보시기에 귀 지역에 꼭 필요하고 지자체가 실시해 볼 의지가 있는 방안을 적어 주십시오. 보건복지가족부는 검토를 거쳐 귀 지역에 대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제목

_____

_____

_____

방법

_____

_____

_____

♣ 감사합니다 ♣

<부록 2> 농어촌 보육서비스 수요조사

농어촌 보육서비스 수요 조사

안녕하십니까?

육아정책개발센터는 유아교육 및 보육 정책연구를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국가 육아정책 전문 연구기관입니다.

육아정책개발센터에서는 보건복지가족부와 함께 농어촌지역의 틈새 보육수요를 알아보기 위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작성하신 설문지는 국가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사용될 것이오니 정확하고 성실한 응답을 부탁드립니다. 응답자료는 연구이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2009년 10월
육아정책개발센터 소장 조 복 희

설문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주관기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7층 육아정책개발센터
조 혜 주 (02-398-7715, thgid@kicce.re.kr)

<조사대행기관> (주)리서치 플러스/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 3가 32-11 엘림넷빌딩 4층
조사책임자 조 미 진 / Tel 02) 312-0865, Fax 02) 312-0562

조사원 기록 사항

응답자 성명		**응답자 연락처**	
응답자 연령	만 ( )세	**응답자 성별**	①남성 ②여성
응답자 주소	_____도 _____시·군 _____읍·면·동 _____리 _____마을		
거주지역 특성	①산간벽지 ②도서 ③일반농어촌 ④상업지역 ⑤기타( )		
영유아와의관계	①엄마 ②아빠 ③할머니 ④할아버지 ⑤기타( )		

조사원		**조사일**	2009년 월 일

※ 귀댁에 대해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SQ1. 귀댁의 **가구주(가구의 주 소득자)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본인 직업이 아닌 가구주 직업임)

① 농업·어업·축산업·임업 ② 자영업 ③판매·서비스직
④ 기술숙련공 ⑤ 일반작업직(토목관계의 현장작업, 청소, 수위 등)
⑥ 사무·기술직 (일반회사사무직, 기술직, 초·중·고 교사, 6급이하 공무원 등)
⑦ 경영·관리직 (5급이상의 고급공무원, 교장, 기업체 부장 이상의 직위 등)
⑧ 전문·자유직 (대학교수, 의사, 변호사, 예술가, 종교가, 언론인, 고소득 프리랜서 등)
⑨ 학생, 전업주부, 무직, 기타

SQ2. 귀하의 자녀(조부모의 경우 손자녀)들에 대해 다음 사항을 말씀해 주십시오. **학교에 다니지 않는 아이들만** 큰 아이부터 순서대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녀 이름	연령(만)	성별	육아지원기관 이용 현황 (모두 체크)
자녀1 ( )	세	①남 ②여	①어린이집 ②유치원 ③학원 등 ④이용안함
자녀2 ( )	세	①남 ②여	①어린이집 ②유치원 ③학원 등 ④이용안함
자녀3 ( )	세	①남 ②여	①어린이집 ②유치원 ③학원 등 ④이용안함
자녀4 ( )	세	①남 ②여	①어린이집 ②유치원 ③학원 등 ④이용안함

SQ3. **귀하께서** 이 마을에 살게 되신 지는 어느 정도 되셨습니까?( )년 ( )개월

※ 귀하가 살고 계신 마을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1. 귀하의 마을에는 모두 몇 가구가 있습니까? 총 _____ 가구

2. 마을의 가구 중 초등학교 이하(초등학생 포함) 아이가 있거나 젊은 부부로 이루어진 가구는 몇 가구나 있습니까? _____가구

3. 귀하의 마을에는 학교에 다니지 않는 연령의 아이들이 모두 몇 명이나 있습니까? 또 이 중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학원 등을 다니는 아이는 모두 몇 명입니까? (**귀댁의 자녀 포함**)
   -학교에 다니지 않는 아이들 수 : 총 _____ 명
   -학교에 다니지 않는 아이 중 어린이집/유치원/학원 등을 다니는 아이들 수 : 총 _____ 명

4. 마을에서 면사무소까지는 차량으로 몇 분이나 걸립니까? _____분

5. 하루 동안 마을에 버스는 몇 번이나 들어옵니까?

□① 1-2번 □② 3-4번

□③ 5-6번 □④ 6번 이상

□⑤ 전혀 들어오지 않음

6. 귀 마을에 거주하는 영유아 중 **거리가 멀어서**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이 있다고 보십니까?

□① 있다 (☞ 문6-1 응답) □② 없다 (☞ 문7로 가시오)

6-1. 있다면 몇 명이나 있다고 보십니까? _____명

※ 다음은 귀하의 자녀와 보육 서비스에 의견을 묻는 질문입니다.

7. (보육시설에 다니는 자녀가 있는 경우) 귀하의 자녀가 보육시설까지 가는 데 걸리는 시간은 어느 정도입니까?

차량으로 _____ 분 또는 도보 _____ 분

8. (보육시설에 다니지 않는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가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보육시설에 다니지 않는 자녀가 여러 명일 경우는 가장 어린 자녀를 대상으로 답하세요.)

□① 기관에 보내기에 아이가 너무 어려서 □② 보육시설까지의 거리가 너무 멀어서

□③ 비용이 부담되어서 □④ 보낼만한 좋은 시설이 없어서

□⑤ 시설입소를 기다리는 대기자가 많아서 □⑥ 차를 태워 보내기가 안심되지 않아서

□⑦ 기타 _____

다음은 보건복지가족부가 산간, 도서 벽지 및 농어촌 영유아를 위해 구상하고 있는 새로운 보육지원정책에 관한 수요조사입니다. 아래에 주어진 설명 글을 잘 읽어 보시고 질문에 답해 주십시오.

2009년 **소규모 보육시설 설치 사업**은 기존 보육시설의 이용이 어려운 산간이나 도서 지역에 3-20명 규모의 보육시설을 새로이 설치하도록 보건복지가족부가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현재 전국 9개 군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소규모 보육시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9. 귀하가 판단하시기에 살고 계시는 마을에 소규모 보육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보십니까?

□① 매우 필요 □② 조금 필요 □③ 거의 불필요 □④ 전혀 불필요

10. 만일 귀 마을에 아동 수 10명 정도의 소규모 보육시설이 설치된다면 귀하의 자녀를 보내시겠습니까?

□① 자녀를 모두 보내겠다

□② 자녀 중 일부(이름_____ , _____)를 보내겠다.

□③ 자녀를 보내지 않겠다.(이유_____)

11. 만일 소규모 보육시설을 설치한다면 귀하의 마을에서는 몇 명의 어린이가 이용을 원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영아(0-2세) 약 _____ 명 유아(3-5세) 약 _____ 명

농번기 보육방 설치 사업: **농번기(약 5-10월)에만 보육교사가 파견되어** 지역에 마련된 보육방에서 영유아들을 종일동안 돌보는 보육서비스

· 설치 요건

- 농번기 동안 마을회관, 교회 또는 지역주민의 일반 가정집 중 방 1-2개 이용이 가능한 곳
  * 바닥난방, 세면, 화장실, 취사실 사용이 가능한 곳
  * 영유아 3명 이상(인근 마을과 공동 설치 가능)

· 지원 체계

- 해당 군청 - 보육방 설치 관련 요건 검토, 시설 안전 점검 및 행정지원, 지도감독
- 시도 보육정보센터 - 지역 주민 보조 인력에 대한 교육 실시

· 이용료

- 국공립 보육시설 이용료의 70%. 아동은 국공립보육시설 아동으로 등록됨.

12. 귀 마을에는 농번기 보육방 설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필요 □② 조금 필요 □③ 거의 불필요 □④ 전혀 불필요

13. 만일 마을에 농번기에만 문을 여는 소규모 보육방이 설치된다면 귀하의 자녀를 보내시겠습니까?

□① 자녀를 모두 보내겠다

□② 자녀 중 일부(이름_____ , _____)를 보내겠다.

□③ 자녀를 보내지 않겠다. (이유_____)

14. 만일 농번기 보육방을 설치한다면 귀하의 마을에서 몇 명의 어린이가 이용할 것으로 보십니까?

영아(0-2세) 약 _____ 명 유아(3-5세) 약 _____ 명

준공영 보육가정 사업: 산간 또는 도서 지역에서 거리상 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없고 보육시설 설치 역시 불가능한 지역 거주 영유아와 가족을 위해, **일정 교육을 이수한 지역 주민이 보육모가 되어 3-5명의 아동을 돌보는 보육서비스**

· 설치 요건 :

- 지역주민 중 자격 갖춘 보육모(아이돌보미 교육에 준하는 교육 이수자) 1인 이상 거주 지역
- 보육모 1명당 3-5명 내외의 지역 아동(아동 연령에 따라 다름. 보육사업안내에 준함)
- 최소 보육가정 시설 규정 - 바닥 난방, 취사 시설, 세면 설비, 보육 아동과 보육모가 한 공간에서 놀이할 수 있을 만한 면적의 방

· 지원 체계

- 해당 군청 - 보육방 설치 관련 요건 검토, 시설 안전 점검 및 행정지원, 지도감독
- 시도 보육정보센터 - 월1회 보육모 순회 교육 실시, 년 1회 보육모 소집 재교육 실시

· 이용료

- 아이돌보미 이용료의 80%. 이용시간 당 책정.

(※아이돌보미는 소득수준에 따라 시간당 1,000원 ~ 5,000원 사이)

15. 귀 마을에는 준공영 보육가정 설치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① 매우 필요 □② 조금 필요 □③ 거의 불필요 □④ 전혀 불필요

16. 만일 귀 마을에 준공영 보육가정이 설치된다면 귀하의 자녀를 보내시겠습니까?

□① 자녀를 모두 보내겠다

□② 자녀 중 일부(이름_____ , _____)를 보내겠다.

□③ 자녀를 보내지 않겠다.(이유)

17. 만일 살고 계신 마을에 준공영 보육가정을 설치할 경우, 자발적으로 1주일간 교육을 받고 보육모로서 일할 사람이 있을까요? 보육모에게는 일정 수준의 급여가 지급될 것입니다.

□① 있다(_____명 정도) □② 없다

18. 만일 준공영 보육가정을 설치한다면 몇 명의 어린이가 이용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영아(0-2세) 약 _____ 명 유아(3-5세) 약 _____ 명

장난감 놀이 버스 사업 : 농어촌 및 산간 지역에서 보육시설에 가지 않고 부모와 가정에 있는 영유아를 위한 양육지원 서비스로서, **놀이감, 책 등을 버스에 싣고 보육교사가 찾아가서 아이에게 놀이와 학습을 제공**하는 서비스

· 운영 방법 :

- 주 1회 장난감 버스 순회
- 버스탑승인력 : 보육 교사 또는 유아놀이전문가 1-2명
  운전 및 대여 사업 지원 인력 1명(공익근무요원 활용 가능)
- 놀이 공간으로 개조된 버스(버스 의자 제거 및 서가와 장난감 트레이 설치. 바닥 안전장치)
- 교구, 장난감
- 방문시 1-2시간 놀이 및 학습, 마을 방문 서비스
- **이용료 :** 실비 또는 무료

19. 귀 마을에는 순회 장난감 놀이버스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① 매우 필요 □② 조금 필요 □③ 거의 불필요 □④ 전혀 불필요

20. 만약 순회 장난감 버스 서비스가 진행된다면 몇 가구에서 이용을 할 것으로 예측하십니까?

_____ 가구

21. 귀 마을에 순회 장난감 버스가 온다면 이용하시겠습니까?

□① 이용할 것임 □② 거의 이용하지 않을 것임

공동 놀이 그룹 사업: 농어촌 및 산간 지역에서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영유아들 교육 및 학습 지원을 위해 **교사 없이 부모가 주축이 되어 이끌어가는 공동 육아 형식의 프로그램 지원**

· 운영 방법:

- 교회, 마을회관, 가정집 공간을 이용하여 놀이공간 설치
- 인력 : 마을 영유아 부모들이 순번제로 놀이교사로서 활동
- 바닥 안전장치가 된 놀이방에 교재교구 및 장난감, 교육용 영상자료 제공
- 월 2회 1-2시간 시·도 보육정보센터 보육 전문 요원이 방문하여 부모와 아이가 함께 하는 부모 참여형 프로그램 실시

22. 국가에서 놀이그룹 설치와 운영을 지원한다면 귀 마을에는 놀이 그룹을 운영하고자 하는 부모의 수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많음 □② 조금 있음 □③ 거의 없음 □④ 전혀 없음

23. 국가가 지원하는 놀이그룹을 설치한다면 몇 가구나 이용할 것이라고 예상하십니까?

_____ 가구

24. 지금까지 질문 드린 보육서비스 이외에 원하시는 보육서비스 유형이 있다면 자유롭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가족부에서 검토를 하여 정책에 반영하고 서비스 지원을 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_____

_____

♣ 감사합니다 ♣

<부록 3>농어촌 소규모 보육시설 이용 만족도조사

농어촌 소규모 보육시설 이용 만족도조사

안녕하십니까?

육아정책개발센터는 유아교육 및 보육 정책연구를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국가 육아정책 전문 연구기관입니다.

육아정책개발센터에서는 보건복지가족부와 함께 국공립 소규모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계신 아동의 부모님들을 대상으로 이용 만족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작성하신 설문지는 국가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사용될 것이오니 정확하고 성실한 응답을 부탁드립니다. 응답자료는 연구이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2009년 12월
육아정책개발센터
소 장 조 복 희

연락처: 조혜주(02-398-7715, thgid@daum.net)

응답자	주소: _____도_____시군구_____읍면동(리)	아동과의 관계:_____

Ⅰ. 아동의 특성

문 1. 다음은 현재 OO 어린이집에 보내고 있는 자녀 1명에 관한 질문입니다.

문1-1. 생년월일	(　　)년 (　　)월생
문1-2. 성별	①남　　②여
문1-3.출생순위	형제 총_____ 중 _____번째 (보내는 자녀가 1명 이상인 경우 총 몇 명입니까? 총_____명)
문1-4. 낮동안 자녀를 주로 돌보는 사람 ① 부 ② 모 ③ 조부모 ④ 친인척(고모, 이모, 삼촌 등) ⑤ 기타(　　)	
문1-5. 전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닌 경험이 있습니까?(　　) (①, ②, ③에 답한 분은 문 2번으로 바로 가시면 됩니다) ①유치원에 다녔다 ②어린이집에 다녔다 ③기타(학원, 선교원 등)에 다녔다 ④아무데도 다니지 않았다.	
문1-6.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니지 않았던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자녀가 질병이나 장애가 있어서 ② 거리가 멀어서 ③ 집에 돌봐 줄 사람이 있어서 ④ 비용이 부담돼서 ⑤ 자녀가 어려서 ⑥ 자녀가 적응을 못해서 ⑦ 기타	

Ⅱ. 소규모 보육시설 이용 현황

문 2. OO 어린이집을 선택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　　)

① 자녀의 교육을 위하여
② 자녀에게 친구를 사귀게 해 주고 싶어서
③ 부모가 일을 해야 하므로
④ 집에서 자녀를 키우는 것이 힘들어서
⑤ 주변에서 보내니까
⑥ 전에 다니는 던 곳이 마음에 안들어서
⑦ 전에 다니던 곳이 너무 멀어서　⑧ 아이가 전에 다니던 곳을 싫어해서
⑨ 기타

문 3. 자녀를 OO 어린이집에서 보내는 시간은 다음 중 어느 것입니까? (　　)

① 월요일~금요일 하루 8시간 미만　② 월요일~금요일 하루 8시간 이상
③ 월요일~토요일 하루 8시간 미만　④ 월요일~토요일 하루 8시간 이상

문 4. OO 어린이집의 다음 항목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만족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칸에 V표 해 주세요.

	매우 만족함	만족함	만족하지 않음	전혀 만족하지 않음
4-1. 집과의 거리				
4-2. 원장, 교사의 인품				
4-3. 시설·설비의 위생 정도				
4-4. 급식과 간식				
4-5. 비용(보육료 등)				
4-6. 보육 프로그램				
4-7. 운영시간				
4-8. 어린이집 주변환경				
4-9. 차량 운행				
4-10. 시설의 안전성				

문 5. OO 어린이집을 이용한 후 자녀가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무엇입니까? 다음 중에서 해당하는 것을 2가지만 골라 주세요. (　　,　　)

① 식사 태도가 좋아짐
② 책을 좋아하게 됨
③ 말이 많아짐
④ 몸이 건강해짐
⑤ 좋아하는 친구가 생김
⑥ 짜증이 많아짐
⑦ 자주 피곤해 함
⑧ 잠을 잘 잠
⑨ 표정이 밝아짐
⑩ 양치질, 세수를 잘 하게 됨
⑪ 외모에 관심을 가짐
⑫ 규칙적인 생활을 하게 됨
⑬ 기타(　　)

문 6. OO 어린이집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용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　)

① 앞으로 계속 보낼 계획이다. (몇 년도까지? _____년)
② 아이가 좀더 자라면 집에서 멀더라도 규모가 큰 어린이집으로 보낼 계획이다.
③ 아이가 좀더 자라면 유치원에 보낼 계획이다.
④ 잘 모르겠다.

문 7. 앞으로 OO 어린이집과 같은 소규모의 보육시설이 발전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① 우수한 교사 유치
② 우수한 시설·설비
③ 교사 일인당 맡는 아동 수를 줄임
④ 다양한 특별활동 프로그램 제공
⑤부모의 적극적 관심과 참여

문 8. 지금 OO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 말고 다른 형제를 또 보내실 계획이 있습니까?

① 이 아이의 동생이나 형을 보낼 계획이다(초등학교에 다니지 않는 형제수___명)
② 앞으로 자녀를 더 낳으면 보낼 계획이다(_____명 더 낳을 계획임)
③ 더 이상 다른 자녀를 보낼 계획은 없다.

Ⅲ. 부모와 가정의 특성

문 9. 다음은 아동의 가정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8-1번은 해당하는 번호를 찾아 부와 모 칸에 각각 써 주시고 8-2번부터는 해당 번호에 V표 해 주십시오.

			부	모
9-1 아동 부모	연령	① 20대 ② 30대 ③ 40대 ⑤ 50대 이상		
	태어난 나라	① 한국 ② 일본 ③ 중국 ④ 베트남 ⑤ 필리핀 ⑥ 몽골 ⑦ 러시아 주변국 ⑧ 기타(국명:)		
	학력	① 중졸 이하 ② 고졸 ③ 대졸 이상 ④ 모름		
	직업	① 농업, 어업, 임업, 축산업, 원예업 ② 자영업 ③ 판매 · 서비스직 ④ 사무기술직 ⑤ 기능 · 숙련공 ⑥ 학생 ⑦ 전업주부 ⑧ 무직 ⑨ 기타		
9-2 가구 구성		① 부부+자녀 ② 조부모+부부+자녀 ③ 부+자녀 ④ 모+자녀 ⑤ 조부모+자녀 ⑥ 기타(기입)		
9-3. 월평균 소득		① 100만원 미만 ② 100만원-200만원 미만 ③ 200만원-300만원 미만 ④ 300만원 이상		

10. OO 어린이집을 이용하면서 불편하셨던 점이나 앞으로 개선되었으면 하는 점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말씀해 주십시오.

_____

<부록 4> 부모협동 놀이그룹 이용 만족도조사

매직버스 이용자 만족도 조사

안녕하십니까?

육아정책개발센터는 유아교육 및 보육 정책연구를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국가 육아정책 전문 연구기관입니다.

육아정책개발센터에서는 보건복지가족부와 함께 전라북도 지역 매직버스 이용 가정을 대상으로 이용 만족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작성하신 설문지는 국가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사용될 것이오니 정확하고 성실한 응답을 부탁드립니다. 응답자료는 연구이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2009년 12월
육아정책개발센터
소 장 조 복 희

1. 다음은 매직버스를 이용하고 있는 아동에 관한 질문입니다. 아래 왼편의 질문내용을 잘 읽으시고 오른편 주어진 곳에 적절한 응답을 해 주십시오.

1-1. 생년월일 및 성별	_____년 _____월 (　　세) ①남 ②여
1-2 출생순위	형제 ____명 중 ____ 째 자녀 (매직버스를 같이 이용하는 자녀 ①있음 ②없음)
1-3 낮동안 아동을 주로 돌보는 사람	①부 ②모 ③조부모 ④친인척 ⑤이웃 ⑥기타
1-4 아동이 현재 다니는 기관 (①②③번에 답한 분은 1-6으로 바로 가시고 ④번에 답한 분만 1-5번에 답해 주세요.)	①어린이집 ②유치원 ③학원 ④아무데도 가지 않음
1-5 위의 1-4번에서 ④번에 답한 경우 현재 아무데도 다니지 않는 이유	①거리가 멀어서 ②집에 봐 줄 사람이 있어서 ③비용이 부담돼서 ④자녀가 어려서 ⑤자녀가 기관에 적응을 못해서 ⑥기타
1-6 앞으로 아이를 기관에 보낼 계획	①어린이집 ②유치원 ③학원 ④앞으로도 그냥 집에 있을 계획임

2. 매직버스를 어떻게 알고 이용하게 되었습니까? 가장 큰 계기를 하나만 선택해 주세요.(　　)

① 면사무소나 군청의 고지 사항을 보고
② 이장(또는 부녀회장)이 알려줘서
③ 주변 친지나 친구가 알려줘서
④ 매직버스를 타고오는 선생님이 직접 알려줘서
⑤ 마을에 서 있는 매직버스를 보고서
⑥ 기타(　　)

3. 매직버스 이용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각 항목별 내용에 대해 만족하는 정도에 V표 해주시고, 만일 만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어떻게 개선되기를 바라시는지 마지막 칸에 의견을 적어 주세요.

항목	내용	매우 만족함	만족함	만족하지 않음	전혀 만족않음	만족하지 않을시, 개선 방법에 대한 의견
대여용품	3-1. 장난감 종류					
	3-2. 장난감의 질					
	3-3. 도서 종류					
	3-4. 도서의 질					
서비스	3-5. 방문주기(2주에 한 번 방문)					
	3-6. 장난감과 책의 대여일수					
	3-7. 장난감 활용방법 안내					
	3-8. 매직버스 선생님과 그룹 활동 시간					
	3-9. 매직버스 선생님과 그룹 활동의 내용					
이용	3-10. 회원 가입 절차					

4. 매직버스를 이용한 후 좋아진 점이 있다면 다음 중 어떤 것입니까? 가장 크게 좋아졌다고 보시는 점을 한 가지만 선택해 주십시오. (　　)

① 아이와 놀이하는 방법을 많이 알게 되었다.
② 다양한 장난감을 많이 사용해볼 수 있었다.
③ 다양한 책을 접해볼 수 있었다.
④ 아이와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다.
⑤ 아이가 선생님과 시간을 보내는 동안 내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⑥기타(　　)

5. 다음은 매직버스 이용 아동 가구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5-1번은 해당하는 번호를 찾아 부와 모 칸에 써 주시고 5-2번부터는 해당 번호에 V표 해 주세요.

			부	모
5-1 아동 부모 (부/모칸에 모두 응답 해주세요.)	연령	① 20대 ② 30대 ③ 40대 ⑤ 50대 이상		
	원국적	① 한국 ② 일본 ③ 중국 ④ 베트남 ⑤ 필리핀 ⑥ 몽골 ⑦ 러시아 주변국 ⑧ 기타(국명:)		
	학력	① 중졸 이하 ② 고졸 ③ 대졸 이상 ④ 모름		
	직업	① 농업, 어업, 임업, 축산업, 원예업 ② 자영업 ③ 판매 · 서비스직 ④ 사무기술직 ⑤ 기능 · 숙련공 ⑥ 학생 ⑦ 전업주부 ⑧ 무직 ⑨ 기타		
5-2 가구 구성	① 부부+자녀 ② 조부모+부부+자녀 ③ 부+자녀 ④ 모+자녀 ⑤ 조부모+자녀 ⑥기타(기입)			
5-3. 월평균 소득	① 100만원 미만 ② 100만원-200만원 미만 ③ 200만원-300만원 미만 ④ 300만원 이상			
5-4. 응답자	본 설문지를 작성하신 선생님은 아동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십니까? ① 부 ② 모 ③ 조부 ④ 조모 ⑤ 친인척(고모, 삼촌 등) ⑥기타			

6. 매직버스를 이용하면서 불편하셨던 점이나 앞으로 개선되었으면 하는 점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말씀해 주십시오.

_____

_____

<부록 5> 소규모 보육시설 운영안내

농어촌 소규모 보육시설 사업 안내

Ⅰ. 소규모 보육시설의 정의

1. 정의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위탁 운영 포함)하는 국공립보육시설 중 **3인 이상 20인 이하**를 보육하는 시설을 말한다.

○ 소규모 보육시설 증개축에 따라 20인 이상으로 정원이 증가된 경우에는 국공립보육시설로 전환해야 한다.

2. 유형

○ 소규모 보육시설은 일반 소규모 보육시설과 분원형 소규모 보육시설로 그 유형을 나눌 수 있는 바, 분원이라 함은 별도의 시설장을 두지 않고 본원의 시설장이 분원시설에 대한 책임을 지는 시설을 말한다.

3. 규모 및 명칭

○ 상시 영유아 3인 이상을 보육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명칭은 “○○ 어린이집”으로 하여야 한다.

○ 상시 영유아 3인 이상을 보육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명칭은 “○○ 어린이집 △△ 분원”으로 하여야 한다.

4. 설치절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가절차 없이 직접 설치하되, 보육시설 수급계획 등을 포함한 보육계획을 사전에 수립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설치시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5. 배치기준

○ 보육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농어촌지역에 설치한다.

○ 보육시설이 설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 면적이 넓어 실질적으로 기존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 설치한다.

6. 시설의 위탁운영 등

가. 법적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24조 2항·4항, 동법 시행규칙 제24조·25조

나. 운영방법

○ 소규모 보육시설을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직접 운영하거나,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다.

○ 소규모 보육시설을 분원형태로 지정한 경우, 별도의 위탁체를 선정하지 않을 수 있다.

다. 위탁 운영시 유의사항

○ 비영리법인·비영리단체 또는 개인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한다.

○ 시설장과 보육교사 등 종사자는 공개 채용하여야 한다.

○ 운영할 경우에는 명의 대여 등 형식적인 위탁운영을 금지하여야 한다.

○ 위탁은 공개경쟁에 의한다.

○ 기타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은 국공립보육시설 위탁 기준을 준용한다.

II. 소규모 보육시설의 설치 기준

1. 보육시설의 입지조건

○ 소규모 보육시설의 설치기준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1의 규정에 의한다.

○ 소규모 보육시설은 「보육사업안내」의 '보육시설의 입지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2. 보육시설의 구조 및 설비기준

○ 소규모 보육시설의 구조 및 설비기준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1의 3호 규정<개정 2009. 7. 3>에 의한다.

– 소규모 보육시설은 「보육사업안내」의 '보육시설 구조의 일반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3. 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현황 보고

○ 소규모 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현황을 매월 종료 후 1주 이내에 시·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III. 소규모 보육시설의 운영

1. 소규모 보육시설 운영 일반원칙

가. 운영규정

○ 보육시설의 장은 조직·인사·급여·회계·물품 기타 시설의 운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규정을 제정·시행하여야 한다.

나. 보육대상

○ 만 0세~만 5세의 취학전 아동을 원칙으로 한다.

다. 반편성 및 혼합반 기준

○ 반편성 및 혼합반 기준은 보육사업안내를 따르도록 한다.

– 단, 지역 특성에 따라 영아반만을 운영할 수 있다.

– 단, 보육시설 전체 보육아동수가 5명 이하로, 반을 구분하기 힘든 경우 보육정보센터의 검토를 거치고 지역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받아 시·군·구청장은 전연령 혼합반을 승인할 수 있다.

– 교사 채용이 어려운 도서벽지 등의 지역에서는 영아 연령 전체(만0~2세) 혼합반 구성이 가능하며, 이 때 보육정보센터의 검토를 거치고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받아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단, 교사 대 아동 비율은 최저 연령 기준에 의거하여야 한다.

라. 입소순위

○ 소규모 보육시설 설치된 읍·면·동 아동이 우선적으로 입소하되, 보육사업안내의 입소우선 순위를 적용한다.

마. 보육 운영시간

○ 보육시설은 07:30~19:30까지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보호자의 근로시간 등을 참작하여 조정 운영할 수 있다.

○ 보육시설은 공휴일을 제외하고 연중 계속 운영하여야 하며, 지역 및 시설 여건에 따라 보호자와 시설장의 협의에 의하여 기준시간 초과보육 및 휴일보육을 운영할 수 있다.

바. 보육교사의 배치 및 근무시간

○ 보육교사의 근무시간은 1일 8시간을 원칙으로 하고, 보육시설의 운영시간을 고려하여 출퇴근시간은 탄력적으로 할 수 있다.

○ 기준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등 관련법령 규정에 의해 시간외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 시설장은 본원에 속하는 보육교사 중 일부를 분원으로 파견할 수 있다.

사. 보육보조인력의 활용

○ 도서, 벽지 등 지역에서 다수 교사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보육보조인력'을 채용하여 활용할 수 있다. 보육보조인력의 자격과 역할은 [붙임 1]에 의한다.

– 단, 보육보조인력을 활용할 경우 보육보조인력 1명당 연령별 반구성에 추가 가능한 아동 수는 0세반 2명, 1세반 3명, 2세반 5명이다.

– 연령 혼합반 구성시 교사 대 아동 비율은 최저 연령의 교사 대 아동 비율 기준에 따르나, 보육보조인력을 활용할 경우 0+1세(또는 0~2세) 혼합반은 성인 대 아동 비율 2:6, 최저 연령1세 혼합반은 2:10, 최저 연령 2세 혼합반은 2:14로 구성할 수 있다.

아동연령	0세	1세	2세	3세	4세 이상
교사 대 아동 비율(농어촌)	1:4	1:7	1:9	1:15	1:24
보육보조인력 활용시 추가 아동수	+2	+3	+5	-	-
혼합반 구성시 기준 연령 성인 대 아동 비율	2:6 (교사+보조)	2:10 (교사+보조)	2:14 (교사+보조)	-	-

아. 보험가입

○ 보험가입에 관한 사항은 국공립보육시설 기준을 따른다.

자. 장부 등의 비치(시행규칙 제23조 별표8)

○ 보육시설의 장은 영유아의 발달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평가하여 영유아 생활지도 및 초등학교 교육과의 연계지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보육사업안내 표<Ⅳ-2>의 서식에 의하여 생활기록부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법 제29조의2)

- 다문화 아동인 경우 「1. 현황」에 다문화 아동임을 표시해야 한다.

○ 보육시설에는 다음의 장부 및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보육사업안내에서 상시 영유아 20인 이하의 시설 기준임)

① 보육시설종사자의 인사기록카드(채용구비서류, 이력서 및 사진을 포함한다.)

② 총계정 원장 및 수입·지출보조부

③ 보육시설 이용신청자명부 및 이용아동연명부

④ 안전점검표

차. 재무회계규칙

○ 재무회계규칙에 관한 사항은 20인 이하 시설 기준을 따른다.

카. 분원의 운영

○ 소규모 보육시설이 인근 국공립보육시설의 분원인 경우 「분원의 설치 및 운영안내」를 따른다.

2. 보육시설 종사자 보수기준

○ 종사자 보수기준은 기존 국공립보육시설의 기준을 따른다.

3. 표준보육과정

○ 표준보육과정을 준수하도록 노력한다.

Ⅳ. 보육종사자

1. 보육시설장

○ 보육시설의 장은 영유아보육법 제21조 및 시행령 별표1에 규정한 사항을 갖추어야 한다.

○ 소규모 보육시설이 보육정원 20인 이하임을 감안하여, 보육교사를 겸임할 수 있다.

- 겸임에 관한 사항은 보육사업 안내를 따르도록 한다.

○ 소규모 보육시설 분원 운영의 경우, 본원의 시설장은 분원에 대한 책임을 진다.

- 본원시설장의 책임에 관한 사항은 [붙임 2]를 따른다.

2. 보육교사

○ 보육교사는 영유아보육법 제21조 및 시행령 별표1에 규정한 사항을 갖추어야 한다.

○ 소규모 보육시설이 분원으로 지정된 경우, 분원의 보육교사 중 1명을 분원운영을 지원하는 '분원운영지원교사'로 지정할 수 있다.

○ 분원운영지원교사는 분원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시설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분원운영지원교사의 자격과 역할은 [붙임 3]의 기준에 따른다.

3. 취사부

○ 소규모 보육시설에는 취사부를 둘 수 있다.

4. 인건비 지원

○ 보육종사자에 대한 인건비 지원은 보육사업안내의 정부지원시설 기준을 따른다.(취약지역 추가 인건비 지원, 농어촌 담임수당 등 지급)

– 다만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지원 기준의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예외 인정의 예: 소규모 보육시설 시설장은 아동 현원 11인 이상 ~ 20인 이하인 경우 시설장 인건비 80%, 아동 현원 5인 이상 ~ 10인 이하인 경우 시설장 인건비 60%를 지원한다. 단 5인 이상 10인 이하의 경우 보육교사 인건비 80%와 비교하여 낮을 경우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액을 택한다.)

Ⅴ. 보육료의 결정 및 수납

○ 보육료에 관한 사항은 2009년 보육사업안내 기준을 준용한다.

Ⅶ. 지원계획

1. 기능보강비 지원

○ 시설 초기 설치시 개소 당 88백만원(지자체 경상보조) (※ 2009년 지원기준임)

– 설치비(리모델링비), 기자재 구입비, 기타 경비 포함

2. 보육료 지원

○ 국공립보육시설 지원 기준에 따라 지원한다.

3. 종사자 인건비 지원

○ 국공립보육시설 지원 기준, 농어촌 지역에 관한 지원 기준에 따라 지원한다.

– 다만 기존 국공립보육시설과 달리 적용되는 부분에 유의한다. 즉, 보육아동 수에 상관없이 시설장인건비 80%, 영아현원 2명 이상 시 교사 인건비 80%, 유아현원 3명 이상 시 인건비 50%를 지원한다.

4. 차량운영비 지원

○ 농어촌 지역에 관한 지원 기준에 따라 지원한다.

– 다만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지원 기준의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5. 소규모 보육시설 설치에 대한 인센티브

○ 소규모 보육시설에 대한 기능보강 사업이 필요할 경우, 다른 시설에 대해 우선적으로 기능보강 사업지원(증개축비, 개보수비, 장비비)을 실시할 수 있다.

○ 소규모 보육시설을 설치한 시·군·구에 대해서는 익년도 기능보강 사업 지원에 추가지원을 할 수 있다.

Ⅵ. 기타

○ 각 시·군·구는 소규모 보육시설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차량 운행을 할 수 있다.

○ 시설장은 보육시설에 다문화 가정 영유아가 있을 경우, 다문화보육프로그램을 진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붙임 1] 보육보조인력 자격 및 역할

제1항(배치) 보육보조인력은 도서지역 또는 산간벽지마을(대중교통수단이 원활하지 않아서 교사의 출퇴근이 불가능한 지역)에 설치된 소규모 보육시설의 보육교사를 보조하는 인력으로, 영유아보육법 제 2조 5항의 "보육시설종사자"에 속하지 않으며 소규모 보육시설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제2항(직무) 보육보조인력은 보육교사의 영유아 보육업무를 보조하지만 보육교사가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도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없다. 보육교사의 보수교육, 휴가 등의 기간에 해당 관청에서는 대체교사 등을 우선 지원하여 보육교사 업무가 지속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보육보조인력의 일반적인 직무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보육교사와 지정하는 시간과 위치에서 아동 안전 상태의 점검 및 보호
2. 보육교사의 보육활동 중 환아 등 특별 보살핌이 필요한 아동 지원
3. 수업 및 교재교구 준비 지원
4. 급·간식 지원
5. 보육시설 내 청소
6. 보육시설 내 안전점검
7. (영아반 담당시) 기저기 갈기, 우유 먹이기, 재우기 등의 보살핌
8. (유아반 담당시) 등·하원 지도, 간단한 응급처치, 책 읽어주기

제3항(임면) 해당 군청장 또는 보육시설의 장은 소규모보육시설 관련 규정에 따라 보육보조원을 임면하고 보육교사의 업무를 보조할 수 있게 할 수 있다.

제4항(자격) 육아경험이 있는 55세 이하의 인격과 소양을 갖춘 자로 소규모 보육시설 운영자가 선발한다.

제5항(겸직) 소규모 보육시설 취사부의 경우 소규모 보육시설 운영자가 신청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승인하면 보육보조인력직을 겸직할 수 있다

제6항(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육보조원으로 보육시설에 근무할 수 없다.

1. 미성년자·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정신질환자
3.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7. 「아동복지법」 제29조의 금지행위를 하여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처벌을 받은 경우

> 아동복지법 제29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1.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
> 2.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성폭행 등의 학대행위
> 3.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 4.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5. 아동을 타인에게 매매하는 행위
6. 아동에게 음행을 시키거나 음행을 매개하는 행위
7. 장애를 가진 아동을 공중에 관람시키는 행위
8.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9.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아동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
10. 정당한 권한을 가진 알선기관외의 자가 아동의 양육을 알선하고 금품을 취득하는 행위
11. 아동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김품을 그 목적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붙임 2] 본원(국공립보육시설 본원) 시설장의 책임

제1항(책임) 분원이 소속한 본원 국공립보육시설 시설장은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책임진다.

1. 분원운영지원교사 및 분원 보육교사의 임면
2. 안전 및 위생 관리 감독
3. 취사부 및 보육보조인력의 임면
4. (본원이 분원의 재무, 회계를 관리하는 형태로 분원을 운영하는 경우) 예·결산 회계

[붙임 3] 분원운영지원교사의 자격 및 업무

제1항(자격) 분원운영지원교사는 다음의 1 또는 2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1. 보육교사 2급 이상 자격을 취득한 이후 1년 6개월 이상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자
2. 보육교사 3급 자격 취득 후 2년 6개월 이상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자

제2항(업무) 분원운영지원교사는 분원 내에서 일반 보육교사의 아동보육업무에 더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책임지고 수행해야 한다.

1. 일과운영 계획
2. 보육실 환경 구성
3. 조리실 관리
4. 교재교구 선정
5. 부모상담
6. 급간식 식단 운영
7. 원아모집
8. 그 외 보육활동과 관련한 모든 업무

<부록 6> 이동식 놀이버스 운영안내

이동식 놀이 버스 사업 안내

Ⅰ. 이동식 놀이 버스 정의

1. 정의

○ 농어촌지역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의 육아지원을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위탁 운영 포함)하는 이동식 놀이 버스를 말한다.

○ 이동식 놀이 버스는 영유아용 놀잇감 및 도서 등을 구비하고, 보육전문인력이 동승한다. 주기적으로 마을을 방문하여 놀이 활동과 놀잇감 및 도서 대여 사업을 한다.

2. 운행 지역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육시설 접근성이 낮은 농어촌지역에 이동식 놀이 버스를 배치하여 운행할 수 있다.

○ 이동식 놀이 버스가 운행되는 농어촌지역은 「보육사업안내」의 '농어촌지역'에 해당되며, 보육시설에 취원하지 않은 3명 이상의 미취학 영유아가 있는 마을에 우선 배치할 수 있다.

3. 사업 실시 기준

가. 놀이 버스 설비 기준

○ 이동식 놀이 버스 차량 내부에는 다음 표의 예시와 같은 영유아용 놀잇감과 도서를 구비한다. 지역 상황에 따라 육아용품을 구비할 수도 있다.

<놀이 버스 구비 놀잇감 및 도서 예시>

구분	종류
신체놀이	굴리기, 끌기, 만들기, 탈 것, 던지기(다트 등) 등
역할놀이	주방놀이(소꿉), 병원놀이, 시장놀이, 각종 상점 등
음률놀이	실로폰, 탬버린, 짝짝이, 건반악기, 타악기 등
조작놀이	각종 퍼즐 및 블록, 각종 소리나는 도구들
비디오/도서	인지능력개발, 창의력 개발, 생활습관 등
육아용품	전동 유축기, 젖병 소독기 등

○ 놀잇감은 안전성, 무해성이 입증된 것이어야 하며, 차량에 구비된 놀잇감 및 도서는 재사용을 위해 세척 및 소독, 소모품·부속품 교환이 적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 이동식 놀이 버스 차량은 1톤 이상 탑차이거나 16인승 이상 버스 규모여야 하며, 놀이 버스 내부는 다음 그림의 예시와 같은 영역 구성을 할 수 있다.

<놀이 버스 내부 놀잇감 및 도서 배치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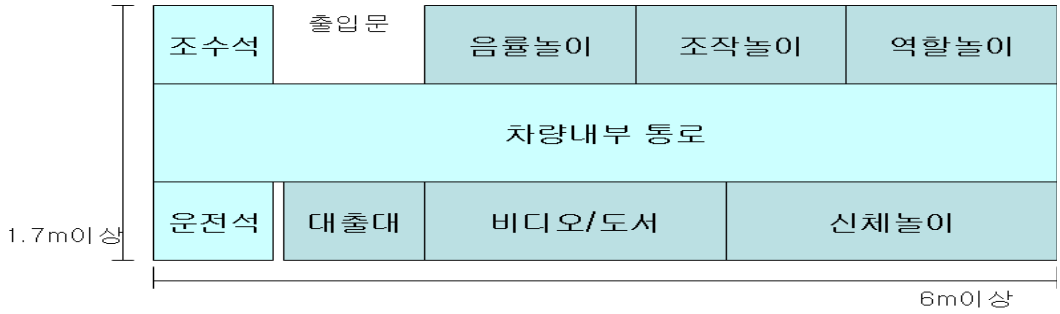

○ 차량 내부 통로는 평판 작업을 하여 아동의 넘어짐을 방지해야 하며, 차량 출입 계단은 유아의 보폭에 맞는 보조 계단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놀이 버스 운영 방식

○ 이동식 놀이 버스를 운영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놀이 버스 종사자를 채용하여 직접 운영하거나, 해당 지역 보육정보센터 또는 국공립보육시설이 위탁 운영할 수 있다.

다. 놀이 버스 운영현황 보고

○ 놀이 버스 운영 및 운행 현황을 분기별로 작성하여, 매분기말 또는 익월말일까지 지방자치단체장을 거쳐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Ⅱ. 이동식 놀이 버스 운영

1. 운영 일반원칙

가. 놀이 버스 운영규정

○ 놀이 버스 운영 책임자(위탁운영시 위탁체장)는 물품 관리, 회계 및 기타 운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규정을 제정·시행하여야 한다.

○ 놀이 버스 운영 책임자(위탁운영시 위탁체장)는 이동식 놀이 버스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년 1회 이용자 평가를 포함한 사업 평가를 수행한 후 사업평가서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사업평가서에는 예산 및 결산서를 첨부해야 한다.

나. 사업 대상

○ 보육시설 접근성이 떨어지는 농어촌지역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및 부모

다. 우선 순위

○ 농어촌지역 마을 중, 이동식 놀이 버스 이용 대상 영유아가 많은 마을과 다문화 가정 영유아가 많은 마을을 우선 순으로 선정한다.

라. 운영 시간

○ 방문 주기 : 마을 당 주 1회 150분(예: 09:30-12:00, 14:00-16:30) 이상

○ 프로그램 운영
- 놀잇감 및 도서 대여 : 150분 (예: 09:30-12:00, 14:00-16:30)
- 놀이 교실 운영 : 100분(예: 10:00-11:40, 14:30-16:10) 이상

마. 운영본부의 설치
○ 놀이 버스 운영 책임자는 이동식 놀이 버스 운영 본부를 설치하고 회원관리 및 놀잇감, 도서 등을 보관하고 관리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두어야 한다.
○ 운영 본부에 지원 인력을 두어 놀잇감, 도서 등 대여용품의 세척, 소독을 담당하도록 한다.

바. 종사자 배치 및 근무시간
○ 놀이 버스 1대에는 보육 전문 인력 1인 이상과 운전 및 대여 업무 지원 인력 1인을 배치한다.
○ 놀이 버스 운영 책임자는 놀이 버스에 배치한 2명 이상의 인력 이외에 1명의 지원인력을 운영본부에 두어 놀잇감 등의 관리와 회원 관리 업무를 담당하게 한다.
○ 놀이 버스 종사자는 1일 8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사. 놀이 버스 안전 관리
○ 놀이 버스 운영 책임자는 놀이 버스 이용 영유아 상해 등에 따른 배상 책임에 대비하기 위하여 배상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놀이 버스에는 일일 차량안전점검표를 비치하여야 한다
○ 놀이 버스에는 차량용 소화기, 응급상자 등을 비치하여야 하며, 놀이 버스 종사자는 이의 사용방법을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아. 기타
○ 놀잇감과 도서 및 비디오 등을 보관하는 장소는 청결하여야 하며, 입출 대장 및 놀잇감·도서·비디오 목록을 구비해 두어야 한다.
○ 이동식 놀이 버스에 배치되는 놀잇감과 도서는 매주 새로운 내용으로 교체되어 아동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 사업 종료시 국고보조금으로 구입한 놀잇감과 도서 및 비디오 이외에도 지역 주민 또는 기관·단체로부터 기부 등의 방법으로 얻은 놀잇감·도서·비디오 등의 물품과 기타 장비 일체는 지방자치단체에 반납하여야 한다.

2. 운영 프로그램

가. 놀이교실 운영
○ 보육 전문 인력은 마을 유아의 발달 상태와 흥미, 계절과 놀이교실 운영 환경을 고려하여 월간 놀이교실 계획을 수립하여 놀이 버스 운영 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놀이교실은 놀이 버스의 놀잇감 및 도서 등을 활용하거나 마을 환경을 활용하여 기본생활 습관, 미술, 과학, 음률 활동과 사회성 발달 등을 도모할 수 있도록 운영되어야 한다. 놀이교실 월별 운영 프로그램은 영유아 부모에게 사전에 고지될 수 있다.

○ 놀이교실은 마을 당 주 1회 100분 이상 운영되어야 하며, 실시 장소는 마을 회관 등 마을의 조건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놀이교실에는 영유아 및 보호자가 함께 참여할 수 있다.

○ 놀이 교실 운영시 지역 기관 및 단체로부터 아동과 부모를 위한 각종 특별 프로그램 (예: 부모 교육, 각종 공연, 아동 발달 검사 등)등을 지원받을 수 있고, 필요시 마을 주민들을 자원봉사자로 활용할 수 있다.

나. 놀잇감 및 도서 대여

○ 회원가입(온라인 또는 서면신청) 절차를 거친 후 대여할 수 있다.

○ 대여 조건에 대해서는 운영관리 규정에서 정할 수 있고, 연체와 분실 또는 파손과 관련된 규정을 둘 수 있다.

○ 개별 놀잇감에 이용 매뉴얼을 구비할 수 있고, 이용 매뉴얼은 영어, 베트남어 등 다문화어로 번역하여 제공할 수 있다.

다. 육아용품 대여

○ 놀이 버스 운영 책임자의 판단에 따라 육아용품을 구비할 수 있다.

Ⅲ. 놀이 버스 종사자

1. 보육 전문 인력

○ 보육 전문 인력은 보육교사자격 또는 유치원교사자격 소지자로 하며, 놀이 버스 사업 종사기간은 보육 전문 요원으로서 보육 활동에 종사한 것으로 경력 인정한다.

○ 이동식 놀이 버스가 방문하는 마을영유아와 부모를 대상으로 놀이교실을 운영하며 놀이교실 내 상호작용 과정에서 부모의 양육문제를 상담할 수 있다.

○ 월간 놀이교실 계획을 수립하고 놀이 버스 운영 책임자의 결제를 득해야 하며, 매월 말 놀이교실 운영 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놀이교실 운영시 아동의 안전을 고려하여야 한다.

2. 지원 인력

○ 운전 및 대여 업무 지원 인력은 1종 운전면허와 컴퓨터 조작능력을 보유한 자로, 놀이 버스 운전과 놀잇감 및 도서 등의 대여와 반납관련 업무를 수행한다.

○ 운영 본부 지원 인력은 회원가입(온라인 또는 서면신청), 놀잇감 세척 및 도서의 유지 보수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 매월 말 회원 현황과 놀잇감, 도서의 대여 및 재고 현황에 대해서 놀이 버스 운영 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Ⅳ. 이용료

○ 놀이버스 운영 책임자는 놀이 버스 이용료를 수납할 수 있으며, 놀이 버스 이용료는 해당 보육정책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저소득층 아동의 놀이 버스 이용료를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다.

Ⅴ. 지원 계획(안)

1. 종사자 인건비 지원

○ 보육 전문 인력 1인, 운전 및 대여 업무 지원 인력 1인

* "각년도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기준"에 따라 보육전문 인력은 보육교사 인건비, 운전 및 대여업무 지원인력은 취사부 인건비를 지급

2. 시설장비비 지원(1차년도 지원)

○ 차량 구입 및 리모델링(도서 및 놀잇감 보관 설비 포함)

○ 놀잇감 및 도서

○ 멸균기, 대여사업용 컴퓨터

놀잇감 및 도서 300종 이상. 놀잇감은 지방자치단체(또는 위탁체) 알뜰장터나 기부 등의 방식에 의하여 보충가능

: 영유아용 도서는 지방자치단체(또는 위탁체)와 지방자치단체 내 어린이 도서관 업무 제휴를 통해 보충 가능함.

3. 운영비

○ 회원관리 전산 프로그램(1차년도 지원)

○ 차량 유지비, 놀이교실 운영비

놀이 버스 이용자 이용료로 대체할 수 있음

농번기 임시 보육방 사업 안내

Ⅰ. 농번기 임시 보육방 사업의 정의

1. 정의

○ 농번기 임시 보육방[이하 보육방]은 농번기에 마을 유휴시설에 한시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여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가정에 대해 농번기 동안 보육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 '보육방 운영자'는 보육방을 직접 운영하는 보육교사을 뜻한다.

2. 유형

○ 보육방은 특별한 보육 수요를 일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육사업안내의 시설 설비 규정을 엄격히 따르지 않으며, 보육 시설로 구분하지 않는다.

3. 규모 및 명칭

○ 보육방이 설치되는 기간 동안 상시 영유아 3인 이상 5인 이하가 이용할 수 있고, 영유아 보육에 적절한 장소를 구비하여야 하며, 명칭은 "○○ 어린이놀이방"으로 한다.

4. 설치절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가절차 없이 직접 설치하되, 설치시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5. 배치기준

○ 보육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농어촌 지역 마을로, 보육시설 등하원 차량을 이용할 시 기존 보육시설까지 편도 40분 이상 걸리는 지역에서 주민이 요청하는 경우에 한 해 설치할 수 있다.

○ 주민은 사용가능한 보육방 공간 및 마을 주민인력 지원 계획을 보육방 설립 요청시 함께 제출해야 한다.

○ 농번기 임시 보육방은 두 개 이상의 마을에서 공동으로 설치할 수 있다.

6. 보육방 위탁운영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공립 보육시설에 농번기 임시보육방을 위탁운영한다.

Ⅱ. 농번기 임시 보육방 설치 기준 및 운영

1. 농번기 임시 보육방 설비기준

○ 보육방은 마을회관, 노인정, 교회 등 마을 공동시설 및 마을 주민의 주택에도 설치할 수 있다. 단, 보육방 면적은 아동 수 대비 충분한 공간이 될 정도이어야 하며, 수면 공간과 놀이공간이 확보되어야 한다. 주택에 설치할 경우 보육교사가 보육인원을 한 눈에 볼 수 있을 정도의 면적이 확보되어야 한다.

○ 보육방은 동일 건물 내에 취사시설과 화장실, 세면대 설비가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보육방 내부에는 소화기 등의 소방안전관련 물품을 구비해야 하며, 보육방 개소 2주전까지 전기안전점검과 소방안전점검을 받고 그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 보육방 내부의 집기 등은 유아의 안전을 위하여 창문, 문 등에 안전장치를 하여야 하며, 기존 집기 및 교구장이나 수납장으로 사용하는 집기에도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

2. 농번기 임시 보육방 운영기준

가. 보육방 운영규정

○ 보육방 운영자는 보육방 안전 조치, 보육 시간, 보육과정 운영, 재정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보육방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지자체 보육 담당자는 지도·감독을 실시할 수 있다.

○ 보육방 운영이 종료된 후, 1개월 이내에 예·결산서가 포함된 사업평가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나. 이용 대상

○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농어촌지역 영유아

다. 운영 기간 및 시간

○ 농업 형태나 주산물에 따라 농번기를 규정하므로 상황에 따라 운영 기간은 달라질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주산업이 논농사인 경우 5월~10월까지 운영할 수 있다. 단, 최대 연간 운영 기간은 6개월을 넘지 않는다.

○ 마을 여건에 따라 보육방 운영자, 보호자 및 보육교사의 협의에 의하여 기준시간 초과보육 및 휴일보육을 운영할 수 있다.

라. 보육교사 배치 및 근무시간

○ 보육교사의 근무시간은 보육방 운영시간을 고려하여 출퇴근시간은 탄력적으로 할 수 있다.

○ 보육교사는 주 6일 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보육교사의 휴일에는 대체교사를 파견해야 한다.

마. 마을주민 인력의 활용

○ 보육방을 설치하는 마을은 주민 중 육아 경험이 있는 지원 인력 1명을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한다. 지원 인력은 동일한 사람이 지속적으로 지원활동을 할 필요는 없으나 보육방 급·간식 및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

○ 지원인력으로 활용하는 마을 주민의 활용 범위는 다음과 같다.

- 급·간식 지원
- 보육시설 내 청소
- 영아에 대한 기저기 갈기, 우유 먹이기, 재우기 등의 보살핌
- 보육교사가 지정하는 시간과 위치에서 아동 안전 상태의 점검 및 보호
- 보육교사의 보육활동 중 환아 등 특별 보살핌이 필요한 아동 지원
- 수업 및 교재교구 준비 지원

○ 지방자치단체에서 인건비 지원을 할 수 있다.

바. 교재교구

○ 보육방은 보육방을 위탁 운영하는 국공립보육시설로부터 아동 연령에 적합한 교구 및 놀이감을 대여받아 운영할 수 있다.

○ 보육서비스 기간 종료 후 모든 장비와 교재교구 등은 보육방을 운영하는 국공립보육시설로 회수되어 보관한다.

사. 보육과정 운영

○ 가능한 표준보육과정을 준수하도록 노력한다.

3. 종사자 보수기준 및 경력 인정

○ 종사자 보수기준은 기존 국공립보육시설의 기준을 따른다.

○ 종사자의 보육교사 경력은 보육방 운영 개월 수를 산정하여 인정된다.

Ⅲ. 보육료 수납

○ 국공립보육시설에 해당하는 보육료를 보육방 운영자가 수납할 수 있다.

○ 보육료 수입은 보육방 운영비로 사용한다.

Ⅳ. 지원계획

1. 설치비 및 기능보강비

○ 설치 최초 연도에 국비 또는 지방비로 설치비용을 지원한다.

○ 운영 기간 중 1회 기능보강비를 지급하여, 보육방 내 안전조치 및 청결 유지 비용으로 활용할 수 있다.

2. 종사자 인건비 지원

○ 보육 교사 인건비 1인 100% 지원

* “각년도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기준”에 따름

3. 교재교구비 지원

○ 국공립 시설 수준의 교재교구 구입

4. 보육료 지원

○ 국공립보육서비스이므로 연령별 아동 보육료를 기준에 따라 지원한다.

○ 아이사랑카드 수납은 운영자인 국공립 보육시설 또는 보육방에서 직접 할 수 있다.

<부록 8> 부모협동 놀이그룹 운영안내

부모협동 놀이그룹 사업 안내

Ⅰ. 부모협동 놀이그룹 정의

1. 정의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보육서비스의 일종으로 농어촌·도서·벽지지역에 거주하는 부모들이 공동으로 자신의 자녀를 포함한 영유아들을 보육하는 사업이다.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시설에 속하지 않는다.

2. 규모 및 명칭

○ 상시 영유아 3인 이상을 보육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명칭은 "○○ 어린이 놀이방"으로 한다.

3. 설치절차

○ '부모협동 놀이그룹'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놀이그룹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부모협동 놀이그룹'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본 사업의 수요 및 지역여건, 지속적인 운영가능성 등에 관하여 관할 시장·군수에게 설치 전 사전에 상담을 해야 한다.

○ '부모협동 놀이그룹'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설치인가 신청서를 관할 시장·군수에게 제출하며 이 때 놀이그룹 참여 부모가 5인 이상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4. 배치기준

○ 보육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지역에 설치한다.

○ 인근에 보육시설이 설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 면적이 넓어 실질적으로 기존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 설치한다.

Ⅱ. 부모협동 놀이그룹 설치 기준

1. 일반구조 및 설치기준

○ 시장 · 군수는 '부모협동 놀이그룹'을 운영하기 위한 장소의 내부구조와 시설설비가 보육활동을 할 수 있는 곳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인가한다.

○ 해당지역의 교회, 절, 성당과 같은 종교단체건물, 마을회관 등 공공건물, 폐가 등에 설치할 수 있다.

○ 보육시설에 속하지 않으나 영유아의 안전과 적정 수준의 서비스를 최우선 고려해야 하므로 다음의 기준은 준수해야 한다.

- 부모협동 놀이그룹의 장소는 건물 1층에 위치하여야 한다.
- 장소내에 화장실, 욕실, 세면 시설, 간단한 조리시설(렌지, 개수대, 냉장고 등)이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 놀이그룹 장소 내에는 적정한 수의 놀이감 및 도서, 수납장이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 소방기구를 설치하고 부모에 대한 안전안내지침을 구비하고 있어야 한다.

2. 운영현황 보고

○ 놀이그룹의 '부모자치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운영현황을 분기별로 관할 시장·군수에게 보고하고, 시장·군수는 1주 이내에 시·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Ⅲ. 부모협동 놀이그룹 운영

1. 보육대상

○ 놀이그룹에 등록한 부모들의 영유아(0세~만 5세) 자녀에 한한다.

○ 놀이그룹을 운영하고 있는 마을내 거주 아동이 이용 우선권을 가진다.

2. 운영의 일반원칙

가. 놀이그룹 운영규정

○ 놀이그룹 운영의 책임은 등록한 모든 부모가 공동으로 진다.

나. '부모자치 운영위원회' 조직 및 활동

○ 놀이그룹 운영의 자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부모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높이기 위하여 '부모자치 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 '부모자치 운영위원회'의 정수는 놀이그룹에 등록한 가구 총수의 30%이내로 구성하며, 면장, 이장, 마을대표, 부녀회장 등 지역사회인사를 포함할 수 있다.

○ '부모자치 운영위원회'의 장(이하, 위원장)을 선출하며 위원장은 해당 놀이그룹의 대표자로 활동한다. 위원장의 임기는 위원회칙으로 정한다.

○ '부모자치 운영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의결정족수는 운영위원회의 과반수 참석과 과반수 찬성이다.

① 놀이그룹 운영 규정의 제정이나 개정에 관한 사항
② 놀이그룹 예산 및 결산의 보고에 관한 사항
③ 영유아의 건강·영양 및 안전에 관한 사항
④ 이용시간, 보육과정, 이용료 등 놀이그룹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⑤ 참여 부모의 역할 범위와 활동에 관한 사항
⑥ 그 밖의 놀이그룹 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사항

다. 놀이그룹 참여자 구성

○ 영아의 경우, 놀이집단에 참석한 영아의 부모 중 1/2이상이(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함) 영아들과 함께 같은 장소에 있어야 한다(예: 영아가 5명이 있다면, 부모는 2.5명으로 최소 3명의 부모가 있어야 한다).

○ 유아의 경우, 놀이집단에 참석한 유아의 부모 중 1/3이상이(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함) 유아들과 함께 같은 장소에 있어야 한다(예: 유아가 10명이 있다면, 부모는 약 3.3명으로 최소 3명의 부모가 있어야 한다).

라. 이용시간 및 이용료

○ 놀이그룹 이용시간은 아침 7시부터 오후 7시까지 운영하되, 지역적·계절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부모자치 운영위원회'의 협의 하에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 이용료는 이용시간을 기준으로 시간당 책정하며 금액은 '부모자치 운영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정한다.

마. 건강・위생관리

○ 놀이그룹을 이용하는 영유아와 부모의 건강을 위하여 소독 및 환경을 깨끗이 해야 한다.

① 영유아 대상으로 년 1회 이상 건강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부모 대상으로 년 1회 이상 건강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건강진단 결과 건강이 좋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놀이그룹은 항상 쾌적한 환경과 청결을 유지하여야 하며 아래와 같이 시설물 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① 시설물에 대한 관리 책임자를 지정 수시 점검한다.

② 거실의 도배, 장판 등은 청결을 유지하여 필요시 수시 정비하고 하절기에는 방충망을 설비하여야 한다.

③ 월동대책을 수립, 동절기 전에는 난방 시설 등을 사전에 점검 만전을 기한다.

바. 보험가입

○ 아동에 대한 상해보험과 배상보험은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그 외 사항은 국공립보육시설 기준을 참고하여 부모자치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사. 재무회계

○ 놀이그룹의 회계연도는 연말로 한다.

○ 해당 놀이그룹에 충당하기 위하여 확보된 자금은 본 사업 운영 외는 사용할 수 없다.

○ 금전출납의 작성자는 '위원장'으로서 최종 책임도 '위원장'이 진다. 금전출납에 있어서 문제발생시 태만하지 아니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할 때는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아. 장부 등 비치

○ 놀이그룹에는 다음의 장부 및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① 보육시설 이용신청자명부 및 이용아동명부
② 수입·지출 회계장부
③ 안전점검표
④ 교재, 교구, 도서 목록 및 대출장부

○ 장부의 기록은 기록요인이 발생할 때 마다 지체 없이 기록한다.
○ 장부의 기록은 증빙서를 첨부하여 정확하게 기록해야 한다.

3. 그룹리더

가. 그룹리더의 정의

○ 그룹리더란 원칙적으로 놀이그룹에 참여하는 영유아를 보살피고 일과활동과 보육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담당 시간동안 일어나는 일에 대해 일차적인 책임을 지는 부모를 말한다.
○ 놀이그룹에 등록한 부모들은 순번을 정해서 원칙적으로 일일 그룹리더로 활동한다.
○ '부모자치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보육교사 또는 아이돌보미 사업이수자를 놀이그룹의 리더로 고용할 수 있다.

나. 그룹리더의 역할

○ 그룹리더로 활동하는 부모는 보육시설의 보육교사에 해당하는 역할을 하고, 취사, 청소, 장난감 정리 등 보육과정 이외의 활동을 병행한다. 단, 구체적인 그룹리더의 역할 범위와 내용은 '부모자치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 그룹리더는 보육정보센터에서 보육과정의 진행과 영유아 놀이에 대한 교육을 받거나 놀이그룹 운영에 대한 컨설팅을 요청할 수 있다. 보육정보센터는 그룹리더의 요청에 응해야 한다.

Ⅳ. 부모협동 놀이그룹의 지도 · 점검

1. 지도·점검 실시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할지역의 놀이그룹의 운영 전반에 대하여 매년 2회 이상 지도·점검하게 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지침(규정)에 따른 운영 준수 여부
- 부모 대 아동수 비율 준수 여부
- 회계관리 및 처리의 적정성(수입지출 근거확인)
- 운영시간 준수 여부
- 급간식 운영 및 건강·위생관리 실태
- 안전관리 실태(안전교육, 비상대비, 놀이시설, 보험가입 등)

2. 지도·점검에 따른 조치

○ 지도·점검결과 시정 등의 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문서로써 지도하고 그 이행결과를 확인한다.

3. 운영 위반시 조치사항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부모협동 놀이그룹 운영시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국비(지방비포함)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 부모협동 놀이그룹 사업의 업무 수행 중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가한 경우
- 설치 후 3년 이내 운영을 중단한 경우(Ⅰ-3 설치절차를 준수할 것). 단, 자연재해 제외
- 사업 목적 이외에 국고(지방비포함) 지원금을 사용한 경우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고(지방비포함) 지원금을 교부받은 경우

Ⅴ. 지원계획

1. 기능보강비 지원

○ 본 사업 첫 해는 국비 100%지원한다.
- 1차년도 1개소 당 33백만원 이내
  : 증·개축비 및 개보수비, 교구·교재·놀이감, 도서구입, 기자재 구입비, 기타 경비 포함(관리비, 보험가입비 등).

○ 2차년도 이후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예산을 책정하여 지원한다.
  : 이하 상동.

2. 보육교사 및 아이돌보미 고용시 지원

○ 보육교사 및 아이돌보미 인건비 금액은 자체적으로 결정하며 수납한 이용료에서 부담한다.

준공영(準公營) 섬마을 보육가정 사업 안내

Ⅰ. 준공영 섬마을 보육가정 정의

1. 정의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보육서비스의 일종으로 인근의 보육시설을 이용하기가 어려운 도서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이 자신의 집에서 영유아의 보육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 자신의 집에서 영유아를 보육하는 자를 '보육모'라 한다.

2. 규모 및 명칭

○ 상시 보육모의 자녀 포함 총 5인 이하의 영유아를 보육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이때 총 영유아에서 보육모 자녀는 과반을 넘을 수 없다.

*예: 총 영유아수가 5인이라면, 보육모 자녀는 2명까지 가능하다.

○ 명칭은 "○○ 섬마을 놀이방"으로 한다.

3. 설치절차

○ '준공영 섬마을 보육가정'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설치인가 신청서를 관할 시장·군수에게 제출한다.

○ '준공영 섬마을 보육가정'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본 사업의 수요 및 지역여건, 지속적인 운영가능성 등에 관하여 관할 시장·군수에게 설치 전 사전에 상담을 해야 한다.

○ '준공영 섬마을 보육가정'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보육모)는 관할하는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4. 배치기준

○ 보육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도서지역 중 육지와 교량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은 소외지역에 설치한다.

Ⅱ. 준공영 섬마을 보육가정 설치기준

1. 일반구조 및 설치기준

○ '준공영 섬마을 보육가정'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보육모)의 가정집 내부구조가 보육활동을 할 수 있는 곳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가한다.

*예: 최대정원 5인 영유아에 맞는 규모인지, 보육실, 화장실, 주방, 놀이기구 등의 기본적인 시

설·설비 설치가 가능한지 등을 고려함.

○ 보육시설에 속하지 않으나 영유아의 안전과 적정 수준의 서비스를 최우선 고려해야 하므로 설치시 다음의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 보육가정은 건물 1층에 위치하여야 한다.
- 보육가정내에 영유아 사용이 용이한 수세실 화장실, 욕실, 세면 시설, 조리시설(렌지, 개수대, 냉장고 등), 침구 등이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 보육가정은 적정한 수의 놀이감, 교재, 교구, 및 수납장이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 소방기구를 설치하고 안전안내지침을 구비하고 있어야 한다.

2. 운영현황 보고

○ '준공영 섬마을 보육가정'의 운영자는 운영현황을 6개월 간격으로 관할 시장·군수, 시·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Ⅲ. 준공영 섬마을 보육가정 운영

1. 보육대상

○ 0세~만 5세의 취학전 아동을 원칙으로 한다.

○ 필요한 경우 만 12세까지 연장하여 보육할 수 있다(영유아보육법 제27조 단서)

2. 운영의 일반 원칙

가. 운영시간

○ 보육가정은 08:30~18:30까지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실정이나 보호자의 근로시간 등을 참작하여 조정 운영할 수 있다.

○ 보육가정은 공휴일을 제외하고 연중 계속 운영하여야 하며, 지역 및 시설 여건에 따라 보호자와의 협의에 의하여 기준시간 초과보육 및 휴일보육을 운영할 수 있다.

나. 보육과정 운영

○ 보육모는 표준보육과정을 준수하도록 노력한다.

○ 도서지역의 지역 자원을 활용하여 보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다. 보험가입

○ 상해보험과 배상보험은 필수로 가입한다. 보험가입에 관한 사항은 국공립보육시설 기준을 따른다.

라. 재무회계

○ 해당 보육가정에 충당하기 위하여 확보된 자금은 본 사업 운영 외는 사용할 수 없다.

○ 금전출납의 작성자는 해당 보육가정의 '보육모'로서 최종 책임도 '보육모'가 진다. 금전출납에 있어서 문제발생시 태만하지 아니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할 때는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마. 장부 등의 비치

① 보육시설 이용신청자명부 및 이용아동연명부

② 총계정 원장 및 수입·지출보조부

③ 안전점검표

④ 교재, 교구, 도서 목록 및 대출장부

3. 보육모

가. 자격

○ 보육모는 보육가정 설치지역의 주민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한다.

① 보육교사 자격증 소지자

② 유치원교사 자격증 소지자

③ 초·중등학교 교사 자격증 소지자

④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⑤ 간호사 자격증 소지자

⑥ 아이돌보미 교육이수자

⑦ 지역주민 5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보육정보센터에서 실시하는 신규 보육시설장 교육 총 40시간의 수업을 이수한 자

※ 지방자치단체는 보육정보센터에 보육모의 '신규 보육시설장 교육' 을 요청할 수 있다.

나. 인건비 지원

○ 보육모의 인건비는 100%지원한다. 이 때 보육모의 자격에 따라 인건비 수준이 달라지는 바, 보육교사나 유치원교사 자격자(3-가-①~⑤ 해당자)는 국공립시설 보육교사 인건비 기준의 70% 수준으로, 기타 자격자(3-가-⑥~⑦ 해당자)는 보육교사 인건비 기준의 60% 수준으로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경력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4. 취사부(보육보조인력)

○ 총 등록 아동(보육모 자녀 포함)이 4명 이상이고 이 중 영아가 2명 이상이면 취사부를 두어야 한다.

○ 취사부는 아이를 키운 경험이 있는 65세 이하 자로, 필요시 보육보조인력으로 활동할 수 있다. 보육보조인력의 역할은 "소규모 보육시설 사업 안내"의 제2항 「직무」 에 준한다.

○ 취사부의 인건비는 100% 지원하며 기준 금액은 국공립보육시설 취사부 인건비의 50%에 해당한다.

Ⅳ. 준공영 섬마을 보육가정 지도 · 점검

1. 지도·점검 실시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할지역의 보육가정의 운영 전반에 대하여 매년 2회 이상 지도·점검하게 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지침(규정)에 따른 운영 준수 여부
- 부모 대 아동수 비율 준수 여부
- 회계관리 및 처리의 적정성(수입지출 근거확인)
- 운영시간 준수 여부
- 급간식 운영 및 건강·위생관리 실태
- 안전관리 실태(안전교육, 비상대비, 놀이시설, 보험가입 등)

2. 지도·감독에 따른 조치

○ 지도·점검결과 시정 등의 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반드시 문서로써 지도하고 그 이행결과를 확인한다.

3. 운영 위반시 조치사항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보육가정 설치자에게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국비(지방비포함)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음.

- 보육가정 사업의 업무 수행 중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가한 경우
- 설치 후 3년 이내 운영을 중단한 경우(Ⅰ-3. 설치절차를 준수해야 함). 단, 자연재해 제외
- 사업 목적 이외에 국고(지방비포함) 지원금을 사용한 경우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고(지방비포함) 지원금을 교부받은 경우

Ⅴ. 지원계획

1. 기능보강비 지원

○ 설치 첫 해는 국비 100%지원한다.

- 1차년도 14,000천원 이내(국비 100%): 증·개축비 및 개보수비, 교구·교재·놀이감, 도서구입, 기자재 구입비, 보험가입비 등 기타 경비 포함
- 2차년도 이후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예산을 책정하여 지원한다.

2. 인건비 지원

○ 준공영 섬마을 보육가정당 지원하며 설치 첫 해는 국비 100%, 2차년도 이후에는 국비 50%, 지방비 50%로 충당한다.

- 보육모 인건비 연간 최대 11,360천원 이내(2009년 기준)
- 취사부(채용한 경우) 인건비 연간 6,670천원 이내(2009년 기준)

3. 보육료 지원

○ 보육가정에 등록된 영유아는 보육시설 이용 시와 동일하게 보육료 지원을 받는다.

- 영유아 부모는 아이사랑 카드를 발급받고, 보육가정은 카드 단말기를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 보육모의 자녀들은 보육료 지원에서 제외한다. 그러나 기관(보육시설, 유치원) 미이용 아동 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다.

연구보고

소규모 보육시설 운영 모델 개발 연구

발행일 2010년 4월
발행처 보건복지부 저출산고령사회정책실 보육기반과
주 소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계동 140-2)
전화: 129 팩스: 02) 2023-8921
인쇄처 도서출판 한학문화 02) 313-7593

보고서 내용의 무단 복제를 금함.

발간등록번호 11-1352000-000017-01